2021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2022. 4.

고용노동부

KLI 한국노동연구원

2021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2022. 4

고 용 노 동 부

목 차

Ⅰ. 총 평 ····· 1

〈전체 총평〉 ····· 3

〈지표별 총평〉 ····· 6

Ⅱ. 모기관별 보고서 ····· 15

강원랜드 ····· 17

공무원연금공단 ····· 29

국민체육진흥공단 ····· 41

국방과학연구소 ····· 53

국제방송교류재단 ····· 65

그랜드코리아레저㈜ ····· 77

기술보증기금 ····· 89

도로교통공단 ····· 100

독립기념관 ····· 1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124

신용보증기금 ····· 136

여수광양항만공사 ····· 14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160

예금보험공사 ····· 17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183

울산항만공사 ····· 195

목 차

인천국제공항공사 ····· 20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218
주식회사 에스알 ····· 230
㈜중소기업유통센터 ····· 242
중소기업은행 ····· 25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64
태권도진흥재단 ····· 27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87
한국공항공사 ····· 29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3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322
한국관광공사 ····· 333
한국국제협력단 ····· 345
한국국토정보공사 ····· 356
한국기계연구원 ····· 36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379
한국남동발전㈜ ····· 390
한국남부발전㈜ ····· 40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414
한국도로공사 ····· 426
한국동서발전㈜ ····· 438
한국마사회 ····· 450

목 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461
한국부동산원 ····· 47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484
한국산업단지공단 ····· 495
한국산업은행 ····· 50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5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528
한국서부발전㈜ ····· 539
한국석유공사 ····· 550
한국수력원자력㈜ ····· 561
한국수자원공사 ····· 572
한국수출입은행 ····· 58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594
한국예탁결제원 ····· 60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618
한국원자력연구원 ····· 629
한국자산관리공사 ····· 640
한국잡월드 ····· 652
한국전력거래소 ····· 663
한국전력공사 ····· 674
한국전력기술㈜ ····· 68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698

목 차

한국조폐공사 ····· 709
한국주택금융공사 ····· 721
한국중부발전㈜ ····· 732
한국지역난방공사 ····· 74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756
한국천문연구원 ····· 767
한국철도공사 ····· 77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79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802
한국토지주택공사 ····· 81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824
한국한의학연구원 ····· 83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846
한국화학연구원 ····· 857
한전KPS㈜ ····· 868
한전원자력연료㈜ ····· 879
대구도시철도공사 ····· 891
부산교통공사 ····· 902
서울교통공사 ····· 913
전남개발공사 ····· 924
㈜IBK저축은행 ····· 936
KOPSPO영남파워㈜ ····· 947

목 차

㈜벡스코 ····· 958
울산테크노파크 ····· 969
제주테크노파크 ····· 980
킨텍스 ····· 991

I

총 평

<전체 총평>

○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 7. 20 ; 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규직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부터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 및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12),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2020.3)을 발표하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추진하였다. 이번 2021년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두 번째 평가이다.

○ 본 평가는 「자회사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2020.8.27. 고시 ; 이하 운영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2022.1월에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20명)를 구성하였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평가위원 워크숍, 모기관 기관장 등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평가위원은 모기관에 대한 서면평가 방식으로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였다. 평가대상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평가대상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전환방식을 자회사로 선택한 모기관 86개소였다.

○ 본 평가는 2020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사용한 평가지표와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을 기초로 하여 개정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① 자회사의 안정성 기반 마련, ② 계약 관행의 개선, ③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④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⑤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배점
① 자회사의 안정성 기반 마련	①자회사 설립·운영 근거 마련, ②적정 자본금 출연 및 필수 설비 지원, ③사업이관 및 이윤배분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 보장	10점
② 계약 관행의 개선	①단일통합계약 전환, ②계약대금 지급방식 개선, ③계약금액의 합리적 책정	25점
③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①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운영, ②공정한 계약 체결, ③경영 협약 체결·이행	30점
④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①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 ②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출연 등	15점
⑤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①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및 커리어 경로개발 지원, ②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 및 합리적인 인사관리 지원, ③공정한 CEO 선발 제도 도입 및 실시 지원, ④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 지원, ⑤노동이사제 및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자회사 도입지원, ⑥자회사 경영공시 지원	20점
합 계		100점

○ 평가위원회는 위 평가지표에 따라 3개 팀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는데, 1팀은 1 자회사의 안정성 기반 마련, 2 계약 관행의 개선을 담당하였고, 2팀은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을, 3팀은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지표를 평가하였다.

○ 평가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장(권순원 교수, 숙명여대 경영학부)을 포함해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는데,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각 위원별로 평가지표를 배분하였고, 지표 담당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기관 전체를 일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평가 및 평정은 평가위원회와 평가위원의 독립적인 고유 권한으로, 노사정 및 이해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영향 받지 않고 진행되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평정 회의는 비공개 진행(운영규정 제5조)을 원칙으로 했다.

○ 평가위원은 모기관별로 작성·제출한 자회사 운영실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장심사 및 대면심사가 배제됨에 따라 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근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기관에 추가자료 제출 및 보완이 요청되기도 했다. 평가는 지표별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정도, 이행실적의 적절성, 향후 개선계획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정성평가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평가위원은 서면평가를 통해 중간보고서 작성하여 각 기관에 송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의' 의견을 받아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평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 등을 확정하여 각 기관에 회신하고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였다.

○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처음으로 기관장(또는 자회사 총괄책임자)에 대한 비대면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현장실사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었다. 기관장 등에 대한 평가는 실적보고서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자회사에 대한 모기관의 운용 방향이나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인데, 기관장 등이 참석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 실제로는 실적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평가와 직접 연계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마지막으로 평가위원회는 2022년 3월 25일 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보고서와 평가등급 등을 확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는데. 각 지표별로는 9등급(A+~Eo)으로 평가하였고 모기관별로는 5등급(A~E)으로 평가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결과를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개별부처 등)에 통보하였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대상 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 기관별로 전체 평가결과를 보면, A등급은 15개소(17.4%), B등급 19개소(22.1%), C등급 21개소(24.4%), D등급 22개소(25.6%), E등급 9개소(10.5%)이다. 모기관 유형별로 상위등급(A, B등급)의 비중을 살펴보면 준정부기관은 21개소 중 16개소(76.2%), 공기업은 27개소 중 16개소(59.3%), 지방공기업은 4개소 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1개소에 불과하여 유형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준정부 기관	공기업	지방 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총계	
							빈도	비율(%)
A등급	9	6	0	0	0	0	15	17.4
B등급	7	10	0	1	1	0	19	22.1
C등급	4	8	4	0	5	0	21	24.4
D등급	1	3	0	1	17	0	22	25.6
E등급	0	0	0	2	5	2	9	10.5
총계	21	27	4	4	28	2	86	100.0

<지표별 총평>

1. [평가지표1] 자회사의 안정성 기반 마련

○ 세부평가지표1은 자회사 설립·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자회사의 독립성 및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평가결과 모기관중 자회사 설립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는 41개소, 일반적 근거를 마련한 경우 45개소로 모든 기관이 구체적 또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령에 구체적 또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한 경우는 45개소이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는 41개소였다. 자회사 정관에 위탁업무 내용을 기재한 경우는 76개소,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10개소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일부 모기관의 경우 자회사 설립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구체적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자회사와 안정적인 위탁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에도 사업 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평가에서는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흡한 설립·위탁 근거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법령 또는 정관에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세부평가지표2는 자회사의 자본금 출연 및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관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모기관의 유형과 자회사 규모(종사자)에 따라 자회사 자본금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의 자본금은 모기관 유형이 공기업인 경우 12.49억원이고, 준정부기관 5.27억원, 기타공공기관 8.59억원, 지방공기업·출자기관 4.35억원이었다. 자회사 규모가 100인 미만인 경우 자회사 자본금은 3.03억원이고, 100~300인 미만의 경우 5.93억원, 300인 이상인 경우 13.2억원으로 나타났다. 모기관은 대체로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최소자본금과 초기 운영자금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결정하고, 또한, 평가대상 모기관들은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이윤을 사내에 유보하여 실질 자본을 확충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이 확인된다. 다만, 일부 모기관은 최소자본금 출자 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확보 노력이 없거나 당기 순손실 발생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사례도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한편, 자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설비 이관 여부를 평가한 결과, 설비를 충분히 이관한 것으로 평가된 비율은 71개소였고,

이관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경우는 15개소였다. 또 설비이관 방식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은 67개소, 유·무상 임대 방식은 19개소로 나타났다. 모기관은 대체로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이나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자회사에 필요한 설비(장비)를 이관하였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이관된 설비(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과 자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복리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모기관은 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설비(장비) 이관이나 복리시설의 제공에 소극적인 사례도 발견되었다. 모기관은 향후 필수설비(장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세부평가지표3은 모기관의 사업이관(적자사업, 흑자사업), 이윤 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에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모기관이 자회사에 적자사업을 이관하거나 또는 흑자사업을 회수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29개소이고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57개소로 나타났다. 모기관들은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관 관련 제도를 명문화하였으나 아직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모기관들은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무배당 원칙을 추구하고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신규 사업 발굴 등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많은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이윤을 보장하고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등 실질 자본의 확충에 초점을 둔 점이 인정되나,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자회사의 누적 이익잉여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2. [평가지표2] 계약관행의 개선

○ 세부평가지표1은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경우는 61개소이고, 복수로 통합한 경우가 17개소, 미전환 8개소로 나타났다. 분야별 복수로 통합한 17개소 중 합리성이 인정된 경우는 1개소에 불과하고 불인정된 경우가 16개소로 나타났다. 모기관은 계약체결 방식에 있어 자회사와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대다수 모기관이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분야별 통합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모·자회사간 계약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기관은 사업의 성격, 회계의 구분, 지자체 보조금 지급시기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복수의 계약 체결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고, 일부 모기관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는 사유에 합리성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경우는 모기관의 입증자료가 불충분하고 본 평가를 통해 모기관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추후 복수의 계약 체결이 불가피한 경우를 유형화하여 단일통합계약이 불가능한 사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세부평가지표2는 계약대금 지급방식(지급시기, 지급기간)의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계약대금 지급시기를 개선한 경우는 51개소, 개선하지 않은 경우는 35개소이며, 계약대금 지급시기를 개선한 51개소 중 분기별 선지급이 20개소로 가장 많았고 예산교부방식 17개소, 월별선지급 7개소, 일부선지급·일부후지급 4개소 순이었다. 계약대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상당수 모기관들이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기존 계약관행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모기관들도 다수 확인된다. 아울러 모기관중에는 자회사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 계약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일부를 후지급하는 방식 등 계약대금 지급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기간과 관련하여 모든 기관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5일 이내의 초단기에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지급시기가 5일을 초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금지급기간 단축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 세부평가지표3은 계약금액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우선 예정가격의 산정과정에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은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한 경우가 39개소이고 시중노임단가 100%를 미달한 경우가 44개소로 나타났다. 또 시중노임단가 변동시 노무비 조정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조정(43개소)하거나 상·하반기에 조정(41개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는 1개소에 불과하였다.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는 모기관의 여건,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 이전의 근로자 임금 수준 등 개별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에 개선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여건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로의 고용 전환 이후 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용역비 산정을 통해 자회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를 고려한 주기

적인 과업범위 설정과 필요인원 산정, 직무가치에 부합하는 직종별 적정 임금 설정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평가된다. 한편,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적용금지와 관련하여 평가한 결과, 예정가격 100%이상을 계약에 반영한 경우가 24개소, 예정가격 87.9% 초과 100% 미만인 경우가 32개소로 나타났다. 관행에 따른 낙찰률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낙찰률을 현저히 개선하여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으로 귀결되는 사례들이 확인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종전의 낙찰률을 그대로 적용하거나(3개소), 개선하더라도 소폭에 그치고 있는 경우(9개소), 낙찰률 100%를 적용하였다고 하나 노무비 산출 시 이미 낙찰률을 선반영하여 실질적으로는 낙찰률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모기관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특별한 기준없이 낙찰률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제약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한 모기관의 다각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평가지표 3]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구축

❍ 세부평가지표 1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를 통해 모·자회사 간 공동이익 증진의 모색과 소통에 대한 노력과 이행여부를 평가하였다.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여부,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춘 자회사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운영 상황, 의제발굴 및 합의이행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전체 86개 기관 중 매우 양호하게 설치된 기관이 29개, 양호하게 설치한 기관을 합치면 31개(36.0%)로 확인되었다. 모·자회사 노사 4자로 구성된 경우도 다수 있었으나 모회사 또는 자회사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의 반대나, 모회사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지체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자회사 대표가 참여하는 기관은 31개(36%)로 나타났으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근로자대표의 임기, 변경이나 교체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어 기관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규정도 있었으나, 운영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21개(24.4%)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운영은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기관도 있었으나 연 2회 또는 연 1회만 개최하는 기관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일부 기관은 적극적으로 모·자회사간의 소통을 통해 의제발굴을 하고 있었으나 다분히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기관도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세부평가지표 2는 모·자회사 간 위수탁계약서 등에 존재하는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자회사의 경영·인사권침해여부, 부당한 업무 지시, 과도한 복무규율, 노동3권 제약, 부적절한 계약 해지, 기타 자회사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조항유무, 모기관의 불공정한 계약 방지 노력을 평가한 결과, 대다수 모기관들은 부당·불공정 계약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자회사와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부당·불공정 조항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이긴 하나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으며, 용역수행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탁수수료를 감액하는 조항,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의 복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조항, 일일 근무일지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 교육계획이나 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하는 조항,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결원에 따라 인건비를 차감하는 조항, 과도한 계약해지의 사유 등 여전히 개선이 미진하였다.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소통을 통해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세부평가지표 3은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 체결여부, 체결 시 자회사 경영 독립성과 자율적 운영 보장 내용 명시여부, 미체결 시 개선노력이나 향후 개선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전체 86개 기관 중 68개(79%)가 경영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전년도 55.6%에 비해 23.4%p 증가하였다.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회사에 대한 지원,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 공동이익 증진 등의 내용을 명기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경영협약서가 아닌 유사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효성에 차이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아예 자회사와 경영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관은 11개(17%)였으며, '경영계약서' 혹은 모·자회사간 '업무협약서'도 확인되어, 향후 경영협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보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4. [평가지표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 세부평가지표 1은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이는 자회사 노동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의 귀결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평가결과 모기관 86개소 중 10개소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최대비중(각각 9%, 10%)을 보장하고 있었다. 또한, 평가년도 이전보다 일반관리비율을 인상한 모기관이 33개소, 이윤비율을 인상한

모기관이 24개로 나타나,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상당한 개선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일부 모기관의 경우에는 객관적 상황의 어려움 또는 적정수준의 보장을 하고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추가적 보장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 모기관에 따라 복리후생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세부평가지표 2는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모·자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모기관의 직·간접적인 노력으로써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이 개선·증진되었는지를 폭넓게 보는 지표이다. 기금 활용을 위한 노력, 기금 활용 실적, 기금 출연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에 준하는 제도화 노력과 실적, 기금 출연 외에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별도 예산을 지원하거나 직접적 예산지원 외 간접적 지원방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평가한 후에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본 지표에는 2021년과 비교하여 점수가 낮아진 모기관들이 존재하는데, 복지기금을 활용한 복리후생 증진 노력만 진행하고 그 외의 방안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86개의 모기관 중 16개는 모기관의 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었고, 1개는 2022년부터 지원이 확정되어 있었다. 또한, 모기관의 기금 출연이 어려워 자회사에 기금 설립을 준비하거나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곳이 13개 자회사, 자회사 내 근로자협의회나 사우회 등을 설립하여 복리후생 증진 노력을 한 곳은 5개 자회사 등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모기관의 근로자들이 조성한 재원의 일부를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에 사용하거나 모기관에서 자회사 근로자 포상 및 선물세트 제공, 각종 행사 참여를 독려하거나 휴게실 및 작업환경 보수, 자회사 팀워크 증진비 등 예산 지원, 모기관의 어린이집, 의무실, 도서실, 체력단련실 등 복리후생시설을 공동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도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실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5. [평가지표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 세부평가지표 1은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교육훈련과 커리어 경로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약금액에 반영했는지, 모기관의 지원계획과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모기관들이 자회사 설립 이후 자회사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및 커리어 경로 개발 예산을 배정하고, 자회사 전담자(부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모·자회사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모기관의 온라인 교육시스템 및 콘텐츠 등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수요 및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교육콘텐츠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6개 모기관 중 71개 기관이 5점 만점인 본 지표에서 4점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로써 대부분의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을 위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세부평가지표 2는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거나 준용하고 있는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적용하거나 준용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상당수의 자회사들이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규정에 포함시켜 운용하고 있었지만, 규정화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도 일부 있었고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를 오인하여 적용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직전 평가에서는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평가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는데, 자회사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규정화하고 운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는 규정화하는 등으로 직전 평가보다 보완된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는 비정규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도입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어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6개 모기관 중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해 도입한 기관은 46개이고(복수의 자회사 중 1개 자회사라도 도입한 경우 포함), 경영협약서나 내부 기안 등을 통해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포괄적으로 도입한 기관은 7개이며,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도입한 기관 중에서 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41개(인사위원회를 사전심사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2개 기관 포함)로 나타나, 직전 평가에 비해(72개 모기관 중 29개 기관 도입)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중에서 채용예정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고 있는 모기관은 86개 중 66개(복수의 자회사 중 1개의 자회사라도 해당되는 경우 포함)이고 외부위원이 과반수인 경우는 50개였으며, 성과, 역량,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근무평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기관은 86개 중 53개(복수의 자회사 중 1개 자회사라도 도입한 경우, 직원 중 일부에 한해 평가하는 경우, 평가 관련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포함)로 나타났다.

○ 세부평가지표 3은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CEO 선발제도 마련 여부 및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CEO 등 임원을 선발하고 있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외부위원 비율이 내부위원 비율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선발 관련 공고를 기업 내부 홈페이지 외에 채용사이트,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외부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으로 이사 등의 선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6개 모기관 중 80개 기관이 자회사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었고, 3점 만점인 본 지표에서 2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모기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CEO 선발을 위해 관련 규정 제정 및 그에 따른 선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세부평가지표 4는 이번 평가에서 신설된 지표로,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자회사가 컨설팅, 설문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임금체계 등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계약금액에 반영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자회사 대부분이 설립된지 오래되지 않고 임금체계 또한, 구축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임금체계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자회사의 구체적인 노력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모기관은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해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6개 모기관 중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한 곳은 21개 기관이지만, 그 중 대부분은 노력과 성과의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였다.

○ 세부평가지표 5는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노동이사제 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과 같은 제도

도입노력, 운영규정 마련이나 운영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86개 모기관 중에서 39개의 모기관이 자회사의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중 12개 모기관의 자회사에서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었다. 다만, 모기관 중에서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 유형 등에서는 자회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도입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다수 있는데, 명확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세부평가지표 6은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 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항목 등을 고려하여 공시 여부, 내용의 적정성, 공시 지원 노력, 공시 항목 확대 및 향후 개선계획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자회사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모기관은 81개로 직전 평가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41개 모기관만 자회사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공시 기준과 내용의 적정성, 공시정보의 시의성, 공시 지원과 개선 계획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Ⅱ

모기관별 보고서

㈜강원랜드

총 평

○ 강원랜드는 2019년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2020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모기관이 자본금 8억원을 100% 출자한 점, 자회사 전환전 각 협력사 보유설비의 이관을 진행한 점, 예정가격 산정 시 직종별 노임을 충족하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단일 통합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 대금 지급에 10일이 소요되는 점,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인 87.995%를 적용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4차례의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처우개선 이슈를 논의하고 정례화 한 점,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전반을 검토하여 13건을 발굴하여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실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노사공동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규정마련, 계약서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4.7%, 이윤비율은 5.7%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550천원, 명절상여금은 설과 추석에 각 400천원, 식비 100천원/월씩 지급하며, 2021년 9월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협력사 직원 1,781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고 복지포인트 지급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2021년 12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년 9월 근로자 이사회 참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2019년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2020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모기관은 정관(제2조)에서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한 사업 수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주차관리, 발렛서비스 등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내·외 법인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자회사 정관에 위탁사업 내용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본금 8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각각 10억 원, 11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여 2021년 자본 규모가 27억 원을 유지하여 자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향후 자회사의 성장을 위해 자본금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공구 및 사무집기·비품 양도 양수 계약

(2020.2.18; 6.19; 6.30)에 의해 추진하였으며, 실제로 필수 설비 이관을 위한 자산 실사 진행, 자회사 전환 전, 각 협력사 보유설비의 이관 진행, 추가로 필요한 필수 설비는 모기관이 구매하여 자회사가 사용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자회사 정관에 이익 배당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윤을 모기관에 배당하지 않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기업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14개 용역업무를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지 않았으며, 2021년 계약에서도 14개 개별계약을 유지하였다. 2022년에는 신규계약시 14개 계약을 5개 계약으로 통합한 노력이 인정되나 향후 단일통합계약 전환을 추진하고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기관은 계약대금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에 대하여, 계약대금 지급방식을 기존 월별 후지급에서 개선하지 않았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기성검사 7일, 대가지급 3일 등 총 10일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작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계장치정비원과 폐수처리장치조작 직종의 경우 하반기 시중노임단가가 전기 대비 하락한 이유로 예정가격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점은 자회사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안정성과 통상임금 성격의 임금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임의로 낮출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예정가격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이 노무비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감독자 인건비 항목을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무인력 노무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고 일반관리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운영 예산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노무비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립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낙찰률의 단계적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앞두고 있는바,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및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가격 100% 반영에도 불구하고 낙찰하한률 수준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바,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직종의 경우 전기 대비 시중노임단가가 하락하자, 하락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도 확인되는바,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이유로 종전 노임단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인 87.995%를 적용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모기관은 기존의 낙찰률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이 2022년 신규 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0.9% 상승하기로 결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그 수준이 소폭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9월 이후 모기관 5명, 자회사 5명 (사용자대표 2명, 근로자대표 3명)으로 구성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모기관은 자회사 소속 2개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토록 하고, 노동조합 집행부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를 변경하도록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에 근로자대표를 참여토록 하였다. 이후 4차례의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이슈를 논의하였던 점, 2021년 12월 9일 5차 회의에서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한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규정 마련을 통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주차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일일대면보고 하도록 한 조항, 골프장코스 및 슬로프 과업지시서에서 자회사의 쟁의행위로 업무상 공백 발생 시 계약해지 하도록 한 조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받고 개선한 노력이 확인된다. 또한, 모기관이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전반을 검토하여 부당·불공정한 조항을 발굴하고 13건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기관은 시설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 발렛파킹 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3항, 주차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3항, 골프장 코스관리 및 스키장 슬로프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에서 누적하여 3회 이상 월 평가 75점 미만 점수를 받은 경우에 해지통보 할 수 있고, 회원고객 수송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7조에서 주유비 또는 하이패스 요금을 허위로 3회 이상 기재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자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시설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 및 제8조, 골프장 코스관리 및 스키장 슬로프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 회원고객 수송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서 결원 시 도급금액을 일할계산 할 수 있고 10일 이상 결원 시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용역의 완성여부와 관련 없이 인원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조항은 자회사와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 통합 시설관리 과업내용서 제Ⅳ장. 행정사항, 2. 용역수행 조직, 자항에서 자회사 전 종업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비치, 제출하도록 하고, 골프장 및 스키장 과업내용서 21. 관리인원, 다. 일반사항, 1) 관리인원 및 사무실 개설에서 계약과 동시에 관리인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관리인원 교체 시 사전에 서류로 변경요청하고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와 2020년 7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의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기본원칙, 제3조 역할 및 경영개입 제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7조 안정적 성장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제8조 근로자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 이익증진(제5조 업무협력, 제6조 업무협력의 범위, 제9조 협의체 구성)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협약서상 주요 항목들이 “업무협력 할 수 있다”, “노력한다”, “구성할 수 있다” 등 실효성이 불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는 점은 개선 필요성이 있다. 설비이관, 협의체 구성에 관한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하나 개선노력이 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존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 재계약의 어려움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4.7%이고, 이윤비율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5.7%로서, 전년대비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 비율의 증가는 없으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윤비율은 평균수준보다는 높지만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에 대한 통합계약을 추진하면서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550천원, 명절상여금은 설과 추석에 각 400천원, 식비는 100천원/월씩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으로 200천원 수준의 종합건강검진, 100천원 수준의 명절선물, 월120천원의 교통비 지원, 직원휴양소 1박 숙박권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포인트와 직원휴양소는 신규 제공된 항목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인당 2,000천원의 직원격려금을 지급한 것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복지포인트 지급을 규정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21년의 당기순이익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식비 지급수준을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되도록 상향하는데 노력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1월 모기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시작으로 2020년 10월 기본재산 사용 요청, 동년 12월 임시기금협의회 개최, 21년 3월 협의회 개최 및 출연계획서 제출, 동년 6월 기본재산 사용 방법 결정 및 8월 이사회 의결과 임시기금협의회 개최를 거쳐 2021년 9월에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협력사 직원 1,781명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성과가 확인된다.

-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은 주무 부처와 사전 협의, 이사회 의결, 모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다양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외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용역계약을 통해 자회사의 교육비 예산으로 2021년 기준 2만원(月/인당)을 별도 편성하였고,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운영 시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등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2020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활성화 교육' 시행 시 설문조사를 병행한 노력이 인정된다. 조직활성화 교육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15차수에 걸쳐 직원 4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직원 선호 교육 설문조사에서 대인/소통 관련 항목(34.5%)이 1위, 업무역량향상 항목(22%)이 2위를 차지했는데, 해당 항목들을 2022년 교육계획에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향후 기본계획 구성 및 실행에 있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 관련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 심리상담, 심리상담비 지원 등의 내용을 교육훈련 제도 프로그램 구성에 추가하여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차후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상 현격한 진전이 생긴다면, 2022년에는 모·자회사가 공동으로 대면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의 활발한 의견 교류를 통해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등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활동을 추가하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모기관과 차별을 두지 않고 출입증을 발급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차별 없이 모기관 리조트 및 복지관을 이용하고 모든 직군에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고 채용 전형시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며 모든 직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역량평가, 근무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하는 등 실적이 있다. 또한, 2021년 12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채용 면접 시 외부위원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자회사 여건 또는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설정하고 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2020년 2월 2일 제2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 절차와 위원정수 및 모집 방법을 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20년 2월 27일 제3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인 2020년 2월 27일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함과 동시에, 지역과의 소통 및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외부(지역)전문가를 이사회 운영에 참여시키는 추천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제2대 대표이사 선임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할 계획을 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2022년 2월 노사발전재단에서 시행하는 일터혁신컨설팅 사업을 신청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년 9월 '근로자 이사회 참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점은 자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년도 평가에서 언급되었다. 특히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직 관련 운영 실적은 없지만, 향후 이사회 대면 개최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고, 경영안정화 이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관련 계획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에 대해 전년도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알리오를 통해 자회사의 인원 수 정도만 확인되고, 다른 법적 필수 공시사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전년도 평가 이후 경영공시 관련하여 개선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모기관 홈페이지 경영공시 메뉴와 알리오를 통해 자회사 출자, 투자 정보만 보고되어 있을 뿐 자회사만의 주요 경영정보 항목(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이 공시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기에,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맞추어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별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총 평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및 정관에서 자회사에 출자·출연 및 설립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모기관이 자회사 전환과정에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모든 시설·자산 등 필수 설비를 모기관이 무상 제공한 점,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2개 계약(사업장/사옥관리)으로 통합한 점, 계약대금지급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점, 자본금 규모가 유사 규모 모기관에 비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한 점, 전년도 지적받은 부당·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 내에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복무규율조항, 경영협약 조항의 구체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8.0%, 이윤비율은 0.7%로 전년 대비 일반관리비를 상향하고 이윤을 일부 보장하였으며, 인당 복리후생은 전년 대비 7.3% 상승된 복지포인트 754천원을 지급하였고, 모기관 기금 부족을 감안하여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고 복지포인트 지급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2021년 12월 계약직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고,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6개 항목을 추가하여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온라인 이사회 개최 등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내실화하고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제78조 제2항에서 '공단은 제77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모기관 정관 제37조의2에서도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 및 설립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이같은 법률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본금 1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자회사 이익잉여금은 5.79억 원이고 2020년의 자본 규모가 7.21억 원을 유지하여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목적으로 결원 감액분을 추가지급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필수 설비와 장비를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제3조(위수탁 목적물)에서 각종 시설 및 부대시설, 관련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 관련된 재산 일체를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설물 관리 및 자회사 영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자산 등 필수 설비를 모기관이 무상 제공, 노후 시설물 교체를 위해 모기관에서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 점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모기관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또한, 자회사 혁신제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도입을 지원하고 실시간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자회사 운영효율화를 지원한 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향후에도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이윤에 대한 모기관의 배당이 없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의 잠재적 부당관행 방지를 위해 모기관의 출자회사관리규정(제6조)을 신설하여 자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2개 계약(사업장/사옥관리)으로 통합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사옥관리의 경우 공무원 연금기금 사업에 해당하여 명확한 회계구분이 필요하므로 2개 계약으로 구분하여 유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매월 분할지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면서 자회사 요청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만 최근에 신설('21.12)하였는데, 조속히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 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21.12.부터 청구일 5일 이내 지급)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모기관은 2019년 자회사와 5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자회사 단체협약,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2021년 기준 노무비 예정가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전년도 지적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2021.12.14. 모·자회사 간 체결한 경영협약서에 위탁

계약 체결 시 모든 비목에 대해 원가 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고, 근로자 노임단가 산정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점은 향후 예정가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이 노무비 예정가격 산정 시 사무인력 인건비 항목을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장감독자 노무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고 일반관리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운영 예산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노무비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립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자회사 노사 임금단체협상 결과와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도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2021년 직종별 시중노임단가와 비교해 상·하반기 모두 10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으므로,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모기관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체결한 경영협약서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는바,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정하고자 하는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99.684%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전년도 평가 이후 지표 개선의 성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와 5년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지표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기간 중에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므로, 모기관은 향후에도 낙찰률 상승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정기회의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렸고, 자회사 직원 복지증진 등 6개 안건에 대한 합의이행을 완료한 점,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모기관 3인, 자회사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2020년 9월 이후 총 3회의 회의를 개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근로자 측 대표로 모기관 노조 집행부 1인, 자회사의 다수노조 위원장 이외에 1인이 추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작업환경, 복지 등 모자회사 노사 공동 이익증진 방안 및 합리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정기회의의 횟수가 적정한지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용역수행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를 감액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을 개정하였고, 위·수탁 용역수행 결원 감액분 추가지급액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회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12억원)으로 활용한 노력이 확인된다. 또한, 모기관이 계약조건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고, 2021년에는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도 부적절한 해제·해지 사유 1건을 발굴하여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7조를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 공무원후생복지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용역 과업내용서 제2장 과업수행기준 및 방법, 7. 골프장 운영 및 관리사항, 바항에서 경기자와의 대화 금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식음·흡연, 코스관리 책임자의 지시 없는 행동금지는 과도한 복무규율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와의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 마련,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의 정례 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와 2020년 6월 체결한 별도의 경영협약을 개선하여 2021년 12월 갱신하였음이 인정된다. 다만, 갱신 시점이 2021년 12월로 실제 평가기간 중에는 기존의 경영협약이 적용되었으며, 개선된 협약서를 기준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3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4조 공단의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제4조 공단의 지원),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6조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등 경영협약에 요구되는 중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긍정적으로 파악된다.

- 그러나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협약의 유효기간이 대표이사 임기에 연동되어 협약의 안정성이 낮다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모기관의 지원 사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자의적 조항에 그치고 있는 점, 전년도 지적사항 중 설비이관 등의 지원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기존에 보장해주지 않았던 이윤 또한, 일부 보장해 주었다. 2019년 이후 모기관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의 3.77%에서 평가년도 8.0%로 4.23%p 증가하였고, 전년도에는 이윤비율을 보장해주지 않았으나 평가년도에는 0.7%로 책정되었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보다 높지만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윤비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754천원 지급되었고, 명절상여금과 식비는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 외 복리후생으로 60천원의 명절선물, 30천원의 기념일 상품권, 주거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과 기숙사관리비 면제, 자녀수에 따라 최대 1백만원의 출산장려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전년도 대비 7.3% 상승된 것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인당 800천원 상당의 직원격려금을 지급한 것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복지포인트 지급을 규정화하지 않은 것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명절상여금과 식비가 책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논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으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코자 노력하였지만, 기금 부족으로 이를 통한 자회사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원 감액분 추가지급액과 자회사 잉여금을 바탕으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자회사 근로자 복지향상 노력을 통해 복지수당 확대, 주거 지원, 용역비 보전, 이윤율 보장 등을 통해 1인당 5백만원 수준의 복지증진 효과를 낸 실적이 인정된다.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협의와 컨설팅 등으로 노력하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이 어려워지자 약 12억원 규모의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22년 중으로 설립 예정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교육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자회사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해 모기관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문성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모기관의 별도 예산편성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은 자회사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으로 판단되며,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구성 시 내부직원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내부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상담원을 두고, 고충상담원의 상담 스킬 교육 등을 구성하는 등 고객만을 위한 상담 스킬 향상이 아닌 내부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회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지원 등을 위한 전담 부서 또는 인력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의 교육훈련 및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운임, 일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차별 없이 사내 구내식당과 휴게시설을 이용하고 사내망 및 영업전산망 이용에 차별이 없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채용전형시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며 제안규칙에 따라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규정시행세칙 및 인사평정규칙에 따라 경력자 특별채용시 경력을 인정하고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등 실적이 있다. 또한, 2021년 12월 「계약직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채용 면접 시 외부위원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인사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의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공공기관에 준하는 임원 선임제도를 운영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모회사는 2019년 자회사에 정관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주주총회를 거쳐 임원을 선임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공정 채용 절차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임원 5명을 공개채용 했으며, 특히 비상임 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3~7명의 외부전문가 중심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골프장 및 리조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문제해결, 조직관리 능력,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이 뛰어나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소양을 지닌 자로서 윤리관 및 인품 등 다양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사람들로 외부위원을 선임하는 등 공정한 임원 선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추후 자회사의 임원선발과 관련하여 절차를 내부인만 접근 가능한 경로로 진행하기보다 외부인이 접근 가능한 공개된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대외적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의 구성비율 등에 대한 자료 열람 시 명확하게 지표 파악이 가능한 표기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당시 수안보(1~5급)와 천안 등 4개 사업장(1~7급)의 직급체계를 그대로 승계하여 이원화된 직급체계를 운영해 왔는데, 사업장간

지속적 설명회(4회)를 통해 직급을 1~7급으로 일원화하고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하위 직급의 보수를 인상하였다. 또한, 2021년 5월 자회사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컨설팅(노사발전재단)을 시행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는 등 자회사 경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 점이 전년도 평가에서 인정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서면 이사회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서면 이사회 특성상 회의 과정 참관과 발언권 등에 제약이 불가피하기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된다. 온라인 이사회 개최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서면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운영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 사업 경영 성과, 임직원 연봉 현황, 6개 내부규정 등을 자회사 홈페이지에 반영하였다. 이후 기존 공시항목에 신규채용 현황, 주요사업 현황, 주요사업 성과, 노동조합 현황 등 6개 항목을 추가하여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지만, 대내외 평가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기존 경영공시 화면은 시설 예약, 이용요금 등 영업 중심의 화면 구성이어서 정보 접근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메인화면에 경영공시 메뉴를 추가하여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개선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총 평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90.7.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간접고용 인력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모기관이 자본금 24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점, 업무수행을 위한 자회사 필수 설비 구매지원등을 추진한 점, 사업본부별 위탁용역 18건(22개 업체)을 통합하여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필수설비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연2회 정례화 하여 개최하여 모·자회사간 노사 공동이익 증진 방안을 논의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투입인원에 연동된 인건비와 경비 정산문제, 협약의 지원내용의 구체성과 실효성증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3.65%, 이윤비율은 6.6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비는 복지포인트 700천원, 식비는 일반직에만 100천원/월씩 지급하며, 복지포인트 지급수준과 별도 규정을 마련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명절상여금과 식비를 책정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2021년 12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계획을 제정하여 도입하고, 자회사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선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원직에 대하여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88서울올림픽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복합문화 및 스포츠·레저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1990.7.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간접고용 인력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모기관 정관(제55조)에서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업의 수행 및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8. 개정된 모기관 정관(제55조 제3항)을 보면 '경비·미화 등 시설의 관리·운영 관련 업무를 출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본금 24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2020년 및 2021년 자회사 이익잉여금이 각각 36억 원으로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퇴직충당금을 설정한 보험수리적 손익을 포함한 자기자본비율은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경영 위수탁협약에 이윤지급, 시설물 사용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비·미화·조경 등 공단 시설이용 서비스 환경 제공, 업무수행을 위한 자회사 필수 설비 구매지원(2021년 자산 구매액의 약 86% 모기관이 비용 보전)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이윤에 대한 모기관의 배당이 없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의 잠재적 부당관행 방지를 위해 '사업이관 심의위원회(2021.12.1.)'를 구성하여 사업이관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노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모기관에 대한 배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3년 동안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0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모기관은 2018년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본부별 위탁용역 18건(22개 업체)을 통합하여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매년 단일계약 체결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문제와 자회사 요청으로 2020년 3분기부터 분기별 선지급을 월별 선지급으로 변경하여 운영중이며, 향후 분기별 선지급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모기관은 앞으로 당초 기준대로 분기별 선지급으로 조속히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기간과 관련하여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선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청구로부터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을 받은바 있으나, 본보고서와 추가

제출 자료 간에 관련 내용이 상이하여 개선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모기관이 2021년 예산에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증액을 국회에 직접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과 2021년 2차 경영 위수탁 협의회에서 22년 위수탁 계약 시 일반관리비 인상을 통해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하고자 노력한 점은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는 임시적인 방법에 그칠 수 있으므로 향후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노무비 원가가 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지 않은 점, 시중노임단가 변동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재부 제출(2020.2)에 이어, 2021년 단순노무 시중노임의 예산 우선 반영을 위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증액을 국회에 직접 요청(2020.11)하고 협의하는 등 노력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최종 예산확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경영위수탁 협약 담당부서 및 예산·인사 부서의 자구노력으로 2022년 위수탁 계약 시 일반관리비 인상을 통해 단순노무 시중노임 우선 반영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모기관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자회사 노임단가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거나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개선계획에 따라 2022년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반영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한 모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낙찰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이 시중노임단가를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증액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 반면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경영위수탁 협약서에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관대표 4명, 모자회사 근로자대표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연 2회 회의를 정례화 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이후 2회, 2021년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환경, 복지 등 모자회사 노사 공동 이익 증진 방안 및 합리적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규정에 논의사항으로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이슈”를 추가한 점, 사안 발생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 다만,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기회의의 횟수가 적정한지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으며 2021년 경영위수탁 협약 체결과정에서 부당 불공정 조항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나 추가 개정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 그러나 모기관은 경영위·수탁 협약서 제12조에서 시설관리·운영 부문 인원은 97% 이상, 사업지원 부문 인원은 100%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미만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 및 연동된 경비 등을 모두 정산한다고 하였으나, 용역의 완성여부와 관련 없이 자회사 인원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조항은 자회사와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와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평가기간 내에도 경영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만, 위·수탁 협의서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위·수탁관리의 원칙, 제12조 인력운영의 2항), 노동자 처우개선(제6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지급),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21조 업무협조 등)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은 확인된다.

- 그러나 해당 위·수탁 협의서는 경영협약이 아니며, 내용에 있어서 주요 설비의 이관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노사공동협의회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구속력 없이 규정되어 있는 점,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이나 모자회사 공동이익2증진을 위한 조치가 불충분한 점, 상기 사항이 전년도에도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협약 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 일반관리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윤비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모기관의 적자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3.62%에서 평가년도 3.65%로 0.03% 증가에 그쳤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6.18%에서 평가년도 6.65%로 0.52% 증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윤비율은 평균수준보다는 높지만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700천원 지급되었고, 명절상여금은 없으며, 식비는 일반직에만 월 100천원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복지포인트 지급수준과 별도규정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명절상여금과 식비가 책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식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복리후생으로 200천원 상당의 건강검진비용을 제공하는 것 외에 개별적 복리후생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지기금 지출이 수익을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복지기금 원금이 감소하였고, 모기관 직원 투표로 복지기금 지출사업 축소가 결정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자회사

지원은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모기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금 활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모기관 노동조합과의 논의를 이어나가고,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수입으로 처리하여 그 일부를 근로자 복리후생 개선에 사용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금전적 복리후생 지원 외에 자회사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 과정에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운영 시 코로나로 인한 근로자 보호와 정부정책(산업안전 강화) 수행을 위해 교육훈련비를 1천3백만원으로 확대하여, 마음치유 및 안전관리 위험성 대처 등에 대해 교육할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안전담당 직원 대상 위험성 대처 교육을 실시하였다.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 계획수립을 요청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협약비에 반영하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개별 직원이 연평균 100시간 전후(많게는 111.6시간, 적게는 95.3시간)의 교육 이수시간을 기록하는데, 단순히 시간을 많이 이수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교육 이수 후 교육을 통한 개선 효과를 점검해 보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늘고 있으므로 비대면 교육체계의 효율성 확보와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모·

자회사 노사담당 워크숍 등의 소통창구 운영과 그 결과에 대한 전파 및 공유 노력 등을 통해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운임, 체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직무 특성에 따라 직군별 월 한도를 정하여 연장·휴일근로를 시행하고 직군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콘도시설 및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며 자회사 근로자가 차별 없이 모기관의 직장어린이집과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채용면접시 전체 비율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또한, 2021년 12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계획」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가 일반직·전임직·지원직·별정직으로 구분한 후 각 직군별로 인사규정, 직원연봉규정, 전임직·지원직·별정직 직원채용관리지침, 전임직직원 시행세칙, 지원직직원시행지침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인사규정 제2조 및 지원직 직원시행지침 제3조에 따르면 지원직에 대해서는 포상제도, 징계제도, 경력인정 제도, 근무평정제도 등을 일반직 또는 전임직과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원직에 대해서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의 CEO 선발제도를 정비하여 2020년 6월 자회사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선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으로 임원선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 이사와 이사회 선임 위원 5~10명으로 구성되며, 비상임 사외이사 총 4명 선임 시 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여성 비율을 50%로 증대한 점은 사회형평적 임원선임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임원선임 관련 절차 진행 상황의 공개를 통해 대외적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며, 공정성 중심의 임원선임 절차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절차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2021년 7월 16일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이내의 과업기간을 정한 직무급 제도개선 컨설팅 시행에 관한 계획을 세웠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노조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정관 개정을 통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참관 근로자 지정, 안건 공유, 의장 동의시 의견 개진 가능, 이사회 심의 결과 공유 등 이사회 참관제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한 점도 인정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게시판에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상세 내역을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고 있다. 자회사 현안사항 점검을 통해 전년 대비 14가지 자체공시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선제 공개하고 경영

공시 개선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19년 55건에서 20년 28건 그리고 21년 23건으로 지속 감소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 세부 공시항목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시부서 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공시의 책임성 강화와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회사가 보유한 문화데이터의 발굴/개방 확대를 통해 자회사만의 사업 특성을 잘 반영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의 공시 모니터링 등과 같은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총 평

○ 국방과학연구소는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정관을 개정하였고, 2개 자회사에 각각 자본금 4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점, 전환 전 20개 업체 위탁계약에서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인당 노무비 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92~92% 수준의 낙찰률을 적용하고 이는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의 규약을 제정하고 개최전 자회사 직원의 의견수렴을 하여 협의할 안건을 제출토록 한 점은 긍정적이나, 전년도 지적받은 부당·불공정한 조항 개선노력이 미비한 점, 경영협약을 여전히 체결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은 ㈜에이디디시설관리단이 각각 9.0%와 1.3%, ㈜에이디디보안환경관리단이 6.2%와 2.0%이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800천원, 명절상여금은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지급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자회사의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전년 대비 201% 증액 지원하고, 2020년 8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제정하여 도입하였으며, 자회사의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2019년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였다. 모기관 정관 제4조(사업)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 이행을 위한 출연 또는 출자'를 명시하였고, 제16조(기구와 직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에 부설기구를 두거나, 연구소가 출연 또는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 및 설립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기관은 정관 개정 추진 등 자회사 업무위탁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모기관은 정관 개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회사 정관에 위탁사업(서비스) 내용의 구체적 명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두 곳(에이디디 보안

환경관리단, 에이디디 시설관리단)에 각각 자본금 4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2020년 각각 19백만 원(보안환경관리단), 20백만 원(시설관리단)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다소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자회사 두 곳의 장비·설비 이관을 위한 실태조사 및 모·자회사 계약 체결(장비·설비 이관 및 원가 반영 등)을 거쳐 계약 원가 반영과 이관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청소·경비 업무의 특성상 이관이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실제 이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이윤에 대한 모기관의 배당이 없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기업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자회사 전환 전 20개 업체 위탁계약에서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기관은 계약대금 분할 지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검사완료일 5일 이내 지급)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용역계약이 경비·청소·보안 직종에 대해 단순노무 종사원 노임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된다고 하고 있으나, 1인당 노무비 단가 산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예정가격 또는 계약가격 산정 시 단위 노임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모기관은 향후 운영실태 평가 시에는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시중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모든 직종의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하는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모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한편,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모기관은 보안환경관리단 및 시설관리단의 일부 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여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계약금액 산정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92%(에이디디시설관리단의 경우), 90%(보안환경관리단의 경우) 수준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전년도 평가 이후 낙찰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였다.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에 자회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자회사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상·하반기 회의 시 이전 협의회 안전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협의회 개최 전 자회사 직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협의할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임기와 변경 등에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기회의의 횟수가 적정한지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용역수행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액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용역의 품질보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개선하지 않았다.

- 모기관 경비용역 특수조건 제18조, 건물위생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차량운전 및 차량정비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5조, 조리업무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5조, 시설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2조에서 담당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간섭하거나 소관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모기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함으로써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 복무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과업지시서 중 용역원의 자격요건에서 공통으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받는 점은 부당한 간섭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와 2020년 8월 '경영성과협약서'를 체결하여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4조 자회사 자율경영의 보장), 노동자 처우개선(제8조 자회사 직원의 처우개선 등)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그러나 경영성과협약서'는 그 목적을 자회사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및 경영목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모자회사 간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협약서와는 차이가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공동이익증진에 관한 사항이 별표항목에 원칙적인 수준에서만 선언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상기 내용은 전년도에도 지적되었으나 평가기간 중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경영협약을 경영성과 협약과 분리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율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서술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과 “자회사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자료 등을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년도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에 대해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제출하는 등의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향후 자료 제출시 계산기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근거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시설관리단이 전년도와 동일한 9.0%, 보안환경관리단이 전년도 6.5%에서 감소한 6.2%이며, 이윤비율은 시설관리단이 전년도 2.9%에서 감소한 1.3%, 보안환경관리단이 전년도와 동일한 2.0%인데, 일반관리비 비율의 경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의 평균수준을 초과하고, 시설관리단은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를 충족하는 수준이나, 이윤비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이 각 800천원 수준 지급되었고, 식비는 월 130천원이 지급되었는데, 복지포인트는 전년 대비 시설관리단 333%, 보안환경관리단 453% 상승한 수준이며, 명절상여금은 각 124%와 135% 증가한 수준이고, 식비는 정부의 권고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이며, 그 외 복리후생항목에서는 평가년도에 모기관의 출퇴근버스와 체육시설 등을 자회사 노동자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경조휴가일의 상향조정, 명절/창립기념일/연말격려금의 신설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격려금 등에 대한 지급기준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되며, 기타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써 모회사 복지시설 활용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 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전년 대비 201% 증액 지원하였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회사 노사문제 현안 및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을 해설해 주는 등으로, 자회사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자회사 전담인력 2인을 배치하여 지원했으며, 자회사 경영지원 및 업무 노하우 전수, 노사 합동 워크숍 개최 등으로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교육훈련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 및 고충처리제도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 노력 또한,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회사 근로자의 경력경로 개발과 제도화, 교육훈련 참여유인책 등을 마련하여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 및 반영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 등의 방안 마련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개의 자회사가 2020년 8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제정하고 채용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인력 구조상 공무직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지 않아 보고할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에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등에 따라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인사관리 모델로서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실비보전적 금품 지급, 비금전적 처우, 채용제도,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과 같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모기관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의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2020년 5월 26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임원선발 시 해당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진행해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성 제고 장치 도입 및 활용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 추후 임원선발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중 내부심사위원과 외부심사위원의 구성비율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공 및 공개를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외부 심사위원의 비율을 전체 심사위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여 그때그때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으며 자회사가 모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명시된 용역료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한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미미하기에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타 기관 사례 검토 및 자회사와 관련 내용 협의 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도입 관련 노력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주도면밀한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와 관련해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기관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여 공시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기관 홈페이지에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메뉴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공시된 정보가 회사연혁, 소재지, 사업자번호, 조직도,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정도에 그쳐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 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자회사별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다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과 같은 지원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국제방송교류재단

총 평

○ 국제방송교류재단은 2020.7.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편, 모기관이 자회사 설립 당시 35%의 출자비율을 65%로 증가시킨 점, 방송 장비 이관과 필수 장비·시스템 공동 활용(스튜디오 카메라, 편집 및 믹싱시설 등) 등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본금 규모가 2억원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지분율이 100%에 미달하는 점, 평가대상기간에 단일통합계약이 실행되지 않은 점, 계약대금의 월별 지급방식을 유지하는 점, 일부 직종의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의 100%를 반영하지 않은 점,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89.713%의 낙찰률을 적용하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의 운영 및 규정 마련을 위한 협의 진행,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모자회사의 공동이익증진을 도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부당·불공정조항과 관련하여 용역비 지급보류 조항, 과도한 계약해지 사유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3.0%, 이윤비율은 5.0%로 모기관이 경영적자 상황임에도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식대 74천원/월을 지급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을 책정하며 복리후생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후보자 심사 및 검증을 수행하며, 모기관과 자회사로 구성된 전문직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회사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와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고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기존 정관에 자회사 설립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0.7.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재단은 경영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출자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고, '사옥 건물종합관리용역 및 방송관련 업무위탁 운영 등의 용역을 출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2억 원 중 65% 출자하고 있으나, 설립 당시 35%의 출자비율을 65%로 증액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에 이익잉여금 약 24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모기관의 지분율을 10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9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2020.8.에 체결한 자회사와의 경영협약서 제4조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설비 및 공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사무실 이전 지원, 방송 장비 이관, 필수 장비·시스템 공동 활용(스튜디오 카메라, 편집 및 믹싱시설 등) 등을 추진한 점과 사무공간 재배치 등 자회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관리비(1% → 3%)와 이익준비금(3% → 5%)을 향상시킨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기업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건물관리 용역계약과 인력운용 용역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계약 관련 실무담당자 협의를 통해 시설 및 방송 전문직에 대한 자회사 단일통합계약서 작성 및 통합계약을 추진한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단일통합계약은 2022년 계약부터 적용되어 평가대상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 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선지급인지 후지급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모기관의 설명과 달리 통합계약서 상으로는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기성 신청 후 평균 10일)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노무비 단가와 관련하여 모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일급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다만, 추가 제출 자료 중 2021년 시설관리직 표준관리비산출

내역에 따르면 설계예산 총액의 90%를 설계가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직종의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의 100%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향후 전 직종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또는 적정원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예정가격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별다른 조치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바, 모기관은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자회사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돌고 있는바, 연중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한 모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나, 즉각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하여 자회사 직종을 시설관리직과 방송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시설관리직에 대해서는 시중노임단가를, 방송전문직에 대해서는 모회사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노임단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여 비교하기보다는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조사하고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89.713%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다. 이는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년도 평가 이후 지표 개선의 성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회사 노동조합 설립 이후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및 노사공동협의회 규정 제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회사 노동조합 설립 이후 기존 근로자 대표에서 노조위원장으로 위원을 교체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노사공동협의회 규정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모기관 노사 각 3인, 자회사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되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임기와 변경 등에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기회의의 횟수가 적정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사옥건물종합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경비원은 동료간에도 예의를 지키고 상호 신애와 기풍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조항,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규율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 경비원은 상호 연락을 긴밀히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지적받아 개선안을 마련한 노력이 인정된다.

- 그러나 모기관은 건물종합관리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4항에서 자회사로 인하여 모기관의 배상이 예상되는 경우 용역대금에서 배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판결 등에 근거하지 않고 예상에 따라 용역비를 상계 또는 지급 보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14조 제1항에서 계약의 해지 사유로 제13조 및 제14조 규정 위반, 모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자회사 종업원의 부정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방송관련 등 전문직 인력 운영 용역 계약조건 제6조에서 자회사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규정한 점, 사옥건물종합관리용역 과업내용서, 10. 경비, 나. 경비원의 선정에서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한 점, 12. 안내, 가. 안내원의 임무에서 청결과 품위 있는 행동, 나, 안내 일반수칙에서 미안하다는 인사, 바른 자세, 맑은 미소, 명랑한 음성, 인사방법 등과 바. 안내원의 방문객 안내 의전 방법에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 유의하도록 복무규율을 구체적으로 정한 점, 28. 종업원의 선정 및 배치에서 전 종업원의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와 2020년 8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3조 자율경영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4조 성장지원), 노동자 처우개선(제5조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6조 공동이익 증진)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협약 기간은 서면 해지 요청이 없는 한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으나 1년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제5조)의 경우 '노력한다'로 명기되어 있고, 노사협의회 역시 '협력한다'고만 되어 있어 구속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점,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율이 각각 2%씩 증가하였다. 최근 2년간의 모기관 경영적자 상황과 이후 점진적인 인상을 위하여 모자회사 경영협약상 자회사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적 수준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보장을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의 1.0%에서 평가년도 3.0%로 2.0%p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3.0%에서 평가년도 5.0%로 2.0%p 증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에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은 없으며, 식비는 인당 월 74천원 수준으로 지급되었고,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는 경조휴가 및 경조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다. 식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내부규정상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21년의 당기순이익 수준 등을 감안하여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의 지급수준을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되도록 신설하거나 상향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되며,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로드맵 속에서 지속해서 상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방안 및 재원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 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회사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체계 및 방식을 선정하는 등 자회사 노동자의 니즈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노동법 교육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초빙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자회사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후 교육 효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다음 교육훈련 계획 구성 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가 휴게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을 차별 없이 사용하고 보안 관련한 사내 인트라넷을 제외한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일반직 사원·전문직 사원·기능직 사원을 구분하지 않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취업규칙 제14조에 명시된 여비, 숙박비 등 실비에 충당되는 비용을 자회사 규정이 아니라 모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평가에 직접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채용제도,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경력인정제도, 근무평정제도 도입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비정규직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는 후보자 심사 및 검증을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수행하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사장후보자의 선정 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성, 경영능력, 조직관리능력, 직무수행의 타당성 등 다양한 심사 주요 기준을 마련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자회사의 임원선발관련 절차를 내부인만 접근 가능한 경로로 진행하기보다 외부인이 접근 가능한 공개된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대외적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임원선발 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의 구성 비율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명확한 자료 제공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3명과 자회사 3명으로 구성된 전문직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회사 전환 직군의 인사 및 임금체계 합리화에 관해 논의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지원 이외의 방식으로 자회사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실적이 일부 인정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보고서에 22년 2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표로 법령 내 제반 요건, 제도 도입 타당성, 회사 여건 등을 종합 검토 중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평가에서 노사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올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년까지 근로자 이사제 참관제 도입이 마무리되고 21년~22년 동안 운영 및 개선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사항 등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 수립에 따라 세부 사항 추진 중이라고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나 근거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또는 모기관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주요 경영정보가 공시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하지만, '공지사항&뉴스' 게시판에 조직 일반현황, 임직원현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정보만 공시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다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 D등급"으로 평가한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총 평

○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2021년 정관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편, 모기관이 당기순이익 발생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지원하고 있는 점, 자회사에 필요한 사무실과 장비, 창고 등을 무상 제공하는 점, 2018.12. 단일 통합계약으로 전환 완료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2021년 계약부터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모자회사 담당자를 중심으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 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질적인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설치가 필요하고, 계약서 내 과도한 복무규율이나 계약해지사유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6.0%, 이윤비율은 5.0%로 모기관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이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500천원, 명절상여금 1,300천원, 식비 110천원/월씩 지급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도에 각 2억원씩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복지포인트와 식비 지급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CEO 추천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대표이사 공모 절차를 진행하며, 2021년 8월 모기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자회사 운용 고도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와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고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기존 정관에 자회사 설립 및 업무 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1.12.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회사는 제2조와 관련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 또는 정부정책 등에 따라 법인에 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출자한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자회사 정관에 위탁사업 내용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9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2019년 및 2020년 각각 3.57억 원, 7.41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환경 하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자본금 증액 검토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자회사와 2020.01.에 체결한 도급계약 일반조건제17조(시설 및 물품의 제공)에 자회사에 필요한 사무실과 장비, 창고 등 무상 제공, 업무지원이나 휴게 물품 지원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직원 휴게시설 및 행정공간 제공, 구내식당 이용 협의, 장비 및 비품관리와 장비 이전에 관한 계획서 및 관리서 작성(2022년), 힐튼점 이전공사 관련 사무실, 장비, 창고 등 무상제공(2022년)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모자회사간 경영협약 체결(2021년 12월)하여 부당한 관행을 방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관리비(3%)와 이익준비금(5%)을 각각 2%수준에서 인상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용역업체별로 체결하던 위탁계약(총 5개 용역)을 2018.12.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 완료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나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계약부터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한편, 모기관은 월별 후지급 방식으로 운영하던 2020년에는 자회사의 요청 후 8일 이내(기성검사 3일, 대가지급 5일)에 계약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법정 기준을 준수한 점이 인정되지만,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5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헬스케어와 조리 직종은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노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용역비를 산출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예정가격이 원가의 100%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인상을 제한적으로만 계약에 반영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변경 반영과 관련해 2020년 하반기부터 조치함과 아울러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였으며 이로써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모기관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또한, 직종별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조리' 직종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노임단가에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 자회사의 직종별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해 시중노임단가를 올바로 산정하고 시중노임단가의 변동을 반영하고자 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모기관이 전년도 평가 이후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일환으로 현재 모회사 담당자 2인, 자회사 팀장 3인으로 구성된 GKL-GKLWITH 상생협의회를 매월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근로자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의 노조위원장 선거로 인해 새롭게 선임된 노조위원장의 업무 파악 후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지체되어, 2022년 상반기 중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 및 참여, 임기보장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의견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규정 마련을 통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이 전년도에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자회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 모기관이 자회사의 복무규율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 모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기관이 자의적으로 도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적받고 개선한 노력이 인정된다.

- 그러나 모기관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와 제22조에서 자회사 직원에게 음주, 도박, 폭력 등 근무환경 저해행위, 모기관 직원들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친절한 행위, 모기관과 방문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는 점, 미화부문 과업내용서 제1조에서 신체 건강과 용모 단정을 조건

으로 한 점, 발렛주차 용역관리 과업내용서 제8조 아항에서 발렛주차원의 태도, 몸가짐, 언행 등 복무규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점, 경비(안내)용역 과업내용서 제5조 다항에서 경비(안내)원의 복무수칙을 구체적으로 정한 점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모기관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서 계약서 규정 위배, 과업지시서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자 고용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계약 해지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점과 미화부문 과업내용서 제7조에서 청소 진행 상태를 항상 검사할 수 있고, 청소검사를 할 경우 책임자가 필히 입회하도록 한 점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10월 경영협약을 체결하였고, 추가적으로 2021년 12월 31일 이를 개선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새롭게 체결한 협약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목적, 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적 및 공공성 확보),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제4조, 제5조),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4조)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공동복지기금설립,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등의 항목은 ‘노력한다’고 제시되어 있어 다소 실행력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 비율이 1%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과 동일하다. 모기관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의 5.0%에서 평가년도 6.0%로 1.0%p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5.0%와 동일하게 책정되었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윤비율은 평균수준을 약간 상회하지만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500천원, 명절상여금은 1,3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10천원 지급되었으며, 그 외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중 명절상여금은 전년도 600천원에서 117% 증가하였고, 식비는 전년 월 100천원에서 10% 증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복지포인트와 식비가 내부 규정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21년 당기순이익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식비의 지급수준을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되도록 상향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2021년 각 2억원씩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였고, 향후 5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확인되며, 자회사 직원 화합 도모를 위한 팀워크 증진비 등을 매년 도급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은 주무 부처와 사전 협의, 이사회 의결, 모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다양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향후 5년간 안정적 지원을 결정하여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실적과 도급비에 포함하여 자회사 직원 화합 도모 비용 등을 지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외에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회사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체계 및 방식을 선정하는 등으로 자회사 근로자의 니즈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동법 교육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초빙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자회사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후 교육 효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다음 교육훈련 계획 구성 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 노력 또한,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구내식당과 체력단련실 등 모든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차별 없이 사내 인트라넷을 사용하며 일반직·기술직·전문직·기능직 등 직군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직급과 직명을 사용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을 시행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가 기술직·전문직·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 채용전형시에 한해서만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 내용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평가에 전부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한 포상제도나 경력인정제도 도입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3개월간 시용근로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 하나인 자회사 CEO 공정선발제도가 없는 부분에 대한 조치로 선발제도를 신설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CEO 추천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대표이사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임원선발관련 공고를 외부인이 접근 가능한 공개된 경로를 통해 게시하여 대외적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임원선발 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의 구성 비율 등을 명시한 자료 제공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1년 8월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자회사의 전문성·역량 지원, 성과평가관리체계 마련 등 효율적인 자회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자회사 운용 고도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했는데, 동 용역에는 자회사 운영관리 현황 분석, 자회사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수립, 도출된 방안의 로드맵 수립 및 실행 과제 추진 지원 등 자회사 운영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올해 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관련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되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해서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또는 모기관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현재는 자회사 홈페이지 알림마당내 공지사항에 당기 결산보고만 공지되어 있어 대국민 경영정보 접근성 확보 노력과 성과가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 보고서 내 향후 경영정보 공시 업데이트 계획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다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보증기금

총 평

○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2020년 모기관 정관을 개정하여 자회사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편, 모기관이 자회사에 자본금 3억원을 100% 출자한 점, 전년도 지적사항에 따라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1.12.)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예정가격 산정시 고객센터와 환경미화 직종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환 이전 관행적 낙찰률을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하지만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한 점, 전년도 지적된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계약서 내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결원에 따라 금액을 정산하도록 한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고, 경영협약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0%, 이윤비율은 9.8%로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를 충족하거나 근접하고 있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600천원을 지급하며 모기관의 적자 사업구조 등으로 인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부속의무실 제공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를 확충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명절상여금과 식대를 책정하고,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모기관 전자도서관 전면 개방 등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활용 기준에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와 취업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2018.10.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2020.8. 모기관 정관을 개정하여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모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고, '자가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및 경비 업무, 고객센터 관리·운영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에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3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적정 계약금액 보장으로 지속적인 수익실현을 지원하여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어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3.0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본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다소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202.11.에 체결한 자회사와의 경영협약서 제2조 4항(신설)에서 필수 설비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모기관 시설(사무실, 휴게실 등)의 자회사 무상 제공,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개선, 사무가구 교체, 냉난방기 설치 및 각 분야별 필수 설비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모자회사간 경영협약 체결(2021.11.24)하여 부당한 관행을 방지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종전 통합계약(2020.1)이 세부사항 1, 2로 구분되어 실질적으로는 구분하여 2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세부사항도 단일화한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여 체결(2021.12.)한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단일통합계약은 2022년 계약부터 적용되어 평가대상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에 계약대금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10일 이내에 지급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5일로 단축하기로 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모기관이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를

100% 적용하고 있다고 하나, 또 다른 추가 자료인 2021년 상·하반기 직종별 원가계산 내역을 살펴보면 고객센터와 환경미화 직종 내역에서 시중노임단가 산정 시 포함되는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합한 금액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향후 노무비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인상을 제한적으로 반영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일직무라도 지역별·사업장별로 시중노임단가 적용 비율을 달리 했던 것을 점차 상향 조정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의 낙찰하한율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모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한편, 모기관은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노임단가는 상·하반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된 반면 변경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한 모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즉각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에 낙찰하한율을 이미 반영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이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및 자회사 사용자위원 각 1인, 모기관 및 자회사 노사협의회 각 1인, 총 4인으로 구성되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에는 자회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1인이 3년의 임기로 참여하고 있는 점, 모·자회사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사항 협의, 자회가 근로자대표 변경 주기 명확화 등 기본원칙을 규정한 점, 분기당 1회 개최하여 운영하도록 한 점 등의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회의 시 이전 회의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는 등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지적받은 채용연령 적시부분을 삭제하였고, 과업지시서 6. 건물관리와 9. 전기설비관리에서 상황발생시 보고의 대상이 모호한 부분은 보고대상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실적이 인정된다.

- 그러나 모기관은 본점사옥 관리용역 과업지시서, 대전·인천중앙지점사옥 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인재개발원 과업지시서, 6. 정원 및 근무 부문에서 근무인원

정원표에 명시된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부득이 업체 사정에 의하여 인원 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금액을 정산하는 것은 자회사와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와 2020년 8월 체결한 별도의 경영협약을 개선하여 2021년 11월 갱신하였음이 인정된다. 개선된 협약서에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목적, 제2조 기본방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2조 기본방향), 노동자 처우개선(제6조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협의회 구성)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사항 중 상당수가 '노력한다'로 서술되어 있어 실행력이 약할 우려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의 사항은 모회사의 지원 여부가 불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는 점 등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고, 그 외 별도의 지적사항은 없으며, 평가년도에는 추가적인 위탁용역비 증액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0%, 이윤비율은 9.8%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0%)를 충족하고, 이윤비율 또한,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0%)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자회사의 재정안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천원 지급되고, 명절상여금과 식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300천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명절(60천원)/창립기념일(100천원)/근로자의날(50천원)/생일(35천원)선물, 경조금 및 상조물품 등이 제공되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지급수준을 내부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21년 당기순이익 수준 등을 감안하여 명절상여금과 식비를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되도록 신설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나, 모기관의 적자 사업구조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공동기금 설립과 출연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며, 부속의무실 제공과 건강검진센터 제안병원 공동 이용, 도서실 및 체력단련실 사용, 휴게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를 확충하고 있다. 모기관 상황에 맞추어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확충 노력으로서 건강권 보호를 위한 부속의무실 제공과 건강검진센터 제안병원 공동 이용, 도서실 및 체력단련실 제공과 휴게시설 개선 등의 활동은 총보상적 측면에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 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에게 모기관의 전자도서관을 전면 개방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자회사 교육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권역별 직원 비대면 크로스 미팅 및 고객서비스 교육을 2021년 4월, 10월 두 차례 실시하여, 고객센터 직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고객접점 직원의 고객과의 소통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등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안전한 직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정노동 종사자인 고객센터 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마련 및 외부전문가 초빙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 등으로 내실있는 교육훈련 진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추후 교육훈련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후 교육 효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다음 교육훈련 계획 구성 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교육훈련 대상자들의 의견수렴 후 이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 등으로 더욱 내실있는 교육훈련 제도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차별 없이 도서관, 구내식당, 체련단련실, 샤워실, 연수원 등을 이용하고 모기관의 전자도서관까지 전면 개방하고 차별 없이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하며 직무특성 등을 반영하여 파트장, 조장 등 통일적 호칭을 사용하고 면접전형시 평가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직무 또는 직군에 대한 차별 없이 개인 포상 또는 팀 포상을 운영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원 근무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활용 기준」에 기간제 근로자 활용 원칙 및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시행 근거를 마련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활용 기준」에 기간제 근로자 활용 원칙 및 사전심사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명시했을 뿐 채용계획 수립, 심사주체 구성과 방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의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장 추천위원회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취업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등과 같은 노력이 인정된다. CEO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발 과정에서 직무수행 요건을 명확화하여 자회사의 역할과 목적사업에 대한 지식,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을 관리한 경험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능력 등 전문적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CEO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임원선임 절차에 준하는 공정한 CEO 선발 절차를 도입하여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CEO를 선임하는 등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공정하고 체계적인 선발절차 진행을 위해 자회사에 채용전담 부서(인력)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전담 부서(인력)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제도 보완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20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노사발전재단)에 선정되어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자회사와 용역계약 체결시 일반관리비 9%, 이윤 9.8% 등 법에서 정하는 상한선 수준을 반영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현재 자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상임 임원으로 선임하여 기관 운영 중이며, 추후 임원 확대시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검토 예정이다.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올해 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관련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 적용 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 열린 경영 메뉴에 임직원 수, 신규채용, 포상 및 징계 현황, 요약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행사활동 등의 주요 경영정보가 공시되어 있다. 다만, 공시된 경영정보 항목이 미흡한 편이기에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뿐 아니라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도로교통공단

총 평

○ 도로교통공단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2021년 정관 개정으로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편, 모기관이 설비에 대한 이관 협의를 추진한 점, 자회사 설립시 28개 계약을 2개 계약(상담사업/안전유도사업)으로 통합한 점, 신규사업(방역사업)의 지원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한 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와 다양한 소통방식을 운영한 점, 전년도 지적된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계약서 내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고, 경영협약도 성과 협약이 혼재 되어 있는 점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5.5%, 이윤비율은 6.0%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전년 대비 215% 상승된 명절상여금 61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모기관 목적사업비 고갈로 공동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모회사 동반성장몰 이용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복리후생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2020년 8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기존 정관에 자회사 설립 및 업무 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1.11.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을 할 수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출자한 회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2.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2020년 및 2021년 각각 1.4억원, 2.1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추가 출자금(6.9억 원)을 확보하고자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는 등 모기관의 자회사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적정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2020.8. 체결한 자회사와의 경영평가협약서 제6조에서 자회사에 대한 행정, 인력, 설비, 예산 등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모기관의 자회사 필수 설비 이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개선, 안전유도사업장 PC 무상지원을 통한 자회사 사무자동화 지원, 설비에 대한 이관 협의(2021.10.) 및 자회사 운용 주요 설비 중 미 이관설비 재조사를 통한 이관 여부 재검토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자사업 이관 등 부당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모자회사간 경영협약 체결(2021.12.23.)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관리비(2020년 5% → 2021년 5.5%)와 이익준비금(2020년 5.5% → 6%)을 각각 0.5% 인상한 점과 신규사업(방역사업)의 지원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2019.7. 자회사 설립시 28개 계약을 2개 계약(상담사업/안전유도사업)으로 통합하였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업무별 위탁계약을 통합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2022년부터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단일통합계약은 2022년 계약부터 적용되어 평가대상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검사기간 평균 1.6일, 지급기간 평균 1.4일 소요되어 법정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상반기에는 노무비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어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한 실적이 인정된다. 한편, 상담원과 유도원의 경우 해당하는 시중노임단가가 없음을 이유로 예정가격 산정 시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직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노무비 원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전환 직후 시중노임단가 대비 적용 노임단가의 비율에 별다른 개선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0년 하반기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안정화한 이후, 2021년에도 시중노임단가 적용 비율을 개선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상담사업의 노임단가는 2021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대비 106.8%, 유도사업의 노임단가는 103.4%에 이르게 되었는바,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으로 산정한 기관의 성과가 인정된다.

-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요구와 국회를 통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노력으로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모기관 자체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인력증원분 외에도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한 점이 인정되며, 시중노임단가 적용비율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1년 상반기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 100%에는 밑도는 수준으로 확인되는바,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 변동 시 노무비 계약금액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시중노임단가 반영 관련 제수당 및 성과급을 포함하여 노임단가를 제시하였으나,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일부 합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시중노임단가 반영 정도 관련, 노임단가 산정방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이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낙찰률은, 2021년 상반기의 경우 시중노임단가의 일정 비율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이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이 2021년 하반기에 시중노임단가의 100% 이상을 계약금액에 반영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및 자회사 4자로 구성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2020년 9월 이후 2020년 1회, 2021년 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노사공동협의회 이외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운영하는 등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임기와 변경 등에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규정 마련을 통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운영기준 초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기회의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차량 유도사업 자회사 직원의 불성실,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면 결과를 모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점을 지적받고 개선한 노력이 인정된다.

- 그러나 모기관 고객지원센터 과업지시서 6. 결원에 따른 용역비 정산 특례 제2항과 차량유도관리 과업내용서 Ⅲ. 분야별 세부 과업내용, 4. 결원에 따른 용역비 정산 특례에서 결원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감액 조치할 수 있다고 한 점, 차량유도관리 과업내용서 Ⅱ. 용역 일반사항, 8. 기타사항 제2항에서 자회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한 점은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8월 체결된 경영성과 협약서의 명칭을 2021년 12월 경영협약서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갱신 시점이 2021년 12월로 실제 평가기간 대부분 동안은 기존의 경영협약이 적용되었다. 협약서 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협약의 명칭을 경영협약서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용상으로는 경영협약에 해당하는 내용과 성과협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협약 체결기간이 대표이사 임기에 연동되어 있어 협약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 경영협약에 해당하는 내용의 대부분 항목이 '노력한다', '할 수 있다' 등 실행력이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 등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보고서에 없으며,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이 각 0.5% 증가하였다. 모기관의 정부와 국회에 대한 증액활동 노력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가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의 5.0%에서 평가년도 5.5%로 0.5%p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5.5%에서 평가년도 6.0%로 0.5%p 증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이거나 평균을 약간 상회하지만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명절상여금이 612천원 지급되었고, 복지포인트와 식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 외 추가적인 복리후생항목은 없다. 명절상여금이 전년도의 194천원에서 215%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명절상여금과 식비에 대한 단체협약의 지급수준이 내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21년 당기순이익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식비의 지급수준을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되도록 상향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단(수지차보전기관) 기금 출연 금지정책으로 목적사업비가 고갈되어 공동 활용 곤란한 상황이며,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대신 모기관의 공간 제공과 공동작업을 통한 자회사 직원 사무환경 개선(울산면허시험장)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기관의 콘도미니엄 공동이용을 의결하고 모회사 동반성장몰을 이용토록 하며, 울산면허시험장에 별도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탕비실, 냉난방시설 등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금전적 복리후생 지원 외에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설립 이후 전담부서와 사업부서를 지정하고 전담부서(사회가치팀)에 자회사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교육예산으로 6,368,000원을 책정하는 등 전년대비 44.30% 증액하였다. 또한, 모자회사 공동협의체 논의에 따라 온라인 교육시스템의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교육 콘텐츠 내실화를 기한 노력이 인정된다. 전 직원 대상 교육, 직종별 맞춤 교육과정의 설계로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추후 교육훈련 진행 시 교육훈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설계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내용을 다음 교육훈련 계획 구성 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훈련의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이를 기초로 교육훈련 콘텐츠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방식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다면평가단을 구성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수요부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검토 요청을 하고 경영지원부는 사전심사 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심사를 진행하며 경영지원부가 결과를 통보한 후 채용담당이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채용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2020년 8월 5일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했고 실제 2021년도에 12회 개최, 687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인력 구조상 공무직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지 않아 보고할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에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등에 따라 자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내용은 선도적 인사관리 모델로서 인사관리의 원칙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실비보전적 금품 지급, 비금전적 처우, 채용제도,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모기관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의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2019년 4월 18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해당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2019년 9월 24일 제2대 대표이사 공모를 진행했고, 선발과정에서 공정성, 이해충돌 방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과반수 확보 의무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신설, 모기관 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시 공시의무 부여, 직무수행 요건의 명확화, 자회사 사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능력 등으로 전문적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CEO를 선임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자회사의 운영과 부패방지를 위한 재취업 심사를 2019년 11월 9일 진행하여 모기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심사도 진행하는 등과 같이 임원선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적어도 타 기관 자회사 중간 정도의 처우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기관장의 의지를 반영하여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모자회사 노사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각종 예산 증액 활동을 추진했으며 모기관 자체 사업비 조정을 통해 자회사 사업비 총 5.8억원을 증액(인력 증원분 별도)하였다. 또한, 자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상 용역료 및 사업이익금을 활용하여 임금체계 등을 개편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현재 자회사는 대표이사 단독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며, 추후 자회사 안정화 후 이사진 구성시 노동이사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올해 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 적용 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메뉴에 자회사 일반현황, 임직원수,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정보가 공시되어 있다. 다만, 공시된 경영정보 항목이 미흡한 편이기에,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뿐 아니라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독립기념관

총 평

○ 독립기념관은 1994년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고 2021년 정관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편, 모기관이 자회사 운영을 위해 시설을 무상제공 또는 대여하고 매표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점, 위탁업무를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0.6.)한 점,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2억원 중 75%를 출자하고 있고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대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평가기간의 대부분에서 월별 후지급 방식이 적용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 지적된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이나 노사상생간담회는 노사공동협의회가 아니므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부당·불공정 조항 역시 결원 시 용역비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점의 개선이 필요하고, 성과협약이 아닌 경영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2.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식비 80천원/월씩 지급하고, 모기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자회사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사무 공간 무상제공 등 공동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복지포인트 등 지급수준을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되도록 신설 및 상향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2021년 9월 기간제 직원 운영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 후 시범 참관 등을 계획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1994년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고 2017.2. 경비와 미화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를 변경하였다. 모기관은 기존 정관에 자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1.11.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기념관의 '위탁업무(경비, 미화, 시설관리 등) 수행을 위한 출자회사 설립'을 규정한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2억 원 중 75%를 출자하고 있으며, 2020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고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어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3년부터 매년 5천만 원의 출자금을 출연하여 2025년까지 3.5억 원의 자본금을 확충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며,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를 권고하는 정부방침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적정 자기자본비율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2020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모기관의 계획대로 자본금

증액, 부채비율 축소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2021.07. 체결한 자회사와의 경영협약에 따라 사무실 무상 제공(신규), 휴게음식점 식사공간 임대료 면제, 캠핑장 시설(토목, 전기시설, 조경) 구축 후 무상 대여, 태극열차 매표시스템 '지능형 키오스크' 구축 및 부스설치 등을 추진한 점과 주차장 요금수납시스템(카메라, 시스템 등) 구축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자사업 이관 등 부당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회사 관리내규(2021.11.03.)와 모자회사간 경영협약(2021.07.01.)을 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위탁 수수료율 인상, 향후 신규사업(광고업, 장소대여, 임대업 등) 지원 등 모기관의 노력도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관리비(2%)와 이윤(2%)을 보장하고 있으나 타 기관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시설 등 관리 위탁업무를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0.6.)하였고, 하고, 최근에는 발주부서도 3개→1개로 변경(2021.10)한 추가적인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 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어 지급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2021.10)한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평가기간의 대부분에서 월별 후지급 방식이 적용되고 평가기간 마지막 2개월간만 분기별 선지급 방식이 적용되어 아쉬움이 있다. 한편, 모기관은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14일 이내, 대가지급 5일 이내 등 총 19일이 소요되어 법정 기준을 준수한 점이 인정되지만,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5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2021년 내 개선 여부는 모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일급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다만, 본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를 위하여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21.7.7. 모·자회사 경영협약서 개정을 통해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한 점은 예정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감독인력과 사무인력을 인건비를 별도 계상한 점은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예정가격 산정 기초이자 용역비 산출 기준인 인원수가 전기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년퇴직 등에 의한 자연감소 미충원과 과업범위 축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향후에라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립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하지 않았고, 시중노임단가 변동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도 직종별 노무비를 증대하는 한편, 경영협약서 개정을 통해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확약하고 2025년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모기관이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2021년 상·하반기 노임단가 역시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조사·공표내용에 따른 시중노임단가 낙찰하한률 전후의 수준으로 확인되는바,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충실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연중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자회사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한 모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나, 즉각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러한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의 일정 비율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이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노사 각 2인, 자회사의 노사 각 2인이 참여하는 노사상생간담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추천으로 위촉되고 있다. 노사상생간담회는 반기별로 1회 운영되고 있으며, 공통적 관심사항 및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 노사 상생간담회를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임기와 변경 등에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정 마련을 통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업무일지 당일 보고조항, 계약해지사유에 일체의 항의나 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위탁관리비의 지급 지연에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지 않는 조항을 지적받고 개선한 노력이 확인된다. 모기관이 위탁관리 발주부서를 일원화하여 단일통합계약을 시행하고, 모자회사 간에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도 자회사 책임에 관한 조항, 입·퇴사자 보고 및 관리 조항, 복장 및 지시적인 문구 관련 조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기관 경비 과업설명서 제4조 제3항, 미화 과업설명서 제2조 제3항, 시설 과업설명서 제2조 제2항, 조경 과업설명서 제6조 제2항, 상설전시관 및 체험전시관 등 위탁관리 기본계획 제5조 제3항, 종합안내센터 관리위탁 제2조 제3항에서 결원일수에 해당하는 용역인원 1인당 월 용역비를 차감한다고 하였으나,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결원 시 용역비를 차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7월 종전의 경영협약서를 개정하여 새로운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주요 항목을 '노력한다', '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협약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협약서 개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목적),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지원범위), 노동자 처우개선(제4조),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4조)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이 전년도와 동일하다. 국고보조금으로 위탁관리비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2.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년도에 수립한 중장기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식비가 월 80천원 지급되었고,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사휴가 및 지원금, 90천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식비와 경조사비의 경우 지급수준이 내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평가년도에 수립한 중장기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의 지급수준을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되도록 신설 및 상향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자회사의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과 사무공간 무상제공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모자회사 공동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확인된다. 모자회사 소통을 통한 복리후생 제도 강화 노력과 그에 따른 휴게실 보완 등 근로환경 개선 등을 시행하고 공동 복지 후생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 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 적합성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해 교육훈련 수요조사 시행, 희망교육 및 선호하는 교육유형 분석, 모·자회사 노사담당 워크숍을 통해 지원계획을 마련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향후 모·자회사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교육 확대를 논의하여 중장기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직무역량기반 증대, 생애주기별 맞춤 설계, 미래설계 교육과정 지원 강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두어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훈련제도 설계에 그치지 않고, 교육훈련을 통한 구성원의 역량 증대를 도모하는 등 교육훈련제도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모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설계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다음 교육훈련 계획 구성 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 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운임, 일비, 숙박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2021년 9월 1일 「기간제 직원 운영관리지침」을 제정하고 5인으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가 분야별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초과근무 지침에 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정수당을 하고 채용시 심사위원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초과근무 지침상 시간외 근무는 최소 2시간 근무시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채용시 외부위원 참여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에 대하여는 관련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한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도입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모기관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의 공정한 임원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2014년 11월 6일 제정)을 두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임원선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과 같은 노력이 인정된다. 후보자 모집 관련 공고를 포털에 공개하고 모집 방식 또한, 공개로 진행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기관 퇴직임직원 재취업심사제도 도입 추진을 통한 윤리경영 및 독립성 강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임원 공개모집의 경우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포털 공고 외에도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하는 등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리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증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18년 3월 자회사 조직컨설팅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용역비 20,000천원) 자회사 컨설팅 1차 회의(2021년 5월 20일), 컨설팅 관련 진단보고서(5월 31일), 모회사 개선 요청(6월 8일) 등 업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승진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검토 및 개선을 지원하며 자회사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2022년부터 이익금의 10% 내에서 근무성정평가에 따라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주차장 및 캠핑장 등 위탁관리 운영, 대표이사 파견 및 임대료 감면 지원, 신규사업 확대지원 및 기반 조성을 통해 자회사 자체 수익증대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모·자회사 노사담당 워크숍 진행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 전 시범 참관 등을 계획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인정된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와 관련하여 그 대상과 운영방식 그리고 의결권과 발언권 등에 대한 구체적 권한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 관련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 마련과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영공시 게시판에 자회사 일반현황, 임직원 수, 자본금 및 주주현황, 요약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정보가 반영되었다. 다만, 공시된 경영정보 항목이 아직 미흡한 편이기에,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뿐 아니라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자회사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시 매뉴얼에 세부 항목별 갱신주기와 작성기준일 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공시 정확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에서 공시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며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추가 공시항목 확대 및 자율 공시항목 발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에 자회사 경영공시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수준 조사를 계획하는 등으로 자회사 경영정보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 향상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총 평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모기관 정관에서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시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와 최초 계약(2019.3.) 시점부터 현재까지 단일 통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상담 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 변경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는 점,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의 90.7% 수준에서 책정되어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못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실무간사 간 협의를 실시한 점, 부당·불공정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 내 결원에 따라 도급비를 감액하는 조항,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시설관리 8.1%, 컨택센터 1.0%, 이윤비율은 시설관리 3.45%, 컨택센터 1.0%로 전년 대비 시설관리의 일반비율이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40천원/원이 지급되었으며,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자회사 근로자 복지후생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복리후생의 지급기준을 명문화하는 등 추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안전한 사업장 유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며,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육훈련 대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와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2019.1. 부동산종합관리·시설유지보수·보안·미화·콜센터 업무에 종사중인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모기관은 정관(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모기관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출자'를 할 수 있고, '공단이 보유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단이 출자 설립한 티피에스주식회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3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19년과 20년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어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적정 자기자본비율 50%를 다소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위탁 특수계약조건 24조(설비 등의 이용 및 제공)에 설비 제공 및 이관 내용 등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상담시스템, 기계 등을 자회사에게 제공, 자회사 임차 사무실 등 임대료 감면(50%), PC 운영체계 프로그램 설치 작업비 전액 지원 등을 추진한 점과 상담시스템, 기계 및 유지관리비(소프트웨어 포함), 상담 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협약서에 부당정책 금지 규정을 마련(2021.10)하고 있으며, 자회사 정관에 합리적이지 않은 배당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2019.03.01.)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자회사와 최초 계약(2019.3.) 시점부터 현재까지 단일 통합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어 지급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어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노력이 인정되나, 후지급 방식에서는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선지급으로 전환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2021년 예정가격은 시중노임단가의 90.7% 수준에서 책정되어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

된다. 그럼에도 2021.11.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통해 2022년 계약부터 단순노무종사원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점은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변동을 계약금액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 변경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시설관리, 경비, 미화 및 상담 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한 것이 확인되는바,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자산관리 직종의 경우 노임단가 산정 및 노임단가 변동 시 반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자회사의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러한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의 일정 비율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이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이 2022년 신규계약 체결 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해 모기관 노동조합과 자회사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기준(안)을 마련,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는 2021년 1회 운영되었고,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무 간사 간에 현안 및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협의를 실시하였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임기 및 변경 등에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기회의의 횟수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청소위탁 과업내용서에서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시 입회 검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한 노력이 확인된다. 또한, 모기관이 자회사의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익월 10일에 제출하도록 한 운영현황 보고서를 익월 15일에 제출하도록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기관의 회관종합관리 위탁 특수계약조건 제5조 제2항과 컨택센터 운영관리 위탁 특수계약조건 제4조 제2항에서 결원 미보충 사유가 자회사의 해태로 인한 경우 모기관은 총 도급금액을 계약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도급비에 결원된 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자회사의 해태라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도급비를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회관자산관리 위탁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에서 회관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위탁운영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회사에 업무지시를

통하여 회관운영에 반영한다고 한 점, 제15조 제2항에서 자회사 종사자의 출근현황 등 근태사항을 모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점, 경비·로비안내 위탁 과업내용서 5조에서 경비원의 자격을 신체 건강하고 용모단정한 자로 한 점, 청소 위탁 과업내용서 5. 일반사항, 아항에서 작업원은 언어, 동작에 주의하여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0월 별도의 경영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에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일반관리비와 이윤 보장,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에 “가용예산 범위 안에서”를 규정한 것은 가용예산의 수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회사에 대한 설비지원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모회사의 지원 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사공동협의회를 통한 협의는 “할 수 있고”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시설관리에 대한 이윤비율을 전년도 0.45%에서 3.45%로 증가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시설관리(90명)의 경우 전년도 8.1%와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이윤비율은 0.45%에서 3.45%로 3.0%p 증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보다 높으나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0%)에는 미치지 못하고, 이윤비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반면, 컨택센터(28명)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이 전년도와 동일한 1.0%로 전체 모기관의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은 1,000천원이고, 식비는 월 140천원이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70천원의 교통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식비가 평가년도에 100천원 상승한 점과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에 대해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식비, 교통비, 명절상여금의 지급수준이 내부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관련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노동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모기관 및 자회사의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자회사 근로자들의 복지후생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은 근로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러한 과정을 운영 중인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 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 내용 중 안전보건교육을 대표이사, 경영관리부장, 회관관리부장, 컨택센터관리부장 총 4명을 대상으로 연 4회 실시, 재난대응 안전 현장교육 및 현장 실무 안전교육을 각각 연 1회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한 사업장 유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힘쓴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총인원이 129명인 조직에서 대부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자가 대표이사, 경영관리 장, 회관관리부장, 컨택센터관리부장 등 총 4명의 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일부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실제 진행되는 교육에 비해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교육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여 다음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두는 등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두어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훈련제도 설계에 그치지 않고 교육훈련을 통한 구성원의 역량 증대를 도모하는 등과 같이 교육훈련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운임, 일비, 숙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 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전 근로자에게 아이디를 발급하여 정보망 접근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직군별 특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매년 자회사 내부적으로 모범 사원을 선정하여 포상을 시행 중이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3차에 걸쳐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가 별도 경력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인사규정상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채용제도,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경력인정제도 도입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기한 기준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충원 등에 한하여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2019년 3월 1일부터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해당 규정을 통해 2019년 12월 6일 모집공고를 하고 12월 19일에 선정결과를 최종발표를 하는 등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른 모집을 진행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CEO 선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집방법을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2019년 3월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직무급 임금체계 설계를 완료한 후 현재까지 시행 중이며 하반기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표 이후 시중노임단가 반영을 위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올해 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되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와 관련해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열린경영 게시판에 경영정보를 공시하긴 했지만, 재무정보(재무제표) 게시 수준에 그쳐, 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

된다. 이에 더해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 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보증기금

총 평

○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2020년 정관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모기관이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안전설비 및 행정운영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구비 지원 등을 추진한 점,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는 등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단일통합계약이 아닌 5개 계약을 유지한 점,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2021년 기간 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하반기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 지적받은 부당·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점, 계약서 내 자회사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조항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5.9%, 이윤비율은 6.2%로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1,2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부터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명절상여금과 식비를 책정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모기관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활용 사전심사제 운영기준을 제정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기존 정관에 자회사 설립 및 업무 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0.12.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기금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고, '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또한, 매년 일정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적정 자기자본비율 50%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2020.06.에 체결한 자회사와의 경영협약서 제2조에 따라 자회사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고객2센터 분리시 사무실 무상임대 및 전자·사무기기 등 지원, 창업플랫폼 '프론트원' 건물 관리를 위한 근로자 사무공간 구축비 지원, 건물 내 설치된 필수 설비는 신용보증기금이 소유하고 용역회사의 인력만 고용하여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안전사다리, 안전모 등 안전설비 및 행정운영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구비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의 고유 업무 위탁은 '신용보증기금법(제32조)'에 금융기관에만 위탁이 가능하여 부당관행이 발생할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기업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통합계약을 4개로 나누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향후 구체적 통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이 아닌 5개 계약을 유지(건물종합관리 계약 1건 추가)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모기관은 2022년 상반기에는 기존 직종별 계약의 통합계약 전환을 추진하여 1개 이상의 계약건수 감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조기에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함으로써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최저 낙찰률을 반영한 노임단가를 예정가격으로 책정한 점에 대해 지적을 받은바 있는데, 2021년 산정된 예정가격은 최저 낙찰률 적용가격을 상회하지만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모기관은 향후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시중노임단가 낙찰하한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중노임단가 반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모기관은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한편, 모기관은 평가대상인 2021년 기간 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하반기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돌고 있는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한 모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며, 즉각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하여 모기관은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기보다,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해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계약금액 산정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의 일정 비율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이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1년 12월 자회사 신임 대표이사 취임, 2021년 모기관 정기 인사발령 및 과반노조 차기 집행부 출범 이후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협의를 본격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그간 모기관은 모기관 전담부서 팀장이 자회사 분기별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애로사항 및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던 점, 자회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외부기관 모바일 투표시스템을 통해 3년의 임기로 3명이 선출되어 활동하도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현재의 협의 틀을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필요가 있고,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지적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조항,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 A/S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 미화와 시설용역 과업지시서 상의 근무인원의 결근에 따른 도급 금액의 감액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개선한 노력이 인정된다.

- 그러나 모기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 제1항에서 계약 체결 후 참여인력의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6조 제3항에서 인력 교체 시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자회사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시설관리 과업지침서 23. 행위금지 규정, 건물 종합관리용역 과업지침서 22. 행위금지 규정, 환경관리용역 과업지침서 19. 행위금지 규정, 본지점 청소용역 과업지침서 20. 행위금지 규정에서 담당 아닌 업무분야 간섭, 근무태만, 풍기문란, 품위손상, 소란한 행동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의 복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성실의무 조항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6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목적, 제2조 기본방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2조 기본방향), 노동자 처우개선(제6조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협의회 구성)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기본 사항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기관의 자회사 지원이 근로환경 개선 및 시중노임단가 반영으로 제안되어 있어 전년도에 지적된 설비지원이나 자회사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경영협약서 상에 보완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율이 4.9%에서 5.9%로, 이윤비율이 5.0%에서 6.2%로 증가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4.9%에서 5.9%로 1.0%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5.0%에서 6.2%로 1.2% 증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보다 높으나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1,200천원 지급되고 있고, 명절상여금과 식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 외 복리후생항목으로 경조금과 경조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포인트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명절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과 식비가 기본급과 별도로 책정되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매년 12월말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을 통해 온라인 상품권을 3년째 지급하고 있으며(19년 12만원/인, 20년 12만원/인, 21년 11

만원/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온라인 상품권 지급을 1회성이 아닌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검토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은 주무 부처와 사전 협의, 이사회 의결, 모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다양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금의 활용 외에 자회사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직원도 모기관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노력이 인정된다. 시설관리직의 경우 산업재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아차사고(Near Miss) 공모전을 기획하여 자회사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자발적인 안전보건활동 유도와 포상금 지급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 연수비 예산 또한, 매년 상향 배정하고 있는데, 2021년도는 7,990,000원으로 2020년 대비 7.8%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육훈련 효과 증대를 위한 지원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더 효율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교육훈련 관련 프로그램 구성에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회사 구성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교육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여 다음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요금, 경비, 숙박료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직군에게 사내 인트라넷 등 정보망 접근을 허용하고 직군별 특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채용을 위한 면접전형시 평가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적이 있다. 또한, 2019년 6월 「비정규직 활용 사전심사제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여 2020년에 19건, 2021년에 10건 등 심가 적용 대상에 대하여 100% 사전심사제를 적용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가 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다층적 평가를 실시하는 등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사규정상 대표이사가 경력인정제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근무평가실적 등을 감안하여 승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기한 기준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모기관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의 임원추천관련 규정을 2021년 10월 제정(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채용과정을 적극 지원하여 대표이사 선임절차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외부인사를 선임하는데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공개경쟁 채용방식을 선택하고,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일간지 공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임원선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리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서류심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구성 비율 중 외부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 비율의 50% 이상으로 구성(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하여 평가하고, 감사실 직원이

입회담당자로 참여하는 등으로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직종별 특성 및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직종별 임금체계를 마련한 이후 매 반기마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시에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고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중노임단가 증가율(0.9%) 대비 2.0%의 높은 임금인상을 확정하였으며, 2021년 6월부터 신규 채용한 프론트원 관리직의 경우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에 따라 월 200천원~900천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2021년 6월 직원 55명 증권에 따라 자회사 일반관리직 2명을 신규 채용(총 7명)하고 근무동기 부여를 위한 승진체계를 마련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현재 자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상임 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 중이며, 노동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이를 주시하여 도입을 검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해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알림마당 경영공시 게시판에 경영정보를 공시하긴 했지만, 재무정보(재무제표) 게시 수준에 그쳐, 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총 평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7.12.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모기관 정관에서 업무 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모기관이 자회사에 자본금 6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점, 휴게실 신규 설치(제공)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 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인상한 점, 2019년부터 단일통합계약으로 변경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점, 부당·불공정한 조항 109건을 발굴하여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상생협력협의회 내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계약서 내 모기관이 자의적으로 계약해지 사유를 정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6.0%, 이윤비율은 7.0%로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40천원/월씩 지급하였으며,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힐링프로그램 제공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며, 2022년 2월 자회사 규정 개정 및 모기관 컨설팅을 통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7.12.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관련하여 항만공사법과 모기관 정관을 보면 각각 '항만의 경비·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항만의 경비・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항만관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령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6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낮은 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 10분의 2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정도이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경영협약에 자회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 보장과 업무지원,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예산을 적극 반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상호간 협의를 통해 자회사 경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사무 업무 추진을 위하여 모회사 사옥 사무실 제공, 항만보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제공, 경비인력 근무환경 개선, 휴게실 신규 설치(제공), 작업용 차량 신규 구매, 재료비 내 차량 감가상각비(노후화 비용) 지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관리비(20년 5% → 21년 6%)와 이윤(20년 5.44% → 7%)로 인상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은 여수광양항항만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업무협약에 위수탁 과업을 명시하여 적자사업의 이관을 금지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19년부터 단일통합계약으로 변경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는 과업별 감독부서가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자회사 관리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로 일원화하고, 과업이 추가되는 경우 별도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에 추가하여 통합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을 월별 후지급 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2021년 계약부터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15일 이내에 지급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5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에 있어 대다수 직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그 외 직종은 한국소프트웨어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그리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예정가격은 해당 노임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으며,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에도 예정가격 산정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가 원가를 우선 산출하고, 모기관과 자회사가 차년도 위탁사업의 범위, 근무인원 등을 협의하여 자회사가 제출한 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은 예정가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한편, 모기관이 노무비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감독자 인건비 항목을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무인력 노무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고 일반관리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회사 운영 예산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노무비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립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변경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으므로,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모기관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직종별 적정 노임 적용을 위해 합리적 조사결과에 기반해 노임단가를 산정하거나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직종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결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결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해 각각의 시중노임단가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한 점이 인정되며, 자회사 직종별 직무가치를 고려해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올바로 산정하고 시중노임단가의 변동을 반영하고자 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노임단가가 '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의 경우 전년 대비 노임단가가 하락된 내용도 확인되는바,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종전 노임단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러한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은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 모기관이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 이상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고,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자회사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협의회」의 구성 및 임무와 관련한 내부방침 수립 및 업무협약·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상생협력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생협력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자회사 직무별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모기관은 모기관 및 자회사 노사 4자로 구성된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2021년 1차례 회의를 개최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상생협력협의회 회의 시 이전 회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는 등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다. 모기관이 과업지시서 내 부당·불공정 조항 개선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부당·불공정 조항 109건을 발굴하여 개선 또는 개선안을 마련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 광양항 항만도로 및 배후시설 과업지시서 11. 기타사항 제3항과 광양항 선원회관 및 해양공원 시설관리 과업지시서 10. 기타사항 제3항에서 자회사가 정상적인 과업 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계약해지의 사유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또한, 모기관이 부당·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를 발전시키고,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자회사 간 소통 활성화, 구성원 인식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6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3조 협력분야 제1항),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협력분야 제2항), 노동자 처우 개선(제3조 협력분야 제3항),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3조 협력분야 제4항) 등 경영 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경영협약을 통해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와의 계약이 체결중인 관계로 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절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았고, 다른 모기관과 동일하게 ‘향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대해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율을 5.0%에서 6.0%로, 이윤비율을 5.44%에서 7.0%로 증가시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5.0%에서 6.0%로 1.0%p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5.44%에서 7.0%로 2.56%p 증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이며, 이윤비율은 평균수준보다 높지만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1,0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4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월 120천원의 교통비, 300천원의 종합건강검진, 100천원의 명절선물, 경조휴가가 제공되고 있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모두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는 점과 코로나격려금 지급(인당 783천원),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자회사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자회사 위탁계약 시 복리후생비를 반영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 보장,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자회사 복리후생 별도재원 마련을 위한 22년 상생협의회와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수탁 계약 외 건강관리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코로나 격려금 및 힐링프로그램 제공,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완료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근로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근로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자회사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확대 방안으로 모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모·자회사 합동교육 실시, 다양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노력이 인정된다. 위수탁계약금 내에 근로자 교육비를 17,000,000원 반영하고, 경비보안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여 동기부여를 강화하며, 안전보건 역량 컨설팅 및 안전 전문가 초청 교육 지원, 모기관 역량강화 교육 공동 활용(전문가 초청교육, 글로벌 항만전문지 학습 등) 및 자체교육 강화 등 항만보안, 시설관리, 사무행정 등 업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훈련을 진행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훈련 관련 프로그램 구성에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이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교육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여 다음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의 구내식당 및 체력단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자회사 자체 정보시스템 이용에 차별이 없으며 직제규정에 따라 보안직을 제외한 기타 직군은 직급에 따라 동일한 직급 명칭(직위)를 사용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연1회 정기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다면평가 등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경력인정제도 도입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기한 기준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자회사 자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을 통해 CEO 선발절차를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CEO 선발에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세부심사표 및 평가표를 마련하여 진행하고, 자회사 임원 선발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기관의 규정을 보완하고 개정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임원후보자 모집 시 추천방식, 공개모집, 추천방식·공개모집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정하기보다 추천방식은 제외하고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공개모집 병행의 방법 등으로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기본급 인상, 코로나19 격려를 위한 특별상여금 지급 등 자회사 최초로 임금협상에 합의하였고, 자회사가 임금체계 개선 노사 TF를 운영하여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를 추진하고 2022년 상반기에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명시된 용역료 중 자회사 예산 편성시 보수체계개선 컨설팅을 위한 예산 64백만원을 책정되어 있고 2020년 12월 20백만원을 집행하여 자회사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2020년 9월 3일~2020년 11월 25일)을 실시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회사 사장 경영목표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행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포함하고, 향후 계획으로 자회사 규정 개정 및 모기관 컨설팅 등을 통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22. 2월)을 예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와 관련해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고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실적보고서에 언급된 자회사 결산보고서도 게시되어 있지 않으며, 알림마당에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신규채용자 친인척 현황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자회사 홈페이지 메뉴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다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총 평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8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2020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모기관이 직무별 필수 설비 지원은 물론 업무공간 내 직무별 남녀 휴게시설 지원 등을 추진한 점, 모기관에 이윤 배당이나 적자사업 이관 등이 없는 점, 노무비를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대가지급기간 단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은 점, 낙찰률을 90% 수준으로 적용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 외에 경영협의체, 사업협의체 그리고 통합협의체를 신설 운영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 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 내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도급비를 감액하는 조항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5.0%, 이윤비율은 5.0%로 전년 대비 시설별로 달랐던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통합하였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6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을 지급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시설별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통합하면서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이 하향되었는데,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훈련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요령을 제정하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며, 2020년부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개선 계획을 확립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2018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2020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모기관은 정관(제10조의2)에서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모기관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출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3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회사 자본금 추가조달 필요시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 자본금의 300% 범위(최대 12억 원) 내에서 수시 발행 가능하도록 설립계획서에 명시하고, 출자회사 관리지침(2021.09.03.)을 개정하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3.0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 역시 50%정도이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필수 설비와 장비를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정관(2020.8.25.개정)에 따라 모기관이 보유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의 설비관리, 경비, 미화 등 시설관리 업무의 일부를 출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별 필수 설비 지원, 독립된 사무공간, 회의실 및 사무기기(PC, 복합기, 책상 등) 등 제공, 업무공간 내 직무별 남녀 휴게시설 지원, 냉난방기·탁자·냉장고·정수기 등 편의시설 및 비품 제공 등을 추진한 점과 모·자회사간 시설관리 계약체결 시 '시설관리비' 예산을 별도 편성·지원하여 필수적인 설비, 자재 구입 및 유지관리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또한, 모·자회사간 경영협약 변경 체결(2021.08.31.)을 통해 자회사 시설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설비와 사무 공간 등의 안정적 지원을 제도화한 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의 출자회사관리지침을 개정(2021.11.10.)하여 적자사업 이관, 흑자사업 회수 등을 금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위탁운영시설의 확장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위탁시기와 업무내용이 동일, 유사한 경우에도 통합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시설(3개)에 대해 통합계약을 체결(2021.12.)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2022년부터 통합계약이 시행되고 평가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5개)의 경우 각 지자체의 보조금이 확정되는 2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전년도에 통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되나,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모기관은 2021년에는 계약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서 내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2022년에는 시설별 운영재원 확보상황을 고려하여 월별 선지급 시행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점은 노력이 인정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2021년 대금 지급 소요기간을 2020년 대비 27% 단축(11일→8일)함으로써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노력이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노무비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시중노임

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확인된다. 한편, 모기관은 전기기능사 노임을 적용하는 시설직의 경우 하반기에 시중 노임이 낮아졌지만 예정가격을 낮추지 않고 상반기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2021년 예정가격 책정 시 직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미화·경비직의 예정가격을 시설직에 비하여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예정가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임단가 산정 관련, 시중노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중노임단가 반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한편, 모기관은 최초 위탁계약 체결 시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인상분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하반기 별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돌고 있는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한 모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모기관의 즉각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90%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을 개선한 것이나,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아 모기관이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자회사 경영협의체, 사업협의체, 경영·사업 통합협의체를 신설 및 운영하여 모·자회사 소통체계 및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회칙 개정을 통해 모·자회사 근로자대표를 각 1인에서 각 2인 이내로 변경하여 직종·직무별 대표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모기관은 모기관 노사 각 2인 이내, 자회사 노사 각 2인 이내로 구성되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2차례, 2021년 2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운영회칙의 제·개정을 통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이 자회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회사의 경영·노무·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의체(경영협의체, 사업협의체, 통합협의체)를 신설 및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현행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정기회의의 횟수가 적정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에서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이슈가 실질적으로 논의·합의되고 그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용역원의 복장과 관련한 대금지불방식을 언급하거나 관리직제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 보안 관련 유출의 책임을 자회사가 지도록 하는 조항, 용역의 완성여부와 관련 없이 자회사 직원의 결원일수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조항을 지적받고 개선하였고,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도 용역원 근무규정 모기관에 승인 요구, 용역원의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한 책임 부담, 모기관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하여 개선한 노력이 확인된다.

- 다만, 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결원에 따른 감액 조항이 남아 있고, 제14조 제6항에서 본 계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결함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유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모기관의 자의적 결정으로 용역비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사옥관리 과업지시서 제4장 차량관리, 제2조 제8항에서 차량관리 부주의로 차량 운행이 결행된 경우 용역비 일정액을 공제하거나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광주이노비즈센터 관리 과업지시서 제21조에서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모기관의 해석에 따른다고 한 점, 제22조에서 모기관과 협의 없이 자회사 노동자의 전출을 금지한 점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과업지시서 제1장 제6조에서 과업지시서 상 의문이 있을 때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모기관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점, 세종SB플라자 관리 과업지시서와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과업지시서 제2장 제9조에서 일일보고서를 익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도록 한 점, 제16조에서 모기관의 판단에 따른 부적격자에 대한 통보와 교체요구를 수용하도록 한 점, 제22조에서 담당 아닌 업무에 간섭하는 행위, 근무태만,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행위 등 직접적으로 복무규율한 점, 제5장 제2조에서 채용 또는 결원 시 모기관의 승인을 받고, 인사기록, 신상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제3조에서 경비 인력을 민원인과 내방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용모와 품행이 단정, 친절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겸비하고 건강한 자로 구체적으로 규율한 한 점, 제5조에서 방문객 안내시 언어동작에 있어 불편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모기관과 자회사의 경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8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자율경영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 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변경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설비·자재 지원을 강화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제5조 전문성 강화의 모기관-자회사 간 협력, 협의체 운영 등이 '노력한다', '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되어 실행력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의 지역별 편차가 커서 향후 이러한 편차를 줄이고 전반적으로 관리비와 이윤율을 높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시설별 일반관리비 및 이윤 편차를 없애는 것 외에 추가적인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시설별 4.0~9.0%에서 5.0%로 통합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시설별 3.0~10.0%에서 5.0%로 통합하였는데, 금액은 일반관리비와 이윤 모두 전년도보다 감소하였고,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윤비율은 평균수준보다 높으나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6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이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금과 경조화환, 300천원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 전년도 대비 30천원 증가한 식비와 복지포인트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명절상여금은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자회사 근로자의 복지 후생 증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회사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모기관의 제도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자회사 취업규칙 등 주요 규정을 개정하며, 모기관의 복리후생제도 운용 현황을 전파함으로써 식대보조비를 전년 대비 30% 증액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근로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근로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설립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자회사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지원을 위해 자회사 경영진, 근로자가 필요한 교육을 공동 기획 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교육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 노력이 인정되며,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 계약금액 내 교육비 반영, 합동 재난교육훈련 기획, 내·외부강사 지원 등의 노력도 인정된다. 또한, 2021년 모·자회사 근로자 합동 재난교육훈련을 신규 기획하여 심폐소생술 요령, 지진체험, 소방장비 사용 등 다양한 재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회사 근로자의 경력경로 개발을 고려한 교육 설계를 위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필요교육 수요 등 설문조사를 실시한 점은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교통비, 경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사원증 지급 등에 있어 차별이 없고 직군별 특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전체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포상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상급자 평가, 동료평가 등 다면평가를 통해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는 등 인사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인력배치 및 임금관리의 기준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20년 8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요령」을 제정하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경력인정제도 도입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기한 기준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의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을 통해 CEO를 선발절차를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CEO 공개모집, 서류·면접심사 등을 통해 대표이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 선발의 공정성 제고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모·자회사 협의 과정을 거쳐 모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지침(2021. 09. 03.)', 자회사의'정관(2021. 10. 21)' 내 대표이사 선임절차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19년 1월 자회사 설립시 모기관 예산을 활용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직무급 보수체계 설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한 후 모자회사 계약 체결시

시중노임단가 기준 예산산출원가를 100% 반영하고 반기별 변경계약 체결을 통해 인상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며(2021년) 식비, 복지포인트 등 인상, 2021년 우수사원 표창 및 포상, 2020년 자회사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직원 내부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자회사 임금체계 점검 및 개선점 제시, 모자회사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자회사 용역금액 설계(노무비 포함) 개선방향 등을 협의하여 반영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자회사 운영 실적보고서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에 대한 자회사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운영사항 등에 대한 노사 협의를 거쳐 '20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21년 1월에 이사회 운영규정 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어 '21년 7월과 10월에 이사회 참관이 실제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아래 경영공시 게시판을 별도로 개설하여 일반 현황 및 기관 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안전관리(산업재해) 현황,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방문자 수가 '20년 대비 311% 증가('20년 351회에서 '21년 1,443회)하는 등으로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주요 경영정보들이 분절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좀 더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 항목 확대 및 개선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예금보험공사

총 평

○ 예금보험공사는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2021년 정관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모기관이 필수설비 이관을 위해 사무집기 및 청소장비 등 이관을 완료(총 68개)하고 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을 모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점, 전년도 지적에 따라 3개의 위탁계약을 1개의 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본금규모가 1억원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금 지급에 있어서 분기별 선지급 등 적극적 제도도입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근거를 마련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 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실행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 내에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도급비를 감액하는 조항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7.1%로 전년 대비 6.0%p 증가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5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을 지급하였으며, 모기관 예산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유공 포상을 실시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주말근무자 시간외수당 신설 등과 같은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자회사 근로자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안을 마련하고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및 직무평가 등 CEO 선임 절차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회사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기존 정관에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1.03.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사는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의 사옥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고,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1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20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1년 흑자전환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영업상태, 당기순이익 등 재무건전성을 포함한 자회사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자회사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3.0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

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필수 설비와 장비를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경영협약과 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조(업무수행공간의 제공), 제13조(시설 공구 및 소모품 관리), 제18조(시설부분 비용부담기준) 등에 자회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 보장과 업무지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상호간 협의를 통해 자회사 경영에 필요한 사안 지원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무집기 및 청소장비 등 이관을 완료(총 68개)하고 사무실, 용수, 전력 등 시설관리 업무에 필수적인 설비의 무상 제공 등을 추진한 점과 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을 모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모자간의 경영협약서에 적자사업 이관, 흑자사업 회수 등을 금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부당관행을 방지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통합계약 전환 계획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21년도 계약부터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3개의 위탁계약을 1개의 통합계약으로 전환하였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이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선지급 방식을 유지하면서 자회사 요청시 분기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이 전월 업무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 보고를 통해 기성검사를 대체함으로써 계약대금 지급기간을 2.7일→2.1일로 단축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산정 없이 모기관과 자회사 간에 협상으로 정해지는데, 이렇게 정해진 직종별 노무비 단가는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현장감독자와 사무인력 노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도 자회사 노무비 예산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한편, 미화·경비 직종의 경우 전년 대비 용역비 산정 기준 인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이유 확인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모기관은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자회사 과업범위와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지 않아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이 미흡하고,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계약금액을 제한적으로만 조정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 상·하반기 모든 직종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체결한 경영협약서에서도 노임단가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중노임단가를 온전히 노임단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방재, 영선 등 몇몇 직종에 대해 단순노무시중노임단가를 일률적으로 제시하였는데,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러한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은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 모기관이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 이상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고,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회사 노사협의회 안건을 정기적으로 공유받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안건으로 포함 시켜 협의하고 있으며, 모·자회사 경영협약서에 모·자회사 공동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모기관 2인, 자회사 2인으로 구성되는 모·자회사 공동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9월 이후 분기별로 총 5차례의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자회사 경영현황, 근로자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현재의 협의 틀을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회의 시 이전 회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는 등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지적된 계약해지사유 중 임금체불 조항, 종업원 신상 및 경력요구 시 서류 제출조항, 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수급인과 합의가 아닌 협의로만 지시하도록 한 조항, 근무계획 및 보고 관련 세부 내역 요구 시 자회사가 응해야 하는 조항, 업무일지 요구 시 보고하는 조항 등 4개 조항을 삭제하고 4개 조항을 수정한 노력이 확인된다.

- 모기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에서 월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된 인원의 도급비 중 인건비 및 4대보험료는 자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일할 공제한 후

지급한다는 조항은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고, 제9조 제3항에서 자회사가 성실의무 위반, 적정 임금 지급 및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용역비 보류, 감액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모기관의 자의적 결정으로 용역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감액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28일 모기관과 자회사 간 경영협약서 체결하였으며, 2021년 11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개정된 경영협약 내용에서,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협약의 목적, 제4조 기본원칙, 제5조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및 경영개입 제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7조 업무협력의 범위 1), 노동자 처우개선(제7조 업무협력의 범위 2),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7조 업무협력의 범위 3)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등의 경우 '노력한다'로 명기되어 있어 실행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와의 계약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어떤 비율로 체결

했는지 명시하지 않아 자회사 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타 모기관과 동일하게 '향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였는데, 평가년도에는 이윤비율은 동일하지만 일반관리비율이 1.0%에서 7.1%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1.0%에서 7.1%로 6.0%p 증가하였지만 이윤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장해주지 않았으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보다 높지만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500천원, 명절상여금이 1,0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30천원이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제공되는 것은 없다. 전년도 대비 복지포인트가 100천원, 명절상여금이 200천원 증가하였고,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보고서에 언급된 주말근무자 시간외수당 신설과 미화직원 근로시간 조정 등과 같은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등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노무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및 공동 활용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안건 상정을 통해 모기관 복리후생제도(리조트)의 자회사 임직원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모기관 예산을 통해 자회사 직원에 대한 유공 포상을 시행하는 등과 같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있어서 위수탁 예산 외의 모기관의 책임 있는 활동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개발 지원을 위한 모기관 지원의 기본원칙 및 예산지원, 자원공유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된 자회사 지원안을 마련하고, 2021년 용역계약에 교육훈련비를 포함(월 400,000원)하여 진행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모·자회사 공동으로 「청렴·윤리 워크숍」 개최, 모기관 안전담당자가 자회사 안전보건 컨설팅을 2회 실시하는 등 교육훈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자회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커리어 경력개발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회사 구성원들의 심리상담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세칙을 마련하고 사무직원과 기술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직위 명칭을 사용하고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외부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며 포상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승격 등에 활용하는 실적이 있다. 또한, 2020년 8월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설정하고 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및 직무평가 등 CEO 선임절차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 시 안전기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후보를 선임하는 등으로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내부 2명, 외부 2명으로 하여, 외부위원을 내부위원 대비 50%로 구성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대표이사 선임절차 진행 시 임원추천위원회만을 통한 추천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공고 등을 일간지 및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지원자를 모집하는 등으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2019년 4월 1일 7등급 직무급 체계를 반영한 보수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이후 자회사 노사협의 및 모자회사 협의 등을 통해 직무등급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현재 자회사는 대표이사 단독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며, 추후 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 올해 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관련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 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와 관련해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해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으며, 모기관 홈페이지 공사소개 관련 사이트에 자회사 일반 현황, 정관, 규정 모음, 결산자료만 게시되어 있어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자회사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다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총 평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016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업무위탁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모기관이 필수설비 이관으로 자회사 사무실 무상사용 승인 및 용역사 설비의 자회사 이전 등을 추진한 점, 전년도 지적에 따라 3개 계약을 단일 통합계약(통합시설용역)으로 전환한 점,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2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 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이나, 계약서 내 모기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용역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경영협약 내 자회사의 지원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5.0%, 이윤비율은 10.0%로 전년 대비 이윤비율이 대폭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80천원, 명절상여금을 대신한 명절선물(인당 20천원)을 지급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보장하고 식비를 책정하는 등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자회사 운영 개선계획('21.11)을 수립하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 및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 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되며, 자회사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설립된 자회사로 고용한 바 있다. 모기관은 2016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모기관 정관 제4조 제4항을 살펴보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얻어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을 보면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 다만, 정관의 해당 조항만으로 자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회사 정관에 위탁사업(서비스) 내용의 구체적 명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지분율을 기존 83%에서 100%로 확대하여 자회사에 자본금 2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20년과 21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3.0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기관은 2020.6. 자회사와 체결한 경영협약에서 자회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 보장과 업무지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상호간 협의를 통해 자회사 경영에 필요한 사안 지원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사무실 무상사용 승인, 용역사 설비(경비장비, 비품, 소모품, 공구 등)의 자회사 이전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자간의 경영협약서(2020.06.17)에 적자사업 이관, 흑자사업 회수 등을 금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부당관행을 방지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단일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종전 3개 계약(일반시설용역, 청소용역, C&V센터 관련용역)을 단일통합계약(통합시설용역)으로 전환(2021.1)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 지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모기관은 자회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2년 시설관리 용역계약 대금지급 방식을 선금(연초 운영자금) + 월별 후지급으로 개선할 예정(2022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분기별 선지급 방식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평균 8일)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직종은

보일러설치정비원 노임을, 전기직종은 전기전자설비정비원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은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어 그 금액대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모기관의 예정가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변경을 계약에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 상·하반기 모든 직종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한편, 모기관은 위탁계약 체결 시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하되, 하반기 변동분을 고려하여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노임단가를 산정하였다. 모기관은 '적용 중 노임단가'가 '변경된 시중노임단가'에 밑돌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경영협약서 등을 통해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100%) 이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통신, 소방 등 몇몇 직종에 대해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러한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은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 모기관이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 이상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고,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회사 2인, 자회사 근로자대표 3인을 포함한 자회사 4인으로 구성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대표 선출 이후 분기별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 9월 이후 총 6차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매주 정기적으로 모·자회사 실무진 간 회의를 개최하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통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 측 고충처리위원 및 간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있어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임기와 변경 등에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 방법 및 주요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회의 시 이전 회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에게 근무일지를 일·월·년 등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 점, 모기관 지시 감독에 따르도록 명시한 점을 지적받고 개선한 노력이 확인된다.

-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 중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자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과업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모기관과 자회사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기관의 해석에 의한다고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내용도 모기관의 자의적인 과업범위 조정 등이 우려되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시설·동물관리용역 과업지시서와 시설·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제4조 제3항에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감액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용역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고, 시설·동물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시설·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제4조 제5항과 제9조 제2항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용역대가 지급 시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결원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의 시설·동물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시설·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제8조 제5항에서 자회사가 사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퇴사자 및 입사자에 대한 사항을 모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점, 제14조 제2항 제6호에서 계약사항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점, 제18조에서 이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모기관의 해석에 의한다고 한 점, 시설·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제8조 제3항에서 자회사 인원충원 시 이력서, 경력 및 학력증명서 등을 모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도록 한 점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6월 모기관과 자회사 간 경영협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모회사의 지원),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2조 상호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협약서에 자회사의 경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항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회사의 시설, 설비 등의 지원 역시 '공동사용'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설비 이관 등 적극적 지원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 자회사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점. 인적자원의 교육, 주요 시설·설비 사용 등이 '상호협력' 사항으로만 규정되어 모회사의 지원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율이 5.0%로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이윤비율은 전년도 5.8%에서 10.0%로 증가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5.0%와 동일하며, 이윤비율은 전년도 5.8%에서 평가년도 10.0%로 4.2%p 증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윤비율은 전체 모기관의 평균 수준 보다도 높고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0%)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일반관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48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명절상여금 대신 명절선물(인당 20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복지포인트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 외 복리후생이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자회사 노동자의 복지후생 증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모기관의 재정 상태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 마련 또는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복지후생지원정책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논의 단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모기관의 지원방안 관련 제도는 없다.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커리어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가로 제출한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을 위한 경영협약' 제3조 모회사의 지원 중 제1항에 따르면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 자본금 출연,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다. 추후 해당 규정에 따라 자회사 구성원의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전문성·관리적 성격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직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실비보전적 금품 지급, 비금전적 처우, 채용제도,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다층적 평가·근무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운영 등 근무평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근로자 전원 정규직으로서 비정규직 제로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부터 지금까지 자회사 내 대표이사 선임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로, 공정한 대표이사 선발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시행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모·자회사 노사담당 워크숍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20201년 12월)이라는 추가자료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등과 같은 공정한 임원선발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19년 12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으로 마련한 취업규칙에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반영하고 자회사는 현재까지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운영 중이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 운영 개선계획('21.11)을 수립하여 노동이사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자회사 현실을 고려하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 및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면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관련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되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와 관련해 전년도 평가에서 모기관 또는 자회사 홈페이지 개설 후 별도 게시판을 마련해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후 자회사 홈페이지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으며, 모기관 홈페이지에 알리오가 연동되도록 하여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향상을 도모했다고 실적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지만, 모기관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할 결과 세부 공시 항목을 클릭하면 알리오 메인 홈페이지 사이트로만 연결되어 해당 정보를 다시 검색해야 하는 등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모기관 홈페이지에 나타난 자회사 경영정보도 투자 및 출자 현황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 등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자회사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다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0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울산항만공사

총 평

○ 울산항만공사는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관련하여 항만공사법과 모기관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모기관이 자회사에 자본금 7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점, 보안장비(순찰차량, 무전기 등) 이관 완료 등 각 사업별 설비 및 장비의 단계적 이관을 확대한 점,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 등이 긍정적이다. 다만, 계약금액 결정에 있어서 결정된 금액이 시중노임단가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연도 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모·자·노 상생발전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 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은 긍정적이나, 경영협약 내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계약서 내 모자회사간 이견이 있을 때 모기관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

○ 일반관리비 비율은 10.0%, 이윤비율은 11.0%로 모두 국가계약법상 최대 한도를 초과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7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을 지급하였으며,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명문화하고 모기관 소유 리조트 회원권 1매(연간 30박)의 독립적 운용을 담보하고 운영사무실 확장 이전, 신규초소 구축 등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인정된다. 자회사 근로자 1인 평균 교육비를 증액 지원하는 등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계약직 직원 임금 및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모기관 출자회사 관리규정 및 자회사 정관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개정하고, 2021년 12월 모기관 기획조정실 주관 '울산항만공사 자회사 경영개선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자회사 내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해당 내용을 2022년 중점 추진 과제 선정과 연계하며, 자회사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게시판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관련하여 항만공사법과 모기관 정관을 보면 각각 '항만의 경비・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항만의 경비・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령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7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경영협약-위수탁 세부협약-출자회사 관리규정 등을 개정하여 적정 자본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과 자회사 간 체결한 위탁과업지시서에 보안장비,

구매운용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명시, 모·자회사 경영계약에 독립적 운영, 예산 지원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안장비(순찰차량, 무전기 등) 이관 완료 등 각 사업별 설비 및 장비 단계적 이관 확대, 사무실 (확장)이전 지원, 울산항 5부두 신경비동 건물 및 용연부두 운영동 건물 준공 지원, 용연부두 휴게 공간 구축 및 무상이용 제공 등을 추진한 점과 모기관이 설비 및 장비 운용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자간의 경영협약서에 적자사업 이관, 흑자사업 회수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부당관행을 방지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규 사업 이관(예: 운영위탁, 미화사업 등)을 통한 자회사의 사업영역 확장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0년)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의 계약관리 주체가 항만운영실과 경영지원부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항만운영실로 단일화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이 계약대금 지급방식에 있어 2019년 최초 계약부터 반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여 상·하반기 분할 선급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자회사의 추가 금융수익 창출을 유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자회사로부터 계약대금의 지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최장 6일 이내에 계약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대금 지급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자회사 임금교섭 결과에 따른 인상률을 반영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금액은 시중노임단가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모기관은 향후 계약 시 노무비가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용역비 결정에 있어 현장감독자와 사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노무비 예산의 안정성 확립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인상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별다른 조치실적을 확인할 수 없다. 자회사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연도 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돌고 있는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각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모기관은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기보다,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해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계약금액 산정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을 개선한 것으로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기관 「출자회사 관리규정」에 모·자·노 상생발전 협의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설정하였으며, 자회사 현안에 대한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및 자회사 현안 과제 해소 지원 및 실행력 담보를 위해 모·자 실무 부서장 협의체를 신설, 운영하였다. 그리고 모기관은 모회사, 자회사, 자회사 근로자대표 3자로 구성되는 모·자·노 상생발전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회의 전 자회사 및 자회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안건을 사전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의제는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현재 논의의 틀을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 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경비·보안 위탁업무 과업지시서 상에서 자회사가 배치 장소별 근무자 확정 후 근무자 명단을 모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적받고 개선한 노력이 확인된다. 또한,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점검하고 경영권 침해조항을 자체 발굴하여 2건을 삭제하고 1건을 개정함으로써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기관이 시설관리·청소·경비 위탁사업 과업지시서 제3장 행정사항, 1.

지침 내용의 해석, 1.2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기관의 해석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 9 경영협약 체결 후 2020년 평가단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11월 경영협약을 개정하여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변경된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적 성장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제4조 노동자의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상생발전협의회)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노동자의 처우개선 사항이 '노력한다'로 명기되어 있어 실행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와의 계약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어떤 비율로 체결했는지 명시하지 않아 자회사 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는 항만공사법에 근거하여 용역계약 방식이 아닌 총괄예산교부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른 것이다. 사전 서면 질의를 통해, 소명이 가능한 산출기준을 마련하였고, 일반관리비율 10.0%, 이윤비율

11.0%로 일반 용역계약 방식보다 높은 수준을 보장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노력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이며, 이윤비율은 전년도 11.9%에서 평가년도에는 11.0%로 감소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보다 높을 뿐 아니라,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는 항만공사법에 근거한 위탁경비 지원 관계로서 국가계약법의 적용 및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며, 모기관의 물동량 감소로 인한 경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700천원, 명절상여금이 1,0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는 인당 700천원의 동호회 지원, 300천원 수준의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소유 리조트 회원권 1매(연간 30박)를 자회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독립적 운용을 담보하였으며, 모·자회사 공동이슈 대응을 위한 출산 축하 패키지 지원사업을 모자회사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회사 노동자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2022년 모회사 기금 활용심의를 진행하는 등으로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자회사 노동자의 실질적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운영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신규 초소를 구축하며 보일러 교체, 신규 공용화장실 신축사업 등을 추진한 것은 비금전적 복리후생 개선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외에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지원을 위해 1인 평균 교육비를 2021년에 225.5~276.4% 증액 지원하는 등으로 경영관리 역량개발 교육을 집중 지원하는 노력이 인정된다.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교육시간 및 교육비 지원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경영관리 역량개발 교육에 집중지원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커리어 개발을 위해 '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두고 있는데, 모기관 운영 온라인 캠퍼스를 개방하여 교육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과정 정규 교육훈련 편성 및 경비지도사 자격취득 지원예산 별도 편성 등과 같은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커리어 경로개발 관련 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구성원들의 교육훈련 실질적 참여율 및 교육훈련 효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필요 교육 수요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후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는 등으로 교육훈련 효과의 실효성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운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차별 없이 각 거점 근무지별 휴게실(탈의실) 및 사워실과 모기관 구내식장 및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고 사내 인트라넷 이용에 차별이 없으며 직군별 특성을 반영하여 호칭을 부여하고 채용면접시 외부 위2원을 1/2 이상으로 하고 포상 적격자 선발시 직무 및 직군 구분 없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포상, 제안 및 징계 등에 대하여 경련

환산 기준표에 따라 경력을 인정하고 직원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근무평정 제도를 운영한 실적이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가 2021년 「계약직 직원 임용 및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고 외부 전문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에 맞게 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의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모기관의 '출자회사 관리규정', 자회사의 정관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회사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체제 개편 기반 조성을 위해 비상임 이사 및 감사 선임 경로를 명문화하고 CEO 선임절차 준용을 명시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1년 12월 모기관 기획조정실 주관 '울산항만공사 자회사 경영개선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자회사 기관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인터뷰, 자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자회사 내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해당 내용을 2022년 중점 추진 과제 선정과 연계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총괄예산교부방식 운영에 따라 각각 노사발전 컨설팅 예산(2021년 / 19백만원 편성)과 임금체계 및 직무개편 컨설팅 예산(2022년 / 20백만원 편성)을 편성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

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21년 2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목표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 올해 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관련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되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해서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자회사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게시판이 마련되었지만, 게시된 정보가 매분기 신규채용인원 중 친인척 현황, 반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결산공고에만 한정되어 있어 대국민 경영정보 접근성 확보 노력과 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 홈페이지 공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공시내용과 방법 그리고 정기, 수시 공시별 공시 기한, 항목별 공시 담당자 지정, 분기 공시등록 여부 점검, 공시결과 피드백 활용 등을 구체화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해당

계획의 실행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총 평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편, 모기관이 자회사 세 곳에 각각 자본금 10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점,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설비·기자재·장비 등을 무상 제공(지속)한 점, 예정가격은 노임 등 원가가 100% 반영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서 22개 계약(2021년)을 유지한 점, 분기별 잔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등 19일이 소요되고 있는 점,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이 시중노임보다 낮게 책정된 점,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인 87.995%를 적용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인천공항경영진협의체와 계층별 간담회 실시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 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경영협약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4.0%, 이윤비율은 10.0%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1,5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9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보안㈜의 명절상여금과 식비가 신설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보장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모자회사간 교육훈련 자원과 업무 수행 노하우에 대한 상호 공유를 통해 자회사 인적자원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모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기존 정관에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0.12.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고,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세 곳에 각각 자본금 10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재무상태, 5개년 사업계획 등 중장기 재무계획 관리방안 마련 및 자회사 경영평가 연계로 자회사의 경쟁력 유도와 책임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현재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매우 낮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 내부 규정과 모·자회사 간 위탁계약, 자회사 위탁

용역 운영 및 관리지침, 자회사 표준계약서 등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세 곳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설비, 기자재, 장비, 업무용 차량, 사무실, 창고 및 휴게실 등 무상 제공(지속), 자회사 필요 사무실, 장비 등에 대한 모기관 사용대차계약 의무 제도화, 자회사 사무실·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자회사에 실질적 부여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모·자회사가 신규 사업을 공동 추진예정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기업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을 지원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전년도 평가에서 통합계약 전환 계획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대상기간에는 22개 계약(2021년)을 유지하였고 2022년부터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시설, 운영, 보안 3개 자회사별 1계약)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모기관의 단일통합계약은 2022년 계약부터 적용되어 평가대상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이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선금(50%)+잔금(분기별) 지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모범적인 사례이며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한편, 모기관은 선금을 50%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급 소요기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수는 없으나 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에 있어 보안 분야와 환경미화 일부 인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직종은 일반직 공무원 임금수준을 기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책정된 예정가격은 원가가 100% 반영된 점이 확인된다. 한편,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감독자와 사무인력에 대한 직접 노무비로 별도

계상하고 있어 이점은 자회사 노무비 예산의 안정성 확립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인상을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도 新대가체계 수립을 통해 직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임기준을 재설정하고 적정 노임단가를 산출한 것이 확인되며, 노임단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모기관이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의 경우 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및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가격 100% 반영에도 불구하고,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이 시중노임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향후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보안·시설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엔지니어링협회 노임기준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보안의 경우 단순노무용역인 환경미화의 노임단가를 하회하는 수치가 확인되는바, 최소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용역 노임단가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자회사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해 직종별 시중노임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인 87.995%를 적용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모기관은 기존의 낙찰률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이 2022년 신규계약 체결 시 낙찰률 적용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기관 기관장의 자회사 근무 현장 방문 및 총 19회에 걸친 3개 자회사의 계층별 간담회를 시행함으로써 모·자회사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모기관 기관장 및 3개 자회사 경영진으로 구성된 최고수준 거버넌스 소통 채널인 “인천공항 경영진 협의체”를 분기 1회 운영하여 모자회사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현재 논의의 틀을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 중 일일작업계획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고, 용역계약 특수조건 손해배상조항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공항이용객들의 공항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모기관이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을 위하여 수의시담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전년도에 지적받은 사항 외에도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과업내용서의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경영협약 체결 후 평가단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12월 경영협약을 개정하여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공사의 임무 1),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2조 공사의 임무 2, 5), 노동자 처우개선(3, 4),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4조 협의체 운영)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이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임의적 성격이 있으며, 설비이관,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 등의 지원 사항과 관련해서는 보완의 여지가 있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율이 전년도 3.0%에서 4.0%로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7.0%에서 10.0%로 증가하였다. 모기관은 항공여객의 감소로 인한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3.0%에서 평가년도 4.0%로 1.0%p 증가하였으며, 이윤비율 또한, 전년도 7.0%에서 평가년도 10.0%로 3.0%p 증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윤비율은 전체 모기관의 평균수준보다도 높고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0%)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일반관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1,500천원, 명절상여금이 1,0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9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은 자녀학자금, 자기계발비, 경조지원금, 어린이집 보육비, 휴양시설 지원비 등이 제공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2개 자회사의 복리후생 항목과 수준은 동일하지만,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경우 평가년도에 명절상여금과 식비가 신설된 점,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이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일부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적자가 지속되어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자회사의 기존 복리후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인상하여 복리후생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모기관보다 유리한 구조로 설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기관 재무상황 개선 추이, 모·자회사 경영진과 노조 간 입장 등을 고려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지원을 위해 계약금액 증대 및 자회사 근로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모기관과 자회사 공동의 노력을 통해, 모기관과 자회사 교육 MOU 체결 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역량 제고 등의 결과를 도출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과 자회사 사이에 교육훈련 자원과 업무 수행 노하우의 상호 공유를 통해 자회사 인적자원 역량 향상 및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커리어 경로개발 관련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구성원들의 참여율과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전 근로자가 동일하게 어린이집, 휴양시설 등을 이용하고 사내 인트라넷 발급 또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며 직군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호칭을 부여하고 채용전형시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균등한 기준에 따라 포상제도를 운영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업무실적 평가와 역량평가 등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한 실적이 있다. 또한, 각각 2020년 9월과 같은 해 10월 27일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지침」을 제정한 후 2021년도에 자회사별로 1차례에서 5차례에 걸쳐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는 자체 여건과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의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기관은 이를 지원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CEO 선발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및 모기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준용, 3개 자회사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완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CEO 선임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2021년 공모를 통해 총 4인의 임원을 임명 완료하고, 자회사 신규 CEO를 선발하는 등 CEO 선발과정 전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차년도 평가자료 제출 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모집공고를 모기관, 자회사 홈페이지 외에 일간지, 채용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지 여부 등을 알기 쉽게 나타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18년 합리적인 자회사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자회사는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노사협의 등을 거쳐 2020년 직무중심의 新 임금체계를 도입 완료하였으며, 모기관은 2021년도에 자회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재원을 자회사에 지급하고 자회사는 직책을 부여한 후 직책수당을 지급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다. 현재 3개 자회사에 10여개 노동단체가 설립되어 조합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경영참여 대상의 대표성에 대한 갈등이 있어,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한 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운영사례 벤치마킹과 관계법령 검토 등의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계획과 노력 및 그 성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라는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기관 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두 자회사는 고객지원 밑 경영정보 메뉴에, 다른 한 곳의 자회사는 홍보센터 밑 경영공시 메뉴에 정보에 게시되어 있고, 게시정보의 형식도 통일성이 부족하여 일관성과 관련한 개선이 요구된다.

- 모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제시와 모기관/자회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기존 5개 항목 연 1회 공시에서 22개 항목 연 2회 공시로 개선되었으며, 자회사 경영평가(공사 주관 시행)에 자회사별 경영공시 개선 충실도를 반영하고, 자회사별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경영정보 공시 정확도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 담당자 교육과 공시 점검 등의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총 평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20.09.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편, 모기관이 필수 자산 품목(총 348개)의 모기관 무상 임대 및 구매지원(100%)을 추진한 점,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거쳐 2021년 계약부터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노임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본금 9.16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으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88.3%의 낙찰률을 적용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에 지적받은 부당·불공정 조항과 3차례에 걸친 기관의 자발적인 개선이 이루어 진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계약서 내 자회사에게 일간보고를 하도록 하는 점이나 과도한 해제, 해지사유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7.1%, 이윤비율 5.0%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6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40원/월이 지급되고 있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며,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기관 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되며, 공시항목 확대 및 개선계획을 세우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기존 정관에 자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0.09.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 시행, 시설물 유지관리(미화·경비 포함), 직영사업장 운영지원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9.16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2020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흑자전환이 예상되어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자본금 증액 검토, 신규 사업 위탁 등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도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현재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 설비 목록 작성을 협의하여 필수 설비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무상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총 필수 자산 품목(총 348개) 모기관 무상 임대 및 구매지원(100%), 총 자산 수량(총 937개) 모기관 무상임대 및 구매지원(100%) 등을 추진한 점과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 설비 자회사 이관을 위한 재검토 및 의견수렴, 사무공간 확충 및 임대조건 완화(감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검토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개정(2021.04.16.)하고, 동반성장 상생협력 경영협약서를 체결(2020.06.10.)하여 적자 및 흑자사업 이관·회수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부당 관행을 방지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규 사업 발굴 및 이관(예: 의료서비스 센터 등)을 통한 자회사의 사업영역 확장을 지원하는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통합계약 전환에 대한 합의를 도출(2020.10.)하였고, 2021년 계약부터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의 요청시 선금을 지급(2020.9./2021.3./2021.8.)하고, 선금 지급시 보증보험 대신 선금보증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평균 4일 내외에서 지급하고 있고 지급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노임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전기기능사 노임을 적용하는 시설 직종의 경우 하반기 시중노임단가가 전기 대비 하락한 이유로 예정가격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점은 자회사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안정성과 통상임금 성격의 임금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임의로 낮출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예정가격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모기관이 노무비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감독자 인건비 항목을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무인력 노무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고 일반관리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운영 예산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노무비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립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모기관은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낙찰률도 상향조정한 것이 확인되는바,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및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가격 100% 반영에도 불구하고 낙찰하한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직종의 경우 전기 대비 시중노임단가가 하락하자 '하락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도 확인되는바,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이유로 종전 노임단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88.3%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모기관은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이 2022년 신규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89%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그 수준이 소폭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기관 추진사업 및 사업장별 업무공유 워크숍 등을 포함하여 노사파트너십 공유 워크숍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모기관의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아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나, 모기관은 모기관 노동조합 설득을 위해 모·자회사 노사공동간담회를 추진하였던 점, 사업장별 간담회를 통한 자회사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이 전년도에 과업내용서(시설관리)상에 경비원의 복종의 의무, 출퇴근

관련 고지, 회사간부 등의 승하차 도움 의무에 대하여 지적받고 개선한 노력이 확인된다. 또한, 모기관이 21년 3월에 과업내용서의 모기관의 일방적 과업 변경, 과도한 근무수칙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21년 11월에 과업내용서의 경미한 과업내용 변경 수용, 인력 배치 및 교체 시 신고 조항을 개정하고, 21년 12월 과업내용서 상의 결원 발생 시 감액 예외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총 3차에 걸쳐 부당·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과업지시서 상에 자회사 노동자의 결근 및 결원상태가 발생할 경우 인건비를 감액하는 조항에 적극적 충원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라는 예외사유를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완성 여부와 관련 없이 인원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자회사와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모기관 지정면세점 과업내용서와 면세점관리소 과업내용서 제4장 고객센터 분야 제3조 제7항에서 콜인입호 처리현황, 유형별 상담내용, 시간대별 상담원 상담실적, VOC 접수(고객 칭찬, 불만족, 직원실수 내용 및 처리결과 등)를 일간 보고하도록 한 점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박물관관리소 과업내용서, 시설종합관리용역 과업내용서, 첨단단지관리소 과업내용서, 정보관리 과업내용서 제14조 제1항, 면세점관리소 과업내용서 제13조, 서울사무소 과업내용서 제11조에서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금지 행위를 위반한 때, 모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임의로 용역을 수행할 때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모기관 박물관관리소 과업내용서, 시설종합관리용역 과업내용서, 첨단단지관리소 과업내용서와 정보관리 과업내용서 제20조, 면세점관리소 과업내용서 제19조에서 자회사에게 모기관의 근무요령과 제반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게 한 점, 서울사무소 과업내용서 제13조에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언어와 행동에 있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게 항상 유의하도록 자회사 노동자의 복무를 직접 규율하는 점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6월 '동반성장 상생발전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 전년도 평가단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동반성장 상생발전 경영협약서를 개선하였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4조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회사의 자회사 경영안정 및 처우개선 지원, 교육훈련 예산지원 등의 사항은 '노력한다', '할 수 있다' 등으로 명기되어 실행력이 높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모자회사간 공동협의회 등 협력을 위한 제도의 구체적 규정이 부족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이 대표이사 임기동안으로 제한되어 있어 협약의 불안정성이 있어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 이윤비율이 5.0%로 전년도와 동일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7.1%와 동일하며, 이윤비율 또한, 전년도 5.0%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보다는 높지만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6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4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은 250천원의

건강검진비, 300천원의 생일 및 창립기념일 축하금 등이 제공되고 있다. 명절 상여금 중 일부를 상품권 지급에서 현금으로 일원화한 점, 식비를 월 120천원에서 140천원으로 상향 조정한 점, 건강검진비를 증액한 점,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및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변경된 내용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 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2019년은 당기순이익 감소와 노동조합과의 이견, 2020년은 당기순손실 발생과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원활치 않은 이유 등을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을 검토하였지만 당기순손실인 상태에서 출연이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담당자와의 미팅 등을 통해 중장기 과제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등으로 노력하였다.

-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지원방안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전문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를 활용해 2020년에 전문성 강화 및 기술력 향상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2021년에는 확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모기관의 교육훈련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역량강화 교육,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의 심리상담 및 힐링 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021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구성원들의 참여율 증대 방안 및 교육훈련 후 피교육자들이 느끼는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추후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면접전형 심사위원 구성시 외부 심사위원을 1/2 이상 위촉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실적이 있다. 또한, 2021년 7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1년 8월 「계약직 직원 채용 및 운용규정」을 개정하여 대표이사 포함 5인 이내의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통해 2021년도에 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인력 구조상 공무직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직 근로자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지 않아 보고할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에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등에 따라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내용은 선도적 인사관리 모델로서 인사관리의 원칙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실비보전적 금품 지급, 비금전적 처우,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모기관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CEO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CEO 선임절차에 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규정을 두어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및 2021년 조직진단 및 성과평가체계 용역 추진을 통해 합리적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했고 노사협의회 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및 직위개편 TFT를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했고 2022년 보수체계 개선에 대해 2021년 임금협약에 명시했으며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총 11차례 교섭),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10회 실무교섭과 11회 본교섭)을 통해 기본급 인상, 코로나 위기극복 격려금 지급 등을 시행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복수노조 설립 및 활동, 과반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후 경영간섭 요구 지속 발생,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노사관계 안정화 이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관련하여 사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여 제도 도입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노조와의 협의를 통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와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전에 신청을 받아 참관인원을 정하고 이사회에서의 의결권과 발언권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참관 대상과 운영방식 그리고 의결권과 발언권 관련하여 구체적 권한 등에 대해 논의와 검토를 하는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게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라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현황, 기관 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개선계획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 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주식회사 에스알

총 평

○ 에스알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 한국철도공사 자회사로 전환하였으나, 자회사 설립 또는 업무위탁과 관련한 근거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마련되지 않았으며,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연하지 않았다. 모기관이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자회사 간 업무위탁관계가 성립하므로, 자회사에 대해 모기관으로서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기관이 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시설 유지비 및 자재 구매를 지원하고 있는 점, 대금 지급기간을 3일로 단축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의 수를 4개로 유지한 점, 계약대금의 선금지급으로 전환에도 불구하고 선금지급 설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소통채널구축의 일환으로 현장대리인 제도를 운영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 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노사공동협의체의 구성, 계약서 내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인건비를 차감하거나 과도한 계약해지 사유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3.0%, 이윤비율은 7.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고객센터 1,000천원, 객실승무 1,900천원), 식비 14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직종의 명절상여금이 증가하고 식비가 증가했고, 역사 입점 매장 대상 협력 직원 이용할인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조정하고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업무 중 성희롱 등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심리치료 비용 지원 예산을 배정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신 한국철도공사 자회사로 전환하였으나,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과 관련한 근거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마련되지 않았다.

- 모기관과 자회사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모기관 정관에 규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 반할 뿐 아니라, 자회사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모기관 정관에 업무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 설립과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회사 정관에 위탁사업(서비스) 내용의 구체적 명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용역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자회사를 신설하지 않고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테크(주)에 총 379명을 정규직 전환하였으며,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연하지 않았다. 이처럼 다른 계열사로 정규직 전환 방식을 택한 경우 반드시 그 자회사의 100%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모기관으로서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증진하려면 자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분을 일정하게 확보하고 이사회와 경영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에는 자율적 운영, 교육지원, 처우개선, 공동이익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고, 용역계약서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모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무실 및 휴게공간 제공, 무전기, MTIT 대여, 노면청소기, 고압세척기, 유압사다리, 상담용 PC, 전화기, 상담부스 등을 자회사에 제공한 점과 시설 유지비 및 자재 구매를 지원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이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자회사 간 업무위탁 관계가 성립하므로, 모기관이 자회사에 대해 모기관으로서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전제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와 단일 통합계약 체결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분야별 통합계약을 체결하여 총 계약 수 7개를 4개로 감축한 노력은 인정되나 향후 자회사별로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모기관은 직무별 통합계약을 완료하였고 추가 통합계약은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들의 경우 다수가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기관의 설명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에서 선금 지급 후 잔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노력은 인정되나, 선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4.94일→3일로 줄임으로써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이 예정가격 산정할 시 노무비 원가는 자회사(수탁사) 임금체계에 의해 정해지는데, 일부 직종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보다 낮은 수준에서 예정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이 점에 있어 위탁계약을 체결한 3개

자회사(수탁사) 자체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 인상에 제한을 받아 관련 예산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대책 상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노무비 단가 인상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회사(수탁사)의 또 다른 위탁사(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유사 직종과의 임금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수탁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인상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객실승무, 고객센터 직종의 경우 정부 지침 및 노사전 협의체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단가 향상을 추진하거나 단순노무와 고객서비스 직종의 경우 시중노임단가 인상율을 초과하여 인건비 인상을 시행하였으므로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계약 체결 중에 있는 노임단가는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돌고 있는바, 연중 계약변경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자회사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한 모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즉각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종전 대비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모기관은 단순노무 직종 4개 분야와 고객서비스 직종 2개 분야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여 비교한 결과로 나타내고 있는바,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임단가 적정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계약금액 산정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러한 낙찰률은, 시중 노임단가의 일정 비율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이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가 아닌 협력사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근거 부재 및 경영권·독립성·자회사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시행하고 있는 안전근로협의체 및 월 1회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협력사 총괄부서 주관으로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해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총괄부서와 현장대리인 간 애로사항 소통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객실승무, 고객센터, 역청소, 유지보수, 차량청소, 객실비품 등 사업부서별 간담회를 2021년 총 17회 실시하는 등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관계회사라는 특성상 자체적으로 공동회의체를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한국철도공사와의 공동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자회사의 귀책사유로 모기관이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조치가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한 조항을 지적받고 개선한 노력이 확인된다. 모기관이 자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자회사의 과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9건을 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기관 고객센터 특수조건 제12조 제3항에서 결원 발생 시 해당 월 용역대금에서 인건비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보수 과업내용서 라. 과업내용 (22) 계약금액의 정산, 4)에서 과업수행계획에 제시된 인원 중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에서 감액한다고 하였으나, 용역의 완성여부와 관련 없이 인원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조항은 자회사와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 역사 및 승무센터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2. 서비스수준 평가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 3회 이상 또는 패널티 3회 이상일 경우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4.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제2항에서 평가결과 3회 이상 75점 미만 또는 60점 미만시, 도급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모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차량청소 과업내용서 라. 과업내용, 6) 작업책임자 지정 및 부적격 차량관리원에 대한 조치, 다)에서 업무수행에 현저히 부적격한 자가 있을 경우에 모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나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10월 모기관과 자회사 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기본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2조 안정적 성장지원),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4조 협의체 운영)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자회사에 대한 모기관의 지원사항이 추상적인 원칙수준에서 설명되어

있어 구체적 지원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적인 점,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시중노임단가 적용, 복리후생 지원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협의체 운영 역시 “협의할 수 있으며”라는 임의적 규정에 기초하고 있어 실행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일반관리비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이다. 운송매출의 급감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3.0%와 동일하며 이윤비율 또한, 전년도 7.0%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윤비율은 평균수준보다는 높지만 국가계약법상 최대 한도(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고객센터 1,000천원, 객실승무 1,9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4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은 없다. 일부 직종의 명절상여금이 증가하였고 식비가 기존 월 130천원에서 증가한 점,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및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내부

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수탁 관계로 인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모기관은 대외 공모전 상금 활용, 코로나19 대응 등 방역 및 설비 지원, 역사 입점 매장 대상 협력직원 이용할인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정부의 방침으로 자회사 설립이 불가한 상태인데, 이 같은 상황

에서도 업무 중 성희롱 등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심리치료 비용 지원 예산을 배정하는 등으로 열차 내 승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며, 안내방송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직원 선정 및 포상으로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여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유도한 노력이 인정된다.

-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구성원들의 참여율과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실비변상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급여산정지침, 여비지급세칙 등을 마련하고 코레일관광개발㈜는 복리후생에 차별이 없고 자회사 모두 사내 인트라넷 이용에 제한이 없으며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고 채용전형시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며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인정제도와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하며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제도화·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기관과 3개의 협력사는 모자회사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세부 실적 및 관련 자료를 제시 또는 제출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CEO 선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는 한국철도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해왔는데, 2021년 말에 기관 내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를 위해 3개의 협력사 임금체계에 따라 사업비를 상호 협의하여 설계하고 협력사별 연공중심 임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계약 갱신 시점에 전년대비 평균 4.9%p 이상의 용역비를 인상하여 시행했지만, 모기관과 3개의 협력사는 모자회사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표 수행을 위한 협력사의 임금체계 개선·권고·관리감독 등 권리·책임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협력사 임금체계 개선 등 세부 실적 및 관련 자료는 한국철도공사 보고서를 참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 철도발전위원회의 제언과 실천과제 실행을 위한 노사합의 후속조치로 노사공동실행기구 내에 노사관계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 내·외부 10명 이내로 노동이사제 분과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이사제 도입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가 알리오에 잘 공시되어 있다. 자회사 홈페이지에 알리오가 연동되도록 하여 자회사 운영 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향상을 도모했다고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할 결과 세부 공시항목을 클릭하면 알리오 메인 홈페이지 사이트로만

연결되어 해당 정보를 다시 검색해야 하므로, 정보접근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한 자회사는 정보공개 아래에, 다른 한 자회사는 국민소통 아래에 경영공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등으로 게시 방식의 형식적 통일성이 부족하므로 일관성과 관련한 개선이 요구된다.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별 세부 항목을 적정히 분류하고 이를 구조화하여 정보 제공하는 노력을 포함해,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공시정보 개선계획이 없는 점이 아쉽다. 자회사별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점검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총 평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2021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의 안정성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자본금 3억원을 100% 출자한 점, 시설유지보수 자재에 대한 구매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계약관행의 개선과 관련하여 단일 통합계약으로 전환 완료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하지 않은 점, 노무비 중 기본급에 대해서는 시중노임단가 대비 87.995%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에 지적받은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되나 계약서 내에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용역비를 감액하는 조항, 제출서류에 허위 과장이 확인될 시 모든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조항 등 과도한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노사공동협의회의 구성과 경영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0%, 이윤비율은 4.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240천원, 명절상여금 200천원, 식비 10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방재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윤비율을 적절히 조정하고 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수준을 감안하여 복지포인트 등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자격증 취득, 시험 등시 등을 위한 자기계발비 지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비정규직 채용사전 심사제 도입,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등 명문화,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에 관해서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용역직 근로자를 자회사 설립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8. 11. 자본금 3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은 기존 정관에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1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유통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고, '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모기관 정관에 명시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회사 정관에 위탁사업(서비스) 내용의 구체적 명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3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잉여금을 확보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3.0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과업지시서에 모기관의 자회사 자재 구입 관련 지원을 명시하였고, 매주 실무자협의회를 통해 자회사 필수 설비를 선정, 자회사와의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청소용품 및 시설유지보수 자재에 대한 구매 지원 등을 추진한 점과 자회사 과업수행을 위한 수선유지용 자재를 모기관 예산편성 시 '수선유지비'로 반영을 검토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향후에도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의 이윤을 모기관에 배당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공공기관 용역부문 자회사 통합 방침에 따라, 자회사 단일 통합계약으로 전환 완료(2019.3.1. 자회사 설립 시부터)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대금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익월 5일까지 자회사가 기성청구 자료를 제출하면 자회사 급여일(10일) 전에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총 소요기간을 7~9일로 유지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이점은 2021년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취지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산정되도록 용역비 산출 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 위탁계약 체결 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한 것이 확인되는바 일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의 낙찰하한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모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돌고 있는바, 연중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 100%를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모기관은 노무비 중 기본급에 대해서는 시중노임단가 대비 87.995%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모기관이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로 자회사의 비상무이사 2인을 선임하고, 주1회 실무회의 및 월 1회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업무공유를 진행하며, 모자회사 간 실무협의를 통해 자회사 직원 복리후생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이사회를 통해 수용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등의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현재의 논의 틀을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용역대금 지급 및 청구에서 퇴직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내용 중 센터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현장직원 결근 시 기성대금 지급을 감액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받았으나 개선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 그리고 모기관의 과업지시서 Ⅱ. 용역의 일반사항, 마. 기성검사에서 결원 시 상응하는 금액을 기성대금에서 감액 산출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용역의 완성과 관계 없이 기성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나항에서 모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 또는 개선요구에 불응한 경우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4. 책임 및 의무, 마항에서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에 허위, 과장이 판명되었을 시 모든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점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1월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경영협약서가 아닌 '대표이사 경영실적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대표이사 경영실적협약서는 협약의 목적을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성과목표, 권한과 책임 및 성과연봉을 포함한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명기하고 있어 자율경영을 위한 경영협약과는 성격이 다르며,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성과목표 설정 및 경영실적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와 평가, 대표이사의 보수 및 복리후생 등을 다루고 있어 경영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자회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기관의 지원,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모자회사 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등과는 상이한 협약이므로 별도의 경영협약서의 체결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이윤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윤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이윤비율은 4.0%로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9.0%와 동일하며 이윤비율 또한, 전년도 4.0%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

수준을 초과하여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0%)를 충족하는 수준이지만, 이윤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240천원, 명절상여금이 2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0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은 경조금 및 장례물품, 종합건강검진, 150천원의 생일/명절선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모두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자회사 노동자의 복지후생 증진은 어려운 상황인데, 자회사 설립에 따른 피복비, 식대 보조비, 복리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재실, 사무환경개선, 휴게실 환경개선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설립을 위해 검토 중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 등을 위한 자기계발비, 교육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인정된다.

-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구성원들에게만 교육비 등의 지원 혜택을 주기보다 전체 구성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심야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업무평가·근무태도 평가·능력개발평가 등 직원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승진·포상자 선정·저성과자 교육 등에 활용하며 연 1회 관리자 상향평가를 실시하여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채용제도,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비정규직 채용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의 CEO 선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신임대표이사 선발 시 모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공정채용 절차를 준수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차년도 평가자료 제출 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모집공고를 모기관, 자회사 홈페이지 외에 일간지, 채용사이트 등에 공개하는지 여부 등을 알기 쉽게 나타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단일한 직무급 제도를 설정하고 식대보조비와 직책·자격수당을 신설하고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등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회사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임금개선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관련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 또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노동이사제)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와 관련해 전년도 평가에서, 모기관 또는 자회사 홈페이지 개설 후 별도 게시판을 마련해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자회사

홈페이지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모기관 홈페이지에 알리오가 연동되도록 하여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 노력했는데, 모기관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할 결과 세부 공시항목을 클릭하면 알리오 메인 홈페이지 사이트로만 연결되어 해당 정보를 다시 검색해야 하므로,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모기관 홈페이지에 나타난 자회사 경영정보도 투자 및 출자 현황와 퇴직직원 현황정도에 한정되어 있는 등과 같이,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운영 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자회사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다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은행

총 평

○ 중소기업은행은 2000년에 설립되어 있던 자회사를 통해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한 바 있으나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모기관이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관련하여 자회사에 각각 자본금 30억원을 100% 출자하고, 근무공간, 회의실 확충 등을 지원하였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관행의 개선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지속적으로 통합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다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 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다수의 직종에서 '21년 노임단가가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밑돌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에 지적받은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 내 여전히 과업지시서 내 업무 보고서를 일·주 단위로 작성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조항 등 부당·불공정 조항이 존재하고, 노사공동협의회와 경영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4.5%, 이윤비율은 1.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이 기본급에 산입되어 지급되며, 모기관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한마음 행사비 등을 지원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훈련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배정하고, 2018년 7월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용역)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을 제정하며, 자회사 홈페이지에 일부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CEO 선발과 관련하여 대외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구체화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2000년에 설립되어 있던 자회사를 통해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한 바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0항을 보면, '기타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자회사 설립을 승인한 것이므로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 다만,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데 주된 목적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구체적인 업무위탁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인 IBK신용정보와 IBK서비스에 각각 자본금 30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중 IBK서비스는 현재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다소 높기 때문에,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IBK 서비스의 경우 자회사 설립초기 자회사 본사(IBK 답십리 지점) 무상 지원, 자회사 본사 이전 지원(근무공간, 회의실 확충 등), 자회사 본사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임차료, 관리비 등)을 자회사 예산에 신규 편성, 직군/성별 휴게공간 제공 및 비품(캐비넷, 수납장 등) 구매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정관에 영위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이 없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계약을 모자회사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상호간 노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다수의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모기관이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108개 계약(2019년)→40개 계약(2020년)→22개 계약(2021년)으로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노력은 인정되나, 여전히 다수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모기관이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익월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소요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을 받은바 있다. 이에 2021년도 계약 시에는 대다수 직종에서 해당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으나, 미화와 주차관리 직종의 경우에는 노무비 단가가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가 100% 반영되지 않은 점, 시중노임단가 인상이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다수의 직종에서 '21년 노임단가가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밑돌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한편, 모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적용 직종의 경우, 연도 말에 노임단가 인상분을 1/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중노임단가 연간 증가율을 계약금액에 반영한 부분에 관해 보고하고 있으나, 변경계약서나 계약금액 조정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위탁계약서 등에 소급 보전방식을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 시중노임단가 인상분 적용 결과 계약금액 조정 내역을 제시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모기관은 경비, 미화 등 단순노무직종과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 특정업무수행직종에 대해 노임단가 적정성을 판단할 때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로 비교하기보단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기관은 자회사 직종별 적정 노임 산정을 위한 시중노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직종에 따라서는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계약된 경우도 발견되므로,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에 모기관의 노동조합 간부의 참관 하에 자회사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가 선출되었고, 자회사 노사협의회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조속히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10개 지역본부합숙소 도급계약서 및 표준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내 계약해지 조항,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1인당 경비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책정된 도급비를 기준으로 차감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개선하였음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과도한 복무규율 관련한 다수의 조항(모기관에 착수신고서 제출, 제설작업의 실시를 상호협의 조항으로 변경, 경비대상 관련 업무 중 복무규율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하여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2021년도 계약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청소 관련 도급계약서에서 매일 청소상태 및 점검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의 개선여부는 본 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청소 관련 과업지시서의 특별청소에서 모기관이 재 청소를 명할 시는 시간·횟수에 불문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차례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긴급사항이 발생되어 시설물관리 담당자가 대기 지시하면 응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시설관련 과업지시서 내에서 업무보고서를 일·주단위로 작성하여 모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것은 자회사의 인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모기관과 자회사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거나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1년 5월 모기관과 자회사 간 '관리약정서'를 체결하여,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을 명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행합의서의 체결(제2조), 경영실적평가(제3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제4조), 사전협의(제5조), 보고사항(제6조), 감사(제7조), 해임건의(제8조), 임직원의 파견 및 겸직(제9조), 기타(제10조)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협약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협약서의 별도로 체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와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4.5%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이윤비율도 1.0%로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4.5%와 동일하며 이윤비율 또한, 전년도 1.0%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30천원이 기본급에 산입되어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은 경조금과 장례물품 지원, 120천원의 단체상해보험, 200천원의 근로자의날 선물, 일부 사업장에 월 130천원의 교통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이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날 격려품 지급비, 한마음 행사비(5월 가정의달 맞이 사은품 지급), 독감 예방접종비를 모기관과 같은 규모로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에게 모기관 학술연수 제휴 대학에 교육훈련 참여비용 및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배정하는 노력이 인정된다. 2020년에는 55,000,000원이고 2021년에는 78,000,000원으로 증액하여 근로자의 역량증대를 위한 지원제도를 둔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직원들의 업무관련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중 IBK서비스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사 관리직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역량평가 등 인사평가제도를 시행하여 보상·경력관리 및 역량개발에 반영하며, 2018년 7월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용역)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을 제정한 후 매년 2회에 걸쳐 정기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중 IBK신용정보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와 관련한 사항은 보고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IBK서비스가 출장비, 유류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하고 직군을 구분하지 않고 통일된 호칭을 사용하며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근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거로 제시한 규정 내용만으로는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의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이사회, 주주총회 등 제반 절차의 이행을 통해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임원선발 관련 절차를 내부인만 접근 가능한 경로로 진행하기보다 외부인이 접근 가능한 공개된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대외적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임원선발 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의 구성 비율 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중 IBK신용정보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와 관련한 사항은 보고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모기관이 보장한 당기 이익금을 재원으로 자회사 중 IBK서비스의 2020년도 및 2021년도 임금인상을 실시했고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노무비) 조정을 통해 실질임금을 보전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올해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

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관련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 또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와 관련해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또는 모기관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에 일부 경영정보가 공시되기는 했지만, IBK신용정보는 결산공고 및 감사결과만 그리고 IBK 서비스는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입찰공고 정보 위주로 게시되어 있어, 자회사 운영 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IBK신용정보는 자회사 홈페이지 공시&소식 게시판에 다른 일반 공지사항들과 주요 경영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며, IBK서비스는 입찰 및 공시 게시판에 게재되는 등 공시정보의 형식적 통일성과 내용의 체계화와 관련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총 평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관(제18조의2)에서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또한, 모기관이 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주요 시설물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 기준 명시(자회사 전가 예방) 및 실행 등을 추진한 점, 시설관리·청소·경비, 콜센터 운영 등 업무일체를 자회사 설립 즉시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고 유지한 점, 예정가격 책정시 직종별 노임을 100% 충족하고 있는 점, 임의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여 예정가격을 그대로 계약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본금 3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여전히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에 지적받은 부당·불공정조항을 개선하고,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 내 모기관의 자의적 기준으로 용역비 지급이 중단 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 등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4.9%, 이윤비율은 0.8%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4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중장기 능력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자회사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관(제18조의2)에서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모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고, '자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미화 및 경비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 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3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서에 적정자본금 출연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설비 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모기관의 미화, 경비, 시설장비 무상 임대, 통합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모기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교체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기준 명시(자회사 전가 예방) 및 실행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기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적자사업 이관, 흑자사업 회수 등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부당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기존 3개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 중이었던 시설관리·청소·경비, 콜센터 운영 등 업무일체를 자회사 설립 즉시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18.6.)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대금 지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자회사 요청시 선금을 지급(2021.3. 에 7개월치 지급)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여전히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3일 이내에 지급함으로써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100% 충족하는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어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계장치정비원 노임을 적용받는

직종의 경우 하반기 시중노임단가가 전기 대비 하락한 이유로 예정가격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점은 자회사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안정성과 통상임금 성격의 임금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임의로 낮출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예정가격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모기관이 노무비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감독자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무인력 노무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고 일반관리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운영 예산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노무비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립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모기관은 2021년 위탁사업 신규 계약 관련, 외부 전문가를 통해 면밀한 원가를 산출하여 적정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가격을 100%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임의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여 예정가격을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정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써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 100%로 결정되는바,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산정하려는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 조사·공표내용에 따라, 모기관은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일부 직종의 경우 전기 대비 시중노임단가가 하락하자 '하락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도 확인되는바,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이유로 종전 노임단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모기관이 전년도 평가 이후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자회사 경영협의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통한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모자회사 경영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2차례에 걸친 모·자회사 담담자 실무협의와 기관장 경영협약 체결을 거쳐 2021년 상, 하반기 각 1차례 모·자회사 경영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상과 같은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일부 내용이 모기관과 자회사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해제 및 해지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법률검토를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 그러나 모기관이 시설종합관리 과업지시서 제7조에서 용역업무 개시 7일 이내에 자회사 노동자 근무규정을 모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도록 한 점은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제9조 제3항에서 본 과업지시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결함사항이 시정되거나 지시사항이 완수될 때까지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고 한 점은 모기관 자의적 결정으로 용역비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고, 제14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에서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에 필요 없이 간섭하는 행위, 근무태만,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 음주, 도박 등 소란행위 금지와 같이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의 복무규율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모기관 시설종합관리 과업지시서 제26조 제2항에서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판명되었을 시 자회사가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고 한 점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연체관리 집중센터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과 인력구성과 제품개발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 위탁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5. 과업 수행 방법, 나. 과업의 착수에서 근무인원에 대한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과 연체관리 집중센터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에서 신규채용 및 해직을 서면으로 신고하게 한 점은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경영협약 체결 이후 지난해 평가단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경영협약서 유효기간을 연장한 협약서를 2021년 6월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협력사항 1),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2조 협력사항 2), 노동자 처우개선(제2조 협력사항 3),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2조 협력사항 4)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설비 이관,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임의적인 규정으로 명기되어 있어 실행력이 낮을 우려가 있어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와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은 0.1% 상승하였다. 인건비 및 간접비의 증가폭을 고려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4.8%에서 평가년도 4.9%로 0.1%p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0.7%에서 평가년도 0.8%로 0.1%p 상승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1,0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4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월 40천원의 교통비, 경조휴가 및 경조비, 단체상해보험, 종합건강검진이 제공되고 있다. 식비가 평가년도에 월 10천원 증가한 점과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 500천원의 특별상여금이 지급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정부지침에 따라 당기순손실 때문에 2002년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에 재원 부족 문제로 자회사와 기금 공동활용이 어려운 상태로 확인된다.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하기로 노·사 합의를 진행하고 2021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리후생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모기관 임직원들의 급여끝전떼기로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논의를 진행하는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중장기 능력개발 계획 수립 지원을 통한 체계적 교육계획 수립, 교육 예산 45% 증액을 포함한 계약 체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 전체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고 담당자도 법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다양한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충상담원 상담스킬 교육이 있는데, 고객의 고충뿐만 아니라 내부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상담원을 두고, 내부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운임, 출장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과 운영비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가 모기관의 편의·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소장 및 관리직원 채용시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회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기관의 편의·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채용시 외부위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에 반영

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경력인정제도, 근무평정제도 도입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규정을 개정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공개모집(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공고)을 원칙으로 하여 외부전문가 5인 이상의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공정한 임원 선임제도를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 회사에 대한 이해도, 모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연속성 등 직무수행 요건을 종합하여 선발기준을 정하고, 외부전문가 중심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으로 공정성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임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부서가 없어 모기관의 지원을 받았지만, 향후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에 숙련도에 따른 경력수당 지급, 주임·반장 수당 지급 및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후 지속적으로 직무급제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고 임의낙찰률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자회사 용역 예산을 별도로 편성 및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현재 자회사는 대표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이사회 구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이 요구된다.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운영지침(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 마련 준비 등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모기관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시 담당자를 지정해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으며, 모기관 홈페이지 경영공시 메뉴가 알리오에 연동되어 있지만 자회사 일반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퇴직직원 채용 현황 정보 제공에 한정되어 있어,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운영 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자회사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다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총 평

○ 태권도진흥재단은 2020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모기관 정관에서 자회사에 출자·출연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업무위탁의 근거 마련은 개선이 필요하다. 모기관이 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안정화를 지원한 점,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유지한 점,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자회사가 실행한 견적금액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본금 1.5억원을 100% 출자하였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서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2021년 예정가격은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에 지적받은 부당·불공정조항을 개선하고,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 내 자회사 직원의 연차휴가 관련 규율조항은 개선이 필요하고, 노사공동협의회도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3.0%, 이윤비율은 1.93%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750천원, 명절상여금 600천원, 식대 9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이 인상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기업컨설팅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고 직무 관련 교육 예산을 증액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일부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 정관(제4조)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출자·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 및 설립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기관은 정관 개정 추진을 통해 자회사 업무위탁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더구나 모기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였고,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업무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1.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

된다. 또한, 현재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과 자회사 간 위수탁계약서 제13조(사무실 등의 임대) 및 시설사용대차 계약서에 사무실, 휴게장소 등 공간 제공, 수도광열비 부담, 편의시설물 비용부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징지구 시설물 인수인계, 관리동 시설지원(네트워크 개선공사, 휴게실 구축사업 등), 자회사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안정화 지원 등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의 사업예산 및 사업을 이관하여 자회사의 이윤 지원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모기관이 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전에 위탁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가로 위탁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계약대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자회사 요청시 선금을 100% 지급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매월 분할 지급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이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평균 10일)하고 있는 점은 노력이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계약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산정하였는지 여부는 모기관이 제출한 자료 간에 내용이 상이하여 판단에 한계가 있다. 다만, 기관이 제출한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예정가격은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모기관은 향후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용역비 결정에 있어 현장감독자와 사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노무비 예산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2020년 공인 원가계산 기관에 의뢰하여 당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으로 정하고, 2021년에는 2020년 예정가격 대비 2021년 공무원 임금인상률(0.9%)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한 것이 확인된다.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 낙찰하한률 적용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산정하려는 모기관의 노력이 일부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연도 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하회하고 있는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한 모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즉각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자회사가 실행한 견적금액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모기관이 산출된 원가계산가격을 계약에 100%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모기관은 향후에도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경영협약서에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고, 운영 시 상호협력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안)을 준비 및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세부사항으로, 인원은 모·자회사 동수로 하고, 구성은 모·자회사 근로자 및 사용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회의는 연 2회(반기 1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활동과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 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위·수탁계약에서 채용시 일반 행정, 운영 및 시설분야의 학력과 경력기준을 제시한 점, 노사분규 시 모기관이 지정하는 별도 업체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점과 계약해지의 사유에 대하여 지적받고 개선한 노력이 확인된다. 또한, 모기관이 21년 연차 계약 시 불합리한 조항을 자율 시정하고 22년 계약 추진을 위하여 부당·불공정한 계약조항을 검토 및 협의하고 개정안을 마련한 노력이 인정된다.

- 모기관은 위·수탁계약서 제21조 제4항에서 자회사의 휴가(여름휴가 등)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자회사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모기관이 적접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위탁계약서의 부속문서로 경영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 2월 별도의 경영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목적, 제3조 협력분야),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협력분야),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4조 공동협의회 설치·운영)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경영협약에 규정된 모회사의 지원 내용이 매우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자회사의 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협약서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이 위수탁 계약기간에 연동되어 있어 안정성이 낮을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와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모기관의 예산 감액과 매출액 감소 등의 어려움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3.0%와 동일하며 이윤비율도 전년도 1.93%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

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750천원, 명절상여금이 6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9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60천원의 명절선물, 50천원의 격려금이 제공되고 있다. 평가년도에 복지포인트 125천원, 명절상여금 100천원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과 명절상여금과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국고보조금 사용 및 정산기준에 따라 잔여 예산을 전액 국고 반납 처리함에 따라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추후 여건이 되면 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용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기업컨설팅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 컨설팅 2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노력하였다. 직무 관련 교육 예산을 2021년에 1인당 217,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직무분야별 직무매뉴얼 및 업무방법서를 제작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직무능력 강화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교육훈련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비대면 교육체계의 효율성 확보와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모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태권도원 체험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내 인트라넷 사용에 차별이 없고 통일적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부서별 추천 직원에 대한 공적조서를 검토·심의하는 방식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보수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력환산표에 따라 경력 환산액을 추가하여 신규 입사자의 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경력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반영하여 승진자를 임용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채용전형시 외부위원 참여를 명문화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가 인사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준용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회사 인력 투입 계획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회사 인력 투입 계획에 관한 논의이지 사전에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대표이사 공개채용을 위한 제도화를 진행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시 자회사 요청사항에 대해 모기관이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임원선임 관련 절차 진행 상황의 공개를 통해 대외적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공정성 중심의 임원선임 절차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절차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자체 예산에서 자회사 처우개선비(629백만원)을 편성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 NCS기업활용 컨설팅(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실시했으며 사무총장 주관 자회사 운영개선방안을 협의하여 기본급 편성을 조정하고 직책·자격수당을 신설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적용을 검토하였으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에 대한 별도 운영기준 수립을 예정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고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에 일부 경영정보가 공시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채용, 구매 및 계약(입찰), 재무상태표 및 결산결과 등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회사 운영 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경영활동을 일간지를 활용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결산정보 등을 제외한 경영정보는 대국민 접근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홈페이지에 공시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만을 위한 독립 탭이나 게시판을 신설하면 관련 정보의 체계적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총 평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 0.25억원, 0.48억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이지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2.6%,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5.3%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와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하고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업무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25억 원, 0.48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여 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업무수행메뉴얼에 장비 및 시설 제공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휴게실 무상 임대,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간이침대, 정수기, 냉·난방기 지원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장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실적)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업무 특성상 필수적인 주요 설비(장비)는 상당히 이관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 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

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 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다거나,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온 점이 인정되며,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 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존 용역계약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위수탁계약서, 과업지시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 받았다. 모기관이 제출한 보안관리 업무협약서는 공동출연연구기관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세부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과업지시서를 대체하는 업무수행 매뉴얼을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나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 시설관리 공동출연연구기관 업무협력 협약서에서는 모기관과 자회사 간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동자회사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다른 자회사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이 높지 않으며, 자회사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감소되었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의 특성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았다. 일반관리비 감소가 출연기관의 확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모기관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시설관리단이 전년도 3.35%에서 평가년도 2.6%로, 보안관리단이 전년도 6.9%에서 평가년도 5.3%로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비, 200~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 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및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

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질적 진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공시항목 확대 등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공항공사

총 평

○ 한국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3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모기관 정관에서 자회사 설립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별로 16~20억원을 100% 출자한 점,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필요 공간 무상 제공 및 필수설비 유지비용(차량비, 차량 렌트비용 등 포함)을 지원하고 있는 점, 노무비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평가대상 기간 중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 월별 선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예정가격의 9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에 지적받은 부당·불공정한 조항과 기타 사항을 발굴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계약서 내에 운행일지를 일일보고 하도록 하는 조항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노사공동협의회를 조속한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0%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이윤비율은 전년도에 보장해 주지 않았던 것에서 1%로 상승하였으며,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8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항공보안파트너스㈜ 400천원), 식비는 130원/월이 기본급이 산입되어 지급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적정한 이윤비율을 보장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모기관 전문인력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회사 중 2개사가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모기관 제공 노사합동 직제개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논의하며, 자체 홈페이지가 없었던 자회사에 홈페이지를 신설하였으며, 몇몇 추가 항목이 공시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3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현장인력 4,400여명을 고용하였다. 모기관 정관(제2조의2)에서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모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위탁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의 자율경영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회사의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세 곳에 각각 자본금 20억 원, 16억 원, 16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20년 기준으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매우 낮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회사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필수 설비와 장비를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모기관과 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모기관은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종료 전 협력업체 보유자산에 대한 사전조사와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필수 설비 등의 원활한 인수 지원, 고소작업차, 제설차, X-RAY 검색대 등 필수 설비의 모기관 구매 후 무상 지원, 사업장 내 사무실, 휴게실, 탈의실, 창고 등 과업수행을 위한 자회사 필요 공간 무상 제공 등을 추진한 점과 필수설비 유지비용(차량비, 차량 렌트비용 등 포함)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또한, 모기관 자산(장비, 차량 등)에 대한 자회사 무상대여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관자산에 대한 인수비용 일괄 반영 및 신규 취득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반영한 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를 체결(2021년 11월)하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정관상 이익금(이윤) 처리규정 신설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권역별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평가대상기간에는 이를 개선하지 않고 6개 권역별 통합계약(2020년~2021년)을 유지하였다. 모기관이 2022년부터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3개 자회사별 1계약)한 노력이 인정되나 평가대상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모기관은 단일통합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대금 지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선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이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5~6일)하고 있는 점은 노력이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용역원가에 명목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직종별 노무비 원가를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그대로 예정가격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이 시중노임

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과 현장감독자 인건비를 직접노무비에 계상한 점 등은 자회사 노무비 예산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모·자회사 업무협의체 및 자회사 근로자 현장 인터뷰를 통해 자회사 측 의견청취의 기회를 갖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예정가격 및 낙찰률 산정 등 계약금액 산정이 합리적인지 연구용역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화 등 단순노무종사원의 2022년 예정가격이 2021년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한편, 그 외 직종의 노임단가도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산정하려는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공항운영, 시설관리, 미화직종 등에 대해 노임단가 적정성을 판단할 때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가 아닌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기관은 자회사 직종별 적정 노임 산정을 위한 시중노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단순노무종사원 중 미화직종의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 100%을 약간 하회하고 연중 계약변경을 실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된 반면 미화직종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9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을 개선한 것이나,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이 낙찰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 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주요 현안 공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월 1회 자회사 경영진과 경영진 간담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021년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모기관은 모·자회사간 협력을 통한 자회사 계약제도, 경영관리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월 1회 모기관 및 자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경영 실무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021년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모기관은 자회사 현장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안전관리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월 1회 분야별 현장점검회의를 운영하였고, 2021년 총 25회 시행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2021년 25회에 걸쳐 자회사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현장 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상과 같은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이 전년도에 과업내용서에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무실 무상사용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과 결원을 기준으로 감액을 전제하는 점을 지적받고 개선한 노력이 확인된다.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도 일반과업내용서의 부적절한 해제·해지 사유 1건, 특수과업내용서의 경영·인사권 침해 조항 1건을 개선하였고, 6건의 부당·불공정 계약조항을 발굴하여 22년 계약 시 개선조치 하였으며, 기존의 모회사 주도의 계약방식을 모자회사가 공동대응하는 계약방식으로 변경하고, 행정처리를 간소화하는 등 기존의 용역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기관 공항운영·시설관리 특수과업내용서 2-2. 장비정비, 제3조에서 장비(차량 등) 운행일지를 일일 보고하도록 한 점은 용역계약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이 부당·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를 발전시키고,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자회사 간 소통 활성화, 구성원 인식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경영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11월 수정된 경영협약서를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자율책임경영),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상생발전, 제6조 업무발전), 노동자 처우개선(제5조 자회사 근로자의 복지증진),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3조 상생발전)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 근로자의 처우개선, 공동협의회 구성 등의 사항이 거의 대부분 “노력한다”로 되어 있어 협약 내용의 이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이윤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이윤비율은 전년도에 보장해주지 않았던 것에서 1%로 증가하였다. 항공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적자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9.0%와 동일하며 이윤비율은 전년도에 보장해주지 않았던 것에서 1%로 증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을 초과하며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0%)를 충족하고 있지만 이윤비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8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항공보안파트너스 4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30천원이 기본급에 산입되어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물품, 월 110천원의 교통비, 단체상해보험, 250천원의 건강검진비, 하계휴양소 등이 제공되고 있다. 평가년도의 복리후생 예산 증액과 복지포인트 및 식비의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 충족은 긍정적이지만,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과 일부 자회사의 명절상여금 수준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 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무 여건이 악화하고 모기관 직원의 복리후생 제도도 축소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자회사 근로자 복리후생제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교통비(11만원/인), 기념품비(15만원/인), 건강검진비(25만원/인) 등을

지원하고 상생협력비, 상생프로그램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 내용이 확인된다. 모기관의 경영 정상화 이후 이해관계자의 동의 하에 모·자회사 공동기금 출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모기관의 전문인력, 인프라 지원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자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CS리더 양성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참여 인원 확대, 고객만족센터(콜센터) 근로자의 직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근로자 사기 진작 도모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종사원 포상을 연 2회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되며, 외부전문가를 통한 인사/노무분야 역량강화 지원(2021년 9월, 2021년 11월), 감사기구 역량 강화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한 업무컨설팅 및 교육 지원(2021년 4월~2021년 11월), 자회사 사이버 보안실태 점검 및 전산프로그램 개선 컨설팅 지원(2021년 12월), 모·자회사가 함께하는 공항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후 교육 효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중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가 출장 여비 또는 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 또는 보수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의 직장어린이집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자회사별 자체 인트라넷 사용에 차별이 없으며 직위 및 직책에 따른 호칭을 사용하고 채용을 위한 서류 및 면접시험에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포상제도를 운영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회사 중 KAC공항서비스㈜와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종합근무평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실적이 있다. 또한, KAC공항서비스㈜는 2021년 2월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지침」을, 항공보안파트너스㈜는 2021년 7월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를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근무평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일부 자회사가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계약직 채용계획을 승인하는 형태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완하며, 아직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은 자회사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임원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후보자 심사 및 검증 기준을 강화하여 해당 고유분야에 대한 근무경력과 역량을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으로 공정한 임원선발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낙찰률 지속적 인상 및 이윤 신규 반영을 통해 자회사 추가 인건비 및 임금체계 개편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노무사 등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를 통해 상시 컨설팅을 제공하며 모기관 제공 노사 합동 직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KAC남부서비스㈜의 변형직무급제를 직무직능급제로 개선하거나 노사 합동 임금체계 통합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부공항서비스㈜의 고용승계자와 신규채용자간

이원화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통합 후 개편방안을 마련하며 항공보안파트너스㈜의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의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중장기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경영진, 근로자가 참석하는 노사관계 개선 워크숍을 개최하여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정의 및 도입 시 기대효과를 논의하고 타 기관 도입 사례를 공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워크숍 논의 결과 자회사의 임금(직제)체계 개선, 현장 운영(안전관리 등) 안정화, 노사관계 정립 등 회사 경영 안정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중장기적으로 도입 검토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자체 홈페이지가 없었던 자회사에 홈페이지를 신설하였으며, 몇몇 추가 항목이 공시에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시된 경영정보 항목이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임원 현황, 자본금 및 주주현황, 감사보고서, 계약 정보 등에 국한되어 다소 미흡한 편이며, 자회사간 경영정보의 내용과 형식이 상이하여 일관성있는 정보제공 노력이 요구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지만,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뿐만 아니라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개선 계획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총 평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 0.3억원, 0.84억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2.6%,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5.3%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업무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3억 원, 0.84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자회사가 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여 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업무수행메뉴얼에 장비 및 시설 제공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진공청소기, 왁스기계, 순찰차, 무전기 등 미화·경비 업무의 주요 설비(장비) 이관, 사무실 무상 임대,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간이침대, 정수기, 냉·난방기 지원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 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다거나,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온 점이 인정되며,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존 용역계약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위수탁계약서, 과업지시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 받았다.

- 모기관이 제출한 보안관리 업무협약서는 공동출연연구기관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세부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과업지시서를 대체하는 업무수행 매뉴얼을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나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모기관 시설관리 공동출연연구기관 업무협력 협약서에서는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동자회사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다른 자회사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이 높지 않으며, 자회사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감소되었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의 특성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았다. 일반관리비 감소가 출연기관의 확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모기관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시설관리단이 전년도 3.35%에서 평가년도 2.6%로, 보안관리단이 전년도 6.9%에서 평가년도 5.3%로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비, 200~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 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및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질적 진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공시항목 확대 등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총 평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 0.2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2.6%,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5.3%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업무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 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204억 원, 0.196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여 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업무수행메뉴얼에 장비 및 시설 제공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진공청소기, 왁스기계, 순찰차, 무전기 등 미화·경비 업무의 주요 설비(장비) 이관, 사무실 무상 임대,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간이침대, 정수기, 냉·난방기 지원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 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 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 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다거나,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온 점이 인정되며,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므로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다. 모기관은 보안관리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 간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사업소별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 즉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 시설관리 공동출연연구기관 업무협력 협약서에서는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었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시설관리단이 전년도 3.35%에서 평가년도 2.6%로, 보안관리단이 전년도 6.9%에서 평가년도 5.3%로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비, 200~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 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및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

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질적 진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공시항목 확대 등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관광공사

총 평

○ 한국관광공사는 자회사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법과 모기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위탁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이 자회사에 필수적인 소모성 경비 전액 실비를 지원한 점,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9개 계약을 유지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예정가격이 환경·미화 등의 직종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하는 수준인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점, 부당·불공정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204건의 조항을 발굴하여 개선 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 내 경비일지 제출, 이력서 제출 등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5.0%, 이윤비율은 10.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및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모자회사 합동교육 등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며,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며, 공시항목을 15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선정기준과 권한 등을 구체화하고, 정기공시와 수시공시의 세부 항목을 적정히 마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에서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내용을 모기관 정관 제42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이같은 법률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만으로는 자회사 설립 및 업무 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이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을 사내유보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과 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서 제3조(안정적 성장 지원)와 4조(처우개선 지원)에 자회사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재료 및 자재 등에 대한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노력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구·기구·비품 및 소모품 지원, 자회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소모성 경비 전액 실비 지원, 추가적인 설비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모·자회사 간 상생협의회를 통해 지원하기로 경영협약에 명시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를 체결(21.11.23)하여 부당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예산 출처와 회계가 동일한 경우에도 통합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9개 계약으로 통합하여 운영 중이다. 모기관이 계약절차 및 기준 표준화, 단일 원가조사업체를 통한 원가산정 기준 통일 등의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나, 향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용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되어 있고, 자회사가 안정적으로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회사 월급일인 28일 이전에 용역 대금을 지급 중인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평균 5.8일)하고 있는 점, 특히 지급 소요기간을 전년 대비 4.7일 단축한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예정가격은 일부 직종에서는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으나, 환경·미화 등의 직종의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모기관은 향후 모든 직종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예정가격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한편, 모기관이 노무비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감독자 인건비 항목을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무인력 노무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고 일반관리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운영 예산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노무비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립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시설관리·안내상담·경비/미화 등 계약금액의 합리적 책정 관련,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합리적으로 예정원가를 산출하고, 특히 노무비는 매년 1년 단위의 계약 체결 시 시중노임단가(낙찰률 적용 기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노임단가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위해 모기관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체결 중에 있는 계약금액이 연중 시중노임단가(낙찰률 적용 기준) 변경 금액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에도 계약변경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낙찰률 100%에도 불구하고 노무비 관련 예정 원가가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고 있어, 연중 계약변경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자회사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한 모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득이 시중노임단가를 낙찰률 적용 기준으로 반영할 경우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이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의 일정 비율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3분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회의 시 2022년 계약 및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권고사항 등 공동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모기관은 공사-KTO파트너스 노사공동 상생협의회를 공사 및 KTO파트너스 노사 실무대표 4명으로 구성하고, 자회사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협의회 부대표를 당연직으로 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공사-KTO파트너스 노사공동 상생협의회를 분기별 1회씩 총 4회 개최하였으며, 논의안건 12건 중 9건을 이행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회의 시 이전 회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는 등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이 전년도에 원주사옥과 서울센터 세부과업 내용서에서 자회사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경비, 미화, 시설관리 관련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받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노력이 확인되며, 모기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먼저 자회사를 대상으로 개선·삭제를 희망하는 조항을 취합하고, 모자회사 간 협의를 통해 21년 계약시 204건의 부당·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 서울센터 과업내용서 10. 경비, 차항에서 경비책임자에게 구체적으로 경비일지를 기록하고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제출·확인 받도록 한 점, 건물종합관리용역 과업내용서 17. 점검보고서, 기록에서 매일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보를 다음날 오전 9시 30분까지 제출토록 한 점, 31. 종업원의 선정 및 배치 가항에서 전 종업원의 이력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점, 제주지사 및 중문골프장 과업내용서, Ⅴ. 중문골프장 코스관리 용역, 5. 업무계획 및 보고서 작성에서 과업수행자의 이력사항을 제출하도록 한 점과 일일 작업일지를 매일 제출하도록 한 점, Ⅶ. 중문골프장 시설관리용역 과업내역서, 5. 업무연락 체계 사항에서 매일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보는 다음날 오전 9시 30분까지 공유하도록 한 점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 서울센터 과업내용서 10. 경비, 타. 경비원의 복무수칙에서 성실한 자세, 누구에게나 친절, 인격의 향상도모, 건강관리, 예의 바르고 정중한 언어와 태도, 복장 단정, 바른 몸가짐, 상호 신애와 기풍 조성과 11. 안내, 가항에서 친절과 예의, 최상의 서비스, 청결과 품위있는 행동, 반드시 청결을 유지하고 내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지나친 화장 금지, 잡담을 하거나 신문·휴대폰·인터넷 등 보아서는 안되며,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상대방 얼굴 주시토록 한 점과 건물종합관리용역 과업내용서 13. 경비, 자항에서 근무시간 중 술을 마셔서는 안되고 모기관 간부 승하차를 도우며 예의를 갖추도록 한 점, 14. 안내, 가항에서 청결과 품위있는 행동으로 안내, 내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와 같이 자회사 노동자의 복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1월 ESG 경영, 부당관행 금지를 포함하여 다시 체결하였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자율성·독립성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적 성장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제4조 처우개선 지원),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제5조 공동 이익 증진 노력)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시중 노임 단가보다 낮게 적용하지 않도록 노력” 하도록 한 점,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관리비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이다. 모기관의 적자상황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5.0%와 동일하며 이윤비율도 전년도 10.0%와 동일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윤비율은 평균수준을 초과하여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0%)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30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

으로 월 50천원의 교통비, 180~280천원의 건강검진비, 모기관 시설의 공동이용 등이 제공되고 있다. 평가년도에 교통비가 신설된 점,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및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2019년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모기관 직원들이 조성한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성과급 반납 재원'의 50%인 약 256백만원을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였으며, 매년 자회사 당기순이익 중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5% 금액의 추가 출연을 통해 기금을 공고함으로써, 현재 자회사 직원 생일축하금(3만원) 및 휴가비(10만원) 등을 지급하는 등으로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의 교육훈련사업 운영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모기관 내에 자회사 교육

훈련 전담부서 및 인력을 배정한 노력이 인정되며, 교육훈련 예산을 7,000,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예산지원 내용을 경영협약서에 명문화하며, 모자회사 합동교육, 강의실 지원, 교육 영상 및 교육자료 적극 공유 등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효율적인 교육훈련과 커리어 증대를 위해 노사공동워크숍을 진행하고, 필요시 추후 전담인력을 수시로 지원 예정하고 있는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설계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다음 교육훈련 계획 구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교육영상 등을 시청한 후에 학습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여비, 일비, 숙박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의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직무의 특성 등이 반영된 호칭을 사용하고 포상기준에 따라 정기포상 등을 운영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평가·역량평가·업적평가 등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한 실적이 있다. 또한, 2020년 8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고 인사부서에서 비정규직 채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채용 시 외부위원 참여 등을 명문화하고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력인정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등 심사를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한 CEO 선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20년 8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한 노력이 인정된다. 2021년 1월 15일 2021년 1차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 및 감사 선정방식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으로 공정성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CEO 선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집 시 공고를 외부인이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에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정부 정책·자회사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회사 인사제도를 설계한 후 자회사에서 임금체계와 관련한 자문이 있을 경우 모기관 노무팀과 연계된 노무사를 통해 자문을 지원하고 이사회 의결로 자회사 보수규정 개정을 지원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관제를 ’20년 8월에 도입하여 ‘20년 4차 이사회를 시작으로 ’21년 서면결의와 직접 참관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전년도 평가에서 이사회에 참관하는 근로자대표의 선정기준과 권한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의 명문화와 구체화 등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필요성이 전년도 평가에서 언급되었다. 이전 자회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게시판에는 일반 현황, 운영 상황, 경영성과 등을 포함하는 10개 항목이 공시되었던 반면, 새롭게 개편된 게시판에는 이에 더해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을 포함하여 15개 항목으로 확대되는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의 세부 항목을 적정히 마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국제협력단

총 평

○ 한국국제협력단은 2021.12.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모기관이 필수설비 매각을 통한 자회사 필수설비 소유권 이전 등을 추진한 점, 기존의 22개 개별계약을 1개의 단일계약으로 통합한 점, 분기별 선지급으로 대금 지급방식을 변경한 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한 점, 현장감독자 및 사무인력 인건비 항목을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6.92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예정가격이 미화·객실·세탁 직종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부당·불공정 조항 제로선언을 통해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 내 전년도 지적사항을 평가대상 기간 내에 개선하지 못한 점과 여전히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4.7%, 이윤비율은 4.0%로 전년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00천원의 상품권, 식비 132천원/월을 지급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직급·직무별 역량개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기관과 유사한 정도의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인사규정에 채용사전심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후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발언권을 보장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전년 대비 14개 항목을 확대하여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을 세우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기존 정관에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1.12.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협력단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5조 상의 사업 수행 지원 및 협력단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업무를 출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회사 정관에 위탁사업(서비스) 내용의 구체적 명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6.92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자본금을 상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려운 바,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용역계약서에 근로환경 등 개선을 명시하고 적정자본금 출연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필수 설비 및 사무기기 임대료 감면, 파견·용역근로자가 사용한 모기관 행정자산 렌탈비 감면, 자회사 본사 이전에 따른 임대료 감면, 필수설비 매각을 통한 자회사 필수설비 소유권 이전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2월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익 미배당을 의결하여 2021년 까지 4년간 배당을 하지 않는 등 모기관의 노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며,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2020.8. 기존의 22개 개별계약을 1개의 단일계약으로 통합하였고, 이를 통해 계약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계약관리 투입인력도 대폭 감소시킨 성과가 인정된다. 또한, 모기관은 업무별·부서별로 담당하던 사업계획 수립방식을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모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계약업무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모기관은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이 2020.8. 분기별 선지급으로 대금 지급방식을 변경한 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모·자회사가 용역대금 청구절차에 대한 행정적 비효율을 인식하고, 인건비 통합시트 작성, 경상비 별도규모 산정, 과업별 투입인력 조정 등에 합의하여 이를 통합계약에 반영하는 등 계약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서 종전에는 청구일로부터 10일이 소요되었으나, 분기별 선지급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자회사 보수체계에 시중노임단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추정가액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은 대다수 직종에서는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지만, 미화·객실·세탁 직종의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모기관은 향후 모든 직종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예정가격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이 노무비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감독자 및 사무인력 인건비 항목을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 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직무급표에서 시중노임단가 낙찰률(88.81%) 이상이 준수되도록 노임단가를 정하는 한편, 5개 직종을 각각 6단계로 세분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직종별 시중노임단가의 적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고 시중노임단가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모든 직종의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 직종 별로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모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의 일정 비율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이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인권경영 계획, 혁신이행계획, ESG 전략 등 모회사 주요 전략 내에 자회사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 과제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모기관은 KOICA 「2021년 혁신계획」 45대 과제 중 '출자회사 상생협력 제도개선 공동 이행' 과제를 포함하여 자회사 처우개선노력 및 연중 이행 점검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모기관은 2020년 하반기 1회, 2021년 상·하반기 2회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반기별 정기 개최하여, 경영협약 개정 논의 등 협의, 보고, 의결 안건 등 체계적 운영 안착을 위해 노력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이 전년도에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평가대상기간 내에 개선하지는 못하였다.

- 모기관이 부당·불공정 요소 제로 선언을 통해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상의 신규 채용 및 해직보고, 인적사항 통보, 모기관이 요청하는 업무 포함, 노무비의 구분 및 지급, 업무보고,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기관 시설종합관리(성남) 과업지시서 제1장 총칙, 6. 계약 개시 후 제출자료와 제3장 인력관리, 1. 업무근로자에 대한 책임 및 채용에서 자회사

노동자의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6월 모기관과 자회사 간 경영협약 체결 이후 지난해 평가단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6월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개선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기본원칙, 제3조 상호 역할 및 경영개입 제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9조 서비스 역량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5조 수의계약 보장, 제8조 공동 근로조건 개선), 모자회사 공동 이익증진(제7조 업무협력)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에서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외의 시설 이관 등의 지원 항목이 부족하고, 공동근로조건개선 항목은 대부분 ‘노력한다’, ‘검토한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실행력이 낮을 우려가 있다. 또한,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 측면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모기관의 구체적인 노력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1.4%에서 4.7%로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3.0%에서 4.0%로 증가하였다. 자회사 과업의 일부가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면 개선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1.4%에서 평가년도 4.7%로 3.3%p 증가하였으며, 이윤비율도 전년도 3.0%에서 평가년도 4.0%로 1.0%p 증가하였지만,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와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식비가 월 132천원 지급되고 명절상여금으로 100천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500천원의 자기계발비, 120천원의 건강검진비,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모회사 시설 공동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년도에 모회사 시설을 자회사노동자에게 개방한 점, 복지포인트와 식비가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명절상여금 수준이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자회사 노동자의 복지후생 증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모자회사 노사협의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인건비에 대한 타 자회사와의 비교, 일반관리비 내 항목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행정역량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직무별 역량개발 전문교육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모·자회사의 노사공동 '경력개발계획(CDP)'구축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 효과의 증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교육훈련비 예산을 전년 대비 8.5% 증액 배정하고 모회사 교육운영 노하우 전달 및 적극적 지원으로 모회사에 버금가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원 및 지원을 지속하는 노력이 인정되며, 코이카 전문가를 활용한 직무전문성 강화 교육 심화뿐만 아니라 청렴, 인권 등 직무의 기본이 되는 의무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직원들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출장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국내여비 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체력단련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서류 전형과 면접전형에 외부 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역량평정과 업적평정 등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한 실적이 있다. 또한, 인사규정에 채용사전심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사전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사담당부서가 비정규직 채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채용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시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자회사의 여건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경력인정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한 노력이 인정된다. 임원 임기 연임제도 도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등으로 임원선발제도를 개선하여 자회사 임원의 경영성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임기가 2022년 3월에 종료되는데, 이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해 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및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등으로 임원 선발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대상을 기존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하고 자회사 정관에 성과급 지급 근거를 명문화하였으며 자회사 임원 성과급 지급 비율을 축소하고 동 재원으로 준정부기관 성과급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직원에게 지급하고 시설관리직은 2020년도 시중 노임단가 낙찰하한율 적용 금액 대비 0.617%를 상회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일반직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강화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관제를 '20년 8월에 도입하여, '20년 12월부터 '21년 11월까지 총 7회의 이사회에 근로자대표가 모두 참관하였으며 2회 제언하는 등으로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성과가 인정된다. 전년도 평가에서 이사회에 참관하는 근로자대표의 선정기준과 권한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발언권 보장으로 근로자 의견수용 창구를 구축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인정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필요성이 전년도 평가에서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 정관 개정을 통해 재무상태표 및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였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전년 대비 14개 항목의 경영공시를 확대하여 일반 현황, 운영 상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을 포함한 18개 항목에 대해 분기별로 경영공시를 실시하는 등으로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연 1회 정기공시 10개 항목, 분기별 정기공시 2개 항목, 수시항목 5개 항목, 정기 및 수시공시 1항목 등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려는 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총 평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9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자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의 근거 마련은 충분하지 않다. 모기관이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한 점, 전년도 지적에 따라 월별 분할지급 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하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필수설비의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낙찰률 92.25%를 적용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모자 협의체내 근로자대표로 확대 하여 운영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이나, 계약서 내 채용자격기준을 신체건강한 자, 모기관의 자의적 기준에 기초하여 대가지급을 유보하는 조항이 존재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5.0%, 이윤비율은 10.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30천원/월(간식비 포함)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부족을 감안하여 모기관 휴게공간 자회사 공유 등을 통해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다양한 유형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재취업 관련 사전심사 및 공시 관련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2022년 자회사 내부규정 재정비 컨설팅을 위한 예산(예산 1,000만원)과 인사평정 시스템 컨설팅을 위한 예산(예산 1,400만원)을 확보하며, 공시항목을 확대하여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영협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구체화하여 명문화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2019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를 명시하게 되었다. 모기관 정관 제37조 제3항을 살펴보면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의 사업 또는 법인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의 원활한 수행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 또는 자회사 설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을 보면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 다만, 정관의 해당 조항만으로 자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의 근거와 업무위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발생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회사의 자본금 증액 등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모기관이 구입한 주요 설비의 자회사 이관, 공간정보연구원 신축 사옥에 승용형 잔디깎기 구입 예산 배정, 탑차 구입 검토, 자회사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회사의 정관에 설립 후 5년 간 배당을 금지하고, 국가계약법의 최대 이윤배분 보장(10%) 및 계약금액 증가(19년 40억 원 → 22년 70억 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0.8)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시설유지관리용역의 단일통합계약, 수의계약으로 자회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외부 교육생 운송 사업, 구내식당 운영 등 추가적인 사업 이관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단일 통합계약의 형태로 추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2021.1)한 노력이 인정된다. 한편, 모기관이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평균 8일)한 노력도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해진 직종별 노무비 단가가 환경미화를 제외한 직종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해지는 점과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에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노임단가 산정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낙찰률의 개선에 관한 지속적 논의를 통해 향후 낙찰률 100% 적용을 앞두고 있는바,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및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가격 100% 반영에도 불구하고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기준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바,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직종의 경우 전기 대비 시중노임단가가 하락하자 하락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노임단가가 변경된 내용도 확인되는바,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이유로 종전 노임단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92.25%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러한 낙찰률은,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던 수준으로, 모기관은 지난해의 낙찰률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이 2022년 신규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100%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상,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모·자회사간 상호협력적 관계 조성을 위한 모·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모·자협의체부터 참여 대상을 모자회사 근로자 대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 자회가 근로자 복지, 자회사 근로자 교육 등 자회사 성장지원을 위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 노사 상생간담회를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과업지시서 중 전출 관련 모기관 동의 징구와 주차관리 업무 중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응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기관 동의 징구는 사전 협의로 변경하고, 발주자 지시사항 이행 의무는 삭제한 노력이 확인된다.

- 그러나 모기관 시설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제9조 자격기준, 가항에서 공통 자격을 신체 건강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 건강한 자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장애인 차별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용역특수조건 제11조 제4항에서 자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위반, 위법이 발생할 경우 대가의 지급은 없고, 조건에 부합될 때까지 용역수행은 자회사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측면이 있고 모기관이 자의적으로 조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6월 모기관과 자회사 간 경영협약 체결 이후 지난해 평가단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12월 필수설비 이관 등을 포함하여 개선한 협약을 체결했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제4조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노력, 제6조 주요 설비의 자회사 이관),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를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관리비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5.0%와 동일하며 이윤비율도 전년도 10.0%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이윤비율은 평균수준을 초과하고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0%)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1,0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30천원(간식비 포함)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특수건강검진, 185천원의 명절선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및 식비가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내부 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부족으로 이를 활용한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어려워 자회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실무교육(2021.11.30.)과 2022년 내 자회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자회사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모기관 휴게공간의 자회사 공유, EAP 프로그램 자회사 노동자 확대 적용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교육훈련 및 경력 경로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체계에 따라 자회사 직원의 직무 및 필요 역량을 조사하고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이다. 자회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모기관 각 부서 전문가와 관리부서 직원이 참가하는 모자회사 공동워크숍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직무별 개인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상생 협력 프로그램, 자동화 설비 교육, PLC 제어 교육, 자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과 인권 교육, 자회사 용역근로자 근로감독 사전준비 교육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원 예산을 2020년 6,295,000원에서 2021년 9,345,000원으로 전년 대비 48.5% 증액 배정한 노력이 인정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운임, 숙박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 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내식당과 체력단력실을 이용하며 자회사 별도의 인트라넷을 차별 없이 이용하고 직책이 부여된 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일적 호칭을 사용하며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시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21년 12월 경영협약서에 자회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도입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채용 시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력인정제도와 근무평정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협약서에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체 운영방안에 따라 채용한다”라며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구체화하여 제반 규정에 명문화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와 관련한 인사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개선 권고안을 반영해 2021년 12월 20일 재취업 관련 사전심사 및 공시 관련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취업 관련 공정성을 제고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사규 통합 컨설팅(2022년 예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으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컨설팅을 통한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신설의 신속한 진행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임원선발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 공개된 경로를 통한 모집공고를 진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추천위원 대비 50% 이상으로 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2년 자회사 내부규정 재정비 컨설팅을 위한 예산(예산 1,000만원)과 인사평정 시스템 컨설팅을 위한 예산(예산 1,4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자회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명절 상여금 연간 80만원에서 연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분기별 모자협의체 운영을 통해 자회사의 합리적 임금체계 및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에 따라 기존 92.25%던 낙찰률을 100%로 개선하여 2022년도 상반기 시급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되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노동이사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게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라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전 자회사 홈페이지에는 감사보고서만 공시되었던 반면, 새롭게 개편된 경영공시 게시판에 자회사 일반 현황, 기관 운영(복리후생비 세부 내역, 임원 현황, 임직원 수), 경영성과(감사보고서, 자본금 및 주주 현황, 예산수입 및 지출 현황, 요약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확대 공시하여, 자회사 운영 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고, 대내외 평가 등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기계연구원

총 평

○ 한국기계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 0.25억 원, 0.48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2.6%,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5.3%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25억 원, 0.48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여 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업무수행메뉴얼에 장비 및 시설 제공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진공청소기, 왁스기계, 순찰차, 무전기 등 미화·경비 업무의 주요 설비(장비) 이관, 사무실 무상 임대,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간이침대, 정수기, 냉·난방기 지원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 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다거나,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온 점이 인정되며,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 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존 용역계약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위수탁계약서, 과업지시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 받았다.

- 모기관이 제출한 보안관리 업무협약서는 공동출연연구기관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세부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과업지시서를 대체하는 업무수행 매뉴얼을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나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 시설관리 공동출연연구기관 업무협력 협약서에서는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동자회사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다른 자회사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이 높지 않으며, 자회사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감소되었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의 특성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았다. 일반관리비 감소가 출연기관의 확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모기관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시설관리단이 전년도 3.35%에서 평가년도 2.6%로, 보안관리단이 전년도 6.9%에서 평가년도 5.3%로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비, 200~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 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및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질적 진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공시항목 확대 등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총 평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 0.2억 원, 0.3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2.6%,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5.3%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204억 원, 0.293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여 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업무수행메뉴얼에 장비 및 시설 제공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진공청소기, 왁스기계, 순찰차, 무전기 등 미화·경비 업무의 주요 설비(장비) 이관, 사무실 무상 임대,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간이침대, 정수기, 냉·난방기 지원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 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 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 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고,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왔으므로 적정노임단가 산정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 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 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 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므로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다. 모기관이

제출한 보안관리 업무협약서는 공동출연연구기관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세부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과업지시서를 대체하는 업무수행 매뉴얼을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나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 시설관리 공동출연연구기관 업무협력 협약서에서는 모기관과 자회사 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었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시설관리단이 전년도 3.35%에서 평가년도 2.6%로, 보안관리단이 전년도 6.9%에서 평가년도 5.3%로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비, 200~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 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및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질적 진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공시항목 확대 등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남동발전㈜

총 평

○ 한국남동발전은 2018년 자회사 설립 후 모기관 정관 개정을 통하여 경영협약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평가대상기간 중 정관 개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기관이 설비 이관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및 기타 지원을 추진한 점, 예정가격에 반영된 원가가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인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6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수 4개를 유지한 점,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서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낙찰률 92.7%를 반영하여 계약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48개 항목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 내 용역 인력의 이력서 제출, 손해발생시 용역대금 보류 등에 관한 내용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0%, 이윤비율은 10%로 전년도에 이어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를 충족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30천/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근로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임금협약에 반영된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교육훈련 및 커리어 증대를 제고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자회사 홈페이지 경영정보공시 시판에 일부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2018.11. 자회사 설립 후 모기관 정관 개정을 위하여 모기관·자회사 공동 TF구성, 모기관 정관 또는 법령 개정을 위한 경영협약 체결 등 노력을 하였다. 특히 경영협약에서 '모기관은 위·수탁 계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및 모기관 정책에 따라 향후 수탁자의 설립 근거를 정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였고 위·수탁업무 경영협약 개선, 모기관 정관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위·수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보장과 자회사 업무 위탁의 구체적 근거 마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에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6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의 수익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지원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부채비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서 제7조(전문성 강화)에 설비 자재 이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설립 시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용역사에서 자회사로 이관하기 위해 모·자회사 간 공동 노력, 전산장비 구입비 설계 반영, 자회사 업무수행 필수 설비 무상제공, 휴게실·사무실 등 부대비용 설계 반영, 자회사 경비부담 완화를 위한 설계반영(사무실 임차료, 피복비, 차량유지비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기타 지원(노후 PC교체, 전사 경비초소 보강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에 부당관행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계약법의 최대 이윤(10%) 및 일반관리비(9%) 보장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무배당 원칙 하에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도록 현재 제도를 개선 운영할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모기관이 계약 8개를 4개로 통합(분야별)한 노력은 인정되나 향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모기관은 중장기 단일통합계약 추진을 위한 계획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대금 지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8일)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경비·미화 등의 직종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소방 직종은 엔지니어링 기술무분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예정가격은 원가를 100% 반영하였으며,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소방 직종에 대해서 현장감독자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노무비 예산의 안정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경비·미화 등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였다.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및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가격 100% 반영, 낙찰률 92.7% 적용을 통해 노임단가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려는 모기관의 노력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문분야인 소방분야의 경우에는 기술노임단가의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컨설팅 등 합리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정부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으로 노임단가를 산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노임단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계약금액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다만,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로 활용하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에 있음을 고려하여,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92.7%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을 개선한 것으로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규정화를 위하여 협의회 직무권한, 위원구성, 운영주기 등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제정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모·자회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2명씩 전체 8인으로 구성되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모기관은 2021년 9월 합동점검 및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는 등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후 개선 조치를 위한 실무협의 및 개선실적 사후관리 등을 진행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기회의의 횟수가 적정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이 전년도에 지적 받았던 금지사항 제시, 모기관 규정 준용, 운영인력의 자격기준 상세 제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채용기준 제시 및 승인, 휴가 종류와 기준 제시, 노사문제 등 사전 예방,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 정한 점을 수정·보완하거나 삭제하여 개선한 노력이 확인된다. 또한, 자체 TF활동을 통해 시방서 48개 항목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 점, 직종별 일반시방서 4건을 통합한 표준화안을 마련하여 22년 계약을 준비한 점, 직원 인식 제고를 위한 모자회사 상생협력 캠페인과 순회교육을 시행하고, 바람직한 계약업무관리 안내서를 제작·배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기관의 통합 표준시방서 제12조 제2항에서 용역수행 인력 채용 전후로 발주자에게 용역인력의 인적사항, 인사기록 및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제13조 제1항에서 타 업무에 간섭하는 행위, 음주, 도박, 마약, 고성방가 등의 소란 행위 금지하여 복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한 점, 제16조 제5항, 경비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6조 제5항에서 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모기관이

배상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역대금에서 상계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한 점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이 기계·전기설비 설비관리기준, 4. 책임보상, 4-1항에서 설비의 운전 또는 오조작으로 모기관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모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도록 한 점, 에너지파크 시설물 위탁관리용역 시방서 제7조 제2항, 제11조 제4항에서 자회사 직원 채용 후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한 점, 제14조 제1항에서 결원 7일 경과시, 결근(유계3일, 무계1일 이상) 발생시 감액할 수 있다고 한 점, 소방시설관리 및 방재업무 일반시방서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분규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계약해지의 사유로 한 점, 방재업무 특기시방서 제13조에서 당해 월 총 결원일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쟁의 또는 파업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감액을 전제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9월 자회사와 체결한 위·수탁업무 경영협약서를 지난해 평가단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12월 개정하였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협약서의 제4조 3항(수탁자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계약체결), 4항(시중 노임단가 적용 및 적정한 노무비, 관리비, 이윤 등 설정)을 위·수탁계약자의 공동의 노력으로 제시하고 있어 모기관과 자회사 각각의 책임과 역할 관계가 불분명한 점, 제4조에 제시된 위탁처의 역할(5항~7항)은 '노력한다'로 명기되어 있으며, 제5조의 2항(설비지원)은 '할 수 있다'로, 제7조(전문성 강화)의 제1항(교육훈련 지원), 제2항(설비·자재 이관) 등의 주요 항목 역시 '할 수 있다' 등으로, 8조(협력증진)의 주요 내용들도 '노력한다' 등으로 명기되어 있어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및 노동자 처우개선의 실행력에 한계가 있어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 수준으로 체결하였고,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받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9.0%이고, 이윤비율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10.0%인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을 초과하며,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이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와 이윤이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소방직군을 포함하여 보장수준을 유지 및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1,0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550천원의 건강진단비, 200~500천원의 경조금, 월 120천원의 교통비(경비직군) 등이 제공되고 있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모두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평가년도에 코로나극복격려금(300천원)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200천원), 복지포인트 증액, 생일기념품 지급 등 역시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임금협약을 통해 체결된 일부 복리후생항목과 지급수준에 대해 조속히 규정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경영협약을 통해 복리후생 개선 근거를 구체화하고 2021년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회사 노동자 612명을 대상으로 1.2억 원(20만원/인)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향후 5년간 지속해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협력사옥을 신규로 건설하고 직원의식 및 만족도 조사를 거쳐 노후비품 교체 등을 진행하는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외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가 공동워크숍을 통해 경력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자회사의 내부경쟁력 강화와 및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투자를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역량강화 교육지원비 예산을 연간 1,09억원 확보하고 이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모·자회사 경영자문 전담반을 운영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회계, 안전, 노무, 이사회, ICT 보안, 채용, 교육, 근로자 감성안전교육 시청각 프로그램 공유, 안전간담회 시행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교육훈련 및 근로자 커리어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후 교육 효과 등에 대한 피드백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하여 개선에 대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출장여비와 해외출장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 체력단련실과 목욕탕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차별 없이 사내 인트라넷을 운영하고 직무의 특성 등을 감안한 호칭을 사용하며 채용시 면접위원의 1/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직무

또는 직군별 차별 없는 포상제도를 운영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2021년 5월 인사평가규정을 제정하고 리더십역량 등 인사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21년 12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력인정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2020년 9월 임원선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모·자회사는 각각 출자회사관리규정,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선임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모·자회사 사장경영계약을 통해 자율경영권을 보장하고 경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 컨설팅 비용(3.0억원)과 기타 TF활동 등 비용(0.28억원) 등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고 2020년 10월 자회사 소방 용역 개선컨설팅을 통해 소방분야 임금체계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2021년 5월 인사평가규정을 제정하여 해당 평가결과를 승진과 포상에 반영하고 2021년 7월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관리직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했으며 2021년 10월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임금 보전을 시행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노력을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관련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 또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노동이사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 경영정보공시 게시판에 일부 경영정보가 공시되어 있다. 하지만 재무제표와 '22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공공기관 현황조사에 국한되어 있고 모기관 홈페이지에 연동된 알리오에 공시된 경영정보도 투자 및 출자현황과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 정도만 공시되어 있어,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남부발전㈜

총 평

○ 한국남부발전은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모기관 정관에 출연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 모기관이 자회사 보유 필수 업무설비의 유지관리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 전년도 지적에 따라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 전년보다 노임단가가 하락했으나 2021년에 기존 단가를 유지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6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및 분기별 정산 방식을 유지한 점, 낙찰률 95.41%를 반영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상생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자체 발굴한 49건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계약서에서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결원에 따라 용역대금을 감액하는 조항 등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0%, 이윤비율은 10%로 전년도에 이어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를 충족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6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기본급의 30%, 식비는 13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근로자에게 지역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임금협약에 반영된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직무 분야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내용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비정규직관리세칙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추천위원회 규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노력하며, 모자회사가 각각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며, 경영공시 항목을 10개로 확대하고 4대 분야로 나누어 게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8. 11.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모기관 정관 제2조(목적) 제5호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기관은 정관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자회사 업무위탁의 구체적 근거 마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목적사업을 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또한, 모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기간 중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였고,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업무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6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9년 이후 적정 이익을 사내 유보하여 이익잉여금 누적으로 실질자본 증액을 지원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부채비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필수 설비와 장비를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위탁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노면청소차 등 필수 설비의 이관·지원, 필수업무 설비의 구입(도입) 비용 지원, 자회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운영 및 신규설치, 자회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필요 설비 구입 후 무상지원 등을 추진한 점과 무상 지원하는 설비의 유지관리보수비는 모기관이 직접 지불하고, 용역비용에 자회사 보유 필수 업무설비의 유지관리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관행 방지를 위한 '사전심의제도'를 출자회사관리세칙에 명문화하고, 적자사업에 대한 책임을 모기관에서 부담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1.6)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이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개선한 노력은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대금 지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및 분기별 정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5.3일)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전년 대비 총 지급기간을 2.5일 단축(7.8일 →5.3일)하여 자회사에 용역대가를 신속히 지급하려는 노력이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미화·경비 등 대다수 직종의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소방 직종은 엔지니어링 기술무분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예정가격이 원가를 100%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모기관이 제출한 본보고서와 추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상이하여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용역설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안전관리사 노임을 적용받는 체육지도자의 경우 전년보다 노임단가가 하락했으나, 2021년에 기존 단가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한 점은 자회사 종사자 임금 수준의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노무비 책정 관련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가격 100% 적용 뿐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전환 후 낙찰하한률을 상회하여 적정낙찰률을 적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모기관은 기본급 중심으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2021년 상·하반기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산정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기술원 등 일부 직종의 경우 전기 대비 시중노임단가가 하락하자 하락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노임단가가 변경된 내용도 확인되는바,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이유로 종전 노임단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95.41%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러한 낙찰률은, 원가계산가격의 일정 비율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의 안전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본사 및 사업소에서 상생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모기관은 모·자회사 상생안전협의회를 통해 2021년 60건의 자회사 의견을 반영한 근로환경 개선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상생안전협의회 세부 협약을 체결하여, 모기관 노사 각 4인, 노사 각 4인으로 동수 8인 구성 원칙을 규정하고, 근로자위원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등 필수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회의 시 이전 회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는 등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2회 이상 서비스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때를 계약해지 사유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하동문화센터 위탁용역 시방서와 경비용역 시방서를 개정하여 개선하였다. 모기관은 2019년 이후 매년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부당·불공정 조항 49건을 개선하고, 변경계약 시 업무담당자와 노무전문가가 부당·

불공정 조항을 검토하는 단계를 신설하고, 점검을 정례화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기관은 일반경비 위탁계약서와 특수경비 위탁계약서 제8조에서 신고인원이 정상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금 감액을 하고, 삼척 한마음스포츠센터 위탁계약서 제6조 제4항에서 무단결근자, 결원자에 대한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용역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일반경비 위탁계약서와 특수경비 위탁계약서서 제26조, 삼척 한마음스포츠센터 위탁계약서 제8조에서 자회사 인력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 계약서 10. 제출서류에서 착수 시 상주인력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자회사 직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미화계약서 타. 쓰레기 처리 및 보관에서 쓰레기 처리원은 해당 분야 적격자 1인자로 신체 건강한 자로 고정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자격 기준이 자의적이고 장애인 차별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기존의 '사장 경영계약서'와 별도의 유효기간 없는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전년도 평가단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였다. 체결된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자율경영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4조 안정적 성장 지원, 제6조 주요설비의 자회사 이관), 노동자 처우개선(제5조 근로자 처우개선노력, 제7조 근무환경의 개선, 제9조 교육·복리후생 증진)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협약서 제5조 1항 근로자 처우개선, 제6조 주요설비 이관, 제7조 근무환경 개선 등 주요 내용이 '노력한다'로 명기되어 있어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협약서 제7조 근무환경의 개선, 제9조 교육·복리후생 증진은 양사 공동의 책임으로 명기되어 있어 모회사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모자회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이 보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 수준으로 체결하였고,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받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9.0%이고 이윤비율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10.0%인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을 초과하며,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율을 보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소방직군을 포함하여 보장수준을 유지 및 확대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600천원, 명절상여금이 1,000천원+기본급의 30%가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최대 300천원의 건강진단비, 200~500천원의 경조금, 월 100천원의 교통비, 단체보장보험 등이 제공되고 있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모두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평가년도에 온누리상품권 지급(200천원), 경조금 증액 등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임금협약을 통해 체결된 일부 복리후생항목과 지급수준에 대해 조속히 규정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수준을 감안한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근로자에게 지역시장 상품권을 2020년과 2021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2022년에도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 모기관 누적 적자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장 출연이 어렵지만 모·자회사 간 상생안전협의회 및 실무회의를 통해 점진적 조성을 추진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또한, EAP 무상 지원, 직원 단체보장성보험 가입 추진 등을 통해 모기관과 자회사 간 근로조건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외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0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자회사 근로자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자회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전담부서와 담당자를 두어 지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회사 근로자의 커리어 경력개발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특히 필요 교육 분야를 8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 계획을 제공하고 근로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직무 분야별 교육 계획을 수립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교육을 위한 예산 또한, 교육별로 재난안전 예방교육 5,042,000원, 직무전문성 강화교육 24,560,000원, 5대 법전의무교육 17,030,000원을 책정하는 등 교육 내용과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배정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교육훈련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후 교육 효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다음 교육훈련 계획 구성 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일비, 식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 휴게실, 체육시설 및 샤워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차별 없이 사내 인트라넷을 운영하고 공적 심사위원회를 통해 차별 없는 포상제도를 운영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자 채용 임용시 경력환산 기준을 반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20년 8월 「비정규직관리세칙」을 제정하고 사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력인정제도 도입하고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상임위원추천위원회 규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사외이사를 구성하며 모기관 퇴직자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 체계를 준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CEO 절차 진행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의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자회사만의 별도 규정을 마련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임원선발 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의 구성 비율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에 보수체계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모기관 지급대가 산정을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3월 16일까지 KOSPO形 新자회사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1.9억원), 자회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29일까지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일부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등 임금체계를 간소화하고 정액 또는 정률 방식의 성과급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결과에 따라 '21년 4분기부터 이사회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하고 모기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모습 등은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로 인정된다. 다만,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의 명문화와 구체화 등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와 관련한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알리오 공시기준을 참고하여 경영공시 항목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일반현황·경영성과·기관운영·정보공개 4개 분야로 나누어 게시하였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총 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2020.8. 모기관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편, 모기관이 기존 용역사의 설비물품의 품목과 상태를 공동으로 확인하여 인수 결정한 점, 자회사 설립과 함께 선제적으로 단일 통합계약으로 전환을 완료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유지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본금 4억원을 100% 출자하였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금 지급에 10일이 소요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근거를 마련한 점, 부당·불공정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과 27개의 조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 되나, 계약서 내 자회사 근로자의 복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이력서를 제출하는 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6.5%, 이윤비율은 5.0%로 전년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이 소폭 상승했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3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모기관 교육훈련 자원을 활용하여 자회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공무직 등 인사관리요령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 심사제를 명문화하고, 자회사 임원 선발절차를 제도화하여 임원선발의 공정성을 기하며, 통합공시 기준에 근거하여 공시 항목, 정기공시 갱신 주기 및 기준, 공시기한과 확인기한 등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실효성 있는 실무적 지원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2018.11.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2020.08. 모기관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를 명시하였는데, 자회사 위탁 근거는 정관의 사업목적에서 자회사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2019.1.)되어 있다. 이같은 규정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4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2021년 출자를 보류하였으나 2022년 적정 출자금액 산정 및 추가 출자를 재검토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부채비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 정관 제25조의 2(자회사의 설립과 관리)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위수탁계약서, aT센터 특수계약조건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존 용역사의 설비물품의 품목과 상태를 공동으로 확인하여 인수 결정, 탑승식 청소차 등 510개 품목 인수, 미인수 품목은 신규 구매 또는 리스 등 추진, 인수 품목 외 필요 물품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 하 지원, 시설관리 과업에 필요한 자재, 부속품, 소모품은 모기관에서 부담(자회사에 무상 제공)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관행 방지를 위해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에 명문화하고, 설립 후 5년간 이익 미배당 실시를 자회사 정관에 규정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2019년 자회사 설립과 함께 선제적으로 단일 통합계약으로 전환을 완료하였다. 자회사 전환 이전 26개 개별 계약을 모기관 관리부서(기획조정실)가 주관하여 단일 통합계약으로 체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금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모기관은 자회사가 매분기 첫 달 15일까지 선지급금을 청구하면 모기관은 25일까지 지급하는 등 지급에 10일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향후 5일 이내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2021년도에 별도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않고 전년대비 1.8%의 임금인상률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계약가격은 모든 직종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종 간 용역비 산정 기준 인원의 증감이 있었는데, 이는 위탁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해 모·자회사 협의로 경비인력 2명을 미화 직종으로 전환한 결과로 확인된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지 않아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이 미흡하고,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계약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 상·하반기 모든 직종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가용예산 내에서 최저임금인상률 이상 수준으로 자회사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 노무비를 확대했으며, 일부 시중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실제 급여 지급분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전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물가조사, 전시운영 등 몇몇 직종에 대해 단순 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일률적으로 제시하였는데,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을 개선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모기관이 전년도 평가 이후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 모기관이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 이상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출자회사 관리규정과 aT-에이플 경영협약 상 공동협의회 운영근거 마련하고 있다. 모기관은 평가대상인 2020년 9월 이후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2020년 1차례, 2021년 3차례 개최하였으며,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 및 정산, 안전관리, 과업지시서 개선 등 모·자회사 간 경영현안을 협의안건으로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에이플 노사업무 담당자 면담 등 노사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자회사 근로자 애로사항 발굴 및 조직문화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모기관은 자회사 전 근로자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차별경험, 노동3권 제약, 강제근로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인권침해 리스크 진단 및 자회사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자회사 담당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윤리·인권강령 제정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회의 시 이전 회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는 등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교환 및 안내 직원의 용모 관련 내용과 경비원의 근무요령 중 복장과 언어 및 태도에 관한 내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과업지시서를 개선하였다. 모기관이 부당·불공정 소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 자회사 의견 수렴을 통해 27개 과업지시서에서 다수의 부당·불공정 계약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 개선안을 확정하여 21년 7월에 변경계약을 체결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기관은 나주사옥 시설관리지침서 붙임 4에서 시설관리 종사원의 근무규정을 정하고, aT 센터 시설종합관리도급 시설관리지침서 붙임3에서 근무자 근무방침을 정하고, 농식품유통교육원 시설종합관리지침서 붙임1에서 시설관리원의 근무수칙을 정하고 있으나,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의 복무규율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농식품유통교육원 시설종합관리지침서 제7항에서 계약 개시 후 근로자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인천비축기지 경비업무 과업지시서 제12조에서 불순한 언동, 잡담을 하는 행위,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행위, 음주 취침, 모기관 이미지 손상행위 등 구체적으로 복무를 규율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2조), 노동자 처우개선(제2조, 제4조),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7조)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협약서의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등 주요 내용이 모두 '노력한다'로 명기되어 있어 실행력에 한계가 있고, 협약서에 명기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내용이 '적합한 대가 지급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사업이관 관련 일방적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등 추상적이며, 시설 이관,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한 원칙은 제시되어 있으나 공동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율은 전년도 6.0%에서 6.5%로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모기관의 수익이 축소되고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6.0%에서 평가년도 6.5%로 0.5p% 상승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5.0%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을 상회하나,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1,0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200~1,000천원의 경조금 및 경조휴가, 220천원의 명절 및 기념일 선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명절상여금이 평가년도에 200천원 증액되었고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자회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마련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기 위하여 모기관 노·사 의견을 수렴하였고, 모기관 재정 악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어려워 자회사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중장기 검토가 진행 중임이 확인된다.

-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직무관련 필수교육, CS교육, 갑질예방교육 교육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전시컨벤션 사업 업무노하우 전수를 위한 모기관 전문인력 파견 지원, 모기관 교육훈련 자원을 활용한 자회사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모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1년 법정의무교육 및 직무관련 법정의무교육비 등 예산을 반영한 것 역시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교육훈련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후 교육 효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다음 교육훈련 계획 구성 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교육훈련 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내실있는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출장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차별 없이 사내 인트라넷을 운영하고 직군 구준 없이 직급에 따른 호칭(보직)을 부여하며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모든 직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연 1회 근무평정제도를 운영하고 다면평가제도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18년 8월 「공무직 등 인사관리 요령」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고 사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설정하고 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19년 1월 모기관, 자회사에 자회사 임원 선발절차를 제도화하여 임원선발에 공정성을 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발제도에 따라 대표이사 선발을 완료하는 등 결과를 도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사외이사 2인,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직무·직군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합리적 보수체계를 마련한 후 자회사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자율적 인사보수체계 운영을 보장하고 2021년 성과급을 평균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명절상여금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근속수당을 신설하는 등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확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여부 결정은 자회사 경영권 및 노사협의 영역이라는 판단 아래 대표이사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우회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모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현황(개념, 도입배경, 도입방안)과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등의 노력은 인정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사내 공감대 형성 및 실효성 있는 실무적 지원 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다. 통합공시 기준에 근거하여 공시 항목, 정기공시 갱신 주기 및 기준, 공시기한과 확인기한 등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회사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공시된 내용이 일반현황, 임직원현황, 노동조합 관련현황, 재무현황(사업별 예산, 요약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정보에 국한되어 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평가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 경영공시의 목적, 정의, 대상정보, 공시책임자 지정, 자료 공시의 시점 등이 포함된 자회사 ‘경영공시 지침’을 신규 제정하였다. 또한, 경영공시 체계화 강화를 위해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성과 평가에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에 더해 경영공시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경영공시 정례화 노력 등을 반영하였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개선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점검 제공 등의 지원 노력을 통해 대국민 정보 접근성 제고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도로공사

총 평

○ 한국도로공사는 2021.04.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편, 모기관이 청소차·유리세척기 등 사옥 시설관리 필수 설비를 지원한 점, 전년도 지적에 따라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1.1.)한 점,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여 노임단가를 산정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별로 자본금 7억 원과 9.9억 원을 100% 출자하였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다수의 조항을 발굴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노사공동협의회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 계약서 내 자회사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는 조항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6.0%~9.0%, 이윤비율은 10.0%로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 평균수준을 초과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600~1,000천원, 명절상여금 1,900~2,000천원, 식비는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13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60억원 지원을 결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자회사 중 1개사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제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본사 조직 및 현장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컨설팅을 시행하거나 승급 단계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회사 중 1개사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및 운영에 합의하였으며, 자회사 중 1개사가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향상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직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나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정보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회사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기존 정관에 자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1.04.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 또는 정부정책 등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여 제44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에 위탁'을 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자회사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두 곳(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각각 자본금 7억 원과 9.9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실제 자본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 두 곳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부채비율도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과 자회사 간 자율경영 협약을 체결하여 모·자회사 간 역할, 자회사 자율적 운영 보장,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보장 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소차, 유리세척기 등 사옥 시설관리 필수 설비 지원(2021년), 자회사 정보화 사업 등 관련 비용 설계 반영, CI제작 및 교체 지원, 근무환경 개선 위한 시설물 투자, 필수 시설물 무상대여 및 물품 이관, 수공구, 안전용품 등 지급,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 자회사 본사 이전계획 수립 등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의 업역을 확대하고, 적정 이윤 보장, 일반관리비 증액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1.1.)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이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개선한 노력은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기준을 준수(6일)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비 산정을 통해 노무비 원가를 산정하고,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원가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은 모든 직종에서 원가를 100%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변경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여 노임단가를 산정한 것이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의 경우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상·하반기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유사직종 시중노임단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정 노임단가를 산정한 것이 확인되는바, 시중노임단가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89.9%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을 개선한 것이나,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이 낙찰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에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 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제정된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운영지침은 협의회의 명칭을 상생협의회로 하고, 본 협의회와 2개의 자회사별 분과협의회의 운영체계를 두며, 연 2회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과협의회 위원을 의사결정권을 가진 소관부서장으로 상향하고 자회사 근로조건 외 모·자회사 공동이슈를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상생협의회에 근로자대표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모기관은 분과협의회 개최 시 근로자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이 전년도에 자회사 직원 채용 시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한다는 조항, 미화, 청소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적인 청소업무에 대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 고의·과실 시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조항, 방송사고 3회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에 대한 지적을 받고 개선한 노력이 확인된다. 또한, 모기관이 자회사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통행료수납 과업지시서, 교통방송 과업지시서, 공통과업지시서 등에서 다수의 부당·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개선한 노력이 인정된다.

- 모기관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서 모기관이 자회사가 채용한 근로자가 계약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모기관 승인 없이 교체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6월 모·자회사 간 '자율경영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3조 협력내용 1),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협력내용 4),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협력내용 3),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3조 협력내용 2)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전년도의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고, 경영협약서 상 주요 협력 내용이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임의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은 "상호 지속적으로 협력한다"고 명기되어 모회사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점,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있어서 시설이관이나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아 자회사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를 충족하고 있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이루진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자회사 특성에 따라 전년도 6.0~9.0%와 동일하고, 이윤비율 또한, 전년도 10.0%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을 초과하며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율을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보장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자회사에 따라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600~1,000천원, 명절상여금이 1,900~2,0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은 자회사별로 300천원의 재해보험료, 120천원 이상의 가족수당, 100천원의 도서교육비가 제공되기도 하고, 100천원의 교통보조비, 250천원의 건강검진비, 경조사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자회사에 따라 복지포인트 또는 명절상여금, 재해보험료가 증가된 점, 가족수당과 도서교육비 등이 신설된 점은 긍정적이나, 내부규정상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60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모기관 노·사 및 자회사가 참여한 ESG 경영 공동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자회사 간 공동기금 설립 등 추가 절차 및 출연 구체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2022년 중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용 외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 연수원 및 교육시설 공동이용으로 자회사 직원 교육·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생애경력단계별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 환경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고,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기능사 3만원, 산업기사 5만원, 기사 7만원, 기술사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고객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3단계 직무교육 수립 등 교육효과의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설계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수렴하여 다음 교육훈련 계획 구성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출장여비, 특별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 및 복리후생규정 또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중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채용 전형 절차별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자회사 중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20321년 8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3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매년 회사 내 비정규직 전체 현황을 관리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인력 구조상 공무직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에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등에 따라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은 선도적 인사관리 모델로서 인사관리의 기본원칙이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비금전적 처우 등과 같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중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2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구성방법, 임원후보자 모집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여 CEO 선발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이사 선정 방식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3~5명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회사 구성원 대변인 1명으로 구성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중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2021년 10월 조직 안정화를 위한 본사 조직 및 현장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컨설팅을 시행하였고 자회사 단체교섭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명절상여금을 연간 200만원 지급하고 복지포인트를 연간 60만원 지급하며,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본급 인상, 상여수당 200% 지급, 직책수당 증액 및 신설, 급지수당 변경, 동일 직무등급 내 숙련도·경력 등을 반영하여 승급 단계를 6단계에서 8단계로 개편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 노사협의회 의결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및 운영에 합의하고 '21년 10월에 이사회 의결에 따라 도입을 확정한 것은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로 인정된다. 다만,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혹은 지침을 좀 더 구체화하고,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 대한 검토나 계획을 세우고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 절차를 진행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또는 모기관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킨 점이 인정되며, 항목별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정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세부 공시항목을 클릭하면 알리오 메인 홈페이지 사이트로만 연결되어 해당 정보를 다시 검색해야 하는 등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를 신설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주요 경영정보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에 제한이 있다.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다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동서발전㈜

총 평

○ 한국동서발전은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모기관 정관에서 투자 또는 출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모기관이 자회사 업무수행의 필수 설비를 무상제공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서 분기별 선지급을 도입한 점,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산정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6억원을 100% 출자하였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탁계약으로 총 2건을 유지하고 있고 단일통합계약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노사사 ONE EWP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과 다수의 조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이나, 경영협약이 대표이사 경영협약과 분리되지 않는 점, 계약서 내 과도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0%, 이윤비율은 10%로 전년도에 이어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를 충족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600천원, 명절상여금 1,4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도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8.2억원 중 4.1억원을 4년에 걸쳐 자회사에 분할 지급하도록 의결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자회사 근로자 경력개발을 위한 블렌디드 교육의 효율적 진행을 지원하고, EWP서비스㈜ 비정규직 관리지침에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모기관 내부지침에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자회사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영공시 게시판을 마련한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에 근거하여 경영정보를 게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와 관련한 단체협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2018.11.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 정관은 제2조에서 목적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부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기관은 정관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자회사 업무위탁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사업'을 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모기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였고,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6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1년 당기순이익 1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 경영을 지원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부채비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서 제7조(전문성 강화)에 설비 자재 이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설립 시 업무수행 필수 설비를 기존 용역사에서 자회사로 이관하기 위한 모·자회사 간 공동 노력, 전산장비 구입비 설계 반영, 자회사 업무수행의 필수 설비 무상제공, 휴게실·사무실 등 부대비용 설계 반영, 자회사 사무실 및 휴게공간 임대료 모기관 예산으로 지원 등을 추진한 점과 소방차, 구급차, 재난안전 무선통신시스템 등 자회사 필수 설비를 무상으로 지원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일반관리비(9%) 및 이윤(10%)을 법정 최대치를 보장하고, 부당한 경영관행 방지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 위한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체결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총 2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모기관이 현재 계약기간 종료('22.12.31) 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노력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조기에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이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인건비를 제외하고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인건비를 매월 인건비 전용 계좌로 구분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계약대금 지급방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앞으로도 계약대금 지급방식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기간과 관련하여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추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지급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급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청소·경비 등의 직종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소방 직종은 엔지니어링 기술무분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은 원가를 다소 하회하는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이 노무비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감독자 인건비 항목을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무인력 노무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고 일반관리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운영 예산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노무비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립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노무비 책정 관련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가격 100% 적용 뿐 아니라 모·자회사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낙찰률을 상향조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모기관은 기본급 중심으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2021년 상·하반기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산정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시설, 조경 등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기보다,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해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93.8%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을 개선한 것으로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이 낙찰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에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 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노노사사 ONE EWP 상생발전협의회’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노노사사 ONE EWP 상생발전협의회’는 모기관 노사 각 2인, 자회사 노사 각 2인 총 8인으로 구성되며, 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여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노노사사 ONE EWP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자회사 운영 전문성 향상 지원, 차별 없는 근로자 인권 보호,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등에 관한 안건을 협의·논의하며, 2021년 2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모기관은 ‘노노사사 ONE EWP 상생발전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ONE-EWP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회의 시 이전 회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는 등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 직원의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모기관이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는 조항, 자회사가 노동조합법상 책임을 지고 모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 자회사 직원 복무규율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 발주자의 조직개편 등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발주처가 참여하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계약해지를 결정하거나 작업일보의 제출을 강제하는 조항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개선한 노력이 확인된다. 또한, 모기관이 20년에 부당·불공정 계약 조항 12건을 개선하고, 21년에 3건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기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2항에서 모기관이 자회사가 채용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의 소지가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최고,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경비용역 특수조건 제29조 계약해지사유, 홍보관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2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사유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또한, 모기관이 홍보관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서 모기관이 지정한 날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모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 생리, 경조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한 점, 제7조에서 일일 계획 및 실적을 모기관 운영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 점, 제27조에서 업무개시 전에 용역인력의 인적사항을 제출, 승인받도록 한 점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모기관이 전사 청소 특기 설명서, 2-2. 대가지급 방법 및 감액, 나에서 정원과 결원을 기준으로 성과의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 용역대가를 감액조치 할 수 있다고 한 점, 2-4. 휴가 등의 조치에서 휴가일수 등을 모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점, 2-13. 보안사항, 바항에서 자회사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 별표 3에 따라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보안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한 점, 전사 시설용역 설명서, 10 용역보고. 10.2 보고서에서 자회사 종업원의 입·퇴사, 근태현황을 기재한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익일 오전 10시까지의 일보를 하도록 한 점, 1.9.5. 휴가 등의 조치에서 휴가일수 등을 모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점, 1.9.11. 보안사항과 2.5.5에서 보안정책 위반 시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을 납부토록 한 점, 사옥시설관리기준 4. 책임보상에서 정전발생 시 손해에 대하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9월 종전의 경영협약서를 개정하여 자회사의 경영독립성 보장 및 자율

책임경영 정착을 위한 협약서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협약의 목적, 제12조 경영독립성),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13조 경영지원), 노동자 처우개선(제14조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11조 정부정책 이행)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율경영에 대한 협약과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협약이 하나의 협약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이나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에서 시설이관 등의 구체적 지원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자회사 처우개선 부분에서 모회사의 책임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약서의 유효기간을 대표이사 임기와 연동하고 있어 경영협약의 안정성이 낮아 개선의 필요가 있고. 지난해 평가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제시되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 수준으로 체결하였고,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받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평가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9.0%와 동일하며, 이윤비율도 전년도 10.0%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을 초과하며,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율을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소방직군을 포함하여 보장수준을 유지 및 확대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600천원, 명절상여금이 1,4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월 130천원의 교통비, 400천원의 특별건강검진, 300~1,000천원의 경조금 및 경조휴가, 단체보장보험 등이 제공되고 있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모두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평가년도에 코로나격려금 지급(100천원), 경조금 증액, 특별건강검진 신설 등이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이나, 내부규정상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8.2억원을 출연하고 4.1억원을 EWP서비스에 지원토록 하였다. 2021년 4.1억원에 대하여 4년간 분할지급토록 의결하여 2021년 중 1.01억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자회사 인권피해 구제 프로그램 공동 활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공간 추가공사 및 냉난방비 교체 등을 진행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ONE-EWP 상생발전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외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한 절차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들의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과 이를 통한 정부정책 이행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길 희망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직원 경력개발을 위한 블렌디드 교육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모회사 행정인력 파견 지속 및 자회사 직원 대상 안전분야 공동교육 진행 및 온택트 교육 플랫폼 활용 지원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자회사 교육훈련 현황 분석을 통한 교육지원계획을 도출하고 직종별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회사의 행정인력 파견을 통한 조직운영 교육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해 자회사 운영 특히 인사노무 관리, 직원 교육 체계 구축, 내부통제 등 교육훈련에 대한 실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교육훈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설계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다음 교육훈련 계획 구성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온라인 교육 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 업무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의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사업소 직원에 대한 호칭을 개선하여 조직체계를 확립하며 면접시험시 외부위원을 1/2 이상으로 구성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기간에 따른 경력인정제도와 근무평정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EWP서비스㈜ 비정규직 관리지침」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또는 근무평정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도입을 검토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모기관 내부지침에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사내위원과 사외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며, 공개모집 원칙에 의거 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선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한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확립한 후 2020년도에 22.6%, 2021년도에 25.8% 인상된 임금 수준 보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시키고 있으며 낙착률을 93%에서 93.8%로 개선하고 일관관리비나 이윤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하위 직급에 한하여 근속승진제도를 운영하고 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에 따른 직무수행 능력 향상도를 급여에 반영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21년 12월에 근로자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단체협약에 제25조 2항 “회사와 조합은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노사협의를 이룬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지침 및 타 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근로자 참관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 진행사항 등 성과는 여전히 부족해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에 노동

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 관련하여 자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영공시 게시판을 마련한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에 근거하여 일반현황, 운영상황, 경영성과 정보를 게시한 점은 자회사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그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대내외 평가와 정보공개 등 일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별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마사회

총 평

○ 한국마사회는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고 한국마사회법과 모기관 정관에서 출자·출연 및 자회사 설립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탁사업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모기관이 자본금 15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점, 자회사 설립 시 차량 등 사업필요설비 이관(845종) 등을 추진한 점, 자회사 설립 원년부터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여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부채비율도 높은 점,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노무비 원가가 아닌 단일 노임을 적용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부당·불공정 조항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다수의 조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계약서 내에 여전히 모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위탁비를 정산·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며,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4.08%, 이윤비율은 0.34%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을 지급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자기개발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며, 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고, 자회사 자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자회사 노사로 구성된 임금체계 개편 TFT를 운영하여 임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회사 자체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에 근거하여 경영정보를 게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지침 마련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법(제36조)과 모기관 정관(제26조)을 보면 사업의 범위에 각각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 출연 및 보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출연 및 보조'가 명시되어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 및 설립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이같은 법률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사업'을 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1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모기관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지원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부채비율도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과 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필수 설비 인수금액을 출자금에 반영하였고, 각종 필요 설비 등 구비, 자회사 설립 시 차량 등 사업필요설비 이관(845종) 등을 추진한 점과 자회사 필수 자산·설비를 추가적으로 지원(3차; 2020.09~2021.12.)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노사전 협의체의 의결로 자회사로의 적자사업 이관, 흑자사업 회수 금지 원칙 제시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업무 위탁 계약형태에 있어 자회사 설립 원년부터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여 지속하고 있고,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회사협력부 단일 조직으로 계약총괄 조직을 구성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선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3일)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에 있어 직종과 상관없이 평균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예산 사정 방식으로 원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은 원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노무비 원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단일 노임을 적용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나, 모기관은 2022년부터는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모기관은 향후 전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예정가격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변경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탁계약 체결 후 2021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모기관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종전 수탁사 중심 예산사정 방식에서 과업 중심의 시중노임단가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직종별 적정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노무비를 산정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일부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밑돌고 있는바, 시중노임단가를 계약금액 산정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산사정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정상적인 개최를 통한 협의를 이행하기 위해 모기관 근로자대표 참여에 부정적인 자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대상기간인 2020년과 2021에 걸쳐 수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모기관은 현 상황에서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실무협의체 운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2020년 8차례, 2021년 21차에 걸쳐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회사 근로자 휴게공간 개선 등 상생협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현재의 실무협의체 운영과는 별개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가 당연히 과업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 각종 행사 등 필요할 경우 모기관이 자회사에 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수탁자의 노사분규 등 경우 위탁비를 제외하고 정산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 횟수 제한 없는 재청소를 강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개선하였다. 모기관이 위·수탁협약서와 41개 과업설명서에 대하여 2차에 걸쳐서 부당·불공정 조항을 발췌하고, 의견수렴, 분석·평가하여 다수의 부당·불공정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기관 시설관리 위·수탁 수정협약서 제5조 제4항에서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불완전 수행 시 모기관이 미수행 정도를 평가하여 위탁비를 제외하고 정산지급한다고 하였는데 모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도록 한 점은 적절하지 않고, 과업설명서 2. 과업 목적 나항에서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모기관의 규정에 따른다고 한 점, 서울경마공원 차량운전 과업설명서와 제주경마공원 차량운전 과업설명서 4. 근무지침, 1) 근무에서 자회사와 소속 근무자는 모기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모기관의 규정을 자회사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6월 모·자회사 간 '동반성장 경영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기본원칙, 제3조 한국마사회의 역할 및 경영개입 제한), 노동자 처우개선(제6조의 3),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6조의 4)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시설이관, 교육훈련 지원 등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반적으로 업무협력의 내용이 지나치게 간소하게 제시되어 있어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지난해에도 유사한 지적이 제시된 바 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율은 전년도 2.04%에서 4.08%로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0.17%에서 0.34%로 증가하였다. 모기관의 영업손실로 인한 적자상황임을 감안하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2.04%에서 평가년도 4.08%로 2.04p% 상승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0.17%에서 평가년도 0.34%로 증가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2배의 보장을 하였음에도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와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및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 외 다른 복리후생 항목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방안 모색을 위하여 관련 부서 의견요청과 복지기금 운영개선 TF 의견요청, 모·자회사 노사담당 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인 실적이 확인된다. 기타 자회사 노동자들을 위한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모기관과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를 선정하여 같은 선택옵션을 부여하고 직장 새마을금고 신규회원 가입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 내용으로 법정교육, 직무관련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훈련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경력개발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기개발 지원제도를 확대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제도의 지원 범위, 운영기간, 예산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및 확대를 위한 모회사의 노력이 인정된다. 예산 또한, 2020년에는 인당 25만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인당 30만원으로 증액하고 교육훈련 대상자도 2020년 총 20명에서 2021년 총 50명으로 증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진행 후 교육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여 다음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운임, 일비, 숙박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내식당 등을 이용하고 자회사 자체 인트라넷과 홈페이지 이용에 차별이 없으며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고 현장직 근로자 채용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모회사 동반성장 포상 및 자회사 자체 포상 등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경력자 채용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경력을 산정하여 반영하고 다면평가 등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21년 7월 「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최초 자회사 설립 시 모기관의 '공정채용 제도'를 준용하여 CEO 선임을 완료하였고 이후 2021년 자회사 자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의 제정, 시행하는 등 공정한 CEO 선발제도 규정화를 완료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2021년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1년 9월 장외발매소 경비과업 적정 과업범위 검토 및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계약금액 19,500천원)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위수탁협약의 합리적 원가산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으며(계약금액 21,500,000원) 2021년도에 21회에 걸쳐 모자회사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자회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협의를 시행하였다. 또한, 자회사는 직무별 인력운영단위 재설정·임금결정체계 재설계 등을 위해 노사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임금체계 개편 TFT를 운영하여 임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실적이 인정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에 관한 노사협의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후 여러 차례 교섭을 통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에 대한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운영하는 형태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향후 단체협약서 내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관련 문구를 반영할 예정이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시행 방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 마련 등 도입 노력을 통해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 관련하여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영공시 게시판을 마련한 다음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에 근거하여 일반현황, 운영상황, 경영성과 정보를 게시한 점은 자회사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 홈페이지에 수시공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은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경영공시제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공시목적, 공시항목, 공시방법, 공사주기 등을 명확히 하고 자회사 현실에 맞는 경영공시 운영지침을 수립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감사팀에서 공시항목에 대한 적절성, 누락 및 기한 준수 여부,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수행을 명시하는 등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도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총 평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모기관 정관에서 출자·출연 및 자회사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 위탁사업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모기관이 위탁관리 장비 및 비품 이관(2021년)등을 추진한 점, 3개 사업소별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본금 3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도 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을 검토하여 개선 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에서 자회사 근로자의 복무를 규율하는 조항 등 추가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1.0%, 이윤비율은 2.0%로 자회사 설립 이전 대비 감소하였다. 인당 복리후생 항목은 복지포인트 320천원, 명절상여금 300천원, 식비 10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회사 이전 대비 복지포인트와 식비가 증가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분류체계 확립 등 교육효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비정규직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서 '공사는 공사의 업무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와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모기관 정관 제25조 제2항에서 모기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 및 설립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 다만, 이같은 법률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사업'을 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3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서 제2조(임무)에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설비 이관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용역계약서에 위탁관리 장비·비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탁관리 장비 및 비품 이관(2021년), 펌프 교체, 바닥 보수공사, 기계설비공사 등 모기관 예산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실적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의 출자회사 관리규정 및 모·자회사간 자율경영협약서에서 자회사의 독립성과 경영자율권 보장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자회사 설립 이전인 2018년도에 이미 광고문화회관, 방송회관, 연수원 등 3개 사업소별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2021.1.)한 노력이 인정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5일)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노무비에 있어 미화·경비 직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관리소장·실장, 팀장급의 노무비 원가는 시중노임단가보다 높은 대한건설협회 단가를 원가로 하여, 원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만, 모기관이 제출한 용역원가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노무비 중 상여금 항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자회사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어 해당 상여금이 내규 상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별도 계상하고 퇴직충당금 산정 기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위탁계약 체결 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노임단가를 산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리소장, 실장, 시설팀장에 대한 노임단가 원가계산 시 중소기업중앙회 시중노임단가보다 높은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적정 노임단가 산정을 위해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고자 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모든 직종의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하는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모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모기관은 연도 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를 밑돌고 있는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 100%를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93%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낙찰률 상승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대표간 4자가 참여하여 자율 경영협약을 변경, 체결하여 자회사와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회사 근로자대표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구성 및 정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회사 근로조건 개건, 복지증진 및 안전보건 강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의 자회사는 2021년에 설립되어 전년도 평가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다. 모기관이 위탁계약서 상 결원의 보충, 용역비의 감액, 근로자의 고용계약 부분, 과업지시서 상 자격요건, 청소방법, 업무지시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 노력이 인정된다.

- 그러나 모기관 한국방송회관 과업내용서, 한국광고문화회관 과업내용서 ii. 경비/주차관리 부문, 7. 경비원 복무자세에서 바른 자세, 친절·온화한 자세, 일체의 언쟁, 음주, 도박, 오락 기타 경비업무와 관련 없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하였는데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의 복무를 직접,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iii. 환경/위생 및 조경설비 부문, 2-8.

작업 세부사항, ③에서 바닥 대청소 불결 시, 흡진기에 의한 카펫청소는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한다고 한 점, kobaco 연수원 과업 내용서 3-6. 환경위생 청소관리 과업 지시서, (5)근무자에 대한 관리 및 준수사항 중 언어, 동작에 있어서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한 점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와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5월 모·자회사 간 자율경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이를 구체화하고 개선한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목적, 제1조의 2 기본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2조 임무 가의 2, 3, 8), 노동자 처우개선(제2조 임무 가의 4, 5, 6, 7),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3조 협의체 운영)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었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1.0%이고, 이윤비율은 2.0%로서 자회사 설립 이전의 민간용역계약시 일반관리비율 2.0%, 이윤비율 3.0% 대비 감소했고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의 경영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와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320천원, 명절상여금이 3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0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은 200천원의 종합건강검진과 120천원의 체력단련비를 제공하고 있다. 자회사 이전에 비해 복지포인트가 120천원, 식비가 44천원 증가하고, 명절상여금이 신설되었으며, 자회사 근로자를 위해 직원식당에 인당 41천원의 쌀 부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모두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타 기관 사례를 검토하고 모기관 노사협의회에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에 대한 의견교환과 모·자회사 실무진 회의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바탕으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중 약 21억원에 대한 5개년 분할사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기관 제도를 활용하여 자회사 직원 처우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비금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직무별 역량강화 교육과 커리어 개발 지원을 위해 정기적 역량개발 워크숍을 개최하고, 워크숍 참여에 따른 결과 점검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교육훈련 시 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 이를 통한 직원의 역량 증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을 개정 배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20개 분야, 약 3만개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러닝 학습 플랫폼을 공유하고, 워크숍 참여에 따른 연수학점 부여 및 별도 결과 점검을 위한 연수내용 환류를 진행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교육훈련 관련 프로그램 구성에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교육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여 다음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수내용 환류 프로그램이 있지만 워크숍 참여자에게만 한정되는 듯 보여 모든 교육훈련 참여자의 교육 후 효과에 대한 피드백 수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차별 없이 자회사 자체 인트라넷을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 출범과 동시에 팀장 등 공식 직책을 사용하도록 호칭을 통일하고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50% 이상)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군별 차등 없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업무실적평가를 시행하여 승진과 보수 인상 등에 반영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21년 11월 「비정규직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비변상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다층적 평가, 다면평가, 이의신청 절차 운영 등 근무평정제도를 보완하고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설정하고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2021년 4월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와 같은 자회사 자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CEO를 선발절차를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되며, 신임 자회사 CEO 선발 시 선발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검토하고 임명식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외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초반 자회사 전환 근로자 표준임금체계 및 관리규정 수립 등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여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시설관리파트·보안파트·미화파트 등 직제구조를 간소화하고 기본급을 직무급 100%로 설계하는 등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으며 낙착율을 88%에서 93%로 대폭 확대하고 급여 인상 등을 통해 10.0%에 달하는 임금인상 효과를 달성하는 등 자회사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규정(이사회운영규정 등) 의결에 대하여 전직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 논의나 준비 계획이 없어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내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경영공시 게시판도 구축되어 있으나, 공시된 경영정보는 아직 없다. 모기관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세부 공시항목을 클릭하면 알리오 메인 홈페이지 사이트로 연결되어 해당 정보를 다시 검색해야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다소 불편이 있었고, 자회사 관련 공시된 정보도 투자 및 출자현황에 한정되어 있는 등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경영정보 공시 게시판에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일반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부동산원

총 평

○ 한국부동산원은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한국부동산원법 및 모기관 정관에서 출자·출연 및 자회사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 위탁사업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개선점 지속 발굴 및 모·자회사간 지속가능 협의체 개최를 추진한 점, 2021년 상·하반기 모든 직종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1년 12월 기준 위탁계약이 9개로 단일통합계약에 이르지 못한 점, 계약대금 지급시 월별로 기성검사 합격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모·자회사 지속가능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규정화 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별도 검토를 통해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계약서 내 건물 청소원과 일반 경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한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업무별로 6.0~9.0%, 이윤비율은 10%로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 평균수준을 초과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여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210천원/월을 지급하는 등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향후에도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직무별 맞춤형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역량을 증대하고, 비정규직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보수체계 수립 및 로드맵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임금체계 재설계 및 개편 방안 논의를 지속하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8.11. 자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조사, 고객상담, 시설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였다. 한국부동산원법 제13조는 '동법 제12조의 업무와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기관 정관은 부동산 조사 및 부수적 업무를 모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 및 설립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이같은 법률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만으로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자회사간 예산 협력을 통해서 설립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달성하고 2020년 대비 2021년 부채비율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는 바,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경영협약서 제2조(협약사항)에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 지원, 안정적 성장 지원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동산 통합업무시스템(KRIMS) 및 보상관리시스템(CMS) 플랫폼 공유, 용역계약서를 통해 모기관 보유 전산장비 무상 제공 명문화, 자회사 네트워크 제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자회사와의 협의 및 조치(경영정보시스템, 화상회의시스템 등 접근 및 사용 권한 부여 등), 개선점 지속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의 상시 제도화를 위한 모·자회사간 지속가능 협의체 개최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실적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의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개정(21년 9월)하여 무분별한 사업이관 등 부당관행을 방지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다수의 위탁계약 형식에 대한 모기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21년도 위수탁계약 시 5개 분야별 통합계약을 체결('21.2)하여 13개 계약을 5개 계약으로 통합한 노력이 확인된다. 그러나 정부 부동산정책 지원을 위한 계약이 추가되어 '21.12.31.기준 총 9개의 계약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된다. 추후 9개에서 5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중(2022.2. 완료 예정)인 노력은 인정되나, 향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선금지급 실적이 2020년 실적(1,678백만원)과 대비하여 2021년 실적(2,002백만원)이 약 20% 증가한 점이 인정되고, 같은 기간 동안 선금지급 비율은 약 30% 정도이고 2022년도에는 자회사와 협의하여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인 점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2021년에 작성된 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월별로 기성검사 합격후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10일)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용역비는 예정가격 산정 방식이 아닌 자회사의 필요 예산 산정과 모기관의 승인 및 예산교부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그 결과 2021년 기본급 예산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고 식대 항목의 예산을 증액 반영한 점은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노무비 계약금액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용역계약서상 계약일반조건에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노무비 조정 필요 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예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1년 상·하반기 모든 직종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시설, 경비, 미화 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부동산조사, 고객 상담 등 기타 직종의 경우에도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산사정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의 100% 이상을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지속가능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자회사 전환 직원의 처우개선 등 모기관 책임성 강화와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의제 발굴 및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모기관 및 자회사 근로자대표를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2021년 1차례 지속가능협의체를 개최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모·자회사 협의를 통해 「출자회사관리규정」에 모·자회사 노조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회의 방식, 개최 횟수 등을 정하여 협의체 운영 방침을 규정화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기회의의 횟수가 적정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사옥관리 용역에서 과업지시서와 용역계약서 내에서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자회사 직원의 결근에 따른 감액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모기관은 2차 개선을 통해 표준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계약 당사자 간 기존에 사용하던 '갑', '을'의 문구를 사업체명으로 변경하고 과업 외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조항의 추가,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대금을 조정하도록 협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마련, 중소기업과 계약체결 시 핵심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 관련 조항의 신설, 하도급법 준수 의무 명시, 공정계약서 작성 조항 신설, 근로관계법령 준수의무 명시, 산업안전보건 등 준수 의무 명시 등 개선노력을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은 공직자 이해충돌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자회사 자체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서약서를 징구한 점은

부당·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모기관과 자회사가 함께 노력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건물 청소원과 일반 경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자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6월 모·자회사 경영협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2월 이를 갱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협약사항 1), 노동자 처우개선(제2조 협약사항 2)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사항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공이익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매우 추상적인 수준(“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협력한다”)에 머무르고 있어 협약 내용 전반, 구체적 실행방안, 모회사와 자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도에서 유사한 지적이 있었지만 2021년 12월 개선된 협약서에서도 충분히 개선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아 자회사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모기관 평균수준 이상을 보장하고 있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업무별로 전년도의 6.0~9.0%와 동일하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사옥관리업무 8.3%를 평가년도 10.0%로 조정하여 모든 업무의 이윤비율을 10.0% 보장하고 있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을 초과하며,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에 미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와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별로 일반관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1,000천원 지급되었고, 식비는 월 210천원 가량 지급되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화환, 모기관 어린이집 이용, 300천원의 휴양숙박비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모두 평가년도에 증액이 이루어진 점과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점은 긍정적이며, 향후에도 자회사의 이익수준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18년도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전환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의무사용액 4천만원이상을 자회사 복지사업 재원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 5년 주기로 자회사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사용코자 정례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자회사 공동 복지제도로서 특집 푸드트럭 이벤트, 지역 농산물 증정, 에프터눈 티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외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직무별 역량강화 교육과 커리어 개발 지원을 위해 정기적 역량개발 워크숍을 개최하고, 워크숍 참여에 따른 결과 점검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교육훈련 시 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 이를 통한 직원의 역량 증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을 개정 배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20개 분야, 약 3만개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러닝 학습 플랫폼을 공유하고, 워크숍 참여에 따른 연수학점 부여 및 별도 결과 점검을 위한 연수내용 환류를 진행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교육훈련 관련 프로그램 구성에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교육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여 다음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수내용 환류 프로그램이 있지만 워크숍 참여자에게만 한정되는 듯 보여 모든 교육훈련 참여자의 교육 후 효과에 대한 피드백 수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운임, 일비, 숙박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직급에 따라 통일적 호칭을 사용하며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및 면접고시의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각종 인사관리 및 보수 결정에 활용하고 다면평가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19년 4월 「비정규직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절차 운영 등 근무평정제도를 보완하고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

인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설정하고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2021년 4월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와 같은 자회사 자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CEO를 선발절차를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되며, 신임 자회사 CEO 선발 시 선발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검토하고 임명식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외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2021년 10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보수체계 수립 및 로드맵 컨설팅(보수체계 컨설팅 용역 / 계약금액 19,800,000원)을 진행한 실적이 있고 동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무직의 임금체계를 재설계하고 기술직은 표준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자회사 지속가능협의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모·자회사 지속가능협의체를 통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추진방향과 절차 등을 자회사와 협의하고 시범 운영안 추진을 검토하여 '22년도 자회사 이사회 개최시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이 인정된다.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인으로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방식과 의결권, 발언권 등에 대한 구체적 권한 등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21.7)에 따라, 모기관의 출자회사 관련 공시사항(퇴직직원 재취업 현황)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계약내역 등 계약정보를 추가 공시하고 사장 선임과 임원 변경 등을 공시하였다. 자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알림마당에 공지사항, 회사소식, 계약정보, 채용정보 정도만 공시하고 있다. 모기관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세부 공시항목을 클릭하면 알리오 메인 홈페이지 사이트로 연결되어 해당 정보를 다시 검색해야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다소 불편이 있었고, 자회사 관련 공시된 정보도 투자 및 출자현황에 한정되어 있는 등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다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총 평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0.12.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에 자본금 3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점, 사무실 및 휴게장소 제공 등 설비이관을 추진한 점,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서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 예정가격 산정 시 감독자 등의 인건비를 직접 노무비로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1년 하반기에 계약변경 과정에서 계약금액 변경이 없는 점, 낙찰률 90%를 적용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한 점, 부당·불공정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과 추가적인 개선을 도모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5.5%, 이윤비율은 6.0%로 전년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300천원, 명절상여금 1,967원, 식비 13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체제도로서 자회사 근로자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경조사 등을 운영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교육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에 이어 2022년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기존 정관에 자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0.12.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진흥원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고, '경비, 미화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3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에 합리적인 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흑자경영을 지원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3.0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과 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에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사무실 및 휴게장소 제공, 화물차, 승용차 등 업무장비 일체 이관, 사무공간 임차비용 지원 및 감면, 노후자산 감가상각비 지원방식 일부 전환, 휴게시설 및 지원 대상 목록 최신화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실적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0.8.)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동일 직종, 유사시설 간 업무 표준화를

통해 통합계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분할하여 기성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점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모기관은 이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2020.9.)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선금 지급시 보증서를 면제하고 각서로 대체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3일)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원가로 하여, 해당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관리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 모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총괄 감독자 등의 인건비를 직접 노무비로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임단가 산정 관련,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수준으로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확인했다. 시중노임단가 반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모기관은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한편,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 발표시기(6월·11월)에 맞춘 계약 체결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2021년 하반기에는 계약변경 과정에서 계약금액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적용 중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돌고 있는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한 모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나, 즉각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노무비와 관련하여 90% 수준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모기관은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자회사 노동자의 1인당 노무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여, 자회사 복리후생 방안, 용역계약 대금 정산방식 개선, 자회사 직원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였다. 모기관은 공동이익의 증진과 소통을 강화하고 운영주기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모·자회사의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로 구성하고, 근로자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 위원 중 호선을 통해 근로자 대표 선출하고, 근로자대표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근로자측 대표의 선출과 위촉 주기를 체계화하고자 노력하였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과업지시서의 재 청소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무제한 재청소가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고, 모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관련 조항 및 모기관이 지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도 삭제하여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복무규율을 강제하는 조항을 개선한 점이 인정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 공동노사협의회 안건 상정을 통해 자회사 수행 인력의 인적사항을 모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자의 이력서를 모기관에 제출하게 한 조항, 모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체결 타당성을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모기관의 일방적인 시정요구 방식을 상호 협의 하에 시정요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하는 등 불공정 계약 조건 11건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모기관은 고용노동부 컨설팅 지원을 받아 외부 전문가의 개선 권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회사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개선하고 모기관의 일방적인 요청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여 부당한 업무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6월 자회사와 경영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목적),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모회사의 역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관한 사항이 매우 포괄적으로만 제시되어 시설이관, 교육훈련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자회사의 근로자 처우개선은 자회사의 책임으로만 명기되어 있고 모회사의 책임이나 지원이 명기되지 않았으며, 공동협의회 등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평가 시에도 유사한 지적이 제시되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율은 전년도 5.0%에서 5.5%로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6.0%와 동일한 수준이다. 모기관의 자체수입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5.0%에서 5.5%로 0.5p%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6.0%와 동일한 수준인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윤비율은 평균수준을 상회하나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와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별로 일반관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300천원, 명절상여금이 1,967천원 지급되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휴가 및 경조사지원, 50~100천원의 건강검진비 등이 제공되고 있다. 평가년도에 복지포인트가 신설되고 명절상여금과 식비가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한 것은 긍정적이나 복지포인트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공기관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기금 출연이 어려워 대체제도로서 자회사 근로자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모·자회사 공동협의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거쳐 2021년 10월 1일 자로 근로자공제회 회칙을 시행함으로써 자회사 자체적인 예산으로서 경조사, 퇴직위로금, 특별지급금 등을 운영하는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비금전적 방법 포함하여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제공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국가자격증 취득 실비 지원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법정교육, 직무 관련 전문교육, CS 관련 전직원 온라인 교육, CS 관련 전문 강사 초빙 교육, 안전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교육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모회사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커리어 경로개발 관련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구성원들의 참여율과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운임, 일비, 숙박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하고 보직자를 제외하고 통일적 호칭을 사용하며 면접시험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포상제도를 시행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가 채용을 위한 전형절차시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인사규정 등 제반 규정에 명시하고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제도 또는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층적 평가, 다면평가 등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설정하고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2020년 8월 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기관 임원추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비상임이사 선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기관만이 아닌 외부위원도 영입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임원추천위원회 외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직무중심의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 후 관리직과 현장직에 대한 적정 보수 반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사회사 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장직과 관리직의 임금인상 적용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시 기도입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에 이어 노동이사제에 관한 노사협의를 지속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19년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범 운영한 후 ‘20년 8월에 참관자격, 발언권, 비밀유지 등을 명시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22년에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임원 구성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점진적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https://fowipartners.co.kr)를 구축하여 별도의 경영공시 게시판에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등 상세 내역을 공시한 개선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자회사의 통합공시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23년까지의 통합공시 연차별 추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담당자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총 평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하고 2020.09.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무상 제공 등 설비이관을 추진한 점, 36개 시설물 위탁 관리를 위한 18건의 개별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변경을 계약금액에 반영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기자본비율이 적정수준인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은 점,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선지급으로 전환이 부족한 점, 일부 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 중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추가적인 개선을 도모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에서 여전히 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은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3.6%, 이윤비율은 6.54%로 모기관의 경영어려움에도 전년대비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00천원/월을 지급하였으며, 모기관 노사합의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회사 근로자에게도 활용하기로 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자회사와 공동으로 워크숍 및 노무관리 역량강화교육 실시, 모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채용 지침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를 이행한 후 2022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2020.09.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고, '보유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출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7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적정수준인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 경영협약에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4개 분야 총 22개 조항으로 경영권보장 및 안정적 성장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무상 제공, 사무기기와 집기, 시설물관리 필요설비 및 장비 이관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실적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재무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배당을 금지하는 내용을 출자계획서에 명시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종전에 본사사옥 등 36개 시설물 위탁 관리를 위한 18건의 개별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0.8)한 노력이 인정된다. 이 과정에서 모기관은 개별 계약별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를 공통된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안전관련 특별과업지시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으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분할하여 기성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본사 청사 대상으로 분기별 선지급으로 전환(2021.7.)하였고, 향후 국가계약법 개정 추이에 따라 전 본부에 확대 시행 예정인 점에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본사 청사외에 다른 사업소에 대한 지급방식이 충분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5일)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시설 관리 직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원가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은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변경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변경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시중노임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시설, 경비, 미화 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상회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러한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은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 모기관이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 이상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고 있는 점, 자회사 노동자의 1인당 노무비가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8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였고, 이후 2차례 노사공동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모기관은 2021년 12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운영협약에서는 모자회사 노사 각 2인 총 8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반기 1회 회의 개최를 규정하여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시설관리 제4조 관련하여 자회사의 관리비로 장비나 부속품을 구입하고 재산의 귀속은 모기관으로 하는 조항, 시설미화 과업지시서 제14조의 일일점검 조항,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해지 조항, 청렴계약 특수조건의 경쟁 입찰을 전제로 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여 개선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전년도에 부당·불공정 조항을 57건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에서 자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모기관의 제 규정 및 규칙 준수를 위한 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도록 한 것은 자회사의 경영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과업지시서 시설관리 제9조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수질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자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내용은 자회사의 과실 없는 경우라도 자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화관련 내용 제4조에서는 모기관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차례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모·자회사 경영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기본원칙, 제3조 모기관의 역할),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4장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제5장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20조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지6장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업무협력)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제5장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관련 조항들의 경우 모회사의 역할이 “노력한다”로 명기되어 있어 실행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를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관리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율은 전년도 3.25%에서 3.6%로 증가하였다. 모기관의 경영어려움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3.25%에서 3.6%로 0.35p%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5.1%에서 6.54%로 1.44% 증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윤비율은 평균수준을 상회하나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관리시설물 내의 입주사 부담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상향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식비는 월 100천원 지급되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240~360천원의 복지수당, 300천원의 출산격려금, 경조휴가 및 경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년도에 복지수당, 출산격려금이 신설된 점은 긍정적이나, 식비가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내부규정상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노사 합의로서 자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기금을 공동활용키로 하였으며(2021.12.), 사내복지기금위원회 개최로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 지원을 위해 기금의 활용 규모 및 사용을 확정하는 등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은 주무 부처와 사전 협의, 이사회 의결, 모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다양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증진이 예상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금의 활용 외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도에 모기관과 자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KICOX 안전근로협의체'를 총 4회 개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한 작업장 운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근로자의 교육 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지원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자회사와 공동으로 워크숍 및 노무관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자회사의 간담회 등을 지원하며,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운영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회사의 CS 교육, 법정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동 활용하여 모회사 교육시 자회사에도 교육을 동시에 실시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완료 후 자회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커리어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발전적 구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시내여비와 시외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는 모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식상, 휴게실 등을 이용하고 자회사 자체 그룹웨어 및 홈페이지를 차별 없이 사용하며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호칭을 사용하고 채용을 위한 서류 및 면접심사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본인평가 및 상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연2회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20년 4월 「비정규직 채용 지침」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설정하고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2020년 6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대표이사 선임 시 외부공모를 통해 선임하며 임원 공개 채용 및 절차 요건을 강화하고 정관 내에 책임 강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두도록 규정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운영하고 기존 4등급을 세분화하여

2등급과 3등급에 가·나 등급을 세분화하여 직무급을 조정하며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키콕스파트너스 원가설계 및 적정인원 도출방안 연구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용역금액 19,800,000원) 자회사 설립 이후 연 평균 4% 급여를 인상하여 처우개선에 노력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대표이사 단독이사 체제로 운영되었던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대표 1인과 비상임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로 구성하기로 완료('21.12)하여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과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를 이행하였고, 참관인 선정과 권한 및 참관 안건 등을 포함한 규정 등을 수립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22년 상반기부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회사 또는 자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영정보 메뉴를 신설했는데, 자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기업공시 게시판에 결산공고만 게시되어 있어 관련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모기관

홈페이지에 연동된 알리오에 공시된 경영정보도 투자 및 출자현황 정도만 공시되어 있어,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산업은행

총 평

○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 설립근거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회사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최신장비 구입을 위한 재원(1억원)을 반영한 점,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고 유지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노무비 원가가 100%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점, 연도 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3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 중 전년도 지적사항의 일부를 개선한 점, 자회사의 자율경영지원 및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모·자회사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경영협약의 내용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2.33%, 이윤비율은 2.37%로, 전년 대비 일반관리 비율은 증가하고 이윤비율은 감소하였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3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훈련비 등을 확대 편성하여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공고절차를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비정규직 채용 심사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표이사 선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모기관이 자회사와 거래할 때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자회사 설립을 승인한 것이므로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 다만,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출자 등을 제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회사 정관에 위탁사업(서비스) 내용의 구체적 명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1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매년 자회사가 순이익 달성하여 실질적 자본 증가로 연계되도록 모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다소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과 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자회사의 자율경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설립자본금 산정 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 최신장비 구입을 위한 재원(1억원)을 반영한 점은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장비 이관 관련 구체적 실적 기록은 확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모기관은 향후 필요한 시설·장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종전에는 직종별 별도 계약의 방식으로 4개의 계약을 유지하였는데, 이를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1.1.)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매월 분할하여 기성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2021.1.)하였고 앞으로 반기별 선지급 예정(2022.1.)인 점에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7일)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 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를 평가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원가가 100%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모기관이 제출한 본보고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추가 요구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아 판단에 한계가 있다. 한편, 모기관이 제출한 자회사 근로자 실수령 급여액은 예산 기준이 아닌 집행 기준의 2022년도

자료에 해당하여 2021년도 실적 판단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이에 모기관은 향후 운영실태 평가 시에는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일부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밑도는 경우가 있어, 시중노임단가를 계약금액 산정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모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연도 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고 있는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전기 대비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시중노임단가 100%를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시설', '콜센터'와 같은 일부 직종의 경우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고, '콜센터' 직종의 경우 향후 낙찰률 하락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이 낙찰률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에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 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현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정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으나, 모기관 자회사 담당팀장, 자회사 대표이사, 자회사 근로자대표 등 3자로 구성된 모·자회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021년 3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진행하였고 모·자회사 실무협의체에서는 자회사 현안사항에 대한 공유 및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현재의 협의 틀을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방식 및 기간 등 개선, 모기관과 자회사의 상호 합의하에서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시정한 점은 개선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모기관이 자회사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모기관이 요구하는 업무가 자동적으로 과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취지의 조항, 일부 용역계약서에서 자회사 직원의 복무규율에 관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 모기관이 영업환경의 변화 등 인해 업무위임이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의 개선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청소 시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미비된 점이 있을 때는 모기관이 요청하면 즉시 재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모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수차례 재청소 요구 위험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모기관과 자회사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거나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2월 모·자회사 간 '자회사의 자율경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3조 자율경영 지원),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12조 회의체 운영) 등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업무협약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자회사의 자율경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율경영협약을 대신하는 협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모·자회사 공동회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 실행력에 한계가 있어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전년도 평가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개선조치는 없어 제고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어 자회사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내역이 제출되어 자회사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1.88%에서 2.33%로 0.45p%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4.80%에서 2.37%로 2.43% 감소하였는데, 이윤비율의 경우 모기관의 주장대로 전년도에 19년 용역계약시 반영하지 못한 연차휴가비 3.7억원이 추가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3.26%에서 2.37%로 0.89% 감소되었다. 이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1,000천원 지급되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200천원의 건강검진비, 100~1,000천원의 경조지원비가 제공되고 있다. 평가년도에 명절상여금이 증액되었고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정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율 한도 제약 및 모기관 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3년간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독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을 통한 복리후생 증진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노동조합과의 소통 등 지속적인 노력과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금전적 복리후생 지원 외에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 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근로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은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모기관은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온라인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훈련비 등을 확대 편성하여 근로자의 경력경로 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를 기획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훈련비 예산을 2021년에는 25,000,000원 배정하였고, 2022년에는 거의 두 배인 49,000,000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근로자의 경력경로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커리어 경로개발 관련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구성원들의 참여율과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평정관리세칙에 따라 근무평정을 시행하고 동 평가결과를 승진·승급·승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비보전적 금품 지급을 위한 내무규정 명문화,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 및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포상제도,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규칙에 비정규직 사전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만으로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공고절차를 진행하고, 2022년 중 CEO 선발제도의 수립을 검토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2020년부터 지금까지 자회사 내 대표이사 선임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로, 공정한 대표이사 선발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시행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각 직종별로 직무등급 2~4단계, 단계별 7등급(연공) 임금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임범위에 따른 직책수당·선임수당 등을 보수복지 규정에 명문화하여 운영 중에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올해 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관련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되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 관련하여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게시판이 개설되었으나, 기업공시 게시판에 결산공고만 게시되어 있는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관련 개선이 요구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총 평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 0.25억 원, 0.78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를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2.6%,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5.3%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255억 원, 0.78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20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여 20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업무수행메뉴얼에 장비 및 시설 제공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진공청소기, 왁스기계, 순찰차, 무전기 등 미화·경비 업무의 주요 설비(장비) 이관, 사무실 무상 임대,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간이침대, 정수기, 냉·난방기 지원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 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고,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왔으므로 적정노임단가 산정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 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므로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다. 모기관은 보안관리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지시서를 대체하는 업무수행 매뉴얼을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나, 제6조에서 소장이 모기관담당자에게 일별

구두 업무 공유하도록 한 점과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 간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동자회사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다른 자회사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이 높지 않으며, 자회사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감소되었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의 특성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았다. 일반관리비 감소가 출연기관의 확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모기관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시설관리단이 전년도 3.35%에서 평가년도 2.6%로, 보안관리단이 전년도 6.9%에서 평가년도 5.3%로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비, 200~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 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및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질적 진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공시항목 확대 등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총 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9년 비영리 재단법인(자회사)을 설립하였으나, 아직까지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였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차량운반구 3종 등 자산의 이관을 추진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원가가 100%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점, 연도 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업무협약서 내 모자회사간 위수탁 업무와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노사공동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모·자회사의 공동이익증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5.8%, 이윤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식비 13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보장하고, 명절상여금 정기 지급 등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모기관 교육훈련 과정에 자회사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법정의무교육 이외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며,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9년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 정관 개정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을 반영하여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실제로 왁스머신, 컴퓨터 등 비품과 포터 버블캡, 차량 운반구 3종 등 자산의 이관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

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실적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시설, 미화, 경비 등 업무별로 용역회사와 체결하던 위탁계약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모기관은 출연법인인 자회사를 설립하고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에 갈음하는 업무협약서로 전환(2020.8.)한 노력이 인정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자회사의 경영 및 고용의 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 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자회사에 대한 안정적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경영 및 고용의 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를 평가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원가가 100%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모기관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추가 요구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아 판단에 한계가 있다. 다만, 기관이 추가로 제출한 직종별 평균 시급 자료를 통해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다고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이에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취지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산정되도록 용역비 산출 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일부 직종의 경우 낙찰하한률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고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기준 전 직종에 걸쳐 낙찰하한률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로써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하여 모기관은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기보다,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해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시중노임단가 대비 반영 비율을 제시하는 등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연도 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하회하고 있다. 모기관이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한 모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고, 즉각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정부출연금을 자회사에 즉시 재출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제출된 실적이 없어 평가대상 기간 중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 운영을 위한 모기관의 활동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다만,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존 용역계약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위·수탁계약서, 과업지시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다.

- 모기관이 제출한 건물관리운영 업무협약서는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자회사와의 계약 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11월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자회사 간 자율경영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임무 가의 1),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2조 임무 가의 2, 3),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3조 협의회 운영)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훈련 지원을 제외하면,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이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공동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적인 조항으로만 포함되어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모기관이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면 자회사에 필요한 예산을 재출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다른 자회사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이 높지 않으며, 자회사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소폭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의 특성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았다. 자회사가 재단법인이라는 특성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모기관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5.7%에서 평가년도 5.8%로 0.1p%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을 약간 상회하나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윤비율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400천원, 식비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고, 명절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80천원의 명절선물, 200천원의 건강검진비, 경조휴가 및 경조물품이 제공되고 있다. 복지포인트와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2,000천원의 명절격려금이 지급된 점은 긍정적이나, 명절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기타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금전적·비금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지원을 위해 모기관의 교육훈련 과정에 자회사의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하는 점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교육훈련 효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들의 학습효과 및 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 증빙 12에 따르면 2021년도 임직원 법정의무교육 계획서상의 교육은 모두 법정의무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커리어 경로 개발 관련 직무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또한, 구성하는 등 추후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경우 구성원들의 참여율과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차별 없이 사내 게시판을 접근할 수 있으며, 직무와 직급에 따른 호칭을 사용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가 운임, 일비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면접전형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 중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조서 등을 통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비규정, 채용규정, 포상운영지침, 징계규정 등 관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경력인정제도, 근무평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CEO 선발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9년 10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에 일정비율의 외부위원을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전환 전에는 지역별 개별용역회사(10개 회사)의 계약 체결로 통일 기준이 없었으나 자회사 정규직 전환 후 적정수준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자회사 보수규정 등 제정과정에 참여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 또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노동이사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 관련하여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영공시 게시판을 개설했으나 외부회계감사보고서만 게시되어 있어 관련 개선이 요구된다. 모기관 홈페이지에 연동된 알리오에 공시된 자회사 경영정보도 없어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 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서부발전㈜

총 평

○ 한국서부발전은 2018.11.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모기관 정관에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필수 업무설비 무상지원과 휴게실 및 사무실 무상 임대 등을 추진한 점, 전년도 지적에 따라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고 유지하고 있는 점,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6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원코웨포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회사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한 점, 부당·불공정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및 기타 사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0%, 이윤비율은 10%로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를 충족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600천원, 명절상여금은 설과 추석에 각 700천원, 식비는 13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고 있으며,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근로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진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모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활용, 교훈훈련 관련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했으며, 임원 선발 절차 준수규정을 명문화하고, 모자회사 경영협약서에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구체화하고,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8.11.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 정관은 제2조에서 목적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부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해 출자·출연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기관은 정관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자회사 업무위탁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사업'을 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모기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6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이익 일부를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비 예산에 반영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특히,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부채비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회사에 대한 운영기준」 제4조 및 제19조에 자회사에 대한 장비 및 설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필수기자재 무상 임대 지원, 필수 업무설비 무상지원, 휴게실 및 사무실 무상 임대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직렬별 통합계약의 형식으로 6개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전년도 평가에서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지 못한 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2021년도 전사 시설관리, 경비 및 방재센터운영 용역 도급계약서라는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0.9)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기준을 준수(평균 6일)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 지급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노무비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취지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산정되도록 용역비 산출 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현장감독자와 사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노무비 예산의 안정성 확립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노무비 책정 관련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가격 100%를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통해 낙찰하한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모기관은 기본급 중심으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2021년 상·하반기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산정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기술원 등 일부 직종의 경우 전기 대비 시중노임단가가 하락하자 '하락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노임단가가 변경된 내용이 확인되는바,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이유로 종전 노임단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93%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을 개선한 것으로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19년 이후 원 코웨포(One KOWEPO) 공동협의회를 설치, 구성하여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 및 공동이익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원 코웨포(One KOWEPO) 공동협의회에는 교섭대표노조 1인, 제1노조 대표 1인 등 자회사 근로자대표 2인이 참여하고 있다. 모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회사에 대한 운영기준」 에 공동협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모기관은 2021년 원 코웨포(One KOWEPO) 공동협의회를 상·하반기 1회씩 1회 정기 개최하였고, 협의회 개최 전에 논의 안건 교류 및 사전 이행실적 확인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기 회의의 횟수가 적정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자회사 직원의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체의 단독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자회사에 전가할 위험성이 있는 조항,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지탄받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식의 불명료한 복무규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모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용역대금 공제 등 관련 규정을 손해발생 시 자회사와 협의하는 내용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의 계약담당 실무자와의 회의를 갖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근로자 채용에 대한 인사기록사항 제출의무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한 점, 특정 행위에 해당 시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상 해지할 수 있다는 기존의 조항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점, 용역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자회사가 진다는 조항을 삭제 또는 자회사의 귀책사유에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점, '지시'의 용어를 '요구, 요청'등의 용어로 변경한 점 등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추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과업지시서 별표 2에서 노무원의 자격수준을 신체 건강한 자로 정하고 있어 이는 자의적이고 장애인 차별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9월 체결한 경영협약서를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9월 기한의 제한이 없는 협약서로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협약목적,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위수탁 계약, 제6조 전문성 강화, 제7조 협력증진),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위수탁 계약),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7조 협력증진)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제3조 위수탁계약의 제2항(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단일 통합 수의계약), 제3항(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보장), 제6조 전문성 강화의 1항(교육훈련 지원), 제7조 협력증진 등에서 모회사의 역할이 대부분 “노력한다”로 명기되어 있다. 비록 이 중 3조, 6조, 7조에 관해서는 실행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협약서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향후에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윤율을 5%에서 9%(2020년 8월 기준), 다시 10%(2021년)로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0%)까지 인상하였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인 9%를 유지하고 있고 이윤비율도 2019년 5%에서 2021년 10%로 증가하여,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보다 높을 뿐 아니라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 9.0%, 이윤비율 10.0%)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율을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소방직군을 포함하여 보장 수준을 유지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 포인트가 600천원, 명절상여금은 설과 추석에 각 700천원, 식비는 130천원/월씩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으로 월 100천원의 교통비, 1000~5000천원의 경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 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을 상회 또는 충족하는 점, 복리후생비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여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2019.08.)를 통해 3.45억원을 자회사 복지재원으로 활용키로 하고 2020년 12월 자회사 근로자 전체에게 30만원/인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고,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를 통해 복지재원 1.1억원을 마련하여 2021년 12월에 20만원/인을 지급한 실적이 확인된다. 또한,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재원이 생성되어 19~20년 2년간 약 10.3억원을 비금전적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진 중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외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모·자회사 협동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모·자회사 멘토링프로그램 「GoTogether」 운영, 모기관 윤리경영 및 반부패 교육컨텐츠 공동 활용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자회사 근로자의 직무교육훈련 증대를 위한 교육 필요성 인지하고, 자회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비를 설계하여 반영(2021년도 교육예산 전년대비 26%증액 승인)하는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원 및 지원을 지속하였다. 근로자 교육훈련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자회사 구성원의 니즈를 반영한 교육 및 훈련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자회사 근로자 역량개발에 따른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승진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휴게실, 건강측정시설 등 이용에 있어 차별이 없고 전 직원에게 동일한 인트라넷 접근 아이디를 부여하며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고 채용시 외부위원을 반수 또는 과반수로 구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포상제도를 운영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인정에 대한 원칙 및 가점기준에 따라 신입사원 채용 및 승진시 경력평정에 반영하고 다층적 평가·다면평가 등을 통한 근무평정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20년 9월 「비정규직관리기준」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선발 절차준수 규정을 명문화하고, 임원선임 시 청렴시민감사관, 노무사 등 외부위원 선임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임원선발 시 위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정부 기준을 원칙으로 합리적 임금체계를 마련했고 시중노임단가와 연계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직무와 능력을 반영한 직무급 기반으로 기본급을 설계했고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정규직 전환 이전 대비 총 28.8%의 급여가 인상되었고 합리적 인사제도 변경 및 근로자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사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21년 12월에 TF를 구성하여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검토를 시작했고 모·자회사 경영협약서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자 경영 참여방안(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도입을 검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향후 TF 정기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논의결과에 따라 제도화 예정이다. 도입 노력을 지속하여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방식과 의결권, 발언권 등에 대한 구체적 권한 등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확대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게시판에 주요 경영계획과 재무제표 정보만 게시되어 있어 여전히 주요 경영정보의 추가 및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모기관 홈페이지에 연동된 알리오에 공시된 자회사 경영정보도 투자 및 출자현황,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에만 국한되어 있어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석유공사

총 평

○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2020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모기관이 장비(차량 포함) 일체를 제공 또는 무상 대여 등을 추진한 점,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으로 전환한 점,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2021년 상·하반기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낙찰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다소 높은 점, 대다수 직종의 노무비를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 지적받은 부당·불공정한 조항을 개선 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점 등은 긍정적이나, 계약서 내에 여전히 복장 착용에 대한 규제, 복무규율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고, 노사공동협의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못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여 6.0%, 이윤비율은 10%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명절상여금이 설과 추석에 각 500천원, 식비 월 6천원(사무직과 경비직 이외의 기타 직종은 6천원 상당의 현물 식사)으로, 명절상여금과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초과하고 복리후생비 항목과 지급기준이 규정화되어 있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모기관의 E-learning 교육 공동 활용 등으로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 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등을 통해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며,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2020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모기관 정관(제26조)을 보면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운영 등 업무의 일부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특히,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다소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서비스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모든 소모품과 장비의 무상 제공, 과업

내역서 상 소모품, 자재, 공구, 도구, 장비(차량 포함) 일체를 제공 또는 무상 대여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0.9)하여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 지급방식을 월별 후지급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으로 전환(2021.4분기)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분기별 선지급이 2021년 4분기에 비로소 시행된 점은 아쉽고 향후 계약대금 지급방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3~9일)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대다수 직종의 노무비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노임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 점이 확인된다. 이에 모기관은 향후 예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이 노무비 예정가격 산정 시 총괄 현장소장과 각 직종별 팀장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에 더하여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립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기본급 중심으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2021년 상·하반기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산정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모든 직종의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하는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모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하여 모기관은 시설관리원, 조리원, 경비원, 미화원 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는바,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조사한 결과로 바탕으로 적절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고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계약금액 산정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97%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러한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의 일정 비율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이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이 낙찰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에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는 현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모기관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사전 논의한 사항 등에 대한 실적은 제출되지 않아 평가대상 기간 중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 운영을 위한 모기관의 활동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 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모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업범위가 추가될 우려가 있는 조항, 자회사 노동자의 파업방지 예방 활동 계획을 모기관에 통보하게 하는 등 노동3권 제약으로 의심될 수 있는 조항, 모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복무규율 조항, 정부 방침에 따라 자회사가 용역계약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 등을 삭제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작업량 증가에 따른 자회사 노동자 업무 피로도 호소로 계약을 변경하여 시설관리원을 1명 증원 및 계약금액도 증액하였으며, 2021년도 계약 시 운전원의 용역범위를 정함에 있어 기타 '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모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는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의 징계 등 복무를 규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과업지시서 시설관리용역에서 복장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은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복무규율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과 자회사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거나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9월 경영협약서를 체결하고, 2021년 11월 이를 구체화하여 개선한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개선된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목적, 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자회사 안정 보장을 위한 조치),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자회사 안정 보장을 위한 조치, 제5조 전문성 강화),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제5조 전문성 강화에 포함된 교육훈련 지원, 노사담당자 합동워크숍 개최 등의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의 임의적 문구로 명기되어 실행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시설 이관 등의 지원, 모·자회사 간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없어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 향후 계약 체결 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 지적사항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의 5%에서 평가년도 6%로 1%p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10%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는데, 이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수준을 초과하나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윤비율은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의 일반관리비 인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명절 상여금은 설과 추석에 각 500천원, 식비는 사무관리직과 경비원 직종은 1일 6천원, 기타 직종은 6천원 상당의 현물 식사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으로 100천원의 교통비, 근로자의 날 100천원,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명절 상여금 및 식비를 정부 공무직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점, 복리후생비 지급기준과 금액을 자회사 보수규정에 명시하여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복지 포인트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을 통한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현재 모기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고 자회사측 기금 출연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자회사 직원을 위한 휴게 공간을 지원하고 모회사 또는 자회사 노동조합 사무실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교육훈련 및 경력 경로 개발을 위해 모기관이 E-learning 교육(21개 소분류 297개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산업안전보건관련 재해 발생의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 일반관리비 증액에 따라 대리급 실무자 관리 인력을 1명 추가하는 등 운영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내부직원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출장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의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차별 없이 이용하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분기별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피평가자별 평가자 및 평가비중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21년 10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가 채용을 위한 전형절차시 외부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설정하고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CEO 선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임원 선발과 관련하여 공개된 경로를 통해 모집공고를 진행하며 임원 추천을 위한 위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19년 11월 자회사 설립 당시 비정규직 전환 관련 시설관리자회사 설립 및 컨설팅 용역을 통해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4등급-6단계의 승급형 직무급 제도로 마련하였으며 자회사 용역비를 위한 별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 또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노동이사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 또는 자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가 아직 구축되지 못했으며, 경영정보 공시는 모기관 홈페이지 경영공시 메뉴 중 케이엔오씨서비스 주식회사 경영공시 게시판에 자회사의 경영계획,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제시되어 있어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 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수력원자력㈜

총 평

○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의 근거가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업무 관련 설비 전수조사 시행 및 필수 설비 대상 신규 구매 완료를 추진한 점,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기자본 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부채비율도 매우 높은 점, 위탁계약 형식에서 2021년 40개로 통합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는 점, 낙찰률 88%를 적용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 지적받은 부당·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한 점, 과업지시서를 점검하여 개선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노사공동협의회를 아직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고, 경영협약도 체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 비율은 9.0%, 이윤비율은 1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를 충족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500천원 신설, 명절상품권 2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기준을 규정화하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용예산 55억원 중 24억원을 자회사에 배정하기로 의결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모기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자회사에 제공하고, 자회사 중 1개사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했으며,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대표이사 선발 과장의 공정성을 제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직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 정관은 제2조에서 목적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부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사업'을 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두 곳(퍼스트키퍼스, 시큐텍)에 각각 자본금 9.9억 원과 6.9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 두 곳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경영협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설·장비 및 용품 인수인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업무 관련 설비 전수조사 시행, 필수 설비 대상 신규 구매 완료, 설비·물자관리체계 구축, 1톤 트럭, OA 설비 등 소모성 장비 주기적 교체, 모기관 소유의 중대형 특수설비 무상 제공, 자회사 보유 설비장비 대상 감가상각비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관리비(9%) 및 이윤(10%) 등 국가계약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정 최대를 보장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98개 계약을 2021.4.에 40개로 통합한 노력은 인정되나, 향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비록 모기관이 기존 용역 건수 98개 대비 60% 이상 감축한 40개 계약으로 통합함으로써 동일·중복업무 제거, 용역업무 단계별 담당 부서 확립을 통한 책임성 및 관리 기능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둔 점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계약 건수가 많으므로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 지급 시 매월 분할하여 기성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모기관은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한시적 특례에 따라 10일 기준)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원가로 하여, 해당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취지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산정되도록 용역비 산출 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한편,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현장감독자와 사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노무비 예산의 안정성 확립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기보다,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해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및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가격 100% 반영에도 불구하고 낙찰하한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바,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88%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모기관은 기존의 낙찰률을 근소하게 인상하는데 그침으로써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발족 이전 사전 준비 단계로서 모·자회사 합동으로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휴게 공간 개선을 논의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였고, 자회사 노무관리 역량 강화 및 신뢰관계 수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자회사의 현장책임자가 현장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시 자회사가 이에 순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 용역수행의 결과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의 휴가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 모기관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회사 노동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이 당연히 과업 내용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조항, 모기관이 자의적, 포괄적으로 자회사 노동자의 복무규율을 강제할 우려가 있는 조항, 모기관이 공공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로운 사유 발생 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정한 조항에 대해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개선하였다. 특히 2021년 하반기에 과업지시서 및 일반 특수조건의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반영하고, 모기관 사규 제정 시에도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본사 홍보관 위탁운영 용역 특기시방서에서 자회사는 모기관이 서면이나 구두로 지적하는 자회사 노동자의 근무태만이나 비위사실 등에 대해 자회사가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모기관에 보고하게 하는 조항, 자회사가 기초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모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 등은 자회사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향후 모기관과 자회사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

하거나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2년 1월 경영협약서 체결 예정이며, 평가기간 내에는 현재는 경영계약서만 체결되어 있다. 경영협약서(안)에는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제4조),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등 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경영계약서는 계약의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 경영협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체결 예정인 경영협약서(안)의 경우도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항목이 추상적인 원칙 수준에서 '노력한다'고 명기하고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 수준으로 체결하였고 자회사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높은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평가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유지하였고 자회사는 2020년 이후 연속하여 당기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9.0%와 동일하며, 이윤비율도 전년도 10.0%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을 초과하며,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율을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명절상품권 200천원, 식비 월 130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평가년도에 복지포인트 500천원을 신설하여 지급하였다.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교통비 월 100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식비를 지급하고 복지포인트를 신설한 점,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과 금액을 자회사 복리후생관리규정에 명시하여 지급의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명절상품권 지급은 명절상여금에 대한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우선 개선이 필요하고,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서도 지급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자회사에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회사가 연속하여 당기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용예산 55억원 중 24억원을 자회사에 배정하기 위하여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자회사 및 기타 사내하도급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총 5,350명에게 1인당 100만원 수준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해당 금품은 20201~2022년 2개년에 걸쳐 50만원씩 2회 지급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비용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자회사 재무·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 복지제도 수립을 지속해서 검토 예정인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은 주무 부처와 사전 협의, 이사회 의결, 모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다양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증진이 도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금의 활용 외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자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하고 모기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자회사에 제공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교육훈련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자회사 직무교육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자회사 근로자 교육 기회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출장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총무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차별 없이 사내 ERP 또는 그룹웨어를 이용할 수 있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연 1회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승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자회사 중 퍼스트키퍼스㈜는 2021년 9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중 시큐텍㈜가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신임 대표이사 선발 과정상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 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5인 중 사외전문가가 3인 인상으로,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비율 대비 50% 이상으로 유지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 역시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제수당 운영과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임금지급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부터 일반직(행정직) 임금체계와 관련한 컨설팅을 시행 중이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활성화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입법 이후 모기관 운영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자회사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기획재정부 알리오 공시를 준용하여 공시항목을 확대했다고는 하나, 두 자회사 홈페이지 확인 결과 경영공시 게시판에 일반현황과 결산공고 정보만 반영되어 있어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 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총 평

○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모기관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 본사 사옥 임대보증금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설비이관을 추진한 점, 위탁계약의 형식에서 단일 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 예정가격 산정 시 해당 원가를 100% 반영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회사에 자본금 5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낙찰률 89%를 적용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운영규정을 확정할 계획이 있는 점, 부당·불공정한 조항 중 전년도 지적사항과 추가 조항을 검토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자율점검 체계를 구성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계약서 내 일일보고 조항, 근무시간 용모 관련 조항 등은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6%, 이윤비율은 5%이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일반관리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한도에 도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2021년도에 일반관리비 비율을 인상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명절상여금 지급 등 추가적인 복리후생 방안을 모색하고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모자회사 합동워크숍, 전직원 대상 위탁교육 과정 진행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사장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2022년 내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및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기존 정관에 자회사 설립 및 업무 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0.09.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사는 '제2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를 할 수 있고, '제27조의 사업 또는 일반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출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19년 및 20년에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누적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경영협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자회사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설 제공 및 모회사 시설의 공동이용 방안 시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모기관 PC 이관(150대), 자회사 본사 사옥 임대보증금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 자회사 업무시스템 도입 추진, 모회사 본사 내 사무공간 제공, 독립적인 휴게공간 확보 노력, 회의실·체력단련실 등 공동 사용, 교육 장소와 설비·자료 등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부당한 사업 이관 방지를 위해 출자회사관리규정에 위수탁 사업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2019.1.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였을 뿐 아니라 자회사 담당부서로 계약관리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20.9)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위·수탁관리비를 4등분한 금액을 매 분기 초(1,4,7,10월) 10일까지 청구하도록 하고 모기관은 청구받은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계약대금을 분기별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개선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상회하는 금액을 원가로 정하고, 해당 원가를 100%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취지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산정되도록 용역비 산출 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의 88% 수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예정가격 및 낙찰률 산정 등 계약금액 산정이 합리적인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낙찰률 92% 수준으로 시중노임단가 반영을 목적으로 중장기 경영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점이 인정되고 이로써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궁극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 기준, 모든 직종의 노임단가가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모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89%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모기관은 기존의 낙찰률을 근소하게 인상하는데 그침으로써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이후 모기관 및 자회사 노사가 참여하는 모·자회사 노사공동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모기관은 2021년 1차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재해보험 가입, 복지기금 설립 등을 자회사 처우개선 건의사항 및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2021년 1차 회의에서는 노사 공동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방식, 임기, 안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규정을 합의하여 확정할 계획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회의 시 이전 회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는 등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홍보직원이 근무태만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는 경우 자회사와 후속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 모기관이 일방적으로 과업 내용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 모기관의 직제변경 등 사유로 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 내용의 일방적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 지사가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절차 없이 그 이행을 강제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자화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요청하도록 변경하는 등 개선하였다. 위탁계약서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전염병 등 재해·재난 발생 시 필요한 사항, 예산관리 협력 등에 대해 신설한 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추가적인 부당·불공정 조항을 발굴하여 개선(모기관에 보고하는 방식을 전달, 협의 등으로 수정,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교육사항 세부적 명시사항을 자회사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수정, 근무시간 등에 대해 과업수행시간 등으로 문구 수정, 자회사 근로자 징계와 관련된 조항의 삭제, 인사·근태 관련한 조항 삭제 등)한 점 및 개선과정에 있어 모기관과 자회사가 공동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자율 점검체계를 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상담 관련 과업지시서 제12조에서 일일 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은 자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홍보 관련 과업지시서에서 자회사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에는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근무하도록 정한 것은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복무규율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9월 '모·자회사 상생협력을 위한 경영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기본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협력사항),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4조 공동협의회)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운영지원에서 시설이관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년도에서 경영협약서 내용 보완에 관한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 체결 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년도에 일반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개선노력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5%에서 평가년도 6%로 1% 상승하였고, 이윤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5%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의 평균수준을 상회하지만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일반관리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한도에 도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인 2021년에 이를 성실히 이행한으로 보이는데 이윤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400천원, 식비 월 130천원이 지급되고 있고 그 외 복리후생으로 모회사와 동일하게 인당 건강검진비 260천원과 특수검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지포인트, 식비 지급, 모회사 수준의 건강 검진비 지원,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2년 예산에 인당 800천원의 명절 상여금 예산을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평가년도에 명절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복리후생비 지급액 및 지급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당기 순이익을 고려하여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지 수준 향상,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2021년에는 자회사 노사협의회 및 외부컨설팅을 거쳐 우선적으로 자회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및 출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모회사 제도를 벤치마킹한 자회사 맞춤형 복지몰을 도입하여 자회사 복리후생 증진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모·자회사 합동워크숍을 실시하고 전직원 대상 위탁교육과정 및 전문가 특강을 운영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시행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및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훈련 내용 구성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운임, 일비, 숙박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복리후생 및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차별 없이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하고 채용을 위한 면접전형시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포상제도를 운영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와 근무평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규정 제17조에 단기계약근로자 채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단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대체인력풀 구성→충원 요청서 제출(현장 대리인)→ 충원 요청 검토(본사 인사담당자) 순으로 비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진다는데 단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0월 사장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까지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고용노동부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2019년 10월)을 통해 직종별 등급·단계 등 직무급 도입방안을 검토했고 임금체계 개선 합동 TF(모기관 2인 참여)를 구성·운영하여 직무급 도입을 지원했으며(2019년 10월) 현재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직무급제를 도입했으며 계약체결 절차를 개선하여 자회사 임금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21년 10월부터 타 기관 사례조사, 모회사 운영제도 컨설팅 등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검토하여 '21년 12월 자회사 이사회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논의한 결과 노사합의로 '22년 내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도입 노력을 지속하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 방식과 의결권, 발언권 등에 대한 구체적 권한 등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 관련하여 모기관 또는 자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여 공시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자회사 운영현황에 적합한 공시기준을 수립하여 공시항목, 정기·수시 공시 별 공시시기, 공시경로 등을 명확히 했고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를 반영했다고 한다. 확인 결과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 메뉴에 일반현황, 임직원현황, 징계현황, 내부규정, 재무정보, 노동조합 관련 정보가 공시되었다.

- 공시된 경영정보 항목이 아직 미흡한 편이기에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뿐 아니라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정확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을 제공하고 모·자회사가 공시 사항을 합동 점검하려는 노력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총 평

○ 한국수출입은행은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법과 모기관 정관에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모기관이 자회사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무상 제공(지속) 등 설비이관을 지원한 점, 자회사와 최초 계약시부터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 예정가격 산정시 해당 원가를 100% 반영한 점,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한 점,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자회사가 산출한 원가계산서를 100%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노사공동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계약서 내 여전히 용모 단정 조항, 훈련계획의 통보를 의무화 하고 있는 조항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0%, 이윤비율은 1%이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760천원, 식비 13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는 등 일반관리비 비율이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를 초과하고 복지포인트와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훈련비를 증액 배정하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규정을 제정하고 채용 전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및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2019.07. 자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2020.03.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를 명시하게 되었다. 모기관 정관 제37조 제3항을 살펴보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제1항을 살펴보면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모기관 정관 제29조에서 모기관은 '법 제18조와 제2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이같은 법률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와 투자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9.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적립을 통해 자회사의 자기자본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설립 간 관련 예산 배정 및 물품 지원, 자회사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무상 제공(지속), 휴게실 개보수 공사 및 노후화 비품(가구, 세탁기 등) 신규 교체,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이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등 직원 복리에 활용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자회사와 최초 계약시(2019년말)부터 2021.12.까지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업무별(시설·미화·경비)로 외주용역사 3개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회사 설립후 모·자회사 협의를 거쳐 최초 계약시부터 통합계약으로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2020.12.)하였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5일)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 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시설·미화·경비 직종 노무비 원가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해당 원가를 100%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점은 예정가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한편, 모기관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에 따르면 인건비 중 상여금 항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자회사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어 해당 상여금이 내규 상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별도 계상하고 퇴직충당금 산정

기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탁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위탁계약 체결 시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하였는데, 적용 중 노임단가가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함에 따라 별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적용 중인 노임단가가 변경된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위탁계약서 등에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원칙에 관해 명시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시설, 미화, 경비 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 시중노임단가를 제시하였는데, 모기관은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직종별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자회사가 산출한 원가계산서를 100%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에 반영하여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되 모·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회사 안전운영부와 자회사 경영관리부간 격주 1회 정기 회의를 실시하고, 자회사 경영관리부는 각 파트별 현장소장을 통해 각종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모회사 안전운영부에 전달하는 방식 등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소통 강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현재의 협의 틀을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과업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 자회사의 사회적 인식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 경우 등에 모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자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변경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모기관은 2022년 계약 체결 시 일부 조항을 추가적으로 수정하여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복무규율에 해당할 수 있는 잡담·고성금지, 업무지시 복종 등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경비파트 부적합 업무도 삭제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복무규율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지시 복종 등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나 그 외 경비용역 과업지시서에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훈련계획을 모기관에게 통보하게 하고, 자회사 종사자에 대해 용모를 단정히 하도록 하는 문구는 변경되지 않아 해당 내용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향후 모기관과 자회사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거나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기간중인 2021년 7월 '모-자회사 상생발전을 위한 경영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자율적 운영 지원),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용역계약),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6조 협력관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경영협약 내용에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은 매우 기초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훈련 지원이나 시설이관 등의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점, 시중노임단가 적용, 복리후생 지원 등 자회사의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이 없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은 포괄적 원칙으로만 제시되고 있어 공동협의회의 제도화 등 구체적인 내용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의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 체결 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율을 일부 인상하였으나 이윤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율은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를 초과하였으나(9.0%), 전년도와 동일한 이윤율 1%는 평가대상 모기관 평균에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자회사가 20년과 21년 연속하여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모기관에 이윤을 배당하지 않아 자기자본금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평가대상 모기관의 이윤율 평균을 고려하면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760천원, 식비 월 130천원이 지급되고 있고 그 외 복리후생으로 인당 건강검진비 300천원, 명절 상여금 200천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지포인트 및 식비 지급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명절 상여금이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인 점, 식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를 제외한 일부 복리후생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지급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기 순이익을 고려하여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지 수준 향상,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 절차 및 제약사항 등을 감안하여 변동성이 높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모기관이 복리후생비를 원가계산 시 반영하여 안정적 재정지원 방식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모·자회사 간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동일 금액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이 확인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서 자회사 교육을 직접 지원해 주면서 교육훈련비 또한, 배정(2021년 20,000,000만원, 2022년 23,000,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는 등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코로나 19 상황의 지속으로 집합연수 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련 주요 법률 및 제도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그와 동시에 모기관의 노사, 인사, 급여, 복지,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회사의 업무를 수시로 지원하고 상담하는 점 역시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들에게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의견 청취 후 이를 수렴하여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하고 교육훈련 진행 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용도 등 피드백을 받아 이를 다음 교육훈련 계획 구성 시 반영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 출장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취업규칙 및 여비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모기관 구내식당, 체육실 및 각종 휴게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며 채용 면접위원의 반수 이상은 응시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고 업무능률향상 공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부서/직원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 절차가 반영되어 있는 근무평정제도 운영(안)은 2022년 1분기 중 확정 예정인 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어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9월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동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통해 CEO를 선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내부기준을 수립해 지원자격에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고, 채용 전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도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일반경비 등 용역비(법무법인, 세무법인, 노무사, 채용 면접관, 채용 대행 등)를 사용하여 임금체계 개선 관련 컨설팅 등을 시행하도록 지원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노·사 양측 모두 안정화가 필요한 시기여서 노동이사제 도입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향후 노동조합의 도입 요구시 도입을 위한 충분한 법적검토 및 사례 연구 후 모기관과 협의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선언적 내용만

언급된 채 향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 확인 결과,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고 커뮤니티 메뉴 공지사항 게시판에 인권경영선언문과 결산공고만 공지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모기관 홈페이지에 연동된 알리오에 공시된 자회사 경영정보도 투자 및 출자현황,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에만 국한되어 있어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총 평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 0.25억 원, 0.72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2.6%,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5.5%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25억 원, 0.72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고 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

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업무수행메뉴얼에 장비 및 시설 제공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간이침대, 정수기, 냉·난방기 지원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장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실적)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업무 특성상 필수적인 주요 설비(장비)는 상당히 이관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 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다거나,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온 점이 인정되며,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 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존 용역계약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위수탁계약서, 과업지시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 받았다.

- 모기관은 보안관리 공동출연기관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사업소별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 즉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시설관리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 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동자회사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다른 자회사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이 높지 않으며, 자회사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감소되었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의 특성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았다. 일반관리비의 감소가 출연기관의 확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모기관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시설관리단이 전년도 4.69%에서 평가년도 2.6%로, 보안관리단이 전년도 6.9%에서 평가년도 5.5%로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자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실비용역 특성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연간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비, 200~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과 자회사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냉장고, 세탁기, 마이크 등을 지원한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간접 지원 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임원선발 관련 공고와 절차 등을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에 공고하는 등으로 임원선발의 공정성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질적 진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공시항목 확대 등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총 평

○ 한국예탁결제원 2021.06.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편, 모기관이 자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차량 등 설비이관을 추진한 점,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종전에는 6개 개별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2020.8.부터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한 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계약대금 지급에서 매분기 시작 월 14일 이내에 계약대금을 지급한 점,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전년도 지적받은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이나, 계약서 내 일일·주간업무 보고, 모기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계약해지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8.4%, 이윤비율은 3.0%로 전년 대비 일관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8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사용에 대한 기획재정부 승인 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일반관리비 비율을 대폭 인상하고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며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는 등 개선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자회사 근로자의 직종별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두어 임원 선발의 공정성을 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구축된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기존 정관에 자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1.06.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예탁결제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9.9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8년 8월 설립 이후 발생해 온 누적 적자를 대부분 해소하고, 2021년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어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표준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

지시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모기관은 기존 업체로부터 장비 인수, 노후 장비 교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 설비, 차량, 전산장비 등 구매, 사무실과 휴게장소 마련, 자회사 사무공간 이전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 관리비 및 통신비 등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종전에는 6개의 직종에 대한 개별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2020년부터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2020.8.부터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서 매분기 시작 월 14일 이내에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 용역기관 2개사가 산정한 6개 직종 총원가 값의 평균을 원가로 하여, 해당원가를 99.95% 적용한 예정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다만, 모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한편, 모기관이 추가로 제출한 직종별 통상시급 자료를 통해 인건비 수준이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상회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예정가격 기준이 아닌 집행금액 기준이라 명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 이와 별개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회사 직무급테이블을 단순노무시중노임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모기관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산정하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직무급 테이블이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모기관은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변경분 반영을 위해 별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적용 중인 노임단가가 변경된 시중노임단가에 밑돌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위탁계약서 등에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원칙 및 미달 시 차액분 보전에 관해 명시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컨택센터, OP, 시설관리, 일반경비, 환경미화, PC유지보수 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고 있는바, 모기관은 직종별 직무가치를 고려해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올바로 산정하고 시중노임단가의 변동을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자회사의 직무급 임금체계 및 외부 원가산정기관의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이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직무급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1월 모자회사 노사 공동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8월 한국예탁결제원·(주)케이에스드림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공동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2021년 2차례에 걸쳐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안건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2021년 12월 모기관 및 자회사 노사가 참여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안전 관련 컨설팅 결과 공유 등 인권 및 안전경영 실천 강화 방안 및 포상제도 운영기준 마련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과업지시서의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라도 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자회사가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 노동쟁의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자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 용역 공정

또는 계획의 변경 등에 대하여 사실상 자회사가 모기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였다. 또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시설관리 및 일반경비, 과업지시서 시설관리 및 컨택센터, 전산OP, 일반경비 내용에서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에 대해 자의적, 포괄적으로 복무를 규율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등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컨텍센터 과업지시서에서 자회사가 모기관에게 일일·주간 업무 및 실적보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은 과도한 개입에 해당할 수 있고, 환경미화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서 모기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자회사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조항은 부적절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모기관과 자회사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거나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8월에는 경영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된다.

- 그러나 경영협약서의 목적이나 내용을 살펴볼 때, 자회사의 자율성,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자율경영협약보다는 모·자회사 간 경영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약정서 혹은 경영계약서에 가까운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어, 자회사 경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 모·자회사 간 공동협약 등을 위한 별도의 자율경영협약 체결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 시 일반관리비를 8%(국가계약법상 최대 9%)로 체결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윤율(국가계약법상 최대 10%)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모기관이 적정한 수준의 이윤율을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가 어려웠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평가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관리비율은 전년도 4.3%에서 8.4%로, 이윤비율은 1.65%에서 3%로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전년도에 비해 일반관리비율은 2배 가까이 인상하여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수준을 상회할 뿐 아니라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에 근접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윤비율은 1.35% 인상하였으나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 평균을 하회하며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1년 자회사 순이익이 약 2.1억원으로 예상되지만 누적 손실액 규모를 감안하면,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48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30천원으로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준이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평가년도에 복지포인트를 400천원에서 480천원으로 인상한 점. 기존 가족수당에 배우자 수당을 추가 신설한 점, 복리후생비 지급기준과 금액을 자회사 급여규정에 명시하여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기본재산의 모·자회사 공동사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승인(2021.6.4.)을 득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2021.11.8.)하여 수혜대상에 자회사 근로자를 포함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최종승인(2021.12.13.)을 거쳐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온누리상품원 50만원/1인을 지급(2021.12.28.)하는 등의 실적이 확인된다.

-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은 주무 부처와 사전 협의, 이사회 의결, 모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다양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외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직종별 직무교육과 외부 전문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 및 직무역량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높은 수준의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후 교육효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다음 교육훈련 계획 구성 시 반영하고, 교육훈련 과정 설계 시 대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렴 후 반영하는 등 효율성 있는 교육훈련 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식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휴일근로자 식대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된 호칭을 사용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채용전형시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고 연 1회 직무평가와 동료평가로 이루어진 근무평정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인사위원회 규정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정기 단계 승진 실시 계획만으로 근무평정제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어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경력인정제도와 근무평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두어 임원선발에 공정성을 기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두어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발제도에 따라 대표이사 선발을 완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18년 4월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 임금체계 설계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직무급 테이블을 설계했고 이후 시중노임단가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현재 자회사는 대표이사 단독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며, 추후 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올해 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관련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가 구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홈페이지 주소(ksdream2018.modoo.at)가 2018년도를 의미하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 상징성 및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고 회사소개 게시판에는 자회사 연혁과 주요사업 및 자본현황을,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인권경영 선언문 정보만 공지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 모기관 홈페이지에 연동된 알리오에 공시된 자회사 경영정보도 투자 및 출자현황 정도에 국한되어 있어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총 평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9.3.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2021.01.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에 장비·용품을 추가 이관한 점,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 예정가격은 시중노임단가를 100% 충족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점,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직종 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2021년 상반기에 89%, 하반기에 90% 수준의 낙찰률을 적용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0%로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를 충족하고 이윤비율은 8.0%로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의 이윤비율 평균을 상회하며,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5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이윤비율 추가 인상 계획에 따라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따라 식비를 개선하며, 복리후생 항목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훈련을 위한 인프라 지원, 교육비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며,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CEO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고, 모기관이 지원한 예산을 활용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구축된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9.3.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은 기존 정관에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1.01.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자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고,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출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회사 정관에 위탁사업(서비스) 내용의 구체적 명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3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19년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어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3.0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정도이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수탁용역 활용물품 유무상 양여 계약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설립 시 필수 설비 일체에 대한 유·무상 양여 완료(2019.4.), 모기관 장비·용품 추가 이관(2020.08~2021.11.), 모기관 편의시설 자회사 개방 확대, 위생관련 용품(화장지, 핸드타올 등)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반관리비(8~9%) 및 이윤(8%)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0.9.)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용역계약 4건(시설, 청소, 경비, 업무지원)을 통합하여 2020.8.부터 단일 통합계약을 체결(2020.8.28.)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매월 분할하여 기성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요청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회사의 선금 신청 사례는 없는 것으로 실적보고서에 기술하고 있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2일)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은 시중노임단가를 100% 충족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예정가격이 원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산정되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취지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직종 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상승분 반영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한편,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 변경 관련 시중노임단가 하락에 따른 계약금액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률을 상향 조정한 것이 확인되는바, 모기관이 시중노임단가 반영의 취지를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및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가격 100% 반영에도 불구하고,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기준으로 노임단가를 산정하고 있는바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2021년 상반기에 89%, 하반기에 90% 수준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을 개선한 것이나,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이 낙찰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에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및 자회사 담당자 간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노사공동협의회 운영협약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자회사 처우개선, 공동이익 증진 등의 구체적 방안을 포함한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협약(안)을 마련하였고, 2022년 상반기 중 협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1년도 변경계약 시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사항 5건(모기관에 '보고'를 '통보'로 변경), 자회사 경영인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조항(자회사 인력 투입 시 모기관과 협의하도록 내용 삭제)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내용상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조항의 경우 본보고서에서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모기관과 자회사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거나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모기관과 자회사 간 경영협약서를 체결했음이 인정된다. 협약서에는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원칙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동 협약서에 주요 설비의 자회사 이관 등 지원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복리후생증진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노사공동협의회 등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년도 평가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이루어졌으나 평가기간 내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개선 예정이라는 점만 제시되어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 시 일반관리비를 9%(국가계약법상 최대 9%)로 체결하였으며 이윤율은 7.5%(국가계약법상 최대 10%)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일반관리비를 보장받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평가받았다.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율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9%로 유지하였고 이윤비율은 8%로 인상하였던 바, 개선노력을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 9.0%는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0%)를 충족하고, 이윤비율 8% 또한,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의 이윤비율 평균을 상회하여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0%)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자회사의 재정 안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다만, 자회사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이윤비율의 인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22년에도 이윤율 추가 인상 계획(8.2%)에 따라 개선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복지포인트 5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을 지급하고 식비는 미지급하고 있다.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 지급은 긍정적이지만, 식비는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각종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규정화하여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당기순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추후 모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순이기 전환 후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용을 위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 자회사에 지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문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모기관에 기획, 인사, 예산, 교육 분야별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자회사 직원의 역량 증진을 위해 수시 자문 제공), 연간 교육계획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모기관의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21년도 용역계약 시 교육비 예산을 증액(전년대비 약 157% 증액)한 것 역시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교통비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이 보유한 회의실, 도서관, 체력단력장 등 편의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하고 자회사 사내 정보망 이용에 제한이 없으며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고 채용을 위한 종합면접시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포항제도를 운영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력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면평가 등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에 고용신청서 제출, 기간제 직원 활용계획의 적정여부 심사 후 확정(경영지원실장) 등의 절차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채용전형시 외부위원의 비중을 높이는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있지만 전형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이고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 그 자체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CEO 선발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동 컨설팅을 통해 자회사 설립 이전 대비 1인당 약 540만원이 인상되었으며 2021년 자회사 노사간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도에 2차례 계약을 통해 낙찰률을 인상하였다(88%→89%→90%). 또한, 2021년 12월 예측 가능한 임금

체계 설계 마련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을 위해 모기관이 지원한 예산을 활용하여 '자회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의 단체교섭 중 제2노조가 설립되었고 교섭대표노조와 과반수 노조가 다른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사례조사, 컨설팅, TF 운영 등을 통한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타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경영공시 사례조사와 공시 대상 및 모기관의 자료제공 범위 관련 모기관의 협의를 거쳐 '21년 12월에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하지만, 자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열린경영 경영정보 게시판에 정관,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정보만 공시되어 있고, 모기관 홈페이지에 연동된 알리오에 공시된 자회사 경영정보도 투자 및 출자현황과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 정보 정도에 국한되어 있어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총 평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 0.3억 원, 0.59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2.6%,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4.5%이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306억 원, 0.586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고 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

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실적)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장비)는 상당히 이관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 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고,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왔으므로 적정노임단가 산정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 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므로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다. 모기관은 공동출연법인을 설립하여 보안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사업소별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 즉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시설관리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 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었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시설관리단이 2.6%, 보안관리단이 4.5%, 이윤비율은 자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실비용역 특성상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연간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항목으로 200천원~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내부 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 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질적 진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공시항목 확대 등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총 평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법과 모기관 정관에서 자회사의 설립 및 출자·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시중노임단가 기반의 예정가격 산출 방식이 아닌 자회사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한 점, 2021년 상·하반기 모든 직종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 점,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높은 점, 자회사인 ㈜캠코시설관리와는 42개 계약을 유지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의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개선 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자회사 평균 8.5%, 이윤비율은 4.5%로 전년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이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자회사 평균 월 13.5천원으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며,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기준을 규정화하여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훈련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전문성 및 역량을 향상시키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 제정을 통해 CEO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고, 자회사 경영컨설팅 또는 임금컨설팅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며,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메뉴를 신설하고 공시항목을 11건 추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에서 '공사의 업무수행(제1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출자 및 투자'를 정하고 있고, 모기관 정관 제40조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를 정하고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 및 설립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기관은 정관 개정 추진을 통해 자회사 업무위탁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이같은 법률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모기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두 곳(캠코시설관리, 캠코씨엔스)에 각각 자본금 9.9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매년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여 재무건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자회사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캠코시설관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캠코시설관리 경우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높기 때문에,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자본금 증액 등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과업지시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캠코시설관리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 사업장 설비 이관 완료, 신규 사업장은 자회사 선구매 후 모회사 비용 지원, 신규 사업장(4곳) 필수 설비 구매 지원 및 무상 제공 등을 완료하였고, 캠코CS의 경우는 상담 업무에 필요한 장비 지원, 대전지역 소재 공사 소유 업무사옥 무상 제공, 기존 사용 중인 인터넷 회선 및 장비, 고객 상담설비 등 필수 설비 제공, 고객지원센터 이전(2021.12.) 지원 및 필수 설비 이관 등을 추진한 점과 상담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장비 등 시스템 관련 유지관리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적자 및 흑자 사업 이관 등 부당관행 방지를 위한 모·자회사간 경영협약(21년 12월)을 체결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건물관리용역업무의 경우 단일통합계약이 아닌 사업장별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캠코CS와는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0.8.)한 노력이 인정되나, ㈜캠코시설관리와는 42개 계약을 유지(2022년부터 3개 계약으로 통합 예정)하고 있는데, 향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모기관은 권역별(수도권, 중부, 남부) 통합계약 체결에 합의(2021.11.)하였고 점진적으로 단일통합계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모기관이 매월 분할하여 기성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은 (주)캠코CS와는 선금 요청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회사의 선금 요청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자회사가 선금 신청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만약 자회사가 선금을 신청할 경우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개선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5일)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 기반의 예정가격 산출 방식이 아닌

자회사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용역금액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책정된 용역비는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 이와 별개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변동을 계약금액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 상·하반기 모든 직종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자회사 설립 이후 모기관은 자회사 직무급 임금체계에 기반해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용역금액을 산출하고 있으며, 시중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일부 하위직급의 노임단가가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100% 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21년 상반기 88명, 하반기 92명을 대상으로 시중노임단가 100% 대비 차액분(각각 9백만원, 10백만원)을 보전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로써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자회사의 직무급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용역금액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이 직종별로 평균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직무급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향후에도 하위직급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캠코씨에스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회를 구성하였고, 2021년 3회에 걸쳐 자회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자 단일 과반노조의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자회사 근로자대표로 참석한 노사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장 이전 시 휴게실 마련 등 안건 등을 논의하고, 모기관과 자회사 노무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모기관은 ㈜캠코시설관리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회를 구성하였고, 2021년 1회 자회사 다수노조 대표 위원이 참석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8차례에 걸쳐 모·자회사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모기관과 자회사 노무 합동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2018년 체결된 '공동협의회 운영협약서'에 따라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운영 중이나 모기관은 위원 구성방식, 임기, 안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모기관이 자회사 직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자회사가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 모기관이 자회사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정부의 명령에 의해 위탁관계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선하였다.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 개선 협의 및 고용노동부 컨설팅을 통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캠코씨에스의 경우 일방적인 손해배상 조항 개선, 자회사 근로자 시정요구 조항의 삭제, 계약금액의 지연지급 조건 강화 및 사고예방 체계 명문화 등 개선한 점, 캠코시설 관리의 경우 포괄적 업무지시 및 자회사에 대한 일방적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 등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캠코씨에스 위탁계약서 내 모기관이 근로자교체 요청을 한 경우 자회사가

해당 근로자 교체 여부에 대해 사전에 모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회사의 인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캠코시설관리 과업지시서에서 모기관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모기관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모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신규 경영협약서를 마련하고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을 체결하였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경영안정성, 제7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4조 사업안정성, 제5조 사회적 책임경영, 제6조 직원복지),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7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 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협의회 제도화 등의 구체적 조치가 없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 향후 계약 체결 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 비율을 1%(2개 자회사 평균) 인상하여 일부 개선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7.5%(자회사 평균)에서 8.5%로 인상하였고 이윤비율은 4.5%로 전년도와 동일한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은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에 근접하는 수준이나 이윤비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주)캠코시설관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채 규모를 감안하면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이윤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두 자회사 모두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명절상여금 연간 800천원, 복지포인트 연간 400천원, 식비 월 13.5천원(자회사 평균)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추가적인 복리후생항목으로 건강검진비 250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비 등을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급하고 있는 점, 전년도 대비 식비 월 10천원 인상한 점, 연말 상여금을 추가 지급한 점,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보장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이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은 계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회사 방문, 모·자회사 정기 합동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모회사의 노하우를 공유한 실적이 확인되며, 자회사 경쟁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회사 노사합의에 따른 자회사 위탁업무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회사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휴게공간 정비, 복리후생 지원과 자회사 자체 예산을 통한 복리 증진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 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 예산 확대 편성으로 직원 전문성 향상 및 역량을 강화하고, 대표이사와 관리자, 실무자가 함께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자회사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는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21년에는 일반관리비를 2%p 인상(인건비의 6% → 8%)하고, 일반 관리직 교육 예산을 신규 편성(총액 대비 124% 증액)한 것 역시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중 ㈜캠코씨에스가 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세칙을 마련하고 일부 보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캠코시설관리 그룹웨어 사용에 있어 차별이 없으며 ㈜캠코시설관리는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고 ㈜캠코씨에스는 채용전형시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포상제도를 운영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세칙 또는 근무성적평가세칙에 따라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각각 2020년 2월 「기간제 계약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지침」을, 2020년 8월 「공무직 등 근로자 운용규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캠코시설관리가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세칙을 마련하고 면접전형시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비세칙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캠코씨에스는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채용계획에 따라 위부위원 위촉하고 있어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거나 일부만 반영되었으므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수준의 공정한 자회사 CEO 선발제도 정착을 위해 2021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 제정을 통해 제도화를 모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출을 위해 향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선임에 적용하려는 것도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캠코시설관리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시 경영컨설팅 등 지급수수료 예산(예산안 110,000,000원)을 책정하고 2021년 임금인상시 최저임금, 시중 노임단가 적용 등을 반영하여 직무급 0.9%를 인상했으며, ㈜캠코씨에스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시 임금컨설팅 수수료(1,200만원)를 별도로 책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임금개편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는 대표이사 단독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당장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이사회 구성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다. 캠코시설관리는 대표이사 1인과 공사 직원이 무보수로 겸직하는 비상무이사 2인으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고 자회사 조직구성, 노사관계 안정성, 정부정책, 타 기관 사례 등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캠코CS는 1인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노동이사제 도입시 경영권 침해 가능성, 의사결정 지연, 불분명한 책임 소재 발생을 이유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자회사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후 경영협약서에 자회사 경영공시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으며, 경영이행약정을 통해 공시확대 노력을 자회사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였다.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메뉴를 신설하였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을 11건 추가하는 등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경영정보 공시 정확도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 담당자 교육과 공시 모니터링 점검 지원 등을 추가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잡월드

총 평

○ 한국잡월드는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같은 해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모기관이 종전에 7개 개별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 2021년 위탁계약 체결 시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을 예상하여 계약금액을 정한 점,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3억원을 100% 출자하였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회사에 필수적인 시설·장비 이관 관련 구체적 실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콜센터 등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기준의 최저낙찰률 적용가보다 낮은 수준인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개선을 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계약서 내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경영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2.75%, 이윤비율은 1.26%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며, 복리후행 항목과 지급기준을 규정화하여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훈련비 편성을 지원하고, 정관에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절차 등을 규정하여 CEO 선발에 있어서 공정성을 제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구축된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같은 해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모기관 정관(제4조의2)을 보면 '모기관은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 또는 그 일부를 모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모기관은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 강화 등을 위해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3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2020년 미처리결손금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대차대조표 상 자본이 감소하고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이나 부채비율 축소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실제로 자회사의 사무실은 모기관과 사용대차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장비 이관 관련 구체적 실적 기록은 확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모기관은 향후 필요한 시설·장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기관의 출자회사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적자 및 흑자 사업 이관 등 부당관행 방지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종전에 7개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2018.9. 자회사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일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2020.8.)한 노력은 인정되나,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2.1일)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예정가격은 미화 직종에서는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으나, 전시체험운영·콜센터 직종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기준의 최저낙찰률 적용가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모기관은 향후 모든 직종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예정가격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한편, 용역비 결정에 있어 현장감독자와 사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노무비 예산의 안정성 확립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별개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 위탁계약 체결 시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을 예상하여 계약금액을 정한 것이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서 등에 명시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모기관은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고 있는바,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 단가를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산정된 예정가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가계산가격 및 예정가격의 산정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하거나,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말까지 모회사 사측 1인, 자회사 사측 2인, 자회사 근로자대표 3인,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이후 모회사 경영관리본부장, 자회사 대표이사 및 부장 등으로 구성된 모자회사 경영협의회를 구성하여 2021년 총 3차례에 걸쳐 회의 개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자회사 노사협의회 운영 안정화 이후 2022년 상반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개최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협의절차 없이 과업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 조항을 변경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자회사 노동자의 복무규율에 해당할 수 있는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를 삭제하고 개선한 점, 모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용역비를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향후 모기관과 자회사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거나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2년 현재의 ‘경영계약서’와 별도의 ‘경영협약서’를 마련하여 체결할 계획이다.

체결 예정인 자율경영협약서(안)에는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원칙적인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지만 평가기간 내에 체결되지 않았다. 현재는 '경영계약서'가 경영협약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의 내용은 자회사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경영협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경영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 시 일반관리비를 2.75%(국가계약법상 최대 9%)로 체결하였으며 이윤율을 1.26%(국가계약법상 최대 10%)로 체결하였다. 이는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 체결 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이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모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율 2.75%, 이윤비율 1.26%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명절상여금 연간 800천원, 복지포인트 연간 400천원, 식비 월 130천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은 없다.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비를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급하고 있는 점,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보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산 구조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용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라 타 기관 사례 조사, 기금조성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기금 내실화 및 공감대 형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4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비 편성을 지원하고, 전 직원이 직무별 해당 동영상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준비한 것은 긍정적

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사관리 전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자회사의 인사업무 관련 행정을 지원하며 동시에 모·자회사 인사노무 워크숍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는 것 역시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교통비, 일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출장여비 규정을 마련하고 사내 인트라넷 사용이나 호칭 사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고 채용시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상벌규정에 따라 포상제도를 시행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비금전적 처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복지시설을 차별 없이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경력인정제도, 근무평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선발을 위해 2018년 9월 자회사 정관을 제정하고 정관 제27조에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절차, 위원장의 선출방식, 회의출석의 요건 및 의결방식 등 대표이사추천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자회사 CEO를 선임하고 있다.

-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고객감소(2019년 대비 약 83%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2020년 총액 대비 약 5.1% 인상, 2021년 총액 대비 약 2.9% 인상하여 자회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22년에 제도 도입을 위한 직원 공감대 형성 및 타 기관 사례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23년 이후 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 도입 지원하는 단계적 실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또는 모기관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모기관은 경영공시 체계와 관리방법 등에 자회사 경영관리부장에 대해 교육을 제공(’21.3)하고 자회사

경영협의회(3회) 및 고용부의 자회사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정보 공시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이행을 독려하였다. 자회사 경영공시에 대한 자체 검토과정에서 확인한 장애요인에 대해 모기관의 경영공시 담당자 및 전산 담당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지원 제공하였다.

- 자회사 홈페이지 확인 결과 게시판 공지사항에 채용공고와 합격자 발표 정보만 반영되어 있어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다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경영정보 공시 정확도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 담당자 교육과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전력거래소

총 평

○ 한국전력거래소는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2021.07.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에 무상 대여하는 설비의 유지보수비를 모기관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는 점,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산정된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평가위원회가 요구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시설관리 등 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준을 마련한 점, 전년도 지적받은 부당·불공정 조항 외에 별도조항을 진행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실행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 내 노사분규로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관련 내용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0%, 이윤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한 9.9%로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에 근접한 수준이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고 복리후생 항목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고 있으며, 자회사 사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하고 설립등기까지 완료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중장기 교육훈련 계획 수립, 교육 훈련 관련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모자회사간 TWO TRACK 검증시스템 운영,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CEO 선발에 있어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며,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시항목을 추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은 기존 정관에 자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1.07.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 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거래소는 사옥 및 설비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거래소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립한 자회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회사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사내 유보하여 자본 총액을 확충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필수 설비와 장비를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에 포괄적으로 명시

하고 있고,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소차, 전동운반카, 보안 엑스레이 검색대 등 필수 기계·장비에 대한 이관 및 무상대여(2014~2021년) 등을 추진한 점과 자회사에 무상 대여하는 설비의 유지보수비를 모기관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또한, 모기관 자산(장비, 차량 등)에 대한 자회사 무상대여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관자산에 대한 인수비용 일괄 반영 및 신규 취득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반영한 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기관의 출자회사관리규정을 개정(2021.06.24.)하여 적자 및 흑자 사업 이관 등 부당관행 방지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9개 계약을 사업별 3개 통합계약으로 전환(2019.7.)한 노력은 인정된다. 모기관은 전환 전 사업별, 본·지사별로 나뉘어 있던 9개 용역계약을 사업별 3개 용역계약으로 통합하였고 사업단위의 계약이 불가피하다는 데 모·자회사가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이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사업부서가 다르더라도 계약총괄부서에서 통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모기관의 설명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기관은 향후 계약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8일)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를 100%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실적과 관련하여 본보고서에 명시 한 내용 외의 증빙자료나 평가위원회가 요구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가격을 100%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예정가격 그대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모기관은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 확인되었는바,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산정하려는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위탁계약 체결 시 노임단가가 2021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함에 따라 별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적용 중인 노임단가가 변경된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위탁계약서 등에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원칙 및 미달 시 차액분 보전에 관해 명시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은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하여 미화, 특수경비, 시설관리 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고 있는바, 모기관은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직종별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산정된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의 100% 이상을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작성, 회의개최 시기, 위원구성, 안건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회사 근로자대표를 노조지부장으로 하고 회의 개최 전 지부장이 회의 안건에 대해 직종별 대의원 및 조합원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모기관은 평가대상 기간 중 총 4차례에 걸쳐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교대근무자 야간근무 휴게공간 마련, 자회사 자체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완료하는 등의 운영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모기관은 모기관과 자회사 동수로 구성된 모·자회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평가대상 기간 중 총 3회의 공동협의체를 운영하여 소기의 운영성과를 이룩하여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회의 시 이전 회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는 등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자회사 노사분규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거래소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 자회사 직원의 복무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 모기관이 용역의 중지 등이 필요할 때 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회사와의 협의 없이 모기관이 독단적으로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자회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계약 체결하기까지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진행한 점은 모기관의 개선의지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특수경비 일반시방서와 사옥관리 일반사항에서는 노사분규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관련 노사분규의 문구를 삭제한 반면, 미화와 시설관리 과업내용서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두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경영협약서 체결 이후 2021년 8월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완한 경영협약서를 재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제4조),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제6조),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7조)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협약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원칙적인 수준에서 작성되어 있어 향후 자회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와의 계약 시 일반관리비를 9%(국가계약법상 최대 9%)로 체결하였으며 이윤율을 9%(국가계약법상 최대 10%)로 체결하여 자회사가 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받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평가년도에는 이윤율을 9.9%로 인상하여 충분한 개선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일반관리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 이윤율은 9.9%로 증가하였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에 근접한 수준이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율을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명절상여금 연간 800천원, 복지포인트 연간 400천원, 식비 월 130천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으로 교통보조비 3만원을 신설하였고, 모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성과급 반납분 중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자회사 노동자에게 인당 680원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한 바 있다.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비를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급하고 있는 점, 교통보조비 항목을 신설한 점, 일시적이지만 처우개선을 위한 일시금을 지급한 점,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보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공동협의체 회의를 통해 복지기금 지원을 논의하여 모기관의 복지기금 공동이용이 아닌 자회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 최종 설립등기(2021.12.27.)를 완료하였으며 이후5억원을 목표로 하여 목표액 달성 시점까지는 적립금 사용을 지양하되 이자수익을 통한 최소한의 복지사업을 예정하고 매년 자회사 영업이익의 10% 및 영업 외 수입금으로 출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된다.

- 다만,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직무별 역량강화 교육과 커리어 개발 지원을 위해 모·자회사 노무담당자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벤치마킹한 중장기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 교육훈련 관련 예산을 2020년 대비 64% 증액한 것 역시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일비, 식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총무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의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50% 이상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매년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20년 7월 「채용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도입, 다층적 평가 등 근무평정제도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방안 검토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모·자회사간 TWO TRACK 검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자회사는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며 모회사는 '현·최직임원 출자회사 재취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관을 개정하여 자회사 운영

가이드라인인 '출자회사 관리 가이드라인'에 모기관, 현임원 및 퇴직임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심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신임 자회사 CEO 선발절차 진행 시 선발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검토하고 임명식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것 역시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직무급제 설계시 표준 직무급을 초과하는 기존 임금을 보전수당으로 신설하였는데 매년 임금인상액 적용시 인상분만큼 보전수당이 줄어들어 보전수당이 없어질 때까지는 임금인상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전수당 전액을 기본급화 하기로 하고 자회사와 용역계약 설계시 2021년 임금인상 9.9%를 반영했으며 2021년 1월 직군별 직무급으로 개선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올해 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관련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게시판을 마련하여 기존 공시된 4개 항목(기업개요, 비전 및 경영철학, 조직도, 사업장 안내)에 4개 항목('19, '20년 재무상태표, 노동조합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을 추가한 점은 인정되나,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적정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전력공사

총 평

○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과 모기관 정관에서 자회사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자회사 사업장의 중형 설비 및 장비 자회사 운영 이관을 추진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인 한전FMS㈜는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점, 자회사인 한전FMS㈜와는 4개 계약을 유지한 점,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에서는 원가와 예정가격이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점,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운영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한 점, 전년도 지적된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계약서 내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제출, 손해배상 관련 용역대가에서 공제하는 조항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율은 자회사 평균 7.83%, 이윤비율은 자회사 평균 8%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600천원~1,000천원, 식비는 월 100천원~130천원(일부 자회사 미지급)으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고 복리후생 항목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며, 모기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2년간 4회에 걸쳐 각 20만원씩 복지카드(복지몰)을 지급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모기관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콘텐츠 이용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였으며, 대표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CEO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모자회사 급여담당자 실무회의, 모사 노사공동협의회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자회사 모두 경영공시를 위한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항목을 공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일부 자회사는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 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을 정하고 있고, 모기관 정관 제2조에서 사업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정하고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 및 설립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이같은 법률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세 곳(한전MCS, 한전FMS, 한전CSC)에 각각 자본금 9.5억 원, 5억 원, 8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사내 유보하여 자본 총액을 확충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일부 자회사의 경우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다. 특히, 한전FMS는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할 경우,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업소 사옥 및 비품운영 계획안, 휴게공간 운영계획안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본사, 아트센터 등 대규모 사업장의 중형 설비 및 장비 자회사 운영 이관, 업무용 PC(태블릿PC 포함) 및 정품 S/W 보급, 검침 모바일앱 개발 후 자회사 이관, 사옥 임차료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 점과 검침 모바일앱 자회사 이관 후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사옥위탁관리 관련 필수 설비 운영 실비를 지급 정산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한전MCS㈜, 한전CSC㈜와는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노력이 인정되나, 한전FMS㈜와는 4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모기관은 한전FMS㈜와의 위탁계약에 대해 주관부서별 위탁계약의 이윤, 일반관리비를 통일하여 4개의 위탁계약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조기에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금액 매월 분할 지급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종전에 총 10일 소요되던 지급기간을 2020.9. 이후에는 5일을 기준으로 바꾸고 실적은 평균 2.7일로 단축한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3개 자회사에 대하여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직종에서 원가에 근접한 수준의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다만, 한전FMS와 한전CSC의 일부 직종에서는

원가와 예정가격이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지적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향후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각 직종별로 원가 대비 예정가격 적용 비율이 상이한 점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일부 직종의 경우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배제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개선한 실적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모기관은 '사옥위탁관리용역 설계기준'에서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결과 종전 임금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상담직 등 일부 직종의 노임단가가 단순노무시중노임 적용 시 최저낙찰률 기준액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모기관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모든 직종의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일부 직종의 경우 지난해의 낙찰률이 유지되거나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이 낙찰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에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모기관은 향후에도 저임금 직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며, 자회사 노조에서 추천한 1인을 자회사 근로자대표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대표자, 운영주기 등에 대해 운영협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모기관은 2021년 3개 자회사와 각각 상, 하반기 1차례씩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자회사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및 자회사 역량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기회의의 횟수가 적정한지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경비 업무와 관련하여 일일 통보를 하도록 하는 조항, 교육내용에 대한 설계와 교육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용역수행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1일 이상 경과 시 당월 기성고에서 감액하도록 한 조항 등을 삭제하였다. 한전 CSC와의 계약의 경우 모회사는

상담인원 총 정원만 산정하고 자회사가 지역 고객센터별 정원을 자율로 결정하도록 위탁계약서를 개선한 점, 한전 FMS와의 과업지시서에서 문서 비치 항목에서 자회사 노동자의 신상기록서 및 출근부를 삭제한 점, 자회사 노동자의 근태 및 임금지불내역 관련 사항 개선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 모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전 FMS 특수경비 과업지시서에서 자회사 경비원의 근태 등을 모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모기관에 통보하는 대신 자회사에서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복무규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개선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전력서비스 현장업무 위탁 계약특수조건에서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을 모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것은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제21조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회사 용역대가에서 공제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조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옥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의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자칫 모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재청소를 수차례 요구할 수 있는 우려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체결한 경영협약을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 개선하여 모·자회사 경영협약을 2021년 3월에 재체결하고 자회사 임직원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내용을 보완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모회사의 역할, 제3조 협력내용 1),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협력내용 4),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협력내용 3), 모자회사 공동 이익증진(제3조 협력내용 2)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복리후생지원 등의 내용이 '노력한다'로 명기되어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도 '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어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와의 계약 시 일반관리비를 9%(국가계약법상 최대 9%)로 체결하였으며 이윤율을 9%(국가계약법상 최대 10%)로 체결하여 자회사가 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받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평가년도에는 3개 자회사 평균 일반관리비 7.83%, 이윤율 8%로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 일반관리비율은 9%에서 7.83%, 이윤율은 9%에서 8%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수준을 상회하지만 국가계약법 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경영협약상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적정 관리비와 이윤 보장을 명시한 점은 긍정이며,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명절상여금 연간 600천원~1,000천원, 복지포인트 연간 400천원, 식비 월 100천원~130천원(일부 자회사 미지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외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으로 건강검진비, 통신비, 생일축하금, 기념일 지원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기관 복지 제휴 혜택(숙박, 여가, 건강, 도서, 상조 등)을 자회사 노동자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비 등의 지급 및 추가복리후생 항목 신설, 모기관과의 복지 혜택 공유,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도모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자회사의 경우 명절상여금 및 식비의 지급 수준이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21년도 당기 순이익을 감안하면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회사 근로자들에게 2년간 복지카드(또는 복지몰)를 4회에 걸쳐 각 2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5억원을

지원하고, 모기관 대상 복지제휴업체의 서비스를 자회사에 확대하며, 한전 MCS, 한전 FMS 등 자회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각 제도에 대한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모·자회사는 한전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콘텐츠를 공동 이용하고, 교육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e-러닝교육 만족도 모바일 및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여 교육훈련의 개선에 활용하며, 모·자회사간 위탁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을 협력하여 지속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실비보적전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총무규정 등을 마련하고 차별 없이 휴양시설 등을 운영하고 사내 인트라넷 사용에 차별이 없으며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고 면접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포상제도를 시행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한전FMS㈜는 경력산정위원회를 통해 채용예정자의 경력산정 및 직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력인정제도를 시행하며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인사평가를 시행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한전MCS㈜는 2020년 8월 「계약직 관리지침」을, 한전FMS㈜는 2020년 7월 「비정규직 고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안)」을 제정하고 한전CSC㈜는 「비정규직 채용업무 절차서」를 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별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제도를 보완하고 경력인정제도 도입 및 확대를 검토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2020년 8월 대표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대표이사 선임절차는 대표이사 임기만료일의 도래에 따라 채용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공개모집 외 관련학계 및 단체,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DB를 통한 추천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점이라고 보인다.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CEO 선발을 진행한 점 역시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중 한전FMS㈜은 2021년 2월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운영을 위한 모자회사 급여담당자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9월 직무별 상·하한제 도입 등 간부·직원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한전MCS㈜는 2021년 5월과 같은 해 12월 모자 노사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성과급 도입과 직종별 급여 수준에 대하여 논의하고 2021년 10월 원가산정용역을 수행했으며 한전CSC㈜는 성과급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최대 100%)로 개선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지속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한전FMS와 한전CSC의 경우, “회사와 조합은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단체협약서에 명시하였고, 향후 이사회 개최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노동이사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전MCS의 경우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노력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자세(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 관련하여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세 자회사 모두 경영공시를 위한 게시판을 개설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한전MCS의 경우 통합공시 기준을 참조하여 체계적으로 공시항목을 게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반면, FMS와 CSC의 경우 일반현황, 재무제표,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정도에 국한되어 있어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까지 포함한 내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한전MCS의 경우 경영·통합공시의 품질관리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공시관리(구성 및 운영, 공시담당자 지정 및 변경의 통지 등), 공시 종류 및 운영 (공시

항목, 시점, 절차, 공식교육, 공시점검 및 방법 등), 불성실공시 관리(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내부경영평가 반영 등) 규정을 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회사 대상으로 경영공시 개요 및 항목, 타 기관 사례, 유의사항 등에 대한 경영공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회사의 경영정보 정확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 업무 기준을 제공하고 담당자 교육을 제공하는 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홈페이지 확인 결과 FMS와 CSC는 이러한 노력이 공시내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모·자회사의 공시사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전력기술(주)

총 평

○ 한국전력기술은 2020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모기관 정관에서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근거가 일부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자회사에 필요한 필수장비 무상 지원과 편의시설 구축을 추진한 점, 시중노임단가를 변경할 때 이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위탁계약 형식에서 2개 분야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계약대금 지급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을 기성방식으로 전환한 점, 낙찰률 89%(전산통신용역)와 93%(사옥관리용역)를 적용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운영하고, 관리지침을 제정한 점, 부2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추가적인 개선을 실시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옥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 비율은 9.0%, 이윤비율은 10%로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를 충족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200천원, 식비 13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며, 자회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 출연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전산통신용역의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고 복리후생 항목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이러닝 교육콘텐츠 제공, 교육훈련비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자회사 경영공시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한 후 11개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자회사 공시항목 맞춤형 운영 매뉴얼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와 관련한 세부 시행 내용을 명문화하여 도입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모기관 정관 제2조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투자 및 출자'를 정하고 있다. 모기관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자회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 다만,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투자와 출연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를 결정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고,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용역계약서에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압분무기, 진공청소기, 트럭 등 사옥관리 필수설비 이관을 완료하였고, 전산 및 통신설비 업무에 필요한 필수 장비 무상 지원, 출자금을 이용한 자회사 필수업무 설비 도입(239개 품목), 사무공간 유·무상 제공, 다양한 편의시설 구축(휴게공간 마련, 안마기, 온풍기 등 설치)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적자 및 흑자 사업 이관 등 부당관행 방지를 위한 모기관의 출자회사관리규정 개정(2021.12.15) 및 모·자기업간 경영협약 체결(2021.12.12)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2020.7.에 4개 사옥관리 용역 계약을 1개로, 3개 전산통신 용역 계약을 1개로 통합하여 2개 분야별(사옥관리/전산통신) 통합계약으로 전환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계약 만료시점(2023.6.30.) 도래시 단일통합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조속히 단일통합계약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초기 경영안정을 위해 용역대가 지급 방식으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택하고 7회에 걸쳐(2020.8.5.~2021.5.24.) 92억원을 지급한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모기관은 자회사 경영환경 개선 및 안정화에 따라 2021.6.부터 실 기성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환이 불가피하였는지 의문이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사옥관리 용역은 기성검사 0.7일, 대가지급 3.3일 소요(19일 → 4일, 15일 단축), 전산통신 용역은 기성검사 1.2일, 대가지급 2일 소요(19일 → 3.2일, 15일 단축)로 단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원가로 하여, 해당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취지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까지의 관계를 고려하여 용역비 산출 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기보다, 전산 및 통신설비 운영 용역에 대해 (전산분야) SW기술사 평균 임금 공표를 반영하는 등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해 용역 분야별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기존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조정요율 등을 활용하고 있는바, 적정 노임단가 산정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다만,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및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가격 100% 반영에도 불구하고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기준으로 노임단가를 산정하고 있는바,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89%(전산통신용역), 93%(사옥관리용역) 수준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다. 모기관이 종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모기관은 향후에도 낙찰률 개선과 관련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전략 등 공동이익 증진, 자회사 근로환경 등에 관련된 사항은 연 1회 개최되는 모·자회사 근로자대표가 포함된 정기협의회에서, 시설 등 자회사 관련 현안, 상시 소통 및 협력 방안은 분기 1회 개최되는 모·자회사 실무자 4인 이내로 구성되는 수시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이원적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관리 지침'을 제정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평가대상 기간 중 정기협의회 1회, 수시협의회 2회를 통해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공동이익 방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등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총 3차례에 거쳐 계약 관행을 개선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의 자회사 직원의 부적격자 교체요구 조항의 삭제, 자회사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문구 삭제, 자회사 근무자의 복장 등 관련 문구 수정,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 등 서비스 제공 문구 명시 하였고, 고용노동부 컨설팅을 통해 자회사의 과실에 의한 불이익 시 책임 의무 내용 변경, 자회사 인력의 인사기록카드 등 제출문구의 수정, 자회사 직원의 휴가 사전통보와 휴가인원 조정 등 문구의 수정, 쟁위행위에 따른 피해 시 손해배상 청구 조항의 수정, 근무시간외 미화작업 수행가능 조항을 상호협의로 변경, 자회사 업무수행 감독결과 제출의무를 작성 및 비치로 수정 등 다수의 조항을 개선하였다.

- 또한, 자회사 역무 추가전환에 따른 계약관행을 점검하여 2021년 계약 체결에 반영하였다. 특히 책임발생 시 자회사가 부담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회사 노동자의 법정 휴가 시 감액하도록 하는 조항의 삭제, 자회사 업무담당자와의 워크숍을 통해 개선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현장실사 및 전문가와 모-자회사 실무담당자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역무내역서의 제4장 용역 일반사항에서 자회사 노동자의 구체적인 복무 관련 사항(근무지 내 고성방가, 음주, 취침, 운동, 목욕 등)을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어, 이는 자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모·자회사 경영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모회사의 임무, 제2조 자회사의 임무, 제3조의 1 자율경영),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의 4 안정적 성장 지원, 제3조의 5 경영지원),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의 3 근로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3조의 2 공동이익증진)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관련 내용이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모·자회사의 협력사항으로만 명기되어 있는 바, 모회사의 책임이 모호한 점과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사항이 '할 수 있다'로 임의적으로 명기되어 실행력이 제한적일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와의 계약 시 일반관리비를 9%(국가계약법상 최대 9%)로 체결하였으며 이윤율을 10%(국가계약법상 최대 10%)로 체결하여 자회사가 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받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제출자료에 따르면 사옥관리 용역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관리비율 9%, 이윤비율 10%를 유지하고 있고, 전산 통신 용역은 실비정액가산 방식의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향후 자료 제출시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수치와 정확한 자료 제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사옥관리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로 국가계약법상 최대 한도(9.0%)를 충족하고 있으나 전산 통신 용역은 그에 미지치 못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용역비 산출시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제경비로, 제경비와 직접인건비의 20-40%를 기술료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기관은 직접인건비의 48%를 제경비로, 제경비와 직접인건비의 9.8%를 기술료로 산정하여 적정 수준을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200천원, 식비 월 13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항목으로 월 60천원의 교통비, 150천원의 건강검진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명절 상여금을 인상한 점, 추가 복리후생 항목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21년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급여/복리후생 등의 처우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난 만큼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활용할 지원을 위해 추가 출연을 신청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최종 불승인으로 인해 자회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였다. 타 기관 벤치마킹과 모·자회사 공동 실무회의 등을 거쳐 2021년 자회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약 28백만원을 신규 출연하고, 2022년 약 71백만 추가 출연이 예상되는 등 자회사 노동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각 제도에 대한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지원을 위해 이러닝 교육컨텐츠를 제공하고, 교육훈련비 예산을 편성하며, 모자회사 상생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회사 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을 계획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 직원의 교육환경 및 수요분석을 위해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한 점도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커리어 경로개발 관련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교육 후 구성원들의 참여율과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교통비, 일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의 근로자가 모기관의 구내식당, 보건실, 체육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사내 인트라넷 이용에 차별이 없으며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고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서 제시하는 전형별 평가 외부위원 위촉 지침을 준용하여 서류전형시 외부위원 1명, 면접전형시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제도를 시행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채용전형시 외부위원 참여를 명문화하고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또는 근무평정제도 도입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인사규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했다고 하는데 동 규정에는 “계약직원 채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원론적 내용만 명시되어 있어 평가에 전부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심사절차와 심사주체 등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와 관련한 세부 시행 내용을 명문화하여 도입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2020년 12월 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CEO 선발을 진행하며, 비상임이사 선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기관 이외에 외부위원도 영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전 모기관이 지원하여 자회사의 재무, 조직, 인력, 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직무와 직무난이도를

반영한 직무급 기반 임금을 설계했으며 자회사 전환 이후 2021년도에 총 인건비 1.9% 이내 인상 등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근로자대표 1인이 이사회를 참관할 수 있고, 위원장의 허가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이사회 운영규정에 신설('21.10)하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도입하였다. '21년에 두 차례 이사회에 자회사 노조위원장이 참관하여 직원 징계 및 근로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다만, 이사회에 참관하는 근로자 대표의 선정기준과 역할, 권한 등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경영공시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공시체계 고도화, 공시역량 강화 및 지원, 공시 인프라 보완 필요하다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11개 공시항목을 발굴하였다. 자회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게시판에 주요 경영정보를 공지하였으나, 일반현황, 각종 규정(인사, 직제, 보수 및 복리후생, 이사회운영), 단체협약서, 결산공고 정보에 한정되어 있어 통합공시 기준을 참조하여 일반현황, 재무제표, 자본금 및

주주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공시항목별 기준일, 세부작성방법, 유의사항 등을 포함된 자회사 공시항목 맞춤형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자회사에 제공하고 공시담당자와 공시감독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시담당자 실무교육과 모회사 공시점검단을 활용하여 공시내용의 정확도를 모니터링한 점도 공시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 모회사 홈페이지에 자회사 주요 현황 메뉴 링크 제공을 통해 이용률이 154% 개선되는 등 자회사 경영공시 접근성도 강화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총 평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 0.3억 원, 0.2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2.6%,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5.1%이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306억 원, 0.219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고 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

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업무수행메뉴얼에 장비 및 시설 제공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진공청소기, 왁스기계 등 미화업무의 주요 설비(장비) 이관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 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고,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왔으므로 적정노임단가 산정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 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므로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다. 모기관은 보안관리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지시서를 대체하는 업무수행 매뉴얼을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나, 제6조에서 소장이 모기관담당자에게 일별 구두 업무 공유하도록 한 점과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모기관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자회사와의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었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시설관리단이 2.6%, 보안관리단이 5.1%, 이윤비율은 자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실비용역 특성상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연간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항목으로 200천원~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내부 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노력과 구체적 계획이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공시항목 확대 등에 대한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조폐공사

총 평

○ 한국조폐공사는 자회사 설립근거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법과 모기관 정관에 출자·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정기적 자산(설비) 점검 및 양여 확대를 추진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2021년 계약부터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자회사의 직무급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부당·불공정한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추가로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노사공동협의회가 아닌 정례 공동협의회, 공사·자회사 자율협의회로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계약서 내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자격미달에 대해 용역금액 감액 조항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7.29%, 이윤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6.57%이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800천원, 명절상여금 1,200천원, 식비 5천원(현물, 1식)이 지급되고 있으며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고 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훈련비 등 확대 편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경력경로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기획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한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제3항에서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모기관 정관 제34조에서도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 및 설립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기관은 정관 개정 추진을 통해 자회사 업무위탁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이같은 법률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모기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두 곳(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에 각각 자본금 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로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두 곳 모두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 내외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용역 수행을 위한 모기관의 자산 무상 제공, 자회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필수 설비 이관 및 양여(46건), 안전보건예산 신규 편성(2021.12.) 등을 추진하였고, 정기적 자산(설비) 점검 및 양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향후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 업무를 자회사에 이관할 계획을 검토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콤스코시큐리티와는 자회사 설립 전부터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콤스코투게더와는 분야별로 6개의 용역계약을 유지하였는데, 2022년부터 ㈜콤스코투게더와의 계약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평가대상 기간 내에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다가 2021년 계약부터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노력이 인정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기간에 있어서 종전에 월별 후지급 방식을 적용하면서 총 지급 소요기간을 5일로 유지하는 등 노력한 점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은 특수경비·환경·시설관리 직종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어, 이점은 모기관의 예정가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회사 보수규정에 근거해 직무별 노임단가를 산정하고 시중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결과를 다음연도 직무급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하여 모기관은 특수경비, 환경관리, 시설관리, 콜센터, 화폐박물관, 정보시스템, 바이오매스 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의 반영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바,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계약금액 산정에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시 일부 직종에서 자회사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를 밑돌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중 계약변경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자회사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자회사의 직무급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이 직종별로 평균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직무급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향후에도 하위직급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의 자회사 관리부서와 사업부서, 자회사인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부장으로 구성된 공사·자회사 정례 공동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모기관의 자회사 관계부서 3인과 자회사 대표이사 및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부장으로 구성된 공사·자회사 자율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모기관은 운영 세부 사항으로 공사·자회사 공동협의회는 연 2회, 공사·자회사 자율협의회는 격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2021년 2차례에 걸쳐 공사·자회사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자회사 운영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어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을 규정화하고,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자회사가 노사분규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모기관이 자회사에 계약서 내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강제할 여지가 있는 조항, 일부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계약의 이행과정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종업원에 대해 모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및 특수

경비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모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 등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2021년도 하반기 모기관과 자회사가 공동협의회를 통해 2022년도 용역계약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의 자격, 채용 및 퇴직·해직 조항의 수정을 통한 자회사의 경영·인사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금지행위 조항을 성실 의무조항으로 대체, 과도한 복무규율 관여 금지 및 계약의 해지·해제가능조항 조정을 통하여 부적절한 해제·해지사유를 조정하기로 한 개선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콤스코시큐리티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8조에서 근무보고서를 작성, 제출케 하는 데 있어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게 하는 것은 자회사의 복무규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콤스코투게더 용역계약 제29조에서는 종업원의 자격에 미달하는 직원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이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조치 하도록 하고 있어, 모기관의 자회사 종업원 자격에 대한 임의적 판단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유보로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6월 체결한 경영협약의 상호협력사항을 보완하여 2021년 12월 다시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자율·독립 경영의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2조 공사의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근로자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4조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사항)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변경된 협약서를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도 지적사항이었던 시설이관 등의 내용이 보완되었다.

- 다만, 전년도 협약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또 다른 사항인 공동이익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제도화 관련 사항은 개선 협약에서도 미흡하여 추가적인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향후 계약 체결 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이윤비율은 감소하여 충분한 개선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29%, 이윤비율은 7.43%에서 6.57%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을 상회하지만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이윤비율 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800천원, 명절상여금이 1,200천원, 식비 5천원(현물, 1식)이 지급되고 있고,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가족수당 최대 월 115천원, 건강검진비 250천원, 단체보험 및 생일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전년도 대비 400천원 인상한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신설,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도모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식비 등이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명시적 지급 규정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활용 등 제도 관련 중요사항을 자회사와 공유하고 그와 동시에 자회사 차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확보 및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는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의 복리후생 증진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해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온라인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훈련비 등을 확대 편성하여 근로자의 경력경로 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를 기획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과 자회사 직원 대상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회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모회사 교육 콘텐츠 공유 확대와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하는 것 역시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커리어 경로개발 관련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 후에 구성원들의 참여율과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교통비, 일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이용이나 자회사 내 정보망 이용에 차별이 없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포상제도를 시행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채용시 경력을 반영하여 급여를 책정하며 일부 직군에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 12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직군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를 확대하고 다층적 평가, 다면평가 등 근무평정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마련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자회사 경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CEO 선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대표이사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전 모기관이 지원하여 자회사의 재무, 조직, 인력, 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직무와 직무난이도를 반영한 직무급 기반 임금을 설계했으며 자회사 전환 이후 2021년도에 총 인건비 1.9% 이내 인상 등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모기관은 모기관이 도입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현황과 운영지침 등의 자료 공유 등을 자회사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회사의 참관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 다만,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노동이사제)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노동이사제)의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와 관련해서 모기관 또는 자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두 자회사의 자체 홈페이지는 아직 구축되지 못했고, '22년에 모기관 홈페이지에 자회사 주요 경영정보 공시 추진 예정이다. 현재는 모기관 홈페이지 경영공시 기타 메뉴에 자회사의 감사보고서 정보와 기재부 알리오 시스템에 모기관의 투자 및 출자현황 정보에 한정되어 있어,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자회사의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총 평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회사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 근거가 일부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자회사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 지원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 전환을 조기에 완료하고 이를 유지한 점, 현장감독자와 사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 계상한 점,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노무비를 조정하고 인상분을 지급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계약대금 지급에서 선지급을 보장하면서도 보증서 제출 부담을 유지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추가로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노사공동협의회의 필요성을 협의만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5.5%, 이윤비율은 2.7%로 전년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 및 이윤비율 모두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8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을 지급하여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복하고 복리후생 항목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향후에도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고 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지원 및 각종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제고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며, 자회사 정관 개정을 통해 공정한 CEO 선발체계를 확립하고, 자회사 알림마당 공시 게시판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항목을 준용하여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주요 공시항목 11개를 선정하여 게시('21.12)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항목 확대, 자회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운영지침 또는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경영공시 체계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서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조항을 살펴볼 때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기관은 정관 개정 추진을 통해 자회사 업무위탁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모기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9.9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설립 이후 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필수 설비 이관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2021.09.)하였으며, 실제로 리프트카, 보행식 습식 바닥청소기, 자동 카페트 청소기 등 필수 기계·장비 이관(2021.11), 필수 설비로 명시하지 않은 사무공간 등 각종 시설·장비 제공, 자회사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 지원 등을 추진한 점과 위탁계약(제8조)에 필수설비 무상제공과 유지·보수 지원(위탁업무 수행공간, PC, 노트북 등) 규정을 명문화한 점도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적자 및 흑자 사업 이관 등 부당관행 방지를 위한 모기관의 출자회사관리규정 개정(21년 1월) 및 모·자회사간 경영협약 체결(21년 7월)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0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 전환을 조기에 완료하고(2020.8.31.) 이를 유지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의 위탁 업무는 종전의 콜센터, u센터, 시설관리 업무에 신규로 정책모기지 심사지원 업무가 추가되었는데 이 역시 단일통합계약에 포함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대가 지급방식에 있어 자회사의 선택권을 보장(선지급 또는 후정산)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관련 법령에 따른 채권보전조치 비용 고려하여 자회사의 자율 운영을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의 선택권을 보장한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자회사가 선금을 신청할 경우 보증서 제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개선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4일)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직종별 시중노임단가의 95.5~99.3%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신규 위탁사업에 종사하는 심사지원센터 직종의 경우 원가 대비 예정가격 적용

비율이 타 직종과 상이한 점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된다.

- 한편, 용역비 결정에 있어 현장감독자와 사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노무비 예산의 안정성 확립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별개로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노무비 책정 관련 원가계산가격 100%를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낙찰률을 상향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 중심으로 반영하고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노무비를 조정, 인상분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바,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산정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하여 콜센터, u-센터, 시설관리 등 이하 하위 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계약금액 산정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2021년에 99.3%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을 개선한 것으로서, 모기관의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이 2022년 이후 낙찰률을 100% 적용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적 소통창구로서 4자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운영방향, 논의주체,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선출방식, 기존 회의체와의 역할 구분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는 노력을 하였고, 자회사 근로자의 인식제고 및 협의체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모·자회사 실무협의회의 논의범위를 확대하여, 모자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자회사 근로자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추진하여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모기관이 요청하는 업무를 과업 내용에 자동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수정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업무지침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개선하였으며, 2021년도 하반기 고용노동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의무의 구체적 반영, 시중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노무비 조정 명확화 및 근무시간을 업무수행시간으로, 성과급을 추가 업무위탁대가 등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였다.

- 또한, 월별 위탁업무 수행평가에 따라 이윤율이 변동되는 방식을 삭제하고 자회사 경영성과평가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자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한 점, 모기관이 제공하는 설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위탁대가 청구방식을 개선하여 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 등은 모기관이 자회사의 자율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 간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7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영협약을 재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기본원칙, 제3조 모기관의 역할 제1항),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11조 위탁계약의 합리화, 제12조 전문성 제고), 노동자 처우개선(제11조 위탁계약의 합리화, 제14조 직원 복지)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와의 계약 시 일반관리비를 4.1%로 체결하였으며 이윤율을 2.5%로 체결하였다. 이는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받았고, “향후 계약 체결 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을 모두 인상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4.1%에서 5.5%로 증가하였고 이윤비율도 2,5%에서 2.7%로 증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는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 9%, 이윤비율 1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더라도 평균수준을 하회한다. 경영협약서에 ‘적절한 관리비와 이윤 보장 노력’을 명시하였고 2022년에 일반관리비, 이윤비율 추가 인상을 예정하고 만큼, 모기관은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연간 800천원, 명절상여금 연간 1,000천원, 식비 월 130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단체상해보험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지급,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도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이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식,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였으나 모기관 노조원의 공감대 형성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실제 운영상 문제점 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자회사 자체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각 제도에 대한 환류 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및 각종 포상제도를 운영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IT전문 상담인력 교육 실시, 공사 온라인 교육원을 통한 교육지원, 상생협업 기여자 포상 실시 등을 진행하고, 자회사 경영평가를 통한 자체적인 직원 교육훈련 제도 운영을 유도하여 교육담당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상담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커리어 경로개발 관련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 후에 구성원들의 참여율과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필요 교육 수요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모색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출장여비, 부임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이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차별 없이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를 사용하며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외부위원을 위원수의 1/2 이상으로 하는 채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다층적 평가를 통한 종합근무평정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21년 12월 「비정규직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는 등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을 구성하여 경력인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설정하고 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외부컨설팅 및 법률 질의를 통해 CEO 선발관련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자회사 정관 개정을 통하여 공정한 CEO 선발체계를 확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표이사 선임절차 상 고려요소를 사전점검하여 보다 체계적인 선발절차를 설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발절차를 마련하고자 한 것은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시 전문 컨설팅을 통한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도입했고 향후 직종 내 직무등급, 직종 간 업무별 직무등급 설정에 관한 형평성 제고 등을 감안해 모기관과 자회사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운영 효율성을 위해 이사 1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자회사 근로자의 경영참여 독려, 내부 소통 강화, 직원 의견 수렴 노력을 요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다만, 노사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컨설팅 또는 TF 운영 등을 통한 구체적 방안 모색 등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자회사 알림마당 공시 게시판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항목을 준용하여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주요 공시항목 11개를 선정하여 게시('21.12)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평가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공시 정보를 향후 분기별 업데이트할 예정이나 공시항목 확대 및 개선 계획이 없는 점은 다소 아쉽다. 공시항목 대상 정보에 더해 정기, 수시 공시별 공시 기한, 항목별 공시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된 자회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운영지침 또는 운영계획 등을 통해 경영공시 체계화와 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 모기관이 공시 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점검 제공 등의 지원 노력을 통해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효과성과 대국민 정보 접근성 제고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중부발전㈜

총 평

○ 한국중부발전은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모기관 정관에서 자회사에 출자·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자회사에 필수적인 설비·비품·장비 무상제공한 점, 위탁업무를 기존의 6개 계약에서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6억 원을 100% 출자하였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대가지급기간 단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10일이 소요되는 점, 낙찰률 91%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 운영지침을 확정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추가로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노사공동협의회에 모기관 노조가 참여하지 않는 점, 계약서 내에 여전히 근로계약 사본이나, 모기관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5%, 이윤비율은 1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3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고, 복리후생 항목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여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모기관 근로자의 합의를 거쳐 자회사 공동 활용 금액을 산출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모·자회사 직무공동교육 및 멘토링제도 시행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며, CEO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자회사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정규직 전환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고,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영정보 공지 게시판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영정보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 정관(제2조)을 보면 모기관 사업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해 출자·출연의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기관은 정관 개정 추진 등 자회사 업무위탁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사업'을 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모기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6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특히, 자회사가 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 증액 등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모기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탁업무(청소, 경비, 소방, 시설관리)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비품·장비 무상제공, 근로자 휴게실 및 경비실 환경 개선(노후 경비초소 교체, 신규 초소 설치, 신규 휴게공간 조성, 냉·난방기 설치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2021.08.03)을 개정하여 적자 및 흑자 사업 이관 등 부당관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에 대한 위탁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2021년도 자회사 위탁업무를 기존의 6개 계약에서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1.2.)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모기관은 전 분야 표준 설계(안) 적용을 통해 계약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노무비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대가지급 소요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종전에 19일 소요되던 것을 10일로 단축한 노력이 인정되지만,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경비·청소 직종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소방 직종은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예정가격은 원가의 98.6%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경비·청소 직종 현장감독자 인건비와 소방 직종 관련 사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노무비 예산의 안정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직종별 필요성 여부에 따른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기보다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해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적정하게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경비·청소 등 중소기업중앙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며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산정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에도 불구하고 낙찰하한률 수준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바,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개선하여 2021년에 91% 수준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지적하였던 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향후에도 저임금 직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경영일반, 안전강화, 근로조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2019년 10월 모·자회사 공동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모기관 및 자회사 관련 부서장 각 3인, 자회사 근로자대표 3인으로 구성하고,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지침(안)을 확정하여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평가대상 기간 중 모·자회사 공동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운영실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의 협의 틀을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회의 시 이전 회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는 등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자회사 노동자 퇴직을 사전에 모기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조항, 노사분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 모기관이 자회사 직원의 복무와 관련한 규율을 자의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 등은 삭제하였고, 자회사 노동자의 업무 진행에 대한 모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 자회사 노동자 휴가일수 등을 모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조항, 모기관이 자회사에 그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 모기관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당연히 과업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 모기관이 시간외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자회사가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모기관의 경영방침 변경 등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은 변경하여 체결하기로 하는 등 부당·불공정한 내용에 대해 개선노력이 인정된다.

- 또한,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자회사와 공유하고 개선하여 2021년도 계약추진을 하였고, 2021년도 하반기 컨설팅을 통해 변경계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마련 및 용역 감독직원 대상 갑질근절 교육 시행 마련 계획을 수립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경비용역 과업지시서 제13조에서 자회사가 임금지불내역을 모기관에 제출하면서 고용인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자회사에게 있는바 고용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24조에서 자회사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본을 모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한 점, 경비용역 계약특수조건에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모기관에 제출하게 하고 모기관이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점, 전사 사옥위탁관리 청소용역 일반 시방서에서 자회사의 현장대리인뿐만 아니라 자회사 청소원들도 모기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 청소원의 출근부 작성 및 대리 서명 시 결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시하는 것은 자회사의 복무규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자회사의 경영·인사권의 침해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체결된 경영협약에 지난해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한 협약을 2021년 8월 재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축 및 운영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 관련한 자회사의 적절한 관리비·이윤보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교육훈련 서비스 지원, 노사 담당자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등의 내용은 '노력한다'로 명기되어 있어 실행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평가년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던 바, 일반관리비 인상 필요에 대한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윤비율을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인 10%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반관리비 5%는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0%)에 미치지 못하고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해도 평균수준을 하회한다. 현재 자회사는 현재 3년 연속 적자 및 완전자본 잠식 상태로 모기관의 관리대상 출자회사로 선정된 만큼,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 포인트 연간 400천원, 명절상여금 연간 1,000천원, 식비 월 130천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으로 월 100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다. 복지 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점,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여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자회사와의 공동 활용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자회사 근로자들에게 1인당 31만원씩 약 1.9억원을 2021년 1월에 지급하였다. 또한, 향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모기관 노동조합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 중이며,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금액 상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은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 이사회 의결, 모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다양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각 제도에 대한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자회사 직무공동교육 및 멘토링제도 시행으로 업무노하우를 공유하고, 자회사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을 설계 반영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구성과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훈련 효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들의 학습효과 및 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교육훈련 효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교육 후에 구성원들의 참여율과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출장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고 채용전형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직능 및 직능등급 산정지침에 따라 경력인정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인사관리의 기초로

활용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규정에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및 시행 관련 품의를 통해 인사·예산·총괄부서 등 3인으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2021년도에 3차례에 걸쳐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및 근무평정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 품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는 제반 규정에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CEO 선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출자회사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운영하고 자회사 CEO와 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책임경영 강화를 도모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6명 중 외부위원을 50% 이상 두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 및 발전 5사 공동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2021년 9월 정규직 전환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용역(예산 약 1,700만원/VAT 포함)을 시행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에 모·자회사 공동으로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모기관의 도입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고,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사회규정 개정('21.10)을 통해 모기관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가 도입되었고 이를 자회사에도 확대 도입('21.12)한 것은 자회사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로 인정된다. 아직 운영실적은 없기에 향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 또는 자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알림마당 경영정보 공지 게시판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은 인정되나, 재무제표만 공시되어 있으며 기재부 알리오 시스템에 자회사 관련 공시된 내용도 모기관의 투자 및 출자현황과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총 평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집단에너지법과 모기관 정관에서 자회사에 대한 투자·출연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회사에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이 규정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추가적인 자회사 필수설비 이관 및 추가 출자를 통한 필수 기자재 확대 구매를 추진한 점,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2021년 상·하반기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인 지역난방플러스의 자기자본비율이 50% 보다 낮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점, 통합계약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또는 격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소통강화협의체와 안전강화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부당·불공정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자회사 개선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이다. 다만, 과업지시서 내 용모단정 조항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감시시스템 용역을 제외한 자회사 평균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은 각각 7.03%, 이윤비율은 8.33%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인당 복리후생 항목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일부 자회사), 식비 13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고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며,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10억 원을 자회사에 지원하고 자회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점검·진단 용역 및 감시시스템 용역 부문에 대해서도 적절한 일반관리비 비율 및 이윤비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모·자회사 합동으로 진행하는 등 자회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CEO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며, 직급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노·사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거나 합리적인 보수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자회사 홈페이지 경영정보 공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항목 등을 명시하고 독려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집단에너지법 제41조에서 모기관 사업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을 정하고 있고, 모기관 정관 제2조에서도 모기관 사업으로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을 규정하고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이같은 법률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두 곳(지역난방안전, 지역난방플러스)에 각각 자본금 9억 원, 4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의 적정 당기 순이익 실현을 지원하여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인 지역난방플러스는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특히, 지역난방플러스는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 보다 낮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서,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모기관의 보유 기자재 무상대여, 사무비품 및 상담업무관련 장비 무상 제공, 청소 및 사옥유지보수 업무에 필요한 주요 장비공동 사용, 추가적인 자회사 필수설비 이관(차량 등 48대), 추가 출자를 통한 필수 기자재 확대 구매(열화상카메라 등 39대), 무상대여(탐지기 등 226대) 및 계약 설계 반영(태블릿 PC, 소모품 등 174대)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 정관에 명확한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출자계획서에 배당 미시행 방침을 결정(2019년 11월)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무배당 원칙하에 누적된 잉여금 등을 통해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분야별 별도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연적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2개 자회사별 각 3건의 통합계약(안전: 12→3, 플러스: 13→3)으로 전환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모기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회사별로 3개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자회사별로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격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기성검사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14일 → 1일로 단축)함으로써 총 지급기간을 4~5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에 있어 지역난방안전(주)에 종사하는 감시시스템 직종은 초급숙련 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 점검진단 직종은 건설업 플랜트특별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난방플러스(주)에 종사하는 경비·청소 직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2개 자회사의 모든 직종에 대해 원가의 약 99%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그 외 상담사나 단순노무원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수준의 예정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며, 동일하게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받는 직종 간에 예정가격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한편, 모기관은 지역난방안전(주)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감독자와 사무인력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별도 계상하였지만, 지역난방플러스(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회사 인건비 재원의 안정성 확대 및 근로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모기관은 향후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노무비 책정 관련 업무의 특성, 직군·직렬별 등급 등을 고려하여 지역난방안전㈜에서 플랜트 특별인부 등 8개 직종, 지역난방플러스㈜에서 단순노무종사원 등 5개 직종을 선정하고, 대한건설협회 임금조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결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한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원가계산 시 100% 반영한 점이 인정되고, 이로써 자회사 직종별 직무가치를 고려해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올바르게 산정하고 시중노임단가의 변동을 반영하고자 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2021년 상·하반기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도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를 활용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노임단가가 궁극적으로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직종(사옥관리 안전관리사/보일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 반영비율이 변경계약 전에 비해 감소된 것이 확인되는바,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연중 시중노임단가 반영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시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이 이전에 비해 하락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2021년 83.57%(지역난방안전), 91.97%(지역난방플러스)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위원회가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전년도 평가 이후 모기관의 충분한 지표 개선 성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자회사의 낙찰률이 전년도 비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기관은 단계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노사 의견 반영 및 소통, 안전강화라는 목적에 맞춰 모기관 3인, 자회사 교섭대표노조 지부장 1인을 포함한 자회사 4인으로 구성된 소통강화 협의체와 모·자회사 동수로 25인 이내로 구성된 안전강화협의체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임시회의 개최의 구체적 근거 명시, 논의사항으로 경영협력 방안 내용 추가,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을 규정하여 근로자대표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안)에 대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2021년 1차례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하여 현장 위험요인 공유 및 현장 고충요청 사항을 용역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을 규정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계약서 등에 모기관이 자회사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 자회사 직원의 복무를 자세하게 규율하는 조항 등을 개선하였으며, 자회사에 대한 부당 업무지시, 인사권 침해 등 소지가 있는 항목들을 시정하였고 지역난방안전㈜와의 계약서는 42건, 지역난방플러스㈜와의 계약서는 87건을 시정하는 등 개선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개선과정에서 자회사와의 협의체를 통해 용역 및 계약사항 관련한 자회사의 개선의견을 청취한 점과 부당 불공정 관행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도 소통 및 안전 협의체를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서 필요 시에 감독자가 재청소를 요구 할 수 있다는 점, 특수경비 근무수칙에서 '항상 단정한 자세와 용모를 유지하며', '조직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등의 규정, 안내원 용역 과업지시서의 근무수칙에서 용모 단정 등의 규정은 자회사의 경영·인사권에 해당할 수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8월과 9월에 '사장경영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사장 경영계약서는 그 내용상 기본적인 자율경영에 대한 자회사 사장의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경영목표 설정 및 성과평가, 자회사 사장의 보수 및 복리후생 등을 규정하고 있어 자회사의 자율성·책임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모회사의 지원을 포함하는 경영협약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경영협약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두 자회사와의 계약 시 일반관리비를 평균 7%로 체결하였으며 이윤율은 평균 10%로 체결하였다. 이는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금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시시스템 용역을 제외한 2개 자회사의 일반관리비율은 평균 7.03%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이윤비율도 8.33%로 동일하다. 한편, 감시시스템 용역은 설계 기준이 상이하여 수치상 단순 비교가 어려운 바,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향후 자료 제출시 평가에 부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감시 시스템을 제외한 용역의 일반관리비 7.03%, 이윤비율 8.33%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모두 평균수준을 상회하지만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시설물관리.경비 및 청소용역 : 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 기타 용역 : 일반관리비 6%, 이윤 1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공사 용역인 점검.진단 용역은 국가계약법 상 최고한도에 하회하는 수준이고, 감시 시스템 용역 또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용역비 산출시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제경비로, 제경비와 직접인건비의 20-40%를 기술료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인건비의 110%를 제경비로, 제경비와 직접인건비의 20%를 기술료로 산정하여 적정 수준을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모기관은 점검 진단 및 감시시스템 용역 분야에 대해서도 적절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 포인트 연간 400천원, 식비 월 130천원, 일부 자회사에 명절상여금 연간 1,000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으로 월 100천원의 교통비, 연간 200천원의 건강검진비, 콘도 이용 혜택 등이 지급되고 있다.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을 신설하고 식대를 증액한 점, 그에 따라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리후생을 보장하고 있는 점, 건강검진비를 신설 또는 증액한 점, 추가 복리후생 항목을 지급하는 점,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보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노동조합,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10억원을 자회사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2019.09.)하였다. 또한, 자회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실적이 확인된다.

-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은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 이사회 의결, 모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다양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각 제도에 대한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 시간을 용역설계에 반영하고 모·자 워크숍을 통한 교육을 시행하며, GIS 도입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교육훈련·커리어 경로 개발 교육 시행, 회계결산 및 지도·점검 교육 시행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모·자회사 합동으로 진행하여 자회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은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구성원들의 참여율과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출장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 또는 국내여비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사내 인트라넷 이용에 차별이 없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차별 없이 사용하며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따라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자회사 중 지역난방플러스㈜는 경련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자회사 모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가 채용시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는데 관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자회사 중 지역난방안전㈜는 근무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아니라 공개신청절차를 시행하고 것으로 보여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채용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CEO 선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위원구성에 외부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공정한 CEO 선임을 통해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를 도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중 지역난방안전㈜의 2021년 부서예산편성시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자문 및 용역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변호사선임수수료, 자문료, 회계·세무수수료, 직급 및 임금체계 진단 및 개편 용역 등)으로 15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직급 및 임금체계 개편 용역과 관련하여 노·사 공동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자회사 중 지역난방플러스㈜는 2020년 3월 경비 교대근무개편 등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예산 30백만원)을 시행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또는 합의 후 이사회에 부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또는 합의 후 이사회에 부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을 뿐,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실질적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 경영정보 공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항목(일반현황, 임직원 및 노동조합 현황, 경영성과, 자본금 및 주주현황, 감사보고서, 주요 계약사항 등), 공시주기, 그리고 공시담당자 지정을 명시하여 자회사에게 요청하고 독려함으로써 공시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평가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지역난방플러스의 경우 모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지침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반면, 지역난방안전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kdhsc.co.kr)를 개설하였으나 확인 결과 화면에 나타나 있는 모든 메뉴가 비활성화되어 있어 게시판을 클릭해도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아 대국민 정보접근성 제공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경영공시의 적시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경영공시 적정성 지표를 자회사 사장 경영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해 자회사의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총 평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 0.2억 원, 0.48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2.6%,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5.2%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2억 원, 0.48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고 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업무수행메뉴얼에 장비 및 시설 제공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진공청소기, 왁스기계, 순찰차, 무전기 등 미화·경비 업무의 주요 설비(장비) 이관, 사무실 무상 임대,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간이침대, 정수기, 냉·난방기 지원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 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다거나,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온 점이 인정되며,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 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존 용역계약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위수탁계약서, 과업지시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다.

- 모기관이 제출한 보안관리 업무협약서는 공동출연연구기관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세부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과업지시서를 대체하는 업무수행 매뉴얼을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나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 시설관리 공동출연연구기관 업무협력 협약서에서는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동자회사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다른 자회사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이 높지 않으며, 자회사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감소되었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의 특성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았다. 일반관리비의 감소가 출연기관의 확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모기관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시설관리단이 전년도 3.46%에서 평가년도 2.6%로, 보안관리단이 전년도 6.9%에서 평가년도 5.2%로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자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실비용역 특성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연간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비, 200천원~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질적 진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공시항목 확대 등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총 평

○ 한국천문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 0.15억 원, 0.24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2.6%,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5.0%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 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15억 원, 0.24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고 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업무수행메뉴얼에 장비 및 시설 제공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청소용 세탁기, 낙엽청소기, 제설차 등 미화·경비 업무의 주요 설비(장비) 이관, 사무실 무상 임대,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간이침대, 정수기, 냉·난방기 지원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다거나,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온 점이 인정되며,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 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 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 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존 용역계약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위수탁계약서, 과업지시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다.

- 모기관이 제출한 보안관리 업무협약서는 공동출연연구기관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세부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과업지시서를 대체하는 업무수행 매뉴얼을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나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 시설관리 공동출연연구기관 업무협력 협약서에서는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동자회사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다른 자회사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이 높지 않으며, 자회사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감소되었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의 특성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았다. 일반관리비의 감소가 출연기관의 확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모기관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보안관리단이 전년도 6.9%에서 평가년도 5.0%로, 시설관리단이 전년도 3.99%에서 평가년도 2.6%로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자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실비용역 특성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연간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비, 200천원~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질적 진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공시항목 확대 등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철도공사

총 평

○ 한국철도공사는 2021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와 구체적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모기관이 위탁사업 운영을 위한 직·간접적인 설비·장비 제공을 추진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는 자기자본비율이 매우 낮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점, 위탁계약의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6개 계약을 유지한 점,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산정된 노임단가는 역·차량환경 직종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보다 낮은 수준이며, 객차비품 취급 직종의 경우 최저낙찰률 적용 단가보다 낮은 수준인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노사공동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이 일부 개선되지 못하였고, 기타 과도한 계약해지 사유 등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자회사 평균 6.0%, 이윤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자회사 평균 4.5%이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일부 자회사 미지급),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4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고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활용 또는 별도 예산을 통해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문화된 안전관리교육 진행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일부 자회사가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기하며, 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CEO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며, 노동이사제 분과를 구성하여 도입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구체화하고 자회사 경영정보의 접근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별 세부 항목을 적정히 분류하여 이를 구조화하여 제공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기존 정관에 자회사 설립과 업무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1.12.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투자·융자·보조 또는 출연'을 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설립한 자회사에 철도운영에 관한 일부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법령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회사 정관에 위탁사업(서비스) 내용의 구체적 명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네 곳(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에 각각 자본금 40억 원(출자비율 51%), 19.04억 원(출자비율 97.31%), 71.54억 원(출자비율 89.47%), 77억 원(출자비율 92.08%)을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는 미흡하지만, 자회사들의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들의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50%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레일로지스는 자기자본비율이 매우 낮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과 관련해서는 모·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탁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위탁사업 운영을 위한 직·간접적인 설비·장비 제공, 숙직실, 휴게실, 전력 및 통신시설 등 무상 지원, 노후 숙소 및 사무·휴게공간·사업장 개선, 사무용품 구매 지원, 자회사의 위탁사업 업무 수행 애로사항 청취, 지원·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 논의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이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기존의 110개 계약을 31개로 통합하고 이를 다시 26개로 통합한 노력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6개 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단일통합계약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인 관광개발, 네트윅스, 로지스와의 위탁계약은 2022년에 각 1개로, 테크와의 위탁계약은 2023년에 1개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속히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기성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 종전에 대금지급에 총 10일 소요되던 것을 7일로 단축한 노력이 인정되지만, 앞으로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2020년 위탁비 모수에 정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노임 단가는 역·차량환경 직종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보다 낮은 수준이며, 객차비품취급 직종의 경우 최저낙찰률 적용 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 점에 있어 위탁계약을 체결한 4개 자회사 자체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 인상에 제한을 받아 관련 예산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또한, 모기관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무 부처를 대상으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위한 필요 초과인건비를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그럼에도 향후 지속적으로 노무비 단가 인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회사의 다른 위탁사(에스알)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유사 직종 종사자 간의 임금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합의」에 따라 2020년 위탁비 모수에 정부 인상률을 곱하여 노무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시중노임단가 변동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지는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 시 지적에 대해,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한을 받게 되는바, 모기관이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시중노임단가 100% 지급에 따른 초과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정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이를 제외토록 정부에 건의(기재부 2회, 국토부 3회)하는 등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 다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중에 있는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고 있는바, 연중 계약변경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자회사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 100%를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합의」에 따른 노무비 산정 당시 2019년 '단순노임' 기준 시중노임단가 100%(청소, 경비, 시설관리 부문의 경우 90%)를 적용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회사 직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용역의 노임단가를 기준 삼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모기관은 향후 직종별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년도 평가 이후의 개선 사항이나 원가계산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향후에도 저임금 직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노·사공동협의회 운영방향을 정립하여 모·자회사의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모기관은 자회사 노사와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운영하여 자회사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지식 전파 및 지원, 모·자회사 합동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등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지적된 행사·회의·사고 시 지원 업무를 자회사와 협의절차

없이 과업 내용에 포함한 점, 노동쟁의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개선한 노력이 인정된다.

- 그러나 전년도 지적사항 중 국가의 정책변경을 계약해지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승무원숙사 및 연수원 과업내용서 7. 일반사항 (4), 역 업무분담 협약서 제29조, 간이역 역무 위탁협약서 제12조, 승차원 발매업무 위탁협약서 제18조, 철도고객센터 위탁협약서 제17조, 영동선 솔안터널 과업내용서 제6조의 계약해지 사유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승무원숙사 및 연수원 과업내용서 8. 특수사항 (5) 수익성 부대시설 운영에서 수익성 부대시설 운영에 객실부분 인력을 투입한 경우 인건비를 차감하고 차감된 인건비의 6%를 패널티로 추가 차감한다고 한 점과 (12) 지연 패널티에서 지체일수당 1천분의 1.25에 패널티를 부담하도록 한 점, 역 업무분담 협약서 제19조에서 협약위반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월 용역비의 2%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한 점, 역 업무분담 협약서 제21조와 간이역 역무 위탁협약서 제9조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에 수입금을 입금 또는 인계하지 않을 때 일일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한 점, 승차권 발매업무 위탁협약서 제10조에서 고객불편 또는 서비스 품질 관련 내용 접수로 인한 시정요구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위탁수수료의 1%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 제12조에서 기간 내 수입금 미납부시 1일당 1000분의 1에 상당한 연체료를 부과한 점, 질서지킴이 업무협약서 제23조 제1항에서 시정요구 불이행 또는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월 지급수수료를 감액지급 하도록 한 점, 고속차량 전호업무 과업지시서 (아)항에서 안전협의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이윤비목 1%를 정산하도록 한 점은 자회사로 하여금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6월 자율경영 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장 기본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2장 안정적 성장지원), 노동자 처우개선(제3장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4장 공동의 이익증진)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경영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이 포괄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항목이 매우 원칙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어 시설이관, 직업훈련 지원, 시중 노임단가, 복리후생 등 구체화된 내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전년도 평가에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나 협약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 시 평균 일반관리비를 3%로 체결하였으며 이윤율은 7~8%로 체결하였다. 이는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 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여 계약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제출자료에 따르면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율이 전년도 4.5%(4개 자회사 평균)에서 6.0%로 증가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6.0%에서 4.5%로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모기관의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일반관리비율 인상의 개선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시 모기관 제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정확한 자료 제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일반관리비율 6%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보다 높지만 여전히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윤비율 4.5%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건비, 경비, 재무 건전성 등이 각기 다른 자회사에 대해, ‘일반관리비율+이윤비율=9%’ 동일 적용을 위해 일반관리비와 이율을 조정하는 정책이 해당 지표의 개선노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 평가하기 어렵다.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 포인트 연간 400천원(일부 자회사 미지급), 명절상여금 연간 800천원, 식비 월 140천원이 지급되고 있고 그외 복리후생 항목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지급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자회사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진행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추가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출연 조건 충족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활용을 통해 경조비 지급, 콘도회원관 구입, 복지포인트 지급 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자회사의 경우 별도 예산을 통해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등 직원 복지에 활용토록 지원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진행 등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자회사 직원 의견을 수렴한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모·자회사간 합동 컨설팅 및 워크숍 시행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훈련 내용 구성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된 워크숍 등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다음 워크숍 등 시행시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중 코레일관광개발㈜가 출장여비, 식대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급여산정지침을 마련하고 코레일관광개발㈜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택, 숙사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은 사내 인트라넷 이용에 차별이 없으며 자회사 4개사는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차별 없이 사용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포상제도를 시행하며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은 채용시 외부위원을 50% 이상 포함시키고 코레일로지스㈜는 경력환산 기준표 또는 연봉산정위원회를 통해 연봉을 정하거나 승진 임용시 경력을 반영하는 등 경력인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자회사 4개사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통해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한 실적이 있다. 또한, 코레일관광개발㈜는 「채용운영 세칙」 및 「공무직 운영세칙」에, 코레일로지스㈜는 「인사규정 세칙」에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명기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코레일관광개발㈜를 제외한 3개 자회사가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출장여비규정, 여비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로지스㈜는 채용시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코레일네트웍스㈜는 경력인정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출장여비규정, 여비지급규정, 채용절차시행세칙, 직원채용세칙, 전문직 운영지침 등 관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로지스㈜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만을 규정화했고,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는 기간제와 일용직근로자 운영지침, 기간제 운영지침 등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한 규정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자회사 모두 조직부서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CEO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인사규정 등 제반 규정 정비 및 제도 개선 시 모기관 사전심사제를 통해 합리적 인사관리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인상률에 따라 매년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였다. 또한, 자회사 중 코레일테크㈜는 모기관과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금액 범위 내 자체 예산 책정 후 자체 이사회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고(수익예산 269,367백만원), 코레일네트웍스㈜는 용역료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상을 사용해 2021년 10월 직무분석을 통한 인사·보수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했으며, 코레일로지스㈜는 2020년 임금체계 및 근무체계 마련을 위해 노무컨설팅을 시행했고 연간 용역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2021년도 약 320억원).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철도발전위원회의 제언과 실천과제 실행을 위한 노사합의 후속 조치로 노사공동실행기구 내 노사관계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 내·외부 10명 이내로 노동이사제 분과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이사제 도입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의 도입 노력이 인정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가 알리오에 잘 공시되어 있다. 자회사 홈페이지에 알리오가 연동되도록 하여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향상을 도모했다고 보고서에 언급되었으나, 해당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할 결과 세부 공시항목을 클릭하면 알리오 메인 홈페이지 사이트로만 연결되어 해당 정보를 다시 검색해야 하는 등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한 불편이 존재한다. 또한, 한 자회사는 정보공개 아래 다른 한 자회사는 국민소통 아래 경영공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등 게시 방식의 형식적 통일성이 부족하여 일관성 관련 개선이 요구된다.

- 공시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1:1 교육 및 자율적인 학습매체 도입으로 개별 담당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 경영공시 매뉴얼 제작·배포하는 등의 지원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별 세부 항목을 적정히 분류하여 이를 구조화하여 정보 제공하는 노력을 포함한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공시정보 개선 계획이 없는 점이 아쉽다. 자회사별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 점검 등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총 평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 0.25억 원, 0.38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2.59%,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5.5%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25억 원, 0.38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고 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업무수행메뉴얼에 장비 및 시설 제공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휴게실 무상 임대,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간이침대, 정수기, 냉·난방기 지원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장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실적)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업무 특성상 필수적인 주요 설비(장비)는 상당히 이관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

(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다거나,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온 점이 인정되며,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 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존 용역계약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위수탁계약서, 과업지시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다.

- 모기관이 제출한 보안관리 업무협약서는 공동출연연구기관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세부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과업지시서를 대체하는 업무수행 매뉴얼을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나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 시설관리 공동출연연구기관 업무협력 협약서에서는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이 낮은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동자회사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다른 자회사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이 높지 않으며, 자회사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감소되었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의 특성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았다. 일반관리비의 감소가 출연기관의 확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모기관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보안관리단이 전년도 6.9%에서 평가년도 5.5%로, 시설관리단이 전년도 3.38%에서 평가년도 2.59%로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자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실비용역 특성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연간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경조비, 200천원~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 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질적 진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공시항목 확대 등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총 평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2020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모기관이 위탁시설의 설비 이관 확대(2021년 566종) 등을 추진한 점, 단일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서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 현장감독자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1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에도 계약변경을 하지 않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발전가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점, 전년도 지적받은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모기관의 법정교육을 자회사 근로자가 이수토록 하는 조항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8.5%, 이윤비율은 3.5%로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명절상여금 70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인상·신설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향후에도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고 복지포인트 지급 등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모·자회사간 다양한 교육기간 및 제도적 프로세스 참여를 유도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명기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정관에 참관 자격 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구체화하여 도입하고,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별도 경영공시 게시판을 마련한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2020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근거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모기관 정관 제4조의2를 보면 '활동진흥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출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활동진흥원은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을 출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1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19년 이후 자회사의 이익을 지원하여 실질 자본의 증대하고 있는 바,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 실무진 및 근로자 대표 등과의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여, 제공 시설 및 설비 내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로 기계설비 등 이관(2020년, 121종), 건축물, 전기시설, 무대시설 등 위탁시설의 설비 이관 확대(2021년 566종)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일반관리비(0.5%)와 이윤(2.4%)을 인상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자회사 설립 후 5개 사업장 및 3개 업무(미화·경비·시설)에 대한 단일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용역대금의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선지급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 대금지급에 2020년 총 11.5일 소요되던 것을 2021년 6.2일로 5.3일 단축한 노력이 인정되지만, 앞으로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책정하였다. 이에 모기관은 향후 예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이 용역비 산출 시 현장감독자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안정적·독립적 운영 여건의 확립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용역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노무비 중 상여금 항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자회사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어 해당 상여금이 내규 상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별도 계상하고 퇴직충당금 산정 기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자회사 과업범위와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 하반기 위탁(변경)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국립청소년시설의 정상운영 불가 등에 따른 인원 증감 결과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모기관은 1년 단위 계약 체결 시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낙찰하하률 적용 기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정한 것이 확인되는바,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산정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체결중에 있는 계약금액이 연중 시중노임단가(낙찰하한률 적용 기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에도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바, 연중 계약변경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자회사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 100%를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러한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에 일정 비율을 이미 반영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기관이 충분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향후에도 저임금 직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및 자회사 노사 4자로 구성된 지속발전가능협의체를 설치,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협약서에 모기관 및 자회사의 소통 강화와 상생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노사 공동참여 협의체 설치 조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상시적·안정적 운영 및 기능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모기관과 자회사 위원 각 6인 동수 구성, 근로자대표는 2년의 임기로 소속 노동조합에서 위촉토록 하는 등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 및 회의 운영 등을 명시하는 등 협의회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2021년 3차례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3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27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는 실적을 나타내는 등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회의 시 이전 회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는 등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일부 업무대상에 대하여 모기관이 일방적으로 과업 내용에 포함시킬 우려가 있는 조항, 모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재청소를 수차례 강제할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을 개선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모기관과 자회사 간의 워크숍을 통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2021년 하반기 국립청소년시설 관리용역 위탁계약에 반영하여, 위탁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부당한 업무지시 조항, 과도한 복무규율, 편의시설 제공 및 경비부담에 대한 모기관 책임 강화 등을 개선하여 바람직 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국립청소년시설 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자회사가 모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법정교육을 자회사 종업원들이 이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자회사가 실시하도록 정한 것은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경영협약 체결 후 2020년 11월 지난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3조 모기관의 역할),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의 1, 3),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의 1),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3조의 2, 3, 제5조 협의체 운영)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의 역할을 규정한 제3조 자체가 “노력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 체결 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모두 인상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8%에서 8.5%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국가계약법 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윤비율은 전년도 1.1%에서 3.5%로 2배 이상 인상하였으나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이윤비율 10%)에 미치지 못하고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명절상여금 연간 700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가족수당, 생일축하금, 문화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명절상여금을

인상한 점, 가족수당을 신설한 점,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도모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은 우선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없고 코로나19 등 경영실적 악화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직무급을 개편하고 상여금 인상 및 수당 신설, 조직문화 활성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복지 예산 편성지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직무역량 및 경력개발 지원 강화 구축 지원을 위해 모·자회사 간 다양한 교육 기반 및 제도적 프로세서 참여를 유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자회사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모기관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00개 이상의 무료 교육 콘텐트를 제공하며, 모·자회사 합동 비대면 교육의 달을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온라인 교육 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출장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취업규칙 및 인사·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채용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적이 있다. 또한, 「인사·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명기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근무평정제도 등에 대해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만 명기되어 있고 단기간 일용직 채용만을 전제하고 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시행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구체화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그에 따라 CEO를 선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과 자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2021년 주요사업 계획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예비비(21,000천원)을 책정하였으며 특별고용장려금, 노인일자리사업 노동부 신청, 국립수련원을 통한 수입 창출방안 마련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년 8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참관 자격(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1인), 의장 동의 아래 발언,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시한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였고, '21년 11월에는 대표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비상임감사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1차 이사회를 실시하였다. 향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는 아직 구축되지 못했고, 모기관 경영공시 게시판에 공시된 기존 자회사 경영공시 정보(자회사의 일반 현황, 기관 운영, 주요사업 및 기타사항)에 노동조합 현황만 추가되는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별도의 경영공시 게시판을 마련한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에 더해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총 평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모기관 정관에서 자회사에 출자·출연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위탁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장비 및 소모성 자재 구매비용 원가 설계상 경비 항목에 반영한 점, 종전의 지역별·직종별 용역 163건을 단일 통합계약으로 변경 후 유지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서 2021년에는 연간 총액계약을 도입하고 선급금 70%를 지급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50%보다 많이 낮고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은 점, 다수 인원이 종사하는 일부 직종의 최저등급의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는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개선을 진행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계약서 내 모기관의 요청에 의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며, 노사공동협의회와 경영협약도 체결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회사 평균 5.61%, 이윤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여 자회사 평균 7.2%이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2,229천원, 식비 월 130천원/월 또는 140천원/월을 지급하는 등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지포인트 및 식대를 지급하고 있고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자회사 운영체계 개선대책 등에 따라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고 명절상여금 지급 등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교육예산 대폭 증액, 안정적인 교육 참여를 위한 Post 확대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CEO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모기관 및 자회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거나 수당 지급체계를 신설하였으며,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열린경영 경영공시 게시판에 주요 경영정보를 게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과 모기관 정관(제32조)을 보면 각각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이같은 법률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두 곳(LH사옥관리, LH주거복지정보)에 각각 자본금 9.9억 원, 7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인 ㈜LH사옥관리는 적정 당기 순이익 실현을 지원하여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특히, 자회사 두 곳 모두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 보다 많이 낮고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모·자회사 경영협약에 포괄적으로 명시하였고, 위수탁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지사 설립(8개)을 위한 예산, 인력 및 사무공간 지원, 자회사 필수 설비 지원(지속), 장비 및 소모성 자재 구매비용 원가 설계상 경비 항목에 반영, 장비 및 업무공구 자회사 구매 후 감가상각비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종전의 지역별·직종별 용역 163건을 단일통합계약으로 변경 후 유지(2018.10～)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계약통합에 따라 용역설계기준을 통일하여 적용(노무비, 일반관리비율, 낙찰률 등)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1년 단위의 선급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2020년에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자회사 지원을 위해 선금 지급을 시범 적용하고, 2021년에는 연간 총액계약을 도입하고 선급금 70%를 지급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소요기간을 2일로 운영하고 있고, 2022년의 경우 3.7 자회사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다음 날인 3.8.에 70%를 지급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 시에 예정가격을 시중노임단가의 88% 수준으로 산정한 점에 대해 지적을 받은바 있는데, 모기관이 제출한 예정가격 조사표에 따르면 (주)LH사옥관리 용역의 2021년 노무비 예정가격을 시중노임단가의 90%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향하여 산정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다수 인원이 종사하는 일부 직종의 최저등급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이 제출한 추가 자료에는 LH주거복지정보(주)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이에 관해서는 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차후에는 2개 자회사에 대한 자료를 모두 충실히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모기관이 노무비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감독자 인건비 항목을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무인력 노무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고 일반관리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운영 예산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노무비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립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직무급 체계를 세분화하여 직무등급에 따른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을 차별화하는 한편, 직책수당·직급수당·자격수당 등 부가급여를 신설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수준이 상향 조정되도록 하였다. 특히 직종 별로 직무가치를 고려해 기본급을 운영함과 동시에 시중노임단가를 보다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연중 시중노임단가 인상 시 자회사 직무급 테이블이 즉각적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시중노임단가가 하락하는 경우 노임단가가 함께 하락하게 되어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시중노임단가 인상 시 자동 적용 원칙 및 시중노임단가 하락 시 종전 노임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산정된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는 등 저임금 직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상시적 운영 및 의견청취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노사공동협의회 연착륙의 일환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모·자회사 및 공동노조의 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현재의 협의 틀을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대행업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불명료한 사유를 열거한 조항, 모기관이 자회사 직원의 교체 또는 인사상 조치를 요구할 경우 자회사가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 모기관이 연장 휴일 야간근무를 자회사와 협의 없이 강제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작업 일보의 제출을 강제 하는 조항의 경우 일간 및 주간 보고 폐지, 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더라도 결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 감액을 예정하고 있는 조항도 개선하는 등 개선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모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횟수 제한 없는 재청소 등 지시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할 계획을 수립한 점, 자회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금액의 월 단위 정산방식에서 총액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재무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사옥관리 위수탁 과업내용서 2. 계약금액 조정에서 위수탁 범위 및 대상, 기간의 변경 발생 시 모기관의 요청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 청소부문에서 모기관이 불결하다고 판단하면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은 자회사와의 관계에서 다소 과도하여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과 자회사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거나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평가기간 중 경영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2022년 신규 체결 예정임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경영성과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영성과협약서는 자회사 대표이사의 성과목표, 권한과 책임, 보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회사 대표이사의 기본적인 자율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회사의 자율성·책임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모회사의 지원을 포함하는 경영협약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 체결 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 일반관리비는 5.61%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이윤비율은 7.2%(2개 자회사 평균)로 인상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 5.61%는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수준을 하회한다. 이윤비율은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보다는 높으나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이윤비율 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회사 운영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이윤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이 실제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연간 2,229천원, 식비 월 130천원 또는 140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지 포인트 및 식비를 지급하는 점, 전년도 대비 식비를 인상한 점,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도모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자회사 노동자에 대해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리후생 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을 위한 노력으로서 기획재정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지만 최종 불승인되었으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검토 결과 수익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중 타 기관 벤치마킹 및 기획재정부에 기본재산 전환 재신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 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예산의 대폭증액 및 안정적인 교육 참여를 위한 post 확대를 통해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상담지원 개선방안 수립을 통한 체계적 업무지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센터 추가 설치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은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교육훈련 내용 구성 시 교육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 및 여비규정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구내식당, 체력단련시설 등을 차별 없이 이용하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시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포상제도를 운영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기타평정으로 구성된 종합근무평정을 시행하여 승진·승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중 ㈜LH사옥관리는 채용전형시 외부위원 참여시킨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원선임을 위해 2021년 11월 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임절차를 진행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회사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 경영체계 개선 용역」을 시행했고(용역비용 450백만원), 자회사는 모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회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력운영 및 인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시행하였다. 동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LH사옥관리는 자회사 노사간 14차례에 걸쳐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2021년 9월 자회사 노사가 직무등급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LH주거복지정보㈜는 노무비 총액, 임단협 등 내부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급을 결정하고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수당 지급체계를 신설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 참여방안 도입을 검토하거나, 조직 융합 및 안정화에 집중하고 근로자 의견개진 창구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 예정이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 자회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비상임이사 1인을 추가하였다고는 하지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질적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20년 9월에 자회사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경영공시를 지원하여 자회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경영공시 게시판에 주요 경영정보가 게재된 점은 인정된다. 다만, 두 자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시항목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며 LH주거복지의 경우 인력구성, 정관, 재무제표 정보만 공시되어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체계적인 노력과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에 더해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총 평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0.2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2.89%,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에 자본금 4.92억 원 원 중 0.204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20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고 20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실적)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장비)는 상당히 이관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 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 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 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고,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왔으므로 적정노임단가 산정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 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므로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다. 모기관은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 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모기관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자회사와의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이 낮은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었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2.89%이며 이윤비율은 자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실비용역 특성상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연간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항목으로 200~24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 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내부 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임원선발 관련 공고와 절차 등을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에 공고하는 등으로 임원선발의 공정성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질적 진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경우 자회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내용이 비공개글로 되어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대국민 정보접근성 제공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공시항목 확대 등에 대한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 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총 평

○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로 0.2억 원, 0.27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2.6%,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5.7%,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게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204억 원, 0.269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고 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업무수행메뉴얼에 장비 및 시설 제공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진공청소기, 왁스기계, 순찰차, 무전기 등 미화·경비 업무의 주요 설비(장비) 이관, 사무실 무상 임대,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간이침대, 정수기, 냉·난방기 지원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고,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왔으므로 적정노임단가 산정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 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므로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다. 모기관은 보안관리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지시서를 대체하는 업무수행 매뉴얼을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나, 제6조에서 소장이 모기관담당자에게 일별 구두 업무

공유하도록 한 점과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모기관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자회사와의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제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이 낮은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었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보안관리단이 5.7%로, 시설관리단이 2.6%이며 이윤비율은 자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실비용역 특성상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연간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항목으로 200천원~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내부 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질적 진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의 항목과 시의성을 가지는 수시공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공시항목 확대 등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총 평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로 0.47억 원, 1.34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2.68%,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5.7%,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466억 원, 1.343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고 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업무수행메뉴얼에 장비 및 시설 제공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진공청소기, 왁스기계, 순찰차, 무전기 등 미화·경비 업무의 주요 설비(장비) 이관, 사무실 무상 임대,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간이침대, 정수기, 냉·난방기 지원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 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 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 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고,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왔으므로 적정노임단가 산정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 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므로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다. 모기관은 보안관리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지시서를 대체하는 업무수행 매뉴얼을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나, 제6조에서 소장이 모기관담당자에게 일별 구두 업무 공유하도록 한 점과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모기관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자회사와의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제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이 낮은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었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2.68%이며 이윤비율은 자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실비용역 특성상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연간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항목으로 200천원~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내부 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 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임원선발 관련 공고와 절차 등을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에 공고하는 등으로 임원선발의 공정성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노력과 구체적 계획이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사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공시항목 확대 등에 대한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국화학연구원

총 평

○ 한국화학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공동출연 방식이므로 모기관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기관의 출자금액이 자회사별로 0.26억 원, 0.49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필수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였는지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노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기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연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매뉴얼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율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2.6%,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이 4.6%, 이윤비율은 실비용역 특성상 보장되지 않았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이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일부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경영정보를 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회사 정관 제정, 경영협약서 체결,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등 노력을 하였으나,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공동출연연구기관들이 출연한 자회사인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의 자본금 4.92억 원, 6.17억 원 중 각각 0.255억 원, 0.489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19년 당기순손실을 극복하고 20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특히 19개 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규모의 다른 자회사와 비교할 때 개별 모기관의 자본금 부담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 중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평가시점에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출연한 모기관들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마련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자회사가 체결한 업무수행메뉴얼에 장비 및 시설 제공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진공청소기, 왁스기계, 순찰차, 무전기 등 미화·경비 업무의 주요 설비(장비) 이관, 사무실 무상 임대, 자회사 직원 휴게실 개선(간이침대, 정수기, 냉·난방기 지원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출연 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회사의 이윤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모기관을 포함한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19개 연구기관과 공동출연한 자회사 간에 단일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1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월에 일괄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금 지급기간 단축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계약대금 지급신청 또는 기성검사 등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2개 자회사 설립 당시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동일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모기관은 노무비 원가와 예정가격 또는 용역가격 산정 기준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경비 직종의 통상시급은 본보고서에 제시한 2021년 시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가(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금액 기준인지 변별할 수 없어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19개 모기관으로 구성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동일 직종 간 "임금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고, 자회사 설립년도 기준 최상위 임금수준과 3년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노임단가를 인상해 왔으므로 적정노임단가 산정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00%를 상회하기도 하지만, 일부 직종 하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 예상되는바 모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무가치를 고려한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시중노임단가 100%에 밑도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들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한 회사로 모기관과 자회사간 노사공동협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안 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자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자회사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제 규정 제정·개폐 등 자회사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관의 기관장이 담당부서장 중 추천한 출연기관별 각 1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출연기관별 출연금 대비 지출내역 보고, 익년도 출연금(예산) 산출(안) 검토, 자회사 근로자별 급여테이블 검토 등 출연금 예산 확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방향 및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자회사간 현안사항 논의 및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자회사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내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므로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다. 모기관은 보안관리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지시서를 대체하는 업무수행 매뉴얼을 모기관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나, 제6조에서 소장이 모기관담당자에게 일별 구두 업무 공유하도록 한 점과 경비원의 준수사항과 근무수칙은 모기관이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공동출연기관의 업무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기관과 자회사간의 위수탁 업무와 관련된 과업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모기관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자회사와의 계약체결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거나, 모·자회사가 협력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별도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제5조 전문성 강화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실효성이 낮은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동자회사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다른 자회사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이 높지 않으며, 자회사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는 감소되었고, 이윤비율은 실비용역의 특성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았다. 일반관리비의

감소가 출연기관의 확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모기관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보안관리단이 평가년도 4.6%로, 시설관리단이 전년도 3.39%에서 평가년도 2.6%로 감소하였고, 이윤비율은 자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실비용역 특성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연간 복지포인트가 400천원, 명절상여금이 800천원 지급되고 있고, 식비는 월 130천원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항목으로 경조비, 200천원~250천원 수준의 건강검진비가 제공되고 있는데. 평가년도에 증가된 복리후생항목은 없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내부규정상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주무 부처와 19개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19개 모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부가세(면세)·이윤 활용을 통해 자회사 전 근로자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반영, 피복 현물지원, 건강검진 및 특별휴가 부여,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감단 해제, 소통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해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직군·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소관 법령에 근거한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외부대행 컨설팅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전문화된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외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채용시 각 전형별 위원 구성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모기관에서 창립기념포상 시행시 자회사 근로자를 포함하여 포상하는 등 포상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연봉을 책정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여건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비금전적 처우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 사용, 경력인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한 선임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2020년 4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검증절차 강화와 명확한 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임원선발 관련 공고와 절차 등을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에 공고하는 등으로 임원선발의 공정성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출연연구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3년 내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기관과 자회사는 차년도 예상 용역비(예산)을 산정 협의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노력과 구체적 계획이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현황,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공시항목 확대 등에 대한 개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한전KPS(주)

총 평

○ 한전KPS는 2021.7.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편, 모기관이 자회사 공기구 관련 비용 정산기준 수립을 통한 지원방식 구체화(2021.10) 등을 추진한 점, 위탁계약의 방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 직종별 노임의 100%로 원가를 책정하고, 해당 원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관리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 개선을 자회사와 사전협의 하에 진행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이나, 계약서 내 근무보고서를 강제하는 점 등이 존재하고, 노사공동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 이윤비율은 10%로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를 충족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3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모기관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야별 교육 시행을 확대하는 등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며, 자회사 임원선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통한 임원후보자 추천 기본방침 수립 등을 통해 CEO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고, 자회사 홈페이지 신설 지원과 모·자회사 협의를 통한 경영공시 항목 확대 등을 통해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근로자 참관제 도입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기존 정관에 자회사 설립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1.07.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회사는 제2조(목적)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7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20년 및 21년에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사업확장적립금 처분 결정 등으로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다소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용역계약특수조건(제17조, 제18조)에서 필수 설비의 무상 제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유 공기구 및 장비 등 무상 이관(75품목, 121건), 사무실, 창고 등 자회사 업무공간 지원, 휴게공간 시설개선 지원, 필수설비에 대한 자회사 시스템 등재 등 관리위임 고식화(2020.11.), 자회사 공기구 관련 비용 정산기준 수립을 통한 지원방식 구체화(2021.10)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이윤 10%)하고 모·자회사 간 상호 협의로 안전관리비, 상여금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방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0.8)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본사・사업소별 분리발주계약 16건 및 다수의 간접인력을 1건으로 통합 전환 완료(2020.8.)하였고, 이후 인력 등 변경사항을 충실히 계약에 반영하여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회사의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하도록 한 노력은 인정되나, 향후 대금 지급방식을 분기별 선지급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기간을 약 15일 단축(19일→4일)한 점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의 100%로 원가를 책정하고, 해당 원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시중노임단가 충족 여부 평가에 있어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취지에 미루어 볼 때 원가와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기계장치정비원 노임 적용 직종의 경우 하반기 시중노임단가가 전기 대비 하락한 이유로 예정가격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점은 자회사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안정성과 통상임금 성격의 임금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임의로 낮출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예정가격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 조사·공표내용에 따라 상반기에는 2월, 하반기에는 7월에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문기관을 활용한 원가계산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낙찰률을 종전 91.396%에서 93.992%로 개선하였는바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산정하려는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 100% 반영에도 불구하고 낙찰률 적용이 확인되는바,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에 있음을 고려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기관이 종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개선의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논의를 위하여 2021년 3차례에 걸쳐

노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제안을 상정하였으나 모기관 노동조합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모·자회사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2021년 12차례 개최하여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하였고, 모·자회사 분기별 1회 개최되는 회계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021년 5차례 개최하는 등 자회사 재무건정성 확보를 도모하는 등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 노사 상생간담회를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부당·불공정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있어 모기관에 보고하는 의무를 완화하였고, 배치된 인원 교체 시 모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사항은 자회사 인사권 침해조항에 해당할 수 있어 삭제하였다. 또한, 미화업무 시 모기관의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교육요구 및 자회사의 즉시 응하도록 정한 조항, 경비원에 대한 근태사항 등 과도한 복무규율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 안전관리 특수조건에서 안전 지적서를 발급받은 근로자를 즉시 퇴출하게 하거나 근로자를 재투입할 경우 모기관과 협의하게 하는 조항 등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자회사와 사전 협의를 하고 내부 논의 및 고용노동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진행한 점, 모기관과 자회사 간 업무 시 대등한 지위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호 문서 수·발신 시 명칭을 '지시'에서 '요청'으로 변경한 점, 모기관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 요청으로 인해 자회사에서 지나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용역감독직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점, 위탁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에서 자회사에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강제하는 조항, 자회사 노동자의 근무규정 작성 의무 및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들을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자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결원 보충하고자 할 때 모기관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 근로계약서 체결 후 모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하는 조항 등은 자회사의 경영·인사권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9월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한 것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모회사의 임무, 제2조 자회사의 임무, 제3조의 1),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의 4, 5),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의 3),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3조의 2)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 등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적용, 복리후생지원, 시설 이관 등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협의회, 자회사 근로자의 고용조건, 교육훈련 등의 내용이 모두 “협력한다”,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었다.

- 일반관리비 비율 9%, 이윤비율 10%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모두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며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율을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 포인트 연간 400천원, 명절상여금 연간 1,000천원, 식비 월 130천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고 그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연간 200천원의 건강검진비, 83.8천원의 교통비, 명절 격려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지급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자회사의 당기 순이익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을 위한 노사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하여 자회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를 포함한 주요 절차를 2022년 중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 노동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무 공간 및 휴게공간을 신설·확대하였으며, 무사고 안전보상제를 통한 금전적 보상 등을 통해 계약금액 외 추가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의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야별 교육의 시행을 확대하고, 자회사의 온라인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자회사 근로자의 커리어 경로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설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 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출장여비, 국외출장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 구내식당과 휴게실 등을 차별 없이 공동 이용하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채용전형시 외부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포상제도를 시행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능력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실적이 있다. 또한, 2021년 11월 「계약직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는 등이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가 채용전형시 외부위원 참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설정하고 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선임방법 및 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통한 임원후보자 추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별도로 임원후보자를 추천, 공개채용, 블라인드 면접, 퇴직임직원 재취업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임원을 선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의 채용전담자(부서)가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7월 전문 컨설팅을 통해 동일임금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자회사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검토한 후 용역계약 내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는데, 2021년도에는 상여금 10% 인상, 본사 및 사업소 근무자 전문미화 수당 신설, 미화·경비 직무 수행자 팀장급 직책수당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경비인력 피복비 인상, 안전관리비 추가 반영 등 복리후생 추가 지원을 통해 임금 간접인상 효과를 주도록 하였다. 그 밖에 자회사 시간외근무 운영기준을 제정하도록 했으며 CEO 경영목표 평가기준에 '인사관리 개선노력'을 반영하여 자회사 임금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년 7월 전력그룹사 최초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고 이에 대한 운영현황 설명회 개최('21.9)를 통해 도입 경험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회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유도하였다. '21년 12월 이사회 규정 제정을 통해 모·자회사간 협력을 통한 이사회 운영기준을 수립하였고, 근로자 참관제 도입을 위한 내부 기반 확보를 위해 자회사 근로자 참관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향후 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운영지침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 신설 지원과 모·자회사 협의를 통해 여섯 개 경영공시 항목을 도출하였다. 알림마당 경영공시 게시판을 마련하여 자회사 연혁, 인원현황, 조직도, 주요사업, 채용공고, 대차대조표 등의 경영정보를 공시하였고, 모회사 경영공시 현황을 참고하여 노사관리, 계약정보 등으로 경영공시 항목 확대를 검토 중이다. 향후 추가할 공시 항목이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한전원자력연료㈜

총 평

○ 한전원자력연료는 2021.7.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모기관이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종전 6건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원가를 책정하고, 해당 원가를 100%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점,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3억 원을 100% 출자하였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조항도 함께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점 등은 긍정적이나, 계약서 내 계약의 해지 사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 이윤비율은 10%로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를 충족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30천원/월을 지급하는 등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며, 모·자회사 노무담당자 워크샵 등을 통해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현황 등을 공유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모기관 교육 프로그램 등 활용, 교육훈련 예산의 지속적 확대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시행하며, 출자회사 임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침 제정 등 CEO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회사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알림마당 경영공시 게시판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에 있어서 정관 제2조의 '각호에 관련된 기술개발, 용역사업, 투자 및 출자, 부대되는 사업'을 근거로 하였다.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3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여 이익잉여금을 적립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다소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자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 이관 관련 모·자회사 실무자 회의 개최(2020.8.26.) 및 모기관의 용역 담당 부서 간 내부협의를 거쳐 이관이 필요한 설비 발생시 즉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설비 이관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실제 이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모기관은 향후 필요한 시설·장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제공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적자사업 이관, 흑자사업 회수 등 부당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협약을 개정(2021년 12월)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종전 6건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1.3.)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단일통합계약을 도입하면서 공통 시방서 제정 및 적용, 역무 특성에 맞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적용기준 단일화, 피복비, 건강진단비 등 공통 경비항목 적용기준 단일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단일통합계약의 효과성을 높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모기관은 자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선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력은 인정되나, '20년 하반기 코로나로 인한 운영자금 지급 외에는 자회사의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가 선금 신청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자회사가 선금을 신청할 때 보증서 제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개선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3.8일이 소요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원가를 책정하고, 해당 원가를 100%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직종별 예정가격은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계장치정비원 노임 적용 직종의 경우 하반기에 시중노임단가가 낮아졌지만 예정가격을 낮추지 않고 상반기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점은 예정가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정한 노력이라고 평가된다.

- 이와 별개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시중노임 단가를 제시하기보다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해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적정하게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시중노임단가 하락 시에는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바, 적정 노임단가 산정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모든 직종의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모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기관이 종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개선의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이 낙찰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에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자회사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 3월 모기관과 자회사 노사 각 4인, 총 8인으로 구성되는 KNF·KNF파트너스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하였고, 반기별 1회 등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회사 근로자대표로 자회사 노동조합의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참여시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2021년 2차례에 걸쳐 KNF·KNF파트너스 노사상생협의회를 개최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근무여건, 자회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여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기 회의의 횟수가 적정한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자회사 노동자의 불성실 등 근무공백 등이 발생한 경우 자회사가 그 노동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조항, 발주자의 경영방침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그 원인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 완료 뒤 3년 이내에 조사가 시행된 경우 자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항, 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모기관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모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해당가액으로 변상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등은 삭제하여 개선한 점이 인정된다.

- 모기관은 고용노동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근로자 교체 요구 조항의 삭제, 모기관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상호 동의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존에는 과업변경 '지시'를 과업변경 '요청'으로 개선하였으며, 모기관 필요에 의한 용역의 일시 정지나 근무 일일점검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2022년 1월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향후 자회사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특수 및 일반경비용역 시방서에서 모기관 감독직원이 재해방지, 재산도난 및 손해방지를 위해 자회사에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회사의 부담으로 모기관이 후속조치를 실시한다는 규정은 모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회사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항으로 자회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제22조에서 자회사 노동자의 책임에 의해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를 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경영협약을 체결했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4조, 제6조), 노동자 처우개선(제5조),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2조, 제7조)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 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주요 내용에서 추상적인 원칙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행력 개선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데, 이를 2022년 1월 체결 예정인 협약에서 일부 보완하여 자회사에 대한 필수설비 이관,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 수준으로

체결하였고,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받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8.38%에서 평가년도에는 9%로 인상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에 동일하게 10%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정확한 자료 제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가년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로 보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일반관리비 비율 9%, 이윤비율 10%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모두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며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율 9.0%, 이윤비율 10.0%)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율을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 포인트 연간 400천원, 명절상여금 연간 1,000천원, 식비 월 130천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고 그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인당 31.5천원의 건강검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지급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하여 모회사 노사실무회의를 진행하고 기본재산 전환을 통한 기금 원금 사용 시 모기관 근로자의 25%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모·자회사 노무담당자 워크샵 등을 통해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현황 등을 공유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기관 노동조합 및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자회사 이익 미배당, 적립금 확대 등을 통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획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 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커리어 경로개발과 서비스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모기관 교육프로그램 및 외부 교육을 시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의 경우 모기관 및 외부전문기관과 협업 수행하여 진행하여 교육효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자회사 교육훈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등은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출장비, 일비, 식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차별 없이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하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채용을 위한 서류 및 면접 전형시 외부위원으로 참여시키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정기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21년 6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도입 검토(안)」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를 대체 운영하여 2021년 7월부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시행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가 채용전형시 외부위원 참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설정하고 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도입 검토(안)」 중 자회사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수준의 공정한 자회사 CEO 선발제도 정착을 위해 2019년 출자회사 임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출을 위해 공모방법 및 선발제도에 대한 상황,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직무기본급 중심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며 정부 권고사항에 따라 복지후생을 지원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을 준수하고 이행 점검하며 자회사와 용역계약 체결시 시중노임단가 100% 반영을 추진하고 2021년도 임금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사무직과 공무직의 직종을 재분류하고 직무기본급을 재설계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관련 법령 검토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사례 조사를 통해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하였는데, 대내·외 여건 및 경영환경상 당분간 노동이사제 도입은 어렵지만 모회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사례 공유 및 협의를 통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대안으로 도입하기로 결정 ('21.12)하였고, 참석자, 발언권,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 운영지침을 마련한 점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로 인정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별도 게시판을 마련해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모기관은 홈페이지 구축 사례 등을 공유하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안요청서, 표준용역계약서, 구매시방서 작성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자회사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알림마당 경영공시 게시판을 마련한 점은 인정되나, 공시된 정보가 재무제표 정도 밖에 없어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경영관리부장을 공시담당자로 지정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한 점이 인정되며 경영공시 대상항목 확대와 홈페이지 지속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총 평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지방공기업 등 법령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모기관이 자회사 위생편의시설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 점, 자회사 출범(2019년) 전 19개의 개별계약을 자회사 출범 후 1개의 계약으로 통합한 점,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7억원을 100% 출자하고 있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 낙찰률 92.5%를 적용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점,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노사공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경영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여 8.0%, 이윤비율은 0%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1,0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 식비 10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항목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고, 모기관 202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고 식비 개선 등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해 CEO 선발의 공정성을 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7의8은 '공사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이같은 법률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7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여 이익잉여금을 적립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많이 하회하고 부채비율

역시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주로 청소·경비 용역업체 운영장비 인수계획(고용개선자회사추진단-1847, '18.12.17.)에 의해 추진하였으며, 실제로 관리소장실 등 18개소, 휴대용 진공청소기 61대, 청소재료 보관함 76개에 대해 무상 임대, 자회사 위생편의시설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자회사 본사 사무실 증축공시 실시 설계, 세면대 및 씽크대 설치 등)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자회사 출범(2019년) 전 19개의 개별계약을 자회사 출범 후 1개의 계약으로 통합함으로써 개별 발주·계약시의 검수 및 대금 지급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모·자회사의 업무편의성을 제고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 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이 지방계약법 상의 검수절차 간소화(분기별 2회는 감독자조서만으로 대금지급)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개선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자회사의 자금지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8~11일)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지만,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비 예정가격이 노무비 원가인 단순노임종사원 노임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본보고서와 추가제출 자료 간에 내용이 상이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취지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산정되도록 용역비 산출 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이 노무비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감독자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용역설계서에는 노무비 중 상여금 항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자회사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어 상여금이 내규 상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별도 계상하고 퇴직충당금 산정 기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자회사 과업범위와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노임단가를 산정하고, 연중 시중노임단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점이 인정되며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에도 불구하고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기준으로 노임단가를 산정하고 있는바,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직종의 경우 전기 대비 시중노임단가가 하락하자 '하락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노임단가가 변경된 내용도 확인되는바,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이유로 종전 노임단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92.5%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이 종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전년도 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 이후에 오히려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기구의 별도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검토하는 한편, 다른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기관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직원에게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분기별 1회 모기관과 자회사의 간부로 구성된 자회사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분기 1회 이상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반기 1회 이상 공사간부, 자회사, 근로자 및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현재의 협의 틀을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자회사 직원의 사직·신규채용 등을 모기관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 모기관의 계획 변경을 과업 내용의 당연 변경사유로 규정한 조항, 민원 제기로 인해 모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의 해지 사유 등은 개선되었음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용역실무자와 자회사 실무자와의 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여 과업지시서 개선사항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1년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21년 12월 기준 총 20건(자회사 경영·인사권 침해 7건, 부당한 업무지시 6건, 과도한 복무규율 2건, 기타 5건)을 시정하였다. 또한, 자회사와 실무자 협의를 통하여 부당·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모기관이 자회사와의 소통을 통한 상호 개선노력을 기울인 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모기관에 의한 청소상태의 지적 및 재시행 및 재시행 거부 시 일방적 감액 등을 규정한 조항과 모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의 복무규율 상 금지사항을 추가할 여지가 있는 조항 등은 본보고서에서 개선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역사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제6조, 차량기지사업소 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서 경고 3회 이상 누적되어 자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은 부당한 해지사유로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전동차 청소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재시행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용역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자회사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5월에 2018년 체결된 업무협약을 보완하여 자회사 자율경영 및 모·자회사의 업무협력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기본원칙, 제3조 경영자율 보장과 정당한 권한행사),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4조 업무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경영협약의 주요 내용을 현재의 업무협약이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경영협약 체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년도 평가에서 협약서의 내용 및 주요 사항의 구체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 시 일반관리비를 7%로 상향 조정하여 체결하였으나

이윤율(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를 인상하였고 이윤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0%를 유지하였던 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 7%에서 평가년도 8%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윤율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자체 수립할 수 있도록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 포인트 연간 1,000천원, 명절상여금 연간 1,000천원, 식비 월 100천원(복리후생규정 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인당 200천원의 건강검진비, 복지수당 연 100천원, 11.6천원 상당의 단체보험, 코로나 격려금(1회, 200천원) 휴양소 혜택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점, 기타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는 점,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도모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하회하는 식비 지급은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시협의회 의결을 통해 장학금, 경조금,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금으로 자회사를 지원하여 자회사 체육대회 기념 온누리 상품권을 4만원/인 지급하였으며,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합의, 연중 휴양소 확대, 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 협조 등 자회사 근로자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된다.

-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은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 이사회 의결, 모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다양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외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신규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출강 협조, 체력검정 진행요원 지원 협조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자회사 신입직원들에게 문제해결 방법, 보고서 및 계획서 작성, 업무매뉴얼 작성 등을 알려주는 디딤돌 멘토링을 실시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사내 인트라넷 사용에 있어 차별이 없으며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채용전형시 외부 관련 전문가를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채용을 위한 서류 및 면접전형시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21년 11월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설정하고 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장에 명시된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하는 등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계획(안)」은 사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2019년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표이사 및 총괄본부장을 선정하고, 공정한 후보자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다양한 계층(대학교수 1명, 노무사 1명, 언론인 1명, 시민단체 1명, 퇴직공직자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CEO 선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의 수를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모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명시된 용역료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2021년 9월 이후부터 취업규칙 및 급여체계 등 진단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한 실적이 인정된다(예산 550만원). 또한, 관리수당 직책수당 증액(월 15만원→월 30만원), 전동차 중청소 팀장수당 신설(월 10만원), 근속수당 신설(월 5천원~월 9천원)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자회사 출범 3년차로 특정 노조의 무리한 진정, 조직문화에 익숙치 않은 용역사 문화 등으로 인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추진에 어려운 여건이며, 향후 노사간 상생문화의 성숙도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 하였다.

-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사 공감대 형성과 자회사 상황에 적합한 방안들을 검토한 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또는 모기관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 확인 결과, 알림마당 경영투명화 게시판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신규채용인원 중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만 공시되어 있어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부산교통공사

총 평

○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 조례와 모기관 정관에서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지만, 위탁사업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 이관을 추진한 점, 자회사의 소관 사업범위의 용역 일체에 대해 2021.3. 자회사와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점,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무비 원가를 설계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고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 전년도 지적된 부당·불공정 조항을 검토하여 개선 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 내에 일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5.0%, 이윤비율은 0%이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1,500천원, 식비 월 100천/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따라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항목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고 식비 개선 등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회계분야 협약을 진행하고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자회사 홈페이지 구축 후 경영공시 게시판을 마련하여 자회사 일반현황 등을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2021.12.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관련하여 부산시 조례(제3조)와 모기관 정관(제6조)을 보면 각각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설립하는 법인에 출자하고, 해당 사업을 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설립하는 법인에 출자하고, 해당 사업을 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 보다 매우 낮고 부채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과 자회사가 체결한 경영협약에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 이관(1,536개), 자회사 주요 사업소 사무공간 무상임대차 계약 체결, 자회사 본사 사무실 유상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지원, 자회사 경영정보시스템 및 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청소, 경비, 시설, 민원 등 소관사업범위의 용역 일체에 대해 2021.3. 자회사와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총 지급기간 12일을 유지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자회사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용역비 산출 시 원가와 예정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무비 원가를 설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직종별 용역비 산정을 위한 적정 인원수를 업무 투입 시간, 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자 하였고, 용역비 산출과 관련하여 모기관은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용역비 원가설계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점은 용역비 설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이 노무비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감독자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용역설계서에는 노무비 중 상여금 항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자회사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어 상여금이 내규 상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별도 계상하고 퇴직충당금 산정 기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자회사 과업범위와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무비 산정 관련 부산시 생활임금을 기본급 중심으로 반영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는바, 2021년도 생활임금은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시중노임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부산시 생활임금은 단일한 기준으로서, 직종별 시중노임단가와 비교할 때 생활임금이 시중노임단가보다 하회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부산시 생활임금을 제시하기보다는, 직종 별로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원가설계 및 예정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기관이 종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였고, 이를 100%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모기관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모기관은 향후에도 이를 기관 내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설립·운영에 따라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하고 노동조건, 작업 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방안에 관한 모・자회사간 의사소통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예규(안)을 자회사 및 노조와 협의하여, 2022년 1월부터 예규안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에 있다. 모기관과 자회사 노사위원 각 3인, 총 12명으로 구성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에는 자회사 근로자대표로 자회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노조가 지명하는 3인이 참여할 예정이라 해당 부분에 대한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1년 자회사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지시서에서 자회사 직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및 근로계약서 명시 강제, 모기관 요구 시 자회사 직원 즉시 교체의무, 과업지시서 이견이 있을 경우 모기관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 자회사 노동자 단체행동 시 대체인력 확보 및 쟁의행위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용모 단정 등 과도한 복무규율 조항, 모기관 사정이나 경영방침 변화 등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가능 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과업지시서에서 청소 관련하여 모기관이 검사결과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면 자회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재작업을 시행하도록 한 규정, '금지 및 예절' 관련 내용에서 농담이나 잡담 금지, 근무 중 음주 금지 등의 규정, 과업지시서의 4호선 소방설비 유지보수 관련 내용에서는 자회사에게 일일 작업 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4호선 위생, 오폐수 유지보수 관련 내용에서 자회사 노동자 채용 시 모기관에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게 하고

모기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체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은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4월 모·자회사 간 자율경영협약서를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임무 가의 1, 나의 1),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2조 임무 가의 2, 3),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3조 협의체 운영)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시중노임단가 적용,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모기관의 역할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모기관의 자회사 지원에 관한 사항도 매우 포괄적인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어 시설이관, 교육훈련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협의체 운영은 “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어 실행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었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5%, 이윤비율은 0%인데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 모두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1년 자회사 출범시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윤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대신 2022년 계약에 이윤율 4.3% 반영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자체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추가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 포인트 연간 400천원, 명절상여금 연간 1,500천원, 식비 월 10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복지 포인트, 명절상여금을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급하고 있는 점,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도모한 점, 노사 복지후생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후생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논의하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06년 1월 이후 재정여건 악화로 기금출연이 되지 않아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자회사 직원 모회사 근로복지기금 콘도 사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회사 및 모기관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 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의 회계 및 세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연결재무재표 작성 및 회계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관련 회계분야 협업을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종 문의 및 협조 요청에 응하고 공개 가능한 매뉴얼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처리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고 필기시험의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 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포상제도를 운영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예규」를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비금전적 처우, 경력인정제도, 근무평정제도 등과 같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2021년 2월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을 다양한 경력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청소용역근로자 등 고용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컨설팅(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을 실시했고, 동종 타 기관 자회사 운영현황과 상기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를 감안하여 급여체계를 마련했으며 ERP 급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1년 11월 자회사는 노동조합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논의를 요구했으나, 노동조합 내부 사정으로 추후 협의를 요청하였다. 자회사 및 노동조합의 상황을 고려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은 추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22년 하반기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사 공감대 형성과 자회사 상황에 적합한 방안들을 검토한 후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 구축 후 경영공시 게시판을 마련하여 자회사 일반현황, 임직원 수, 자본금 및 주주현황, 요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정보를 공시하였다. 다만,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에 더해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향후 공시정보를 분기 단위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나,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울교통공사

총 평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 조례(제16조)와 정관(제19조)에서 자회사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위탁사업 내용의 명확한 규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시설유지보수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공기구) 이관 및 자체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추진한 점,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노무종사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무비 원가를 설계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시중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노무비 계약금액은 이를 조정하지 않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 지적받은 부당·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노사공동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0%로 지방계약법상 최대한도를 충족하고, 이윤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여 7.5%이며,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1,500천원(노사합의로 업무보전수당으로 전환), 명절상여금 729천원, 식비 9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항목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고 식비 개선 등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모기관 인재개발원의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방하는 등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CEO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이미 설립되어 있던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관련하여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16조)와 정관(제19조)을 보면 각각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법인에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공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와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 다만, 이같은 조례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만으로 자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조례)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8.3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기관의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3억 원의 자본금을 전입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주로 업무위탁계약 특수조건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시설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공기구) 이관 및 자체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자회사 공기구 구매를 위한 예산 지원 계획(2022~2026년) 마련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1년 자회사 일반관리비(9%) 및 이윤(7.5%)의 적정 수준 보장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향후 단일통합계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종전 13개→2021년 2개→2022년 1개)하기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에는 단일통합계약이 적용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며. 모기관은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 지급과 관련 매월 분할 지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모기관은 자회사의 전월 실적에 대하여 기성검사 14일, 대가지급에 5일 등 총 19일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단순노무종사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무비 원가를 설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전자전기설비정비원과 기계장치정비원은 전분기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용역가격을 산출하고 있어 이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한편, 용역비 산출 기준이 되는 직종별 기준인원에 있어 전기전자설비정비원과 단순

노무종사원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모두 일부 구간 사업 및 업무가 타 교통공사로 이관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2016년도에 외부 기관을 통해 실시한 적정인원과 과업범위 분석을 포함한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점에 있어 대내외 여건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위탁계약 원가설계 시 단순노무종사원과 그 외 종사원으로 구분하여 노임단가를 산정하고 있는바, 단순노무종사원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그 외 종사원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단순노무시중노임을 상회하는 반면 다른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할 수 있으므로,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모기관의 노임단가 산정방법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예정가격 작성 이후 시중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노무비 계약금액은 이를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회사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연중 계약변경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자회사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 직종 종사자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이상 시중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적용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공표와 적용 시기 관련, 일부 혼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중노임단가를 한 시기 늦춰 노임단가에 적용함에 따라 노임단가가 실제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할 수 있으므로 시중노임단가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2021년 기준 99.5%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다. 모기관이 종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전년도 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 이후에 오히려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사업영역과 직종이 다른 5개의 자회사가 있으며, 자회사 대부분이 복수노동조합 체제인 상황에 있고, 평가대상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만을 대상으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모·자회사 경영회의 및 합동워크숍, 노사 대표 참석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등 소통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경영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합리적 노사공동협의회 모델 논의 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모기관은 월1회 모기관과 자회사 경영진이 참여하는 모·자회사 경영회의체를 운영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21년 모·자회사 노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합동워크샵을 개최하는 하는 등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과 자회사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모·자회사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통 및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자회사 노사문제로 모기관을 상대로 한 항의 및

집단농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는 조항, 모기관의 자회사 종업원의 복무와 관련된 금지사항을 추가하거나 이를 계약의 해지사유로 포함한 조항, 발주부서의 명예훼손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모기관의 일방적,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자회사의 업무위탁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이견이 존재할 경우 자회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 마련하는 등 개선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종업원의 품위유지 의무조항을 성실의무조항으로 변경하였고, 자회사의 부적격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자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였다.

- 또한, 모기관은 매년 7월~10월 자회사와 위·수탁계약 추진 프로세스를 공유하여 계약 내용의 사전협의, 계약 변경사항에 대해 상호 합의를 하도록 한 점, '부당계약 체크리스트'작성을 의무화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은 모기관과 자회사 간 부당계약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서를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2조 원칙),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4조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제5조 전문성 강화) 등 경영협약 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의 주요항목, 그 외 제3조의 1항, 3항, 제4조의 2항, 3항, 4항, 제5조의 1항, 2항 등 다수에서 “협력한다.”, “노력한다.”, “검토한다”, “지원할 수 있다” 등 실행력이 낮은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어 사안별 검토 후 좀 더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노사공동협의회를 경영협약서에 명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그에 따라 “향후 계약 체결 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모기관의 재정 적자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가년도에는 일반관리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9%를 유지하고 이윤비율은 전년도 6.5%에서 7.5%로 인상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율 9%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며 지방계약법 상 최대한도(9%)를 충족하고 있다. 이윤비율 7.5%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수준을 상회하나 지방계약법 상 최대한도(1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명절상여금 연간 729천원, 복지포인트 1,500천원(노사 합의로 업무보전수당으로 전환), 식비 월 90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교통비 월 100천원, 자녀 학자금 보조, 건강검진비 지원 및 단체보험 가입. 휴양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공무직 기준을 초과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점, 식비 및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기타 복리후생 항목을 지급하고 있는 점,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명시하여 지급 안정성을 보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식비 및 명절 상여금 지급액이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적자 지속으로 최근 20년간 추가 출연이 되지 않고 있어 모기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회사 사우회를 통해 기금을 적립하고 직원복리증진 및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가 모기관 인재개발원의 사이버교육과정(e-러닝) 이수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노사담당자 교육, 워크숍을 실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기술전문과정 교육 이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도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커리어 경로개발 관련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구성원들의 참여율과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프로그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지급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차별 없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자회사 자체 정보망 역시 차별 없이 이용하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서류평가 및 면접위원은 외부위원을 50%로 하며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 등 종합평정을 실시하며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근무성적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 신청 등 이의절차를 시행하는 등 실적이 있다. 또한, 2021년 12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지침(안)」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는 등이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CEO 선발을 진행하여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자회사에 대하여 위탁계약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지원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여 별도 예산편성 및 지원이 불가하다. 그밖에 모기관은 매년 자회사의 보수규정과 노사 임단협 결과 등을 반영한 인건비 예산을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인건시 예산편성 시 임금인상률, 성과급 지급률 등은 모회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회사와 위탁계약 설계시 시중노임단가, 서울시 생활임금, 적정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에 지원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검토 결과, 향후 정부의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모기관의 타 자회사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시 자회사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 경영투명화, 사규 및 관계법령, 그리고 감사활동 게시판에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투명화 게시판에는 업무추진비만 감사활동 게시판에는 감사결과만 공시되어 있는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에 더해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모회사 자회사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감사결과 정보공개 지표도입으로 경영공시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전남개발공사

총 평

○ 전남개발공사는 자회사의 설립 및 출자의 근거를 지방공기업법과 모기관 정관에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자회사의 사무실 및 직원휴게실을 이관한 점,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여 유지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 자회사의 임금기준표를 기준으로 독립예산제 및 실비정산제를 운영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0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19년 대비 자본이 감소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서 분기별로 기성검사 5일 등 총 10일이 소요되고 있는 점,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기반을 조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년도에 지적받은 부당·불공정 조항도 일부 개선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되며, 위탁경영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나 내용상 검토가 필요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5.0%, 이윤비율은 5.0%로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명절상여금 1,780천원 신설, 식비 13만원/월 인상지급 등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며,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설과 추석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향후 근로자의 날에도 확대할 예정이라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고 복지포인트 지급 등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회사 합동교육을 진행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등을 통해 CEO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자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기 설립되어 있던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를 보면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모기관 정관 제4조를 보면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출자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의 사업(공사 소유시설물에 대한 경비, 청소, 시설관리 업무를 포함한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설립한 출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령과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0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19년 대비 자본이 감소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위탁경영 기본협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수탁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각 사업장별 시설, 사무실 및 직원 휴게실 이관(전남개발빌딩 사업장 이용시설, F1경주장 사업장 이용시설, KIC태양광 사업장 이용시설)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적자사업 이관, 흑자사업 회수 등 부당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경영 기본협약서를 개정(2021.09.30)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여 유지하고 있는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2011년) 당시부터 매년 자회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승인된 예산에 따른 소요 예산의 100%를 분기 단위로 선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모범사례로 인정된다. 한편, 계약 대금 지급에 있어서 분기별로 기성검사 5일, 대가지급 5일 등 총 10일이 소요되므로,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용역비 산출 시 자회사의 임금기준표에 기준하여 계약단가를 책정하고 있으나, 제출한 보고서 상의 자료로는 노무비가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대신하여 다른 추가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자회사 근로자에 지급되는 시급 수준에 있어 경비와 미화직종의 경우 시간외수당과 당직수당을 제외하면, 시중노임단가 산정 시 포함되는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합한 금액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모기관은 향후 용역비 산정 시 노무비가 시중노임단가 충족하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무비 산정 관련, 자회사의 임금기준표를 기준으로 독립 예산제 및 실비 정산제를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자회사의 임금기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은 시중노임단가 100%에 가깝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시중노임단가 100% 반영 여부 및 시중노임단가 변경할 때 계약금액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자회사 임금기준표에 따른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는 경우를 대비해,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원가계산가격 및 예정가격의 산정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저임금 직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하거나, 최종적으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1년 6월 모회사 복지기금의 자회사 지원 확대 및 자회사 복지시스템 구축 지원, 모·자회사 흑·적자 사업의 부당이관 금지 명문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추진 노력,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도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회사 근로자 지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모기관은 노사공동협의회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추진계획보고」를 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 하였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 중 위탁계약서 등에서 순회관리인의 배치 및 교체에 대해 자회사가 모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모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회사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 모기관이 시간외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조항, 자회사가 사업 수행 능력이 없다고 모기관이 판단한 경우 및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 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더라도 결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 감액을 예정하는 조항 등은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개선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 중 모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과업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조항,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 기존 용역계약 관행을 답습하여 작업 일보의 제출을 강제하는 조항 등은 본보고서에서 개선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21년에 체결된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관리 위수탁 계약서에서 자회사 노동자가 근무장소를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모기관에 구두보고 및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어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복무규율을 명시한 점, 시간외 근로를 모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강제하도록 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동 위탁계약서에서 자회사 노동자의 인사기록을 과업 착수와 동시에 모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점, 작업 일보 등 업무보고서를 모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점, F1경주장 위수탁 계약서 제15조에서 자회사 노동자가 근무장소를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모기관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 점, 제21조에서 일일·주간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모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점, 제22조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모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점 등은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모기관과 자회사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거나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6월 시설관리 위탁경영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2021년 9월 이를 일부 개정하여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시설관리 위탁경영 기본협약서는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을 명기하고 있으며, 안정적 성장을 위한 모회사의 지원, 자회사 소속지원 처우개선 등 경영협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관리 위탁경영 기본협약서의 내용은 경영협약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모회사의 지원,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구체성이 낮고, 공동협의회 등 공동이익 증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부족 문제는 지난해에도 지적되었지만, 2021년 체결된 기본협약서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별도의 경영협약서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와의 계약 시 이윤율은 5%(국가계약법상 최대 10%)로 책정하여 계약하고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일반관리비(국가계약법상 최대 9%)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웠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았는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년도에 일반관리비는 5%(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이윤비율은 3%에서 평가년도에 5%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이윤비율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정확한 자료 제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종 제출 자료에 따를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비율을 인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윤비율 5%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0%)에는 미치지 못하고, 일반관리비 비율 5%도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현장인력 및 자회사 행정지원 인력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비 등을 포함해 자회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기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고 예산의 5%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탁수수료는 목적외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실제 자회사의 사용예산에 따라 금액이 유동적이라 안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이윤과 관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연간 명절상여금 1,780천원을 평가년도에 신설하였고 식비는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타 복리후생 항목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명절상여금 신설, 식비 인상, 기타 복리후생 항목 지급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정부의 공무직 복리후생 지급기준으로 제시된 복지 포인트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일부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명시한 규정이 부재하여 지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18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 8,200천원(1인당 20만원)을 설, 추석때 지원하고 2022년에는 설, 추석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에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현재 자회사 순이익 규모가 적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등을 포함한 자회사 근로자 지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은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 이사회 의결, 모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다양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외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무 관계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고객만족도 향상 및 혁신역량도모 관련 특강' 등 2021년 자회사 합동교육 진행하며, 2022년 자회사 근로자 교육훈련 및 커리어 경로개발 지원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커리어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더욱 내실 있고 발전적인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일비, 숙박료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 내규를 마련하고 자회사 근로자가 차별 없이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하고 자회사 자체 정보망을 차별 없이 사용하며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고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을 포함하는 채용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포상제도를 시행하며 보수규정에 명시된 경력환산표에 따라 초임을 책정하고 근무성적 평정을 시행하는 등의 실적이 있다. 또한, 2021년 6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 또는 진술 절차를 규정에 명문화하고 다층적 평가, 근무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운영 등 근무평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임원의 구성 비율 중 외부위원의 비율이 내부위원 비율의 5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며,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 대표이사를 선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에서 예산을 수립하면 모기관에서 수립한 예산을 분기별로 先 지급하고 後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시 임금지급 기준을 통일화했고 식대보조비 상향 지급, 상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자격수당 신설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상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모기관의 경우 '21.6월에 정관 개정 및 노동자이사후보 선거관리규칙 제정을 통해 전라남도 최초 노동이사제 도입을 완료했지만,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조례에 따르면 정원 100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 또는 자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항목을 확정하고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자회사 홈페이지가 아직 구축되지 못한 채 페이스북을 통해 공고사항만 게시되는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은 지난 평가 이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에 더해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IBK저축은행

총 평

○ IBK저축은행은 자회사의 설립 및 출자 근거를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에 두고 있으나, 위탁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자회사에 자본금 30억 원을 100% 출자한 점, 2019년 3개 계약을 2020년 1개 계약으로 통합하여 유지한 점,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 지적받은 부당·불공정조항을 개선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과업지시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5.0%, 이윤비율은 1.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4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고 복리후생 항목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자회사 근로자 교육훈련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전문성 있는 CEO 선발을 위해 이사회, 주주총회 등 제반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에 대해 2019년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였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0항을 보면, '기타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자회사 설립을 승인한 것이므로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 다만,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모기관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한편, 모기관과 자회사는 모두 중소기업은행이 설립한 자회사로서 모기관과 자회사 간에는 지배구조상 모·자회사 관계가 성립되지 않지만, 모기관이 해당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모기관 정관에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모기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자회사 설립, 출연,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30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다소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 등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지배구조상 모·자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모기관이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연하지 않았으나, 모기관은 청소용역직을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하였으므로, 위탁관계가 성립하고, 설비 이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자회사 설립 초기 자회사 본사를 무상 지원한 점은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장비 이관 관련 구체적 실적 기록은 확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모기관은 향후 필요한 시설·장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2019년 3개 계약을 2020년 1개 계약으로 통합하여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형식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의 지급시기를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계약서상으로는 매 익월초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 지급은 해당월말 이내로 단축하여 지급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모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있어 본보고서와 추가 제출 자료 간에 내용이 상이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본 보고서 상의 계약 노임은 연차수당, 명절상여금까지 포함하고 있어, 추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에 예정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미화직종의 노임단가는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 부분은 전년도 지적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모기관은 용역비 산출 시에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합한 노무비 단가가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를 예정가격 산정에 100% 적용하지 않았고, 시중노임단가 변경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0년도 및 2021년도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차액분을 지급하는 등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노임단가 관련,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수당을 합산하여 비교한 것이 확인되는 바,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모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는 건물관리사업, 경비사업, 케이터링 사업, 사무보조 등 직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기관은 미화 직종에 한하여 시중 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그 외 직종의 경우 노임단가 산정 방법 또는 시중노임단가 변경 반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 직종 별로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저임금 직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에 모기관의 노동조합 간부의 참관 하에 자회사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가 선출되도록 노력하였고, 자회사 노사협의회 설치가 완료되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모기관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위수탁계약서에서 '모기관이 용역제공 상태를 점검한 결과 불량한 부분이 있어 자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요구한 사항 중 동일한 항목에 대해 불량한 상태가 계속해서 1년 단위 계약기간 내 5회 이상 발생할 때'를 계약의 해지사유로 명시한 내용을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로 개선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위수탁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제출되지 않아 과업지시서 내의 부당·불공정 조항의 개선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모기관은 평가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모기관과 자회사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거나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1년 12월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2조),

노동자 처우개선(제3조),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4조) 등의 조항이 제시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해당 협약서의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고 선언적이며 원칙적인 수준으로 명기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모기관의 자회사 지원,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 공동이익증진 방안과 관련하여 시설이관, 시중 노임단가 적용, 복리후생, 교육훈련, 공동협의회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명기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 체결 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평가년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던 바, 모기관의 개선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더라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윤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더라도 평균에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모기관과 자회사인 IBK서비스가 서로 계열사 관계이고 지배구조상 모·자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모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IBK서비스를 통해 실행된 이상 다른 모기관과 같이 행정인력을 지원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보장하는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연간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월 14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복리후생 항목으로 체력단련비 200천원, 교육훈련비 60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평가년도에는 근로자의 날 및 가정의 달 격려품 각 200천원, 명절 선물 50천원 등을 추가 지급하였다.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을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급하고 있는 점, 추가 복리후생 항목을 지급 또는 신설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이 자회사 규정으로 명시되어 지급 안정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날 격려품 지급비, 한마음행사비, 독감 예방접종비의 경우 모기관과 동일한 규모로 지원하는 등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최소화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근로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을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등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학위취득과 자격증 취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커리어 경로개발 관련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구성원들의 참여율과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다음 프로그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출장비, 유류비 등 실비를 지급하고 모기관의 신분증과 차이가 없도록 자회사의 신분증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직무 특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이 명시한 바에 따라 포상제도, 징계제도, 근무평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취업규칙 등 관련 근거가 일체 제출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가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였는지도 확인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문성 있는 CEO 선발을 위한 이사회, 주주총회 등 제반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임원선발관련 규정 제정 시 공개된 경로를 통해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위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반영된 규정을 제정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실제 모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자회사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자회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보고하기 어렵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 또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노동이사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기관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해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홈페이지 확인 결과, 커뮤니티내 입찰 및 공시 게시판에 일부 경영정보가 공시되어 있으나, 일반현황과 임직원 현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약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이라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 게시판을 독립적으로 마련한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KOSPO영남파워㈜

총 평

○ KOSPO영남파워는 한국남부발전㈜가 설립한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을 하였으나, 모기관 정관에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모기관이 업무용 비품 등 무상지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한 점,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을 완료한 점,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예정가격의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여 시중노임단가의 반영 비율을 높인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 지적된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영협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7.0%, 이윤비율은 10%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6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기본급 30%, 식비 130천원/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향후 경비 분야의 일반관리비 비율(현행 5.0%)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자회사 홈페이지에 일반현황, 임직원 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제도 도입,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및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에 대해 2019년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였다. 모기관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자회사는 모두 한국남부발전(주)이 설립한 자회사로서 모기관과 자회사 간에는 지배구조상 모·자회사관계가 성립되지 않지만, 모기관이 해당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모기관 정관에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용역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자회사를 신설하지 않고 한국남부발전이 100%지분을 갖는 자회사(KOSPO서비스(주))로 전환하였으며, 전환이후 현재까지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연하지 않았다. 이처럼 다른 계열사로 정규직 전환 방식을 택한 경우 반드시 그 자회사의 100%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모기관으로서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사회 및 경영 참여 등 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설비 이관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에 의거하여 설비 비품 등을 이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업무용 비품 등 무상지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이용 지원, 근로자 편의시설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이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자회사 간 업무위탁 관계가 성립하므로, 모기관이 자회사에 대해 모기관으로서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 모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전제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용역업무별로 2건으로 시행하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2021.2.)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합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평균 12일)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향후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미화직종 중노무원은 한국남부발전 용역설계 기준에 따라 노무비 원가가 산정되고, 그 외 경비팀장은 시중노임단가 중에서 작업반장 단가를 경비대원·미화직종 경노무원은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원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원가를 100%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취지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산정되도록 용역비 산출 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변경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 상·하반기 모두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예정가격의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여 시중노임단가의 반영 비율을 높인 것이 확인되는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모든 직종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모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기관이 종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이 낙찰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에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모기관은 산출된 원가계산가격을 100%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지배구조상 모기관과 자회사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와 관련된 조치사항이나 실적 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관계회사라는 특성상 자체적으로 공동회의체를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남부발전과의 공동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청소용역의 범위에 기타 쾌적한 근무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환경미화를 포함한 점, 불시 또는 상시 점검 시 1년 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나 계약조건을 1년 간 3회 이상 미이행한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발주자의 경영방침 등 불명료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로 모기관이 제소되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용역대금을 상계하거나 지급보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으나 개선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모기관 시설경계 일반경비용역 설계서 제5조 제1항에서 자회사가 모기관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 이행하도록 한 점과 제9조에서 용역의 완성과 관계없이 결원 발생 시 대금을 감액하도록 한 점은 용역계약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고, 제19조에서 자회사와 자회사 직원 행위 등에 대한 해지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청소위탁관리용역 설계서, Ⅱ.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서 쓰레기 처리원은 해당 분야 적격자 1인자로서 신체 건강한 자로 고정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장애인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과 함께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나, 평가대상기간 중에 자회사와 경영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전년도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못하였다.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주요 설비의 자회사 이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모·자회사 간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포함하여 경영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 수준으로 체결하였고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받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6.5%(미화, 경비 평균)에서 평가년도 7%, 이윤비율은 전년도 9.75%에서 평가년도 10%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정확한 자료 제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종 제출 자료에 따를 경우, 경영악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을 인상한 모기관의 개선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7%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에는 미치지 못하고, 이윤비율 10%는 평가대상 모기관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이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다만, 향후 경비 분야의 일반관리비(현행 5%)를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모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 항목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자회사 보수규정에 따르면, 인당 기준으로 연간 복지포인트 600천원, 명절상여금 1,000천원+기본급 30%, 교통비 월 100천원, 식비 월 130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기여도는 파악하기 어렵다. 모기관과 자회사는 서로 계열사 관계이고 지배구조상 모·자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모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자회사를 통해 실행된 이상, 다른 모기관과 동일하게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방안의 모색과 함께,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자회사의 안정적 기반마련을 위한 부분이기는 하나 휴게장소에 냉장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가 차별 없이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고 채용전형시 면접위원이 1/3을 외부위원으로 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 등 평정을 실시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관련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는데, 자회사의 여건 및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포상제도, 경력인정제도 등에 대해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 시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자회사의 공정한 CEO 선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의 요청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실적이 없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에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2021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번 실적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 또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노동이사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확정하고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홈페이지 확인 결과, 소통광장 내 경영공시 게시판에 일부 경영정보가 공시되어 있으나, 일반현황, 임직원 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정보만 공시되어 있어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 게시판을 독립적으로 마련한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 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0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벡스코

총 평

○ 벡스코는 2021.12.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모기관이 자회사 사무실과 휴게실 및 부속실 등 무상 제공(지속)을 추진한 점,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는 점, 종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은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3개 분야별 통합계약을 유지한 점, 시설·주차직종은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원가를 산정하였으나 미화직종은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원가를 책정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 지적된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이나, 노사공동협의회나 경영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4.2%, 이윤비율은 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인당 복리후생 항목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품권 100천원, 식비 8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보장하고 복리후생 항목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교육훈련 구성시 내부 직무교육 방법과 내용을 부문별로 검토하여 강화하는 등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제도 도입,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및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기존 정관에 자회사 설립과 업무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1.12.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사가 설립하는 법인에 출자하고, 해당사업을 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회사 정관에 위탁사업(서비스) 내용의 구체적 명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5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부채비율 축소 등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모기관은 모·자회사 간 기반시설 위탁관리 계약에 의거 필수 설비 및 장비 이관을 추진하였으며, 실제로 자회사 사무실, 휴게실 및 부속실 등 무상 제공(지속), 모기관 회의실 무상 제공(신청시), 건식/습식 청소차, 마루광택기, 카페트건조기 등 필수설비 이관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

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3개 분야별 통합계약을 유지(기반시설 위탁관리, 세팅용역, 카페B 위탁)하고 있는데, 하나의 자회사에 대해 복수의 계약을 체결할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자회사 직원 급여일(매월 10일)을 감안하여 전월말에 위탁비를 선지급하고 있는 노력은 인정되나,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3일 이내, 대가지급 3일 이내로 운영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용역비 산출 시 시설·주차직종은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원가를 산정하고, 미화직종은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원가가 책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모기관과 자회사는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 기관으로, 용역비 원가 산출 시 시중노임단가가 생활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모기관은 계약원가를 상향 조정함에 있어 생활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이 용역비 산출 시 현장감독자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은 자회사 안정적·독립적 운영 여건의 확립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위탁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노무비 중 상여금 항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자회사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어 해당 상여금이 내규 상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별도 계상하고 퇴직충당금 산정 기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자회사 과업범위와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무비 산정 관련 부산시 생활임금을 기본급 중심으로 반영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는바,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회사 근로자 노임단가는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100%에 가깝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부산시 생활임금은 단일한 기준으로서, 직종별 시중노임단가와 비교할 때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노임단가 적정성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부산시 생활임금을 제시하기보다는, 직종 별로 해당 직종의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종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저임금 직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하거나,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모회사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경영악화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어려움으로 모·자회사의 노사공동협의회 설치를 검토하기 어려웠고, 2022년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자회사의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검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 다만, 모·자회사의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 중 모기관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확인 점검한 결과에 따라 시정,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 자회사의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삭제·수정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전년도 지적사항 중 업무에 대한 반복된 재수행 지시 규정,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을 모기관이 필요할 경우 변경하여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 모기관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회사 노동자의 복무규율을 부과할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은 2022년 체결된 위탁계약서과 과업수행요청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 모기관과 자회사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거나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과 함께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나, 평가대상기간 중에 자회사와 경영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전년도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주요 설비의 자회사 이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모·자회사 간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포함하여 경영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와 계약시 일반관리비를 4.2%, 이윤율을 5%로 체결하였다. 이는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및 이윤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 체결 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4.2%에서 평가년도 4.2%로 동일하고 이윤비율도 전년도 0%에서 평가년도 0%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정확한 자료 제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종 제출 자료에 따를 경우, 경영 악화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모기관이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일반관리비 4.2%는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에 미치지 못하고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이윤율 0%는 평가대상 모기관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와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율와 이윤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연간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품권 100천원, 식비 월 8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복리후생 항목으로 교통비 월 50천원, 연간 200천원의 건강검진비, 창립기념일 기념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포인트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 기타 복리후생 항목을 지급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명절상여금과 식비가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규정화하여 지급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기타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금전적·비금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 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 구성 시 내부 직무교육 방법과 내용은 부문별로 검토하여 강화시키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 교육은 적극 지원하고, 고객서비스 관련 교육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지급요령을 마련하고 자회사 자체 정보망을 차별 없이 사용하고 다른 직군과 구분하지 않고 통일적 호칭을 사용하며 상벌관리요령에 따라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연1회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급여 책정 등 인사관리에 우선적으로 활용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의 여건 및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제도, 경력인정제도, 다층적 평가, 근무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운영 등 근무평정제도 방안 개선 등에 대해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비정규직 채용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아직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았지만, 향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모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CEO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CEO 선발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직급별 급여체계를 정립하고 직종별·직책별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원하고 모기관과 자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명시된 용역료 범위 내에서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모기관은 제3섹터 형태의 주식회사로 민간주주(현대건설컨소시움)가 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고, 자회사는 모기관이 100% 출자한 회사이므로 모기관이 도입하지 않고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자회사는 설립 당시 1인의 이사를 두는 등 이사회를 두지 않기로 한 상황이어서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노력과 개선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거나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홈페이지 확인 결과, 알림마당에 채용 관련 공지 및 안내만 게시되었을 뿐 자회사의 주요 경영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자회사의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 게시판을 독립적으로 마련한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 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울산테크노파크

총 평

○ 울산테크노파크는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모기관 정관을 개정하여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모기관이 승강기 등 주요 설비의 유지관리보수 비용을 모기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1억 원을 100% 출자하였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년 예산집행방식으로 자회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 하반기 별도 계약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한 점, 경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부당·불공정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계약서 내에 휴일·야간 작업에 대해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토가 필요한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9.0%로 전년 대비 대폭 상승, 이윤비율은 9%로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에 근접하고,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500천원, 식비 130천원/월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지포인트와 식비를 지급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명절상여금 신설 등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복리후생 항목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개선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자회사와 협의를 통해 교육훈련제도 실효성 증대를 위한 인력 및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며,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며, 경영공시 게시판을 별도로 마련하고 공시항목을 확대하여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9년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모기관 정관을 개정하여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법인의 주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두며, 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거쳐 분소,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 등을 설치'할 수 있고, '법인은 법인의 출자회사와 위수탁협약(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은 자회사 설립 및 업무 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은 법령 또는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1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자본금 5천만 원을 증자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3.0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고,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20년 기준) 역시 50%정도이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필수 설비와 장비를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에 포괄적으로 명시

하고 있고, 위수탁협약서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실제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물품 지원(총 20종 156개 물품), 단지내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사무집기 지원, 청소도구 및 비품 구매 지원 등을 추진한 점과 전기, 기계, 소방, 승강기 등 주요 설비의 유지관리보수 비용을 모기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또한, 자회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임대관리 시스템 구축에 모기관 예산을 지원하고 자회사 사무실 확장 및 사무환경 개선을 지원한 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자회사간 위수탁협약서를 개정하여 적자사업 이관, 흑자사업 회수 등 부당한 관행을 방지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0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

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기존의 미화, 시설관리 용역에 임대관리, 행정지원, 공사감독, 공동직장 어린이집, 기타 위탁업무를 포함하여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계약대금 지급방식을 월별 지급에서 분기별 지급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21.7.)한 노력이 인정된다. 모기관은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7일 이내, 대금지급 7일 이내로 운영하였으나 이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모기관은 예산집행방식으로 기성검사를 생략함으로써 총 소요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한 점이 인정되나. 앞으로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직종의 노무비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지 여부는 본보고서와 추가제출 자료 간에 상이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취지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산정되도록 용역비 산출 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에 더하여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노임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수준에서 자회사 노임단가를 산정하였다.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 반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모기관은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한편, 모기관은 매년 예산집행방식으로 자회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 하반기 별도 계약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 100%를 하회하고 있는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모기관은 시중노임단가 100%를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중 시중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중노임단가 반영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기관이 종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전년도 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모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저임금 직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하거나,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울산테크노파크-(주)울산테크노파크서브원 경영협력 내에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모기관은 2021년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의장 및 간사선출, 매년 1회 정기위원회 및 모·자회사 공동현안 발생시 임시협의회를 개최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방법 및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등 모기관의 활동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기회의의 횟수가 적정한지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자회사 직원의 채용 또는 결원 보충의 경우 모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의 변경, 모기관의 당직근무자가 자회사에 대해 업무상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의 삭제, 모기관이 재청소를 요구할 때 시간, 횟수와 상관없이 재청소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수정하였다. 또한, 모기관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 및 보안사항을 신설하고, 적정관리비 및 이윤보장에서 모기관 사업의 부당한 이관이나 환수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선노력을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자회사 직원의 복무를 모기관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취지의 조항의 개선 여부는 본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위수탁 협약서에서 모기관이 자의적으로 자회사의 위탁업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여전히 존재하며, 변경한 재청소 실시 관련 조항도 여전히 모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자회사는 모기관의 필요에 따른 휴일·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부당한 업무지시와 자회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의 업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교체요구 시 자회사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모기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없도록 정하는 규정은 자회사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20년 8월 모·자회사간 경영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경영협약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조 목적),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제2조 상호협력 제2항, 제3항), 노동자 처우개선(제2조 상호협력 제3항), 모·자회사 공동이익증진(제2조 상호협력 제4항) 등 경영협약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의 경우 시설이관, 교육훈련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의 1, 2, 3, 4항이 모두 “노력한다”로 명기되어 있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와의 계약 시 일반관리비를 5%로 체결하였으며 이윤율을 10%로 체결하였다. 이는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 보장을 권고하는 정부정책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으로 일반관리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따라 “향후 계약 체결 시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그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5%에서 평가년도 9%로 인상하였고 이윤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를 유지하였던 바, 모기관이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일반관리비 9%, 이윤율 9%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국가계약법 상 최대한도(일반관리비 9%, 이윤율 10%)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관리비와 이윤율을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연간 500천원, 식비 월 13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복리후생 항목으로 연간 250천원의 건강검진비, 단체상해보험, 모기관과 협약 중이 휴양숙박시설 이용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를 인상한 점(300천원에서 500천원), 그에 따라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복지포인트와 식비를 지급하게 된 점, 추가 복리후생 항목을 지급하는 점, 모기관의 휴양숙박시설 자회사 노동자들과 공유하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명시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을 명시한 규정이 부재하여 지급 안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임시회의를 통해 논의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우선적으로 자회사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노동부 인가를 통해 설립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직원 근무복 구입, 명절선물구입 등을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기관의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있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자회사와 협의를 통해 인력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 전문자격증 교육훈련, 리더십 역량교육 등 자회사 근로자의 전문적 역량 증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 제도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자회사 근로자의 부족하거나 필요한 커리어 파악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세우고 시행한 것 역시 모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칙을 마련하고 정보망 접근에 차별이 없고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며 채용전형시 외부위원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포상제도를 운영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을 시행한 실적 등이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직 채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칙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시행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가 편의·복지시설 이용에 차별적 내용이 없고 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하며 근무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편의·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경력인정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연봉에 대한 이의신청과 근무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의 목적과 취지가 좀 더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CEO 선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임원추천위원의 구성 등에 관하여 명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19년 4월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안에 관한 용역을 시행하여 자회사 조직구조, 인력규모 설계 및 인력배치, 직무별 업무량 및 임금표준화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고(예산 43,000천원) 합리적인 임금체계 및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보전수당 등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20년 8월 임시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의결하였고 '20년 12월 자회사 이사회부터 근로자측 대표가 참관하였다. 이후 1년 동안 총 네 차례의 이사회에 근로자대표가 참관하는 등 자회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방식과 의결권, 발언권 관련한 구체적 권한 등을 명시한 운영지침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재조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경영공시 게시판을 별도로 마련하고 공시항목을 확대하여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게시된 정보가 경영목표, 조직현황, 재무현황(재무상태표, 출자금 현황, 손익계산서 등), 정원현황에만 국한되어 있어 자회사의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 제고를 위해 모기관의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자회사 홈페이지 경영정보 공시 게시판에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공시항목 확대 및 발굴 계획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제주테크노파크

총 평

○ 제주테크노파크는 모기관 정관에서 자회사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위탁 및 위탁사업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자회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이노비즈카페 설비 무상임대 등을 추진한 점,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인상률 적용 또는 예정가격 산정 없이 자회사가 제시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점, 2021년 상·하반기 단순노무시중노임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5천만 원을 100% 출자하였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지속적인 당기 순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인 점,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3개 분야별 통합계약을 유지한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선지급으로 운영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의 상시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부당·불공정 조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0%, 이윤비율은 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인당 복리후생은 기본급의 90%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 식비 130천원/월을 지급하고 있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복지포인트 지급 등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복리후생 항목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모기관 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공유하는 등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제도 도입,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및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관 제3조에서 '법인의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분소,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정관의 해당 조항만으로 자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 업무위탁의 근거와 위탁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 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회사 정관에 위탁사업(서비스) 내용의 구체적 명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5천만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3.0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 특히, 지속적인 당기 순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부채비율 축소 등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설비 이관은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수탁협약서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실제로 자회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이노비즈카페 설비 무상 임대, 사업다각화에 따른 자회사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 지원방안 검토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위탁계약의 형식에 있어 3개 분야별 통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분기별 선지급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선지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모기관이 자회사의 급여지급일이 매월 말일임을 감안하여 매월 20일에서 매월 15일 청구로 변경한 점이 인정되고,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를 생략하고 공문접수 후 2일 이내 지급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향후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2021년 청소 및 건물관리 등의 용역계약 체결 시 별도의 인상률 적용 또는 예정가격 산정 없이 자회사가 제시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회사가 제출한 견적 내용에 따르면 미화 직종의 경우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합한 금액은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모기관의 예정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미화 외 건물 관리 직종에 있어서 계약 체결한 노무비 수준을 확인할 수 없음을 밝힌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 시 시중노임단가 변경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을 위한 조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모기관은 2019년도 최초 위탁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노임단가를 산정한 이후 2020년도 계약 시 전년 대비 2.9% 인상(최저임금 인상률)하였고, 2021년도 현재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단순노무시중노임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한 점이 인정된다.

- 모기관은 직종 별 시중노임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하고, 노임단가가 변경된 시중노임단가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액분을 보전하는 등 자회사 노임단가를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산정하기 위해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 전환 전후의 낙찰률 또는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저임금 직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현재 근로자 수가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 사항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다만,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는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상시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통해 자회사 운영과 관련된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모·자회사의 경영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모기관과 자회사의 공정한 계약체결 지표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주요 시정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모기관의 계획변경, 방침변경 등의 경우 자회사와의 협의 절차 없이 당연히 과업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 자회사가 모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을 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조항, 과업지시서에 자회사가 의무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 등이 있었으나, 제출한 자료에서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모기관이 자회사에 대해 횟수나 기간에 불구하고 재작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 자회사 종업원의 청사 내 음주 및 고성방가 행위 등 복무규율을 열거하고 있는 점,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자회사 노동자의 구체적인 근태사항(연 5회 이상 무단이탈)이 명시되어 있는 점은 자회사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노동쟁의가 있을 경우 모기관에 즉시 통보

하도록 정한 점은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한 제약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과 함께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나, 평가대상기간 중에 자회사와 경영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전년도 평가에서 동일하게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주요 설비의 자회사 이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모·자회사 간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포함하여 경영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0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에 “자회사와의 계약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혀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받고 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았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일반관리비율 0%, 이윤비율 0%를 평가년도에도 동일하게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지적사항과 무관하게, 모기관이 일반관리비 및 이윤비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0%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모두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이전 설립된 자회사는 2018년 당시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던 바, 모기관은 자회사가 재정적 안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관리비와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율과 이윤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기본급의 90%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과 식비 월 130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추가 복리후생 항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명절상여금과 식비가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점, 내부 규정상 식대 등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주요 핵심사업 운영인력 감축 및 자구책 시행 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0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에게 모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공유하여 교육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교육훈련 프로그램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가 차별 없이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등을 이용하고 자회사 자체 정보망을 차별 없이 사용하고 직무의 특성 등이 반영된 호칭을 사용하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인사위원회 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신규 채용시 경력을 인정하여 초임을 결정하는 방식의 경력인정제도를 시행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규정은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려워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자회사의 여건과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채용제도, 근무평정제도 등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감축 및 혁신대책 추진 중이어서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시행에 난항이 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CEO 선발을 위한 임원추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영이 정상화되면 모기관의 임원추천제도를 준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CEO 선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CEO 선발을 위한 임원추천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정한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2월 시행한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 협의, 컨설팅, TF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자회사의 이사회가 현재 대표이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향후 법령에서 정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행시 연동하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한 도입 노력이나 구체적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하여 공시 항목을 정하여 공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가 있었다. 홈페이지(www.jejuers.com) 확인 결과, 경영공시 게시판이 구축되었으나 공시된 정보가 전혀 없어 자회사의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에 더해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 공시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등급”으로 평가한다.

킨텍스

총 평

○ 킨텍스는 모기관 정관에서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업무위탁 및 위탁사업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모기관이 시설 개선에 대한 자회사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 점, 다양한 용역사업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한 점,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회사에 자본금 3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으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월별 선지급 방식을 유지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공동협의회를 합의하여 운영하는 점,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약서 내에 자회사의 안전사고를 모두 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정한 조항 등은 개선이 필요하고 경영협약도 조속히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일반관리비 비율은 6.0%로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이윤 비율은 9.11%로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에 근접한 수준이며, 인당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400천원, 명절상여금 800천원, 식비 140천원/원으로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등 실적이 인정된다. 복리후생 항목 및 지급기준을 규정화하여 지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등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자회사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하고, 모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자회사 대표이사를 선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1) 자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정관 제2조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주차관리, 안내사업, 보안, 환경미화, 시설물운영관리(건축·기계·방재·세팅·전기·통신 등)를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 및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기관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모기관의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 다만, 정관의 해당 조항만으로 자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모기관은 조속히 법령 또는 모기관과 자회사 정관에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시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의 지원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편, 모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에 자본금 3억 원을 100% 출자하고 있는 바, 모기관이 자회사에 100% 출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정원이 100~300인 미만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5.9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 보기 어렵고,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 역시 50%정도이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등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자회사로 필수 설비와 장비를 이관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직원 휴게 공간 및 비품(가구, 소파 등) 제공, 자회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시설 개선에 대한 자회사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자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장비 이관 관련 구체적 실적 기록은 확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모기관은 향후 필요한 시설·장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필수설비 이관·지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모기관이 주기적으로 자회사 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유권 이전 또는 유·무상 임대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의 확인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모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기관은 향후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사업 이관, 이윤배분 등에 있어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회사 이윤을 배당받거나 모기관의 적자사업 이관 및 자회사의 흑자사업 회수 등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기관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사업의 이관이나 흑자사업의 회수실적이 없으며, 모기관에 대한 배당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사업 이관 및 흑자사업 회수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예: 모·자회사간 경영협약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를 규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1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o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 관행의 개선

(1) 자회사와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은 위탁계약의 방식에

있어 자회사 출범 시부터 주차관리, 안내, 시설경비·보안, 청소·위생, 시설물 유지 등 다양한 용역사업을 단일통합계약으로 체결(2021.1)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앞으로도 단일통합계약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약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계약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에게 계약금 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기관이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월별 후지급 방식을 월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노력은 인정된다. 앞으로 모기관은 2022년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연 3회(1월, 4월, 7월) 또는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계약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검사 7일, 대가지급 7일 등 총 14일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5일 이내 기성검사 및 지급을 완료하는 등의 지급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지 않게 노임단가 산정 등 예정가격 산정,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기관은 용역비 산출 시 자회사의 연봉테이블에 기준하여 계약단가를 책정하고 경기도 생활임금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나, 제출한 보고서 상으로는 2021년 용역비 산출 시 기준이 되는 노무비가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다. 단지 직원급여지급요령 상의 임금테이블을 통해 예정가격이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모기관은 향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또한,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자 및 행정인력 노무비의 별도 계상 그리고 과업범위와 필요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 과업범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등 총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는 물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모기관은 2020.12.부터 2021.1. 까지 기간에 걸쳐 환경미화부문 및 시설·CS부문(보안, 세팅) 케이서비스 종사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데, 자회사 승급형 임금테이블을 통해 노임단가를 보면, 최하위 등급(7등급)의 최하위 수준(1단계)이 '21년 하반기 단순노임단가의 93% 이상이고, 최하위 등급(7등급)의 16단계 중 10단계부터는 경기도 생활임금을 상회한 것을 확인하였다. 환경미화직종의 경우 현재 책정되어 있는 직책수당, 면허수당을 합산하여 보면, 상·하반기 단순노임 단가를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산정하려는 모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승급형 임금테이블 하위등급을 살펴보면, 2021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의 100%를 하회하는 경우가 포함된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우 연중 계약변경을 실시하지 않게 되면, 시중노임단가는 인상되는 반면 자회사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대비 노임단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에 있음을 고려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계약에서 자회사 전환 이전의 관행적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기관이 종전의 관행적인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원가계산가격 및 예정가격의 산정근거, 원가계산가격의 적용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모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모기관은 저임금 직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2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3.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1) 모·자회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비정규직 직원 자회사 정규직전환을 위한 제5차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회의시 자회사 전환 이후 운영절차 등을 결정한 이후 공동협의기구 설치, 운영키로 하는 안건으로 상정하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합의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이후 모기관은 2022년 1월 이후 모기관 임직원, 자회사 임직원, 자회사 노조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등 모기관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시,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정당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출, 임기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규정 마련을 통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모·자회사 노사 공동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방안, 합의사항의 이행 및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모기관과 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2020년 12월 31일 시설용역사 노동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였으며, 기존 위탁사무인 주차관리, 안내에 시설·경비보안관리, 청소 및 건물위생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의 위탁사무를 추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위수탁계약서 내 사업비지급시기 변경,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방법을 명확하게 변경함으로써 자회사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주차분야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자회사의 기술원에 대한 점검 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를 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정한 것은 부당·불공정한 계약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모기관과 자회사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부당·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체계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3) 경영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개입 대신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 설립과 함께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나, 평가대상기간 중에 자회사와 경영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향후 모기관은 자회사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주요 설비의 자회사 이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모·자회사 간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포함하여 경영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3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1) 자회사에 일반관리비·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전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었다.

- 평가년도의 일반관리비 비율은 6%로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 수준을 상회하나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9%)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윤율 9.11%는 평가대상 전체 모기관과 비교하면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며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10%)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모기관은 향후 자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자체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율을 추가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 항목은 인당 기준으로 복지 포인트 연간 400천원, 명절상여금 연간 800천원, 식비 월 14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 항목으로 회사 창립기념일 100천원, 생일 축하금 30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 식비를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급하고 있는 점, 기타 복리후생 항목을 지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복리후생 항목의 지급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내부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당장 복지기금 확보가 어렵지만, 향후 경영여건 호전 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세부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이후 자회사 사우회 지원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확인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설립 및 (추가)출연 요건 달성 여부, (추가)출연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출연상한액 기준, 현재 기금 상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모기관 노동자의 의견과 수용도,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및 자회사 노동자의 의견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기관과 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기관과 자회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간접 지원활동의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모색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실행 이후 환류체계를 통한 운용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4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1)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근로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 개선,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부서별 직무교육(월 1회) 및 훈련(연 2회)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받아 다음 교육훈련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운임, 숙박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지급요령을 마련하고 자회사 자체 정보망을 차별 없이 사용하고 직무의 특성 등이 반영된 호칭을 사용하며 상벌관리요령에 따라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승진관리요령에 따라 연봉 및 승진 기본소요연한 적용시 경력을 반영하는 경력인정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모기관은 자회사가 직원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 1인 이상을 위촉하고 있고 승진관리요령에 따라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채용전형 과정에서 외부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인사관리규정상 근무평가는 직원인사평가요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포함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 비정규직 채용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3)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신임대표이사 선발 시 모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선발절차 진행 시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가 없는 경우 자회사에 채용전담자(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개된 경로를 통해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등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모기관은 자회사가 3개 부문 13개팀 직원 통합형 연공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 이후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 모기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처우의 핵심적인 부분인 자회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 및 적용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제도(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모기관은 인터뷰, 설문 등과 같은 필요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5)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모기관은 '20년 5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고, 모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의 1년 6개월 동안의 경험과 타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회사에 적합한 노동이사제를 검토하여 '22년 이후 도입 추진 예정이라고 한다.

-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노동이사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구성, 위원의 역할과 의무, 의결권 제한, 사용자의 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6)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자회사 홈페이지내 K-SERVICE소식 메뉴 아래 경영정보 공시를 위해 게시판이 구축되어 있지만, 자회사 정규적 전환 완료된 '21년도부터 경영정보를 공시하였다고 했으나, 홈페이지 확인결과 아직 정보가 공시되지 않고 있다. 경영성과와 대내외 평가 등의 정보 공시가 불가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현황, 임직원현황, 주요사업, 정보공개 등과 같은 항목들은 공시 가능하기에, 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해 공시 가능한 항목을 확정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에 더해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상세 내역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적정히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공시하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효과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기관이 공시업무 기준, 공시담당자 실무교육 및 공시 모니터링 제공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 5에 대하여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o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회사의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등급”으로 평가한다.